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양국의 문서공개로 본 1965년 한일협정과 청구권문제

2009년 12월 4일(금) 오전10시~오후6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양국의 문서공개로 본 1965년 한일협정과 청구권문제

2009년 12월 4일(금) 오전10시~오후6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주최 민족문제연구소·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후원 동북아역사재단

식순

인사말(10:00~10:20) 이해학(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상임대표)

주제 발표와 토론 사회 :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제1주제 문서공개 소송의 전개와 내용(10:20~11:00)

- 「한일협정 외교문서」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 | 김진국(변호사, 한일협정외교문서공개소송 담당)
-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 : 일본 | 고다케 히로코(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국장)

제2주제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문서의 비교(11:00~12:00)

-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와 청구권 문제 : 한국 | 김민철·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
- 기본조약 제2조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서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청구권’ 개념에 대해(요약문) | 오오타 오사무(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 공동대표)
- 안개 속으로 사라진 ‘한일 회담’ 속에서의 ‘개인 청구권 문제’ | 이양수(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국장)

제3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13:30~14:10)

-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 | 김창록(경북대학교 교수)
- 제2차 후지코시 소송에 대하여 | 시마다 히로시(후지코시재판 변호사)

휴식(14:10~14:30)

종합토론(14:30~17:30)

사회 : 이석태(변호사,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토론 : 박배근(부산대 법학과 교수), 장완익(변호사), 高木健一(변호사), 張界滿(변호사), 吉澤文壽(新潟國際情報大學 준교수, 일한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공동대표)

목차

제1주제 문서공개 소송의 전개와 내용

「한일협정 외교문서」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 | 김진국 2

『韓日協定外交文書』 文書公開訴訟の展開と内容 | 金晉局 7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 : 일본 | 고다케 히로코 12

文書公開訴訟の展開と内容 | 小竹弘子 17

제2주제 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 문서의 비교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와 청구권 문제 : 한국 | 김민철·김승은 24

公開された韓日協定文書と請求権問題 : 韓国 | 金敏喆·金丞垠 38

기본조약 제2조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서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청구권' 개념에 대해 | 오오타 오사무 52

基本条約第二条問題と請求権問題における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について | 太田修 56

안개 속으로 사라진 '한일회담' 속에서의 '개인 청구권 문제' | 이양수 82

霧の中に消えた日韓会談の中の「個人請求権問題」 | 李洋秀 106

제3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 | 김창록 128

強制動員被害者の法的被害回復と請求権問題 | 金昌祿 131

제2차 후지코시 소송에 대하여 | 시마다 히로시 134

第2次不二越訴訟について | 島田 広 141

토론문 : 전후 보상 재판과 한일 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의의 | 장계만 148

戦後補償裁判と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 | 張界滿 153

첨부자료 158

- | | | |
|-----------------------------|--------|---------------|
| 1. 소장 | 2. 판결문 | 3. 1차소송과 이의신청 |
| 4. 한일회담 문서 게시 청구에서 지금까지의 흐름 | | 5. 불개시 이유 일람 |
| 6. 한일회담 문서 목록 | | 7. 청구권 관련 처리표 |
| 8. 엉터리!! 일본 외무성의 문서 '공개' | | 9. 먹칠된 공개 자료 |

제1주제
문서공개 소송의
전개와 내용

『한일협정 외교문서』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

김진국

(金晋局, 변호사)

1. 문서공개소송 제기의 배경

○ 각국(한국, 일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전후보상재판’에서 한일협정과 관련한 ‘개인 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해 계속 논란 발생

· 특히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피징용자 손해배상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0 가합7960호 사건)에서 외교통상부에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공식 입장 표명하지 않음. 그리고 담당재판부는 위 재판의 판단에 필요하다면서 2003. 3. 26. 자로 외교통상부측에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정’을 하였으나, 외교통상부장관은 해당 문서송부를 거부.

○ 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이하 ‘특별법추진위’라 함)는 위 논란의 해소 등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로 한일협정과 관련한 외교문서의 공개를 청구하기로 함

· <특별법추진위>, <정부기록보존서>에 위 외교문서 일체 공개청구

- 2002. 6. 12. 자 회신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된 기록이라는 통지, 외교통상부 동북아1과가 자료공개여부 관장 통지

· 특별법추진위 <외교통상부>에 위 외교문서 일체 공개요청

- 2002. 6. 28. 자 회신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외무부령 93.7.28.)’에 근거 ‘공개 보류’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통지

· 특별법추진위 <외교통상부>에 위 이의신청 및 심의회의록 공개 추가요청

- 2002. 8. 8. 자 회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근거, ‘공개 불가’ 통지

- <100명 피해자>, <외교통상부>에 외교문서에 한정하여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
 - 2002. 9. 5. 자 정보공개청구 전후보상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들 명의(소송제기를 위해 원고 적격자 100명 선정)
 - 2002. 9. 23. 자 회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 근거 '공개 불가' 통지

참고조문 :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 - - <현행법 제9조에 해당>

제1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항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문서공개소송의 진행 경과

가. 대상사건 및 당사자

사건번호 : (1심) 2002구합33943(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

(2심) 2004누4682(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사 건 명 :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원 고 : 신천수 외 99명 (대리인 변호사 최봉태, 김진국)

피 고 :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 원고들의 구성(100명)

일본군성노예피해자(10명), 근로정신대피해자(10명),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10명), 원자폭탄피해자(10명), 미쯔비시중공업피해자(10명), 일본제철피해자(10명), BC급전범피해자(7명), 유골소송당사자(3명), 노무동원피해자(10명), 군인동원피해자(10명), 군속동원피해자(10명)

나. 소송의 진행경과 및 결과

○ 2002. 10. 11.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제기(서울행정법원)

- 원고측 4회, 피고측 4회 각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
- 피고측 소송 진행 도중에 변호사 선임(2003. 10. 23.)
- 재판부 비공개 문서검증절차 진행(외교안보연구원)

○ 2004. 2. 13. 1심 판결선고(원고 일부 승소)

- 공개청구 요구문서 중 개인적청구권과 관련된 5권만 인용
-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청구를 한 당사자들만 인용

○ 2004. 3. 4. 항소 제기(원고, 피고 쌍방 항소)

- 2004. 3. 9. 국무회의 : 문서공개소송관련 재검토필요 언급
- 2004. 8. 14.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 : 문서공개 검토지시
- 2004. 10. 2. 총리오찬 : 진실규명, 보상 및 지원문제검토
- 2004. 11. 10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 발족
- 2005. 1. 7.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설립(대통령훈령- 민관공동위원회)

○ 2005. 1. 11. 쌍방 항소취하(한국 정부의 공개결정)

○ 2005. 1. 17. 1차 문서공개(5권) - 1심 판결 선고 내용

-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전면공개촉구)
- 2005. 3. 2. 외교통상부 '문서공개전담심사반' 구성(민간위원 3명 포함)

○ 2005. 8. 26. 2차 문서공개(156권)

3. 본안전 항변 관련- 법률상 이익 여부

가. 피고측 주장 :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없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들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거부취소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정보 주장 관련

가. 피고측 주장 : 공개요청 문서는 한일회담의 최종 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로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정보공개법 제1항 5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만으로 해석가능여부 등

가. **피고측 주장**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여부는 ‘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이 있는 후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관하여 ‘보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원고들이 그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는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1)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만’으로는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합치된 해석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고 문서의 공개가 필요하다.

(2) 또한 한국 정부의 ‘보상’은 피해 일부 국민에 대한,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에 그친 것이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실제의 이익이 있다.

6.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관련

가. **피고측 주장** : 공개요청 문서에는 양국의 심각한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일, 반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관례상 이와 같은 문서는 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본정부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북한과 수교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들어 한국 정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한국정부가 이를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가 실추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

나.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문서가 외교관례 및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3)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중 공개대상목록(5권) 문서들은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 외의 문서들은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 문제의 판단에 별 영향을 없을 것으로 봄). 원고들이 나이가 매우 많아 개인적청구권 인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 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기밀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는 데다가,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다.

- (개인적청구권 소멸여부 판단과 관련된 일부 문서만 공개 허용)

(4)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본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대상목록(5권)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 않다. 다만 나머지 원고들은 위와 같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이 존재하는 당사자들만 인용)

첨부자료 1. 소장, 2. 판결문 참조

『韓日協定外交文書』 文書公開訴訟の展開と内容

金晉局

(キム・ジングッ, 弁護士)

1. 文書公開訴訟提起の背景

○ 各国(韓国、日本、米国)で進行しているいわゆる‘戦後補償裁判’で、韓日協定と関連した‘個人請求権消滅の有無’に対して、論議が続けて発生

・特に釜山（プサン）地方裁判所で、三菱重工業を相手にした被徴用者損害賠償請求訴訟(釜山地方裁判所2000イ合7960号事件)で、外交通商部に“韓日協定により個人請求権が消滅したのか”余否に対して返事を要請したが、公式な立場を表明しなかった。そして担当裁判所は、上の裁判の判断に必要なとして、2003.3.26.付で外交通商部側に、韓日協定関連文書に対する‘文書送付囑託決定’をしたが、外交通商部長官は該当文書の送付を拒否した。

○ これに日帝強制占領下強制動員被害者真相究明等に関する特別法制定推進委員会(以下‘特別法推進委’という)は、上の論議の解消等のためにも、窮極的に韓日協定と関連した外交文書の公開を請求することにした。

・〈特別法推進委〉、〈政府記録保存書〉に上の外交文書一切の公開を請求

– 2002.6.12.付回答

‘非公開対象’に分類された記録という通知、外交通商部東北アジア1課が資料公開の余否に関する通知

・特別法推進委〈外交通商部〉に上の外交文書一切の公開を要請

– 2002.6.28.付回答

‘外交文書保存及び公開に関する規則(外務部令93.7.28.)’に根拠‘公開を保留’している記録、という通知

・特別法推進委〈外交通商部〉に上の異議申請および審議会議録公開を追加要請

– 2002.8.8.付回答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7条に根拠

‘公開不可’通知

・〈100人被害者〉、〈外交通商部〉に外交文書に限定して、正式に情報公開請求

－ 2002.9.5. 付情報公開請求

戦後補償裁判に参加している被害者たちの名義(訴訟提起のために原稿適格者100人を選定)

－ 2002.9.23. 付回答

‘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第7条第2項に根拠 ‘公開不可’通知

参考条文：〈旧公共機関の情報公開に関する法律〉

第7条(非公開対象情報) --- 〈現行法第9条に該当〉

第1項：公共機関は次の各号の1に該当する情報に対しては、これを公開しなくてもよい。

第2号：公開される場合、国家安全保障、国防統一、外交関係等、国家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恐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情報

第2項：公共機関は第1項各号の1に該当する情報が、期間の経過等によって非公開の必要性がなくなった場合には、当該情報を公開対象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文書公開訴訟の進行経過

イ、対象事件および当事者

事件番号：(1審) 2002ク合33943(ソウル行政裁判所第3行政府)

(2審) 2004ヌ4682(ソウル高等裁判所第3行政府)

事件名：情報公開処分取り消し訴訟

原告：シンチョンス他99人(代理人 弁護士 崔鳳泰、金進局)

被告：外交通商部長官(代理人 法務法人 太平洋)

・原告の構成(100人)

日本軍性奴隷被害者(10人)、勤労挺身隊被害者(10人)、浮島丸爆沈被害者(10人)、原子爆弾被害者(10人)、三菱重工業被害者(10人)、日本製鉄被害者(10人)、BC級戦犯被害者(7人)、遺骨訴訟当事者(3人)、労務動員被害者(10人)、軍人動員被害者(10人)、軍属動員被害者(10人)

ロ、訴訟の進行経過及び結果

○ 2002.10.11. 情報公開請求訴訟の提起(ソウル行政裁判所)

－ 原告側4回、被告側4回各答弁書及び準備書面提出

－ 被告側訴訟進行の途中に弁護士選任(2003.10.23.)

- 裁判所非公開文書検証手続き進行(外交安保研究院)
- 2004.2.13. 1審判決宣告(原告、一部勝訴)
 - 公開請求要求文書中、個人的請求権と関連した5冊だけ引用
 - 原告の内、訴訟の方法を通じて具体的に請求をした当事者だけ引用
- 2004.3.4.控訴提起(原告、被告 双方控訴)
 - 2004.3.9. 国務会議：文書公開訴訟に関連して再検討が必要と言及
 - 2004.8.14. 大統領府首席補佐官会議：文書公開の検討を指示
 - 2004.10.2. 総理昼食：真実糾明、補償および支援問題検討
 - 2004.11.10 ‘日帝強制占領下強制動員被害者真相究明委員会’発足
 - 2005.1.7. ‘韓日修交会談文書公開等対策企画団’設立(大統領訓令- 民官共同委員会)
- 2005.1.11 双方控訴取り下げ(韓国政府の公開決定)
- 2005.1.17. 1次文書公開(5冊) - 1審判決宣告内容
 - 市民団体の問題提起(全面公開要求)
 - 2005.3.2. 外交通商部‘文書公開専門担当審査班’構成(民間委員3人含む)
- 2005.8.26. 2次文書公開(156冊)

3. 本安全抗弁関連- 法律上利益の余否

イ、被告側主張： 文書の公開を通じて保護される利益がなかったり、拒否処分に対する取り消し訴訟を提起する‘法律上利益’がなく、不適法だという主張

ロ、裁判所の判断： 情報公開法の立法目的および規定内容に照らしてみる時、公共機関に対して情報公開を請求して拒否処分を受けたこと自体が、法律上利益の侵害に該当し、したがって原告たちが文書の公開を通じて、実際にいかなる利益を得たり保護受けられるかとは関係なく、拒否取り消しを求める法律上の利益がある。

4. 意志決定過程と内部検討段階情報主張関連

イ、被告側主張： 公開要請文書は韓日会談の最終結論に至った‘意志決定過程と内部検討段階’の情報で、公開対象になる情報に該当しないという主張

ロ、裁判所の判断： 情報公開法第1項5号で‘非公開対象’と規定した、‘意志決定過程または内部検討過程にある事項’は、そのような段階の情報の公開に因って将来の意志決定が歪曲されたり、外部の不当な影響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憂慮して、これを遮断するためのものなので、既に最終結論が出てから

30年が経過したこの事件の文書は、これに該当しない。

5. 請求権協定及び合意議事録だけで解釈可能の有無など

イ、**被告側主張**： 損害賠償請求権消滅の有無は、‘請求権協定’及びその付属書である‘合意議事録’によって十分に把握できるし、請求権協定があった後、韓国政府が韓国国民の日本に対する民間請求権に関して‘補償’を終えたので、この事件の文書の公開が不必要だったり、原告らがそれによって実際に保護される利益がないという主張

ロ、**裁判所の判断**：

(1)‘請求権協定’及び‘合意議事録だけ’では、個人的損害賠償請求権消滅の有無に対する合致した解釈が難しく多くの論議があったし、条約文言の解釈が疑わしい場合には、条約の準備文書も解釈のために利用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点に照らしてみれば、請求権協定解釈の補充的手段として、この事件の文書を利用する必要性が大きく、文書の公開が必要だ。

(2)また韓国政府の‘補償’は、被害一部国民に対する、被害の一部に対する補償に終わったものなので、補償を受けられない原告らが、この事件の文書の公開を通じて、保護される実際の利益がある。

6. 公開時、国家の重大な利益を侵害する恐れがあるという主張関連

イ、**被告側主張**： 公開要請文書には、両国の深刻な立場の違いと、有利な交渉結果を引き出すための戦略などが含まれていて、これを公開した場合、両国国民に不必要な反日、反韓感情を起こさせることがあり、相互主義に立脚した国際慣例上、このような文書は当事国間の協議を通じて、公開の有無を決めるべきなのに、日本政府もこれを非公開対象にしている、北朝鮮との修交交渉に障害にな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掲げて、韓国政府に非公開を要請したことがあり、韓国政府がこれを公開した場合、国際関係で国家的信頼が失墜するなど、‘国家の重大な利益’を害する恐れがあるという主張。

ロ、**裁判所の判断**：

(1)この事件の文書が外交慣例および国際的信頼関係維持という側面から、情報公開法第7条第1項第2号所定の‘非公開対象情報’に、該当する余地があるとは言える。

(2)しかし国民の知る権利は憲法上、表現の自由の内容を成し、国民主権を実現する核心になる基本権であり、人間の尊厳と価値及び人間らしい生活をする権利と関連することなので、情報公開法がこれを制限する場合にも、これは必要最小限度に終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限度を決めるためには、その制限に因って国民がこうむることになる‘具体的不利益’と、保護しようとする‘国益’の程度を比較衡量しなければならない。

(3)裁判所の非公開文書検証結果によれば、この事件の文書の内、公開対象目録(5冊)の文書は、原告たちの日本や日本企業に対する個人的損害賠償請求権が消滅したのかの余否を判断する、有力な資料になるものに見え(その他の文書は、別に公開しなくても、上の問題の判断に格別な影響がないものと見る)、原告たちが年齢が非常に多く、個人的請求権認定の余否を判断を受けられる期間が、それ程長く残ってなく、上の文書は生産されてから30年が遥かに過ぎ、当時の外交機密が一部含まれていたとしても、これを非公開対象にして、その秘密性を維持する客観的必要性が大きく減少した上に、上の文書の公開に因って、日本との外交関係において、多少の不便があったとしても、韓日関係の歴史的特殊性に照らして、これを国家的に受認することができる。

- (個人的請求権消滅の有無判断と関連した、一部文書だけ公開を許容)

(4)原告たちの内、訴訟の方法を通じて、具体的に日本の強制占領期にこうむった被害に対する個人的損害賠償請求権、またはこれに準ずる権益の保護を求める人たちは、その訴訟での請求引用余否と関係なく、公開対象目録(5冊)文書の公開に関して、特別で具体的な利益を持つ一方、これを非公開にすることに因って保護される国益は、上のような利益を犠牲に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大きくない。 ただし残りの原告たちは、上のような特別で具体的な利益を持つと認める証拠がない。

- (文書公開に関して、特別で具体的な利益が存在する当事者だけ引用)

添付資料 1. 訴状, 2. 判決文 参照

문서공개소송의 전개와 내용-일본

고다케 히로코

(小竹弘子,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국장)

1. 내가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은 나고야 미츠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 관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44년, 12~14세의 소녀 약 300명이 '일본에 가면 일도 있고 여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끌려갔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여학교는커녕 소녀들을 기다린 것은 빈약한 식사와 가혹한 노동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노동한 임금은 물론 소지품까지 나중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호소하는 원고들에 대해 2005년 2월, 나고야지방법판소는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전면기각'했다.

이 판결을 알게 된 원고들의 눈물과 분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인의 미불임금조차 청구가 불가능한 '한일청구권협정'이 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1999년 3월부터 시작된 이 소송 경과를 보면 당초, 피고국과 미츠비시는 소멸시효론이나 국가무담(無答)책임론, 미츠비시별(別)회사론을 제기했다. 변호단이 그러한 논리를 모조리 분쇄하자, 2003년, 피고측은 '한일청구권협정'을 끌어들었다. 당시 법정투쟁을 하고 있던 일철(日鐵)공탁금 소송, 후지코시(不二越) 소송 등에서도 거의 같은 경과를 밟았다. 2005년 한국에서는 한일회담문서 공개를 요구한 100명 소송 결과, 관련문서 3만 페이지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동경에서 '한일회담부터 40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묻는다' 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나는 그 무렵 자원봉사자로 비디오 제작을 하고 있었으므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참가했다. 그 때의 강연자가 바로 오늘 여기 계시는 김창록선생과 요시자와(吉澤文壽)선생이었다.

김창록선생은 강연에서 한일회담 결과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것은 '독립축하금'과 '경제원조자금'이며 원고들의 미불 임금이나 공탁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기록한 문장을 문장화하여 나고야미츠비시소송 변호단에게 제공했다. 그 후 김창록선생은 나고야미츠비시소송 항소심에서 학자로서 증언했다. '한일회담문서'는 그때까지 역사연구 대상이었지만 김창록선생의 증언은 '한일회담문서'가 법정에 등장한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요시자와선생은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운동의 탄생을 기여했으며 또한 '개시(開示)청구자 요시자와 외 331명'으로 재판소에 이름이 남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었다.

나고야미츠비시소송변호단은 일본에서도 한일회담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츠비시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중에 인재를 찾았지만, 결국 시간 여유가 있는 내가 총대를 메게 되었다. 나는 변호사회관 서점

에서 정보공개법에 관한 책을 구입했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01년 4월 1일 시행 오던 것,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은 한국이라는 것, 선진제국 중에서 일본의 성립이 가장 늦었다는 등 일본은 ‘정보공개후진국’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2장에는 누구라도 문서의 개시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나고야미츠비시소송 원고 분들과 함께 개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준비부터 결성까지(2005년 8~12월)

그 무렵 나는 나고야에 살았으므로 한 달에 1회 동경에 가서 회의를 했다. 멤버는 요시자와씨 부부, 히토 츠바시대학 학생 소고(十河)씨, VAWW-NET Japan 회원인 야마다(山田惠子)씨, 일철 전징용공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인 야마모토(山本直好)씨였다. 일상적으로는 메일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한 도자와(東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단법인)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의 기초를 쌓았다.

모임의 목적을 ‘일본정부에 대해 한일회담 관련문서의 전면공개를 요구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한국·조선인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12월 18일,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결성되었다. 한국 **회원모집**에 관해서는 광주유족회 회장·이금주씨에게 부탁했고, 일본 국내에서는 각자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뉴스 발행과 회계**는 내가 맡고 지면 편집은 소고(十河)씨가 협력해 주었다. **홈페이지**는 당초, 요시자와 가요코(吉澤佳世子)씨가 했고 그 후 회원인 야스다(安田多香子)씨가 직업상 홈페이지 관리도 하므로 책임을 맡겠다고 하여 10종으로 분류한 색인을 가진 홈페이지가 완성되었다.

3. 개시청구와 이의 신청, 1차 소송의 쟁점-개시 기간(2006년 4월 25일~2008년 6월 3일)

모임이 결성된 뒤 한일양국에서 회원 모집을 하면서 다음 해인 4월 25일, 일본 재주자 143명, 한국 재주자 188명, 합계 331명으로 외무성에 개시청구를 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어려우므로 ‘자료③ 1차 소송과 이의 신청’을 참고해 주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한일회담에 관한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청구했는데 외무성이 첫 번째로 내 온 것은 부분 개시로 겨우 65페이지였다. 이를 받은 우리는 곧 이의 신청을 했다. 외무성의 자문을 받은 심사회는 개시를 결정했고 1958년 4월 16일~1960년 4월 15일에 했던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163페이지였다. 이어서 4월 27일에는 2차로 1,930페이지가 개시되었으나 이는 1960년 11월부터 1970년 2월 사이에 한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와 사설, 연설내용, 소련의 동향 등 한일회담을 둘러싼 주변 자료였다.

이의 신청과 병행하여 12월 18일, 부분 개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한다고 **동경지방법판소에 제소**했다. 2007년 3월 6일 제1회 구두변론 뒤에 구두변론은 5회 이루어졌고, 12월 26일, 재판장은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우리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일본국(외무성)측은 이듬해 1월 8일 동경고등재판소에 제소했으나 원고측은 제2회 구두변론에서 취소를 제시했고, 일본국측이 취소에 동의

하여 항소심은 종료되었다.

1차 소송의 승소를 정보공개법으로서의 측면에서 변호단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차 소송은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일본 정부에 압박하는 운동 중에 외무성의 개시 결정을 추동한다는 전초전에 해당하는 소송이며 이어지는 2차 소송, 3차 소송에서 1차 소송이 승소로 끝난 것은 전망을 밝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은 정보공개법에 관해 처음으로 국가의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판례시보’(1990호 10페이지), ‘판례타임즈’(1279호 186페이지) 등 주요한 판례잡지에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정보공개법을 둘러싼 소송 중에도 귀중한 선례가 되는 판결이다.

1차 소송의 승소를 시민운동으로서의 측면에서 모임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시민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 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정보공개법 성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개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원래 문서가 있는가의 여부조차, 또한 언제 회답할지 국가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국가의 회답을 오로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주입되었다. 한편, 시민측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취하는 것은 일부 평화운동에서 미군 내부 정보를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입수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다. 한일회담이나 강제연행 연구는 오로지 헌책방 등의 유출 자료에 의존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로 직접 입수한다는 발상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1차 소송 판결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회답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선고하고, 시민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정보를 달라고 더 적극적으로 추궁해도 좋다고 용기를 준 판결이었다. 1차 소송이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단의 힘 뿐 아니라 한일 양 회원의 연대의 힘이 컸다. 또한 판결문에도 기술되었듯이 우리가 개시 청구를 하기 이전에 관련된 문서 청구가 이미 12건 있었다는 것도 유리하게 판단되었다.

4. 2차 소송 쟁점 - 불개시의 이유(2008년 4월 23일~2009년 12월 16일)

2차 소송 역시 이해가 어려우므로 자료④ 개시청구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참고하시오.

2007년 11월 16일에 개시된 문서는 5,339페이지, 문서수 140이었으며, 그 가운데 개시문서 113개였다. 불개시문서 1, 부분개시 문서 26을 대상으로, 4월23일, 동경지방법재판소에 제소했다. 대다수는 독도에 관한 문서이며 개인·법인정보에 관해서는 제외되고 쟁점은 드디어 불개시의 이유 문제가 되었다.

2008년 7월 1일 제1회 구두변론 뒤에, 올해 10월 21일의 제7회 구두변론에서 결심이 되어, 12월 16일 판결이 언도된다. 특필할 것으로 제4회 구두변론 때 재판장이 ‘우리도 문서 내용을 볼 수 없다’고 발언하여 방청석이 소연해지는 장면이 있었다. 이 재판장 발언이 무엇일까.

재판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모임에서는 번역작업을 했다. 한국에서 공개된 문서(약 30,000페이지) 번역은 이양수씨가 7,350페이지(21%)(어업문제 및 평화선=이승만라인, 선박문제, 영문자료를 제외)를 번역했다. 한국 공개문서와의 대조작업은 변호단에서 만든 준비서면 등을 보고, 또한 일본공개문서 중에서

우연히 독도에 관한 정령(政令)이 발견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지금까지 외무성이 개시한 문서에는 일부란(日附欄)이 있었는데 4차, 5차, 6차문서 52,696페이지, 1,189문서에는 일부란이 없어서, 외무대신 앞으로 일부란을 넣어 달라는 요망서를 제출했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모임의 방은 분들의 협력을 얻어 전체 문서에 일부란을 넣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공개된 모든 문서에 명칭 등 및 불개시, 부분 개시 등의 분류기호를 기입하여 게재했다.

이 홈페이지 게재는 한일 양국정부가 공개한 문서가 전세계의 누구라도 인터넷을 입수할 수 있도록 모임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당초에는 비용을 대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 또한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일본 측 문서를 전부 입수하기 위해서는 A4용지 1매 당 10엔이라는 비용이 필요했다. 종이로 받아도 CD로 구워 자료로 받더라도, 동일한 금액이지만 6만 페이지, 60만 엔은 모임의 회계에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모임에서 입수한 이들 자료가 전 세계에 발신, 공개되고, 누구나 그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래 이러한 비용은 외무성이 부담하고, 인터넷으로 자주적으로 공개하고, 일반에게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5. 3차 소송(쟁점 - 불개시의 이유, 2008년 10월 14일~)

2008년 4월말부터 5월초, 4·5·6차로 개시 결정된 52,696페이지 모두 대상이었다. 불개시 이유는 여덟 개, 특히 가장 많은 4가지 이유에 해당하는 문서 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 혹은 북조선과의 교섭상, 불이익이 된다 = 259
2.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없어진다 = 109
3. 독도문제 = 48
4. 범죄 예방에 관련된 것 = 11

2008년 10월 14일 동경지방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9월 1일의 제4회 구두변론에서 재판장은 국가(외무성)에 한국측이 수집한 문서를 왜 은폐하는가 하는 질문하는 장면이 있었다. 12월 8일에는 제5회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데, 변호단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준비서면(3)과 (4)가 제출된다.(자료④ 개시 청구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오른쪽의 **이의 신청**을 보십시오.)

외무성이 행한 일부 불개시 결정처분(2008년 4월 19일, 5월 2일, 5월 9일)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2008년 6월 10일 이의 신청을 했다. 이의 신청에 대한 외무성으로부터 청구인의 동의서와 날인이 필요하다는 평령서가 왔다. 나는 한국청구인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방한하여, 269명 중 137명(59.9%)의 동의서를 받았다. 일본 청구인은 153명 중 115명(75.1%)이었다. 그러나 2월 26일, 국가(외무성)는 전원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제2차 보정명령을 내고, 그 후에도 교섭이 있었으나 7월 28일, 원고는 회답과 함께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아직 답변이 없다. 앞에서 전원이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는 ‘등’이라고 했는데 이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는 ‘사망진단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6. 정권교체와 정보공개 문서공개 의미와 권력, 민주화라는 측면부터 고찰했다.

결성 이래 이미 4년이 지났다. 공개된 6만 페이지 가운데 25%가 검게 칠해져 있고, 심리된 것은 전체 페이지의 10%에 불과하며, 남은 90%의 심리가 종료되었는데도 앞으로 과연 몇 년이 더 걸릴 것인가?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가장 처음 읽은 ‘속속들이 밝혀보자! 정보공개법(中島昭夫 저술)’라는 책 속에 ‘문서비공개법’이라는 말이 있었다. 한일회담문서 공개를 요구하며, 꿈처럼 지나간 4년. 이제 일본의 정보공개법이 문서비공개법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알았다’고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

외무성이 ‘불개시, 부분개시의 이유’로 든 것은 21종류나 있고, 게다가 재판관은 문서의 내용을 볼 수 없다. 무엇이 쓰여 있는지 모르는데, 불개시 이유가 적법한지 위법인지, 심리할 수 있을까. 더욱이 일본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개인의 미발 임금조차 청구할 수 없는 한일청구권협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빨리 알고 싶다!’고 하는 피해자와 우리들의 염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피해자 분들이 ‘한’을 품은 채 먼 길을 떠나셨다. 자민당 정권이 권력을 쥐고 일본인도 그것을 허용해 온 결과이다.

9월에 새 정권이 탄생했다. 10월 21일, 우리는 관련 17단체와 공동으로 **오카다(岡田) 외무대신 앞으로 ‘공개한 한일회담문서의 25% 정도가 검은 칠을 한 부분의 공개를 명령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2차 소송(결심) 법정에서 원고인 최봉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피해자가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를 애매하게 하는 것처럼 중대한 인권침해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2005년 7월 28일, 다음과 같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을 명시할 것, 개시 기간의 단축, 불복 신청을 받고나서 심사회에 대한 자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재판관이 실물을 보고 가부(可否)를 판단하는 인카메라 수속 등을 도입하는 등의 개정안인데, 아직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정권이 이 법안을 성립시킴으로써 일본은 ‘정보공개후진국’에서 한국에 버금가는 ‘정보공개법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오카다 외무대신은 우리 한일 양국 시민의 요청에 응하여 한일회담문서의 전면 공개에 들어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한국·조선인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2010년의 한국병합 100년이 진정한 한일우호 원년으로 될 것을 믿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3. 1차 소송과 이의신청 4. 청구에서 지금까지의 흐름 5. 불개시 이유 일람

文書公開訴訟の展開と内容

小竹弘子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事務局長)

第1章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請求運動を行うことに至った背景日韓請求権及び経済協力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全面棄却された戦後補償裁

私がこの運動に関わる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は、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に関わったことから始まる。

1944年、わずか12歳から14歳の少女達およそ300名は、「日本に行けば仕事もあるし、女学校にも行かせて貰える」と三菱重工名古屋航空機製作所に連れて来られたが、女学校どころか少女達を待ち受けていたのは貧しい食事と過酷な労働であった。

「戦争が終わって返される時、働いた賃金はおろか荷物まで、後で送ってやるといったまま、未だに返してくれない」と訴える原告らに対して、2005年2月、名古屋地方裁判所は、日韓請求権及び経済協力協定により「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全面棄却」。この判決を知った原告たちの号泣と怒りの声を聞きながら、個人の未払い賃金すら請求することのできない「日韓請求権協定」とは一体何だろうと考えた。

1999年3月から争われてきたこの訴訟の経過を調べると、当初、被告国と三菱は消滅時効論や国家無答責任論、三菱別会社論を持ち出し、それらが弁護団からことごとく粉碎されると、2003年、日韓請求権協定を持ち出した。この経過は、当時闘われていた日鉄供託金訴訟、不二越訴訟等でもほぼ同様である。

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が全面棄却されたと同じ2005年、韓国では韓日会談文書の公開を求めた100人訴訟の結果、関連文書およそ3万頁が公開され、同年6月12日、金昌祿氏と吉澤文寿氏を迎えて「日韓会談から40年日本の植民地支配を問う」と題するシンポジウムが開かれた。

金昌祿氏は韓日会談の結果、日本が韓国に支払ったのは「独立祝い金」と「経済援助資金」であり、原告らの未払い賃金や供託金では無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このシンポジウムに参加した私は、全記録を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の弁護団に提供、その結果、控訴審における金昌祿氏の学者証言が実現した。それまで、歴史研究の対象であった日韓国交正常化交渉と、その会議録である「日韓会談文書」が、初めて日本の戦後補償問題の場に登場したといえる。

また、このシンポジウムの講演者吉澤文寿氏は、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運動の誕生に寄与、また開示請求

者 吉澤文寿他331名として、その名は裁判所に残され、永く人々の記憶に留まることになった。

第2章 日本の情報公開法

1. 日本における情報公開法の制定

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以下「情報公開法」という）は、2001年4月1日から施行された。

アジアで最初の情報公開法制定国、韓国に遅れること5年。もちろん、先進諸国の中で日本の成立は最も遅い。まぎれなく「情報公開後進国」である。

2. 「情報公開法」における開示請求権

「情報公開法」は、第二章 行政文書の開示（開示請求権）第三条で「何人も文書の開示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知り、名古屋三菱・朝鮮女子勤労挺身隊訴訟の原告の方々と共に開示請求を行う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た。

第3章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の準備から結成まで（2005年8月～年12月）

1. 結成までの準備 事務局長（小竹弘子）のアパート（名古屋市）を事務所とし、吉澤、吉沢、十河、山田恵子、山本各氏で行った月1回の打合せ会、日常的なメール交換、そして、東澤弁護士のアドバイスによって（社団法人）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の基礎を固める。

2. 会の目的「日本政府に対し日韓会談関連文書の全面公開を求め、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植民地支配の事実と責任を認めさせ、アジア・太平洋戦争による韓国・朝鮮人被害者、および遺族への謝罪と補償を実現させる」と定め、12月、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は立ち上がった。

3. 会員募集 韓国の会員募集の呼びかけは、光州遺族会会長・李金珠氏、日本国内は呼びかけ人を通じて行った。

4. ニュース 会員への情報を行うには、メールとニュースの二本立てが必要であると考え、在職中の経験を活かして事務局長が発行の責任を引き受け、パソコンによる紙面編集の基礎は、事務局次長十河孝雄氏の協力を得た。

5. ホームページ 当初、吉沢佳世子さんをお願いし、その後、会員の安田多香子さんから、仕事柄、ホームページ管理もしているので引き受けようとの申し出があり、2007年2月、裁判、日本公開の日韓会談文書、韓国公開の韓日会談文書など10に分類したインデックスを持つホームページが出来上がった。

第4章 一次訴訟 争点=開示の期間 (2006年4月25日～2008年6月3日)

1. 経過

異議申立 2006年4月25日、吉澤文寿他331名（日本在住143、韓国在住183）による開示請求に対して、外務省から8月17日、1次部分開示（65頁）の通知があり、私たちは10月2日、異議申立をおこなった。

その結果、2007年3月28日、1次の逆転開示（163頁）が通知された。外務省からの諮問を受けた審査会は開示決定をしたのである。これは第4次日韓会談本会議の会議録（1次～15次1958年4月15日～1960年4月15日）であり、続いて4月27日には、2次として1930頁が開示された。これは昭和35年11月から昭和45年2月に、韓国誌掲載の記事や社説、演説内容やソ連の動向など、日韓会談周辺の資料であった。

提訴 異議申立に平行して12月18日、部分開示は情報公開法に違反するとして東京地裁に提訴。2007年3月6日第1回口頭弁論のあと、口頭弁論は5回おこなわれ、12月26日、1年7ヶ月を過ぎての開示は違法であるとして 私たちは勝訴した。

控訴 これに対して国（外務省）側は、翌年1月8日東京高裁へ提訴した。原告側は5月28日第2回口頭弁論で取下げを提示し、6月3日、国（外務省）側は取下げを同意、控訴審は終了した。

2. 一次訴訟 勝因と影響

一次訴訟は、情報公開法 第11条（開示決定等の特例）の「相当の期間」が争点となり、行政機関の保有する情報の公開に関する法律に基づいてされた開示請求に対し、外務大臣が開示請求決定等をしない不作為が違法であると判断されたのである。

私たちが開示請求する以前（2006年4月25日）に「日韓会談」に関連する文書の請求件数が12件あったことも有利に判断された。この裁判は判例時報1990号 平成20年3月1日号に事例として掲載されている。

3. 市民運動としての側面から

市民にとって、権利行使をする上で情報は何よりも重要である。しかし、日本では情報を国家が独占し、市民が簡単にアクセスすることは困難な状況で、それは情報公開法ができてからも基本的には変わらない。

開示するかしないか、そもそも文書があるかどうかさえ、また、いつ回答するかは国次第ということで、我々はいつ出るとも知れない国の回答を、ひたすら待つしかなかったからであり。また、そう思い込まされてきた。

一方、市民の側も積極的に情報を掴み取るということは、一部平和運動で米軍の内部情報を情報公開制度で入手する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たが全体的に立ち遅れていた。

日韓会談や強制連行の研究は、もっぱら古本屋等の流出資料に頼っており、情報公開制度で直接掴み取るという発想は弱かったと思う。

そういった意味で、一次訴訟判決は、国に対しては自分達の勝手な都合で回答を引き延ばしてはいけないと宣告し、市民に対しては待ちの姿勢ではなく、もっと情報を出せと積極的に迫っていいのだと、勇気付けてくれた判決だと考える。

第5章 二次訴訟 争点＝不開示の理由 (2008年4月23日～2009年12月16日)

1. 不開示の理由と、その文書数

2007年11月16日に開示された文書5,339頁、文書数140、うち開示文書113。不開示文書1、部分開示文書26を対象として、4月23日、東京地裁へ提訴した。多くは竹島（独島）に関する文書である。争点はいよいよ不開示の理由に入ったが、個人・法人情報については除かれた。

2008年7月1日 第1回口頭弁論のあと。10月21日の第7回口頭弁論で結審となり、12月16日に判決が言い渡される。

2. 市民運動としての側面から

翻訳作業 韓国で公開された文書(約30,000頁)の翻訳は、李洋秀氏により、およそ7,350頁(21%)（漁業問題及び平和線＝李ライン、船舶問題、英文資料を除く）が翻訳された。韓国公開文書との対照作業は、弁護団で作る準備書面等を助け、また、日本公開文書の中から、偶然、竹島・独島に関する政令が発見され、大きな話題を生んだ。

公開された文書に日付なし 三次開示文書までは日付欄があったが、4次、5次、6次文書52,696頁、1,189文書には日付が無く、外務大臣宛に日付を入れるよう要望書を提出したが改善されず、会の多くの方々の協力を得て、全文書に日付を入れた。

ホームページには、公開された全文書に名称等、及び不開示、部分開示等の分類記号を書き入れ、掲載した。

このホームページ掲載は、日韓両国政府の公開した文書が、全世界の誰でもインターネットで入手できるよう会で提供するもので、当初はその費用の工面も大変だった。

また6万頁に及ぶ日本側文書を全部入手するためには、A4用紙一枚につき10円に相当する費用が必要であった。紙で貰っても、CDに焼き付け資料で貰っても、同一金額なのだが、6万頁イコール60万円は、会の会計に大きな負担だった。

それでも、会で入手したこれらの資料が全世界に発信公開され、誰でもそれを気軽に利用できる、という意義は大きいと思える。

ただ、本来こういう費用については外務省が負担し、インターネットで自主的に公開し、一般に提供すべきものではないだろうか？

第6章 三次訴訟 (争点=不開示の理由, 2008年10月14日～)

1. 不開示の理由と、その文書数

2008年4月末から5月初めに4, 5, 6次として開示決定された52,696頁のすべが対象。不開示の理由は8つ、特に多い4つの理由に該当する文書数は以下のとおり。

1. 韓国あるいは北朝鮮との間の交渉上、不利益になる=259
2. 韓国との信頼関係が無くなる=109
3. 竹島問題=48
4. 犯罪の予防に関連するもの=11

2008年10月14日 東京地裁に提訴したが、9月1日の第4回口頭弁論で裁判長は、国（外務省）に、韓国側がまとめた文書を何故隠すのかと問いただす場面があった。12月8日には第5回口頭弁論が行われる。

2. 異議申立

外務省の行った一部不開示決定処分(2008年4月19日、5月2日、5月9日)に対して、その処分の取り消しを求めて2008年6月10日に異議申立を行った。異議申立に対する外務省からの補正命令受け、韓国請求人の同意書をもろうため訪韓した。269名中137名(59.9%)の同意書もらい、日本請求人は153名中115名(75.1%)であった。

2月26日、国（外務省）は、全員から同意書が出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第2次補正命令を出し、4月6日、原告は回答及び申入れ書提出、6月9日、国（外務省）は第3次補正命令、7月28日、原告は回答と、再度、申入れ書を提出したが、4ヶ月経っても、未だに返答がない。

第7章 政権交代と情報公開 文書公開の意味と権力、民主化という側面から考察

1. 文書非公開法であることを実感

結成以来、すでに4年が過ぎた。公開されたおよそ6万頁のうち、25%が墨塗り、そして審理されたのは全頁の10%に過ぎず、残り90%の審理が終了するのに、この先一体何年かかるのだろうか？

この運動を始めたころ、真っ先に読んだ「使い倒そう！情報公開法（中島昭夫著）」の中に「文書非公開法」という文字があった。

日韓会談文書の公開を求め、夢中で過ごした4年。今、日本の情報公開法が「文書非公開法」であることを「身をもって知った」の一語に尽きる。

「不開示、部分開示の理由」は21種類もあり、その上、裁判官は文書の中身を見ることが出来ない。何が書いてあるのか分からないのに、不開示の理由が適法か違法か、審理できる筈もない。

その上、日本の情報公開法は「国民の知る権利」を保障していない。「個人の未払い賃金すら請求することのできない日韓請求権協定とは一体何だろう？ 早く知りたい！」という被害者たちの、そして私の願いは、4年経ってもかなえられない。

そしてこの間に、多くの被害者の方々が「恨」を抱いたまま、旅立たれた。
自民党政権が権力を握り続け、日本人もそれを許してきた結果である。

2. 新政権に期待する 岡田外務大臣宛に要請書

「公開した日韓会談文書の25%分、**墨塗り箇所**の公開を命じてください！！」

10月21日、私たちは、関連17団体と共同で岡田外務大臣宛に要請書を提出した。

同日、二次訴訟（結審）の法廷で、原告の崔鳳泰弁護士のように陳述された。

「法治主義国家において、被害者が誰を相手に権利を主張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を曖昧にすることほど、重大な人権侵害はありません」

3. 民主党の情報公開法改正案

民主党は2005年7月28日、次のような情報公開法改正案を提案している。

法案の目的に「国民の知る権利の保障」を明示することや、改正のポイントとして

1. 手続きの引き伸ばし、遅延を防ぐため、情報開示請求から開示決定のまでの期限を現行法の「30日以内」「延長30日」「特例無期限」から「14日以内」「延長30日」「特例60日」に短縮、明確化する。

2. 不服申し立てを受けてから審査会への諮問までの期間を、現行法の「期限の定めなし」から「14日以内」に改正する。

5. 裁判官が情報の実物を見て可否を判断するインカメラ手続き等の導入や、現在は高裁所在地のみで可能な裁判を地方裁判所で可能にすることで、情報公開訴訟をより公正化し、使いやすくする。（3、6、7は省略）

4. 2010年の韓国併合100年が 真の日韓友好1年となりますように！

日本が情報公開後進国から、韓国に並ぶ情報公開先進国になるための第一歩として日韓会談文書の全面公開に踏み切り、朝鮮半島に対する日本の植民地支配の事実と責任を認めアジア・太平洋戦争による韓国・朝鮮人被害者、および遺族への謝罪と補償を実現する2010年となることを信じながら、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資料 3. 一次訴訟と異議申立 4. 請求から今日までの流れ 5. 不開示理由一覧

제2주제
청구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국문서의 비교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와 청구권 문제 : 한국

김민철 · 김승은

(金敏喆·金丞根,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선임연구원)

1. 문서공개 소송의 배경과 평가

한국인의 대일과거청산 소송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일본재판소는 '시효 소멸'과 '국가무책임의 원칙(패전 전 일본에서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라고 하는 법기술적인 장벽을 고수하며, 한국인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재판소를 통해 기각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찌지방법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가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부 송소 판결을 내렸으며, 하급심을 중심으로 '시효 소멸'과 '국가무책임의 원칙'을 배제하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0년부터는 '시효 소멸'과 '국가무책임의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미국과 한국의 법정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에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국내외적으로 기존의 '법기술적 장벽'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인 개인이 청구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해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응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대응하였다.

일본 사법부는 한국인의 재판에 대해 2003년 3월에 최고재판소에서 5개의 재판이 일괄해서 기각되곤 하였다.¹⁾ 물론 고등재판소 단계에서 획기적인 판결도 있었다. 즉 "BC급 전범자에 대해 전범이 될 것을 명한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무책임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여 기각되었다.(7월 유족회 소송)²⁾

1) 3월 25일 - 관부재판 (원고는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 후쿠오카지방법재판소에서 위안부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지만 히로시마 고등재판에서 패소했다.)

3월 28일 - 송신도재판(일본에 거주하는 위안부 재판, 1,2심 패소), 강원도유족소송(군인군속, 강제노동피해의 재판, 1,2심 패소), 한국민족소송(위안부, 군인군속, 강제노동, 이산가족, 독립운동 탄압피해의 재판, 1,2심 패소), 미쯔비시 나가사키소송(원고 김순길씨, 강제노동피해의 재판, 1,2심 패소), 도쿄 아사히방적재판(여자근로정신대 재판, 1,2심 패소)

2) 2001년 12월 6일 군인, 군속, 위안부 등 원고 4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동경지방법재판소에 제소. 2001년 3월 26일 1심재판에서 기각. 항소하여 2003년 7월 22일 항소심 기각

이에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입장에서 있었던 강제동원피해자 100명은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문서공개를 요청했다. 자신의 권리가 한일협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과 외교부 규칙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해 왔고, 2002년 10월 100명의 피해자들(도중 1명 사망)은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외교문서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협정 문서는 2005년 1월 17일 개인청구권 관련문서 5건, 그리고 같은 해 8월 26일에 공개명령이 없었던 나머지 156건이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공개되었다.³⁾ 그러나 문서가 전면 공개되면서, 굴욕외교라는 한일협정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뒤엎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를 분야별로 검토한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심사반'은 당시 협상과 관련, "대체로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는 치열하게 일본과 교섭, 국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문서 검토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3인(전현수 경북대교수, 이원덕 국민대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연구실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심사반의 평가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 즉 당시 한국은 1951년 일본과 2차대전 승전국간에 맺어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정식 서명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국제법적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한일회담이 굴욕협상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냉엄한 국제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단"이다. 또한 한국이 받아낸 무상 3억달러를 포함한 6억달러의 청구자금도 당초 일본은 8,000만~1억5,000만달러로 매듭지으려 했으나 우리 대표단이 최대한 액수를 끌어올려 받은 것으로 "대표단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평가는 사실상 문제의 초점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다. 외무관료가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역사적 평가의 핵심이 아니다. 문서라는 '나무'에 빠져 '숲'을 보지 못한 주장이다. 한일협정을 굴욕협정이라 비판하는 것은 협정의 근본적인 성격 때문이다. 협정문에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져있음은 물론 애매모호한 문장으로 마치 식민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듯한 잘못을 범했다. 한일간의 과거청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결과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한 것은 협상 당사자들이 출발을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⁵⁾ 어느 쪽이든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틀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당사자 국가로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1957년 12월 31일자 한일간 재산청구권 문제에 관한 미국측 각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일협정은 당사국간의 특별협정이기 때문에 당사국 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⁶⁾ 2000년 9월 21일 미연방

3)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정보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다룬 글로는 김민철, 「한일협정 문서공개와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2005년 여름호 참조.

4) 『국정브리핑』, 2005년 8월 26일 ; 「한일협정, 굴욕이던 치열한 외교전의 결과」 『문화일보』 2005년 8월 27일자 사설 ; 「한일협정, 한국경제 위해 '실리' 택한 것」 『노컷뉴스』 2005년 8월 27일 ; 정일준, 「한일협정' 평가 바꿀만 한가」 경향닷컴, 2005년 8월 28일

5) 이에 대한 연구성과는 이미 충분하게 있다. 최근의 대표적인 글로는 오오타 오사무, 2008, 『한일교섭: 청구권 문제 연구』, 선인 ;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을 참조.

지방법원이 ‘미군포로 강제노예노동 배상청구소송’에 대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미국이나 2차대전 당시 연합군 소속이 아닌 다른 원고들(한국, 중국의 민간이 강제노동 피해자)에게는 이 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대상에 제외시켰다.⁷⁾ 따라서 미리부터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라는 틀이라는 한계를 설정하고서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한국정부가 다소 양보하더라도 '경제적 실리라는 전략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실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누구의 실리일까. 정권의 실리인가,⁸⁾ 국민의 실리인가. 경제개발에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주장은 이승만정권이나 장면정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이다. 차이는 박정희정권이 쿠데타로 집권함으로써 권력 유지의 정통성이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다. 미국이 이를 이용하여 집권을 인정하는 대신 한일협정을 강요한 것이며, 박정권이 국내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계엄령하에서 추진한 역사적 사실은 협정이 갖는 또 다른 한계를 잘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협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부르게 단언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외교사에서 보더라도 양국간의 협정이 개정된 예는 무수히 많다. 그것이 한쪽에 현저하게 불리한 형태로 맺어진 조약이거나, 협정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했거나, 또는 협정 당시 상대를 '기망'하여 체결한 조약은 당연히 재협상의 근거가 된다. 현실적인 힘이 없어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실천력과 설득력이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해가 가나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협상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러기에는 협정에서 소외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정의 필요성은 독불협정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권협정’에 명시된 징용과 징병 등은 일본 측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폭 피해자와 군위안부, 재일한국인, 사할린잔류 한국인 등 한일협정 당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문제를 두고 한국정부가 협상에 나서는 방식도 있다. 조약법상의 착오,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일본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1969년

6) 『제7차한일회담 청구권협정 관계 설명자료』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관련자료, 1963~65」, 1580, 330~332쪽. 이 각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 처리에 관한 일본의 평화조약 제4조의 해석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국내 일본의 재산권이 한국측에 귀속됨으로써 한국이 일본에 요구하는 청구권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고, 이러한 사항이 평화조약 속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규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론의 충분한 분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전적으로 관계국간의 협정에 따르며, 한국과 일본의 특별 협정으로 결정될 수 있다. 평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간의 특별협정을 체결하면서, 재한 일본재산의 한국 귀속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미국정부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 협정은 관계 당사국 간의 문제이며, 당사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7) Judgment b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8)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19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를 제공했는데,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일백만\$에서 이천만\$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천6백만\$을 지원했다.” ‘한일관계의 미래’(1966년 3월 18일자 미CIA 보고서)-일본기업으로부터 무상자금의 1/5에 해당하는 정치자금 받음.(원문은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음)

체결된 비엔나 조약 제39조(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규칙)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실례로 1960년 독불간 포괄협상 협정에서 모든 청구권에 대해 완전타결 규정을 두었으나, 추후 프랑스가 강제징집자 등에 대해 추가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독일은 1981년 3월 독불 이해증진 명목으로 ‘독불이해증진재단에 대한 출연조약’을 만들어 2억5천만 마르크를 출연하였다. 협정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정치적 타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정 그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느냐는 의지인 것이다.

II. 한일협정 문서의 구성

1.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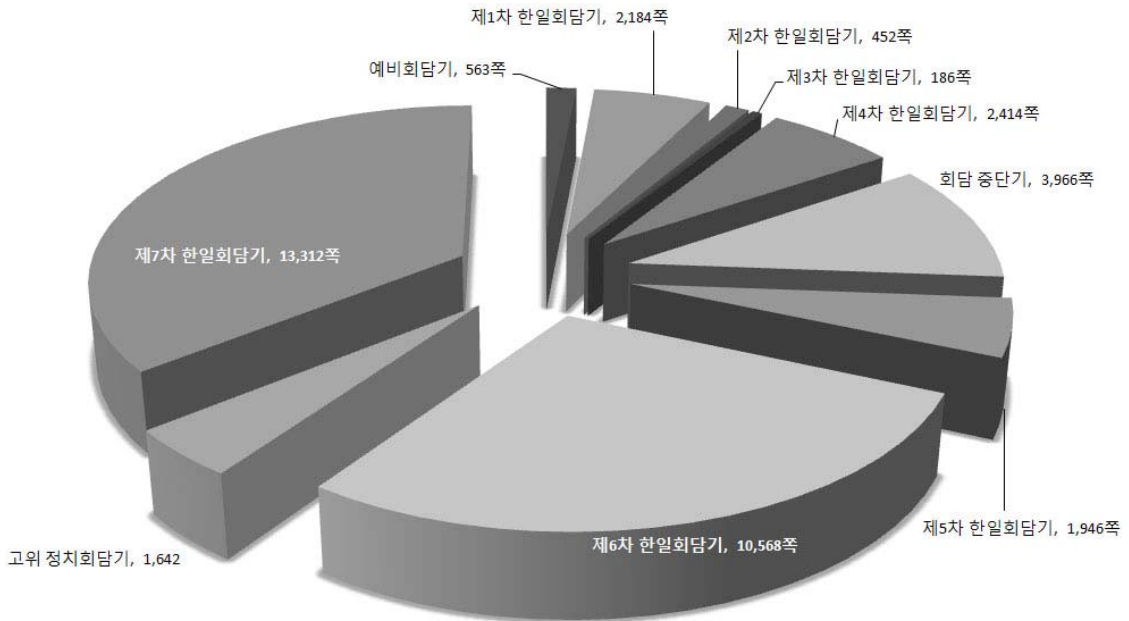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는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인 지난 2005년 1월, 8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가 소장한 전량이 공개되었다. 1950년부터 1965년까지 한 차례 예비회담과 7차의 본회담을 진행한 한일회담문서는 161권의 문서철을 공개했는데, 외교사료관에서 제공한 한일회담문서목록(1848~1967)과 『한일회담외교문서해제집』(Ⅰ~Ⅴ)을 참조하여 작성한 문서보존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문서철의 분량은 마이크로필름 프레임번호로 환산하여 작성하였다.

표1. 시기별 한일회담문서 현황

시기별	권수	분량(쪽)
예비회담기(1951.10.20~12.4)	4	563
제1차 한일회담기(1952.2.22~4.2)	8	2,184
제2차 한일회담기(1953.4.15~7.23)	6	452
제3차 한일회담기(1953.10.6~10.21)	4	186
제4차 한일회담기(1958.4.15~60.4.19)	12	2,414
회담 중단기(1950~1960)	13	3,966
제5차 한일회담기(1960.10.25~61.5.15)	10	1,946
제6차 한일회담기(1961~1964)	46	10,568
고위 정치회담기(1960~1965)	9	1,642
제7차 한일회담기(1964~1966)	49	13,312
합계	161	37,233

1. 외교사료관 한일회담문서목록(1948~1967)과 『한일회담외교문서해제집』(Ⅰ~Ⅴ)을 참조하여 작성함.
2. 분량은 마이크로필름 프레임번호로 환산함.

그림1. 시기별 분량(쪽)



회담 시기별 문서현황을 보면 본회담 전후 회담중단기에 진행된 교섭회담을 포함하여 이승만 정권기에는 문서철 47권(9,765쪽), 장면 정권기에는 10권(1,946쪽)이 보존된 실정이다. 전체 한일회담문서 가운데 3분의 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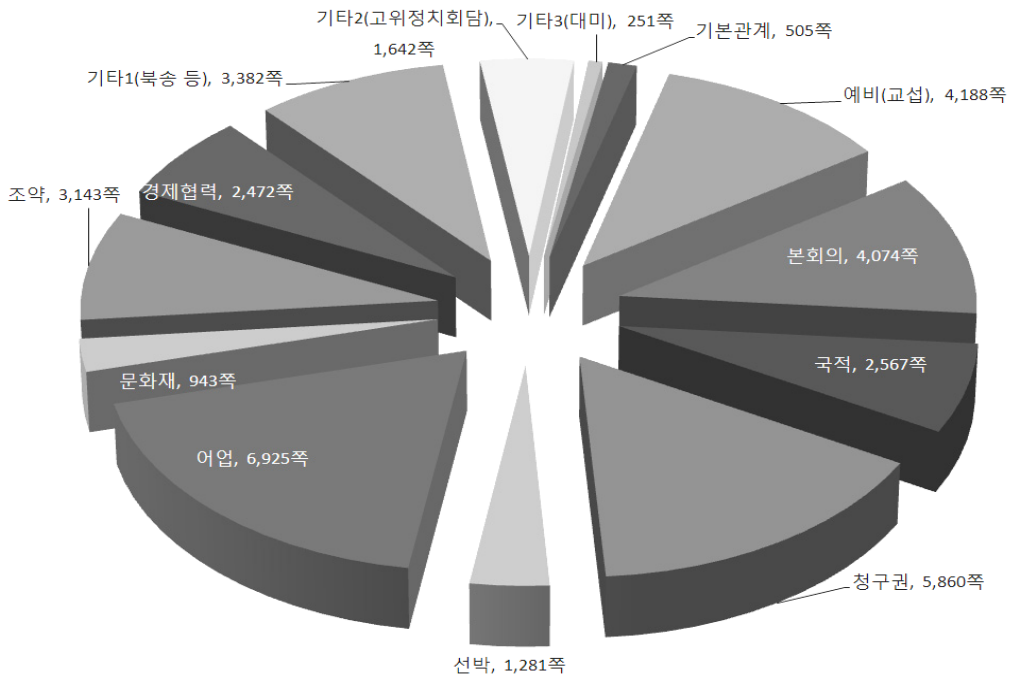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9권, 3,382쪽)을 제외하면 이승만 정권기 10년간 한일회담문서가 6천 3백여 쪽에 지나지 않는다. 단일 의제로 다루어진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이 3천여 쪽인데 비해 예비회담에서 4차회담까지 본회담 관련 문서가 그 2배에 그친다는 것은 문서생산 자체가 빈약했다기보다는 문서보존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외교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박정희 정권기에는 회담 전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철이 제법 갖추어져 있다. 6차(46권), 7차(49권)회담 문서는 예비회담, 사전 비공식 회담, 의제별 소위원회 회의록과 관계 자료집, 본회의 회의록, 조약 및 협정, 그리고 조약 체결 후 경제협력 관련 회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1·2차 정치회담과 고위급 정치회담(9권, 1,642쪽) 관련 문서들은 회담 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표2. 주제별 한일회담문서 현황

주제별	예비 회담기		제1차 회담기		제2차 회담기		제3차 회담기		제4차 회담기		회담 중단기		제5차 회담기		제6차 회담기		고위 회담기		제7차 회담기		합계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권수	쪽수
기본관계	1	75	1	54											1	66			1	310	4	505
예비(교섭)									5	1,040			1	93	9	2,528			5	527	20	4,188
본회의	1	168	1	136	1	47	1	82	1	120			2	602	9	2,484			1	435	17	4,074
국적	1	149	1	468	1	75	1	18	1	265			1	231	3	768			2	593	11	2,567
청구권	1	171	2	510	1	43	1	40	2	283	1	26	2	466	7	1,422			7	2,899	24	5,860
선박			2	699	1	15			1	289			1	207	2	71					7	1,281
어업			1	317	2	272	1	46	1	168	3	558	1	211	11	2,858			7	2,495	27	6,925
문화재									1	249			1	31	3	225			2	438	7	943
조약																			11	3,143	11	3,143
경제협력																			13	2,472	13	2,472
기타1(북송 등)											9	3,382									9	3,382
기타2(고위정치 회담)																	9	1,642			9	1,642
기타3(대미)													1	105	1	146					2	251
합계	4	563	8	2,184	6	452	4	186	12	2,414	13	3,966	10	1,946	46	10,568	9	1,642	49	13,312	161	37,233

그림2. 주제별 한일회담문서 현황



한일협정 외교문서는 시기별 한일회담에서 다룬 의제별로 문서철이 작성되어 있거나, 본회의와 자료 등 회담 시기별, 주제별 분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회담에서 다룬 의제는 기본관계, 국적(재일 한인의 법적 지위 등), 청구권, 선박, 어업(평화선 문제), 문화재, 경제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각 회담을 진행하기 전 예비교섭 단계 관련 문서철과 본회의, 각 조약과 협정도 한일회담 문서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1955~60년에 진행된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철, 1960~65년에 진행된 일련의 고위 정치회담, 미국관계 문서철은 기타로 분류했다.

주요 의제 가운데 어업 관련 문서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구권 관련 문서이다. 어업관련 협상은 어업권 문제와,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의 쟁점사안이었던 평화선 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청구권 관련 문제는 대일 재산 청구권문제, 대일청구권의 법적 근거, 청구액수 산정 자료, 개인 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 차 등을 포함한 주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한일협정 조약 이면에 은폐되었던 많은 문제들에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일회담문서의 전면 공개를 통해 한일협정 체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도모할 뿐 아니라, 각 의제별 협상정책 결정, 협상안 작성, 우리 측 협상대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서한과 훈령, 협상 준비과정에서 생성된 참고자료, 협상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록 등은 한일협정의 실체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아래 표는 한일협정 외교문서를 문서종류별로 구분한 현황이다.

표3. 문서종류별 한일회담문서 현황

문서종류별(건)	예비 회담기	제1차 회담기	제2차 회담기	제3차 회담기	제4차 회담기	회담 중단기	제5차 회담기	제6차 회담기	고위정치 회담기	제7차 회담기	합계
회의록	13	148	27	5	105	15	50	297	10	93	763
보고서	2	13	0	1	37	32	20	156	26	72	359
공한	46	159	43	8	458	1150	367	2005	369	1990	6595
자료	14	36	1	0	45	27	24	192	7	81	427
협정안	1	18	5	0	68	25	10	30	22	463	642
기타	15	73	22	7	68	381	82	534	133	495	1810

문서종류별 현황은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Ⅰ~Ⅴ)에 실린 분류에 근거해 작성했다. 문서종류는 회의록, 보고서, 공한, 자료, 협정안, 기타로 분류했다. 해제집에서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갖추었으며 어떠한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한 글, 공한은 국내외의 각급 관공서간에 주고받은 문서, 자료는 회담 과정에서 각 측에서 논거를 위해 제시한 정보, 협정안은 조약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각 측에서 제시하거나 합의가 된 것들, 기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성명서, 메모 등’으로 정리 소개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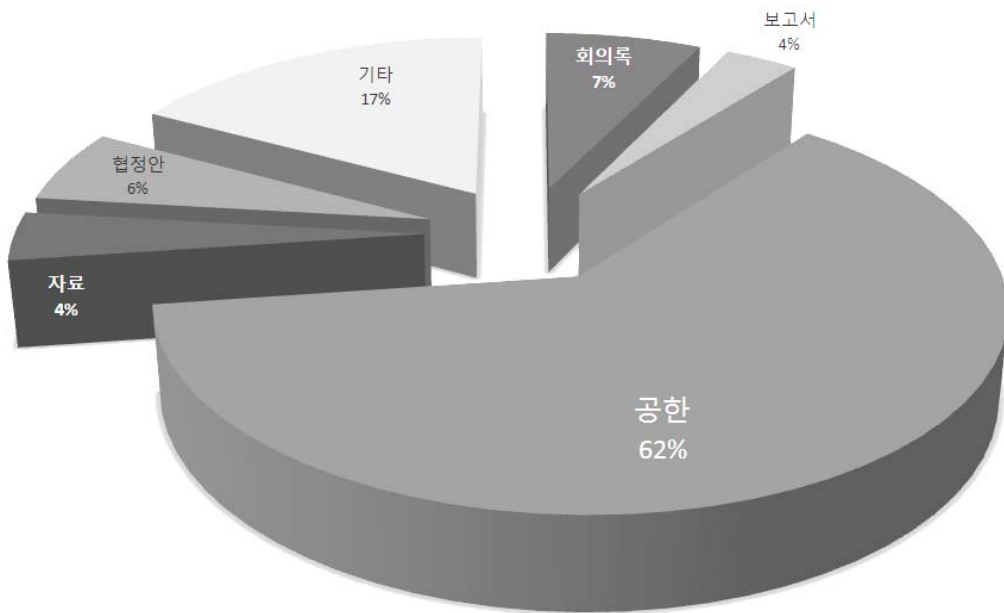
예비회담부터 5차 한일회담까지 가장 비중이 큰 문서는 북송관계 문서철이다. 그것을 제외하면 이 시기

9)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 Ⅰ, 동북아역사재단, 2008, 8쪽

자료는 대체로 각 소위원회 회의록과 본회의 회의록이 대부분이다. 6차7차 회담기에는 정치회담 관련 자료가 상당한데, 예비 교섭단계에 많은 왕복공한과 회의록, 비공식 회의 교섭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각 협상 대표(한국대표단), 주일대표부와 정부(경무대, 청와대), 주무부서인 외무부, 관계기관(장관) 간에 왕복하면서 생성된 것들이다. 우리 측 협상라인에서 교환된 전문이나 훈령 등 공한과 보고서·조사자료들은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이 어떠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조율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한일 양국간 교환된 문서나 한미간 교환된 문서도 당시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림3. 문서종류별 한일회담문서 현황



공한이 전체 문서 중 62%이고, 기타 문서 17%를 제외하면 회의록 등 중요문서가 20%에 불과하다. 회담 과정을 가장 상세히 알려줄 수 있는 회의록 자료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있는 회의록도 그 내용을 보면 경과보고 수준에 그치는 문서가 상당수에 이른다. 한일회담 기록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서에 첨부자료가 명기되어 있으나 누락되거나, 왕복문서 전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주요 조사자료도 누락된 경우가 많아 『對日賠償要求調書』(1954) 등 한국정부의 대일협상의 기본 입장을 읽을 수 있는 정책설명자료 등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도 거의 대외비로 작성되어 정책당국자들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다 망실된 경우가 많다.

다음 표4는 청구권 관련 한일회담 문서철 목록이다. 이 문서들을 통해 개인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표4. 청구권 관련 한일회담문서 구성

시기별	등록 번호	문서설명	생산 년도	생산과	분량
예비회담	79	청구권 관계 자료집(일본에 있는 구왕실 재산목록)	1951	[정무2]	171
1차회담	86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1952	정무	196
	87	청구권 관계자료	1952-52	정무	314
2차회담	9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3.5.11-6.15	1953	정무	43
3차회담	97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9-15	1953	정무	40
4차회담	10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8.5.20-12.17	1958	아주	47
	105	청구권관계 자료	1958	아주	236
회담중단기	6885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1955	정무국 제1	26
5차회담	717	재일한인 재산반입 문제	1960	아주	38
	718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60-61	아주	428
6차회담	749	재산 청구권 관계 종합 자료집	1961	아주	132
	750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11차, 1961.10.27-62.32.6	1961-62	아주	324
	751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	1959-62	아주	90
	75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1963	1963	동북아주	213
	753	청구권 관계 자료-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1961-64	아주-조약	222
	747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청구권관계회의	1963	아주	285
	76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1964	동북아주	156
7차회담	1467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1 1965	1965	동북아주	116
	1468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1965	동북아주	411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3 1965.4-6	1965	동북아주	478
	6887	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1965	동북아주	343
	1469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1965	동북아주	188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19
	1580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1963-65	조약	427
	1473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5-66	동북아주	458
	1807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6	동북아주	9
	1474	[민간인(김태성) 등의 대일청구권 해결 문제	1955-65	동북아주	450

2. 평가 ; 1950,60년대 문서보존 상황과 관련해서

첫째, 문서량의 절대 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1950,60년대에는 부족한 종이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공문서를 재활용할 정도였다. 영구보존 문서 이외의 공문서는 다시 수집해서 재활용했다는 말단 관리 증언에서 보듯이 문서보존 보다는 문서 생산조차 여의치 않았다.¹⁰⁾

둘째, 차트문화가 도입되면서 생산된 문서조차 보존이 불가능한 실정도 있었다. 미군사학교 졸업 후 귀국한 군인들이 5·16쿠데타로 정권을 탈취 후 행정보고가 대체로 차트형태로 바뀌에 따라 문서보존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행정보고 문화의 변화가 문서보존에는 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셋째, 정치적이념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문서의 폐기 처분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농지개혁 자료 소각 명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승만 정권기 1차례 예비회담과 4차례 한일회담, 그리고 한일회담 전후 시기 진행된 각종 비공식 접촉 등이 박정희 정권기에 비해 소략한 것은 이승만 정권이 한일협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협상이면에 정부 측과 대표단의 긴밀한 의견 조율에 대한 자료들도 누락이 많거나 극히 소략하게 다루어진 문서들이 대부분이다.

넷째, 한일협정 문서가 빈약한 문제는 생산의 빈곤 보다는 합법적 폐기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망실로 빚어진 부분이 크다고 보인다. 공공기록 보존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미비했던 1950,60년대는 비밀기록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비밀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폐기가 쉬웠다. 공문서의 수난시대라고 할 정도로 문서 보존 상태가 열악한 것에 비한다면 한일협정 문서는 외교문서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남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료 6. 참조)

Ⅲ. 청구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 한일협정으로 소멸된 개인청구권의 범위(자료7. 참조)

한국 외교통상부가 2005년 1월 14일 문서 공개에 앞서 언론기관에 브리핑하면서 "피해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문서"라고 강조하면서 소개한 것은 1964년 5월 8일자 외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낸 개인청구권 보상조치에 관한 문의에 대한 회답으로 "일본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기 개인청구권도 포함한 해결이 되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 보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여 한국정부에 보상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문서였다.¹²⁾

10) 국사편찬위원회, 2006, 『"지방을 살다' 지방행정, 193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11)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1-5, 한울

12) 「민간인 보유 대일청구권에 대한 보상조치(1964.5.8)」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762(등록번호) 142쪽.

그러나 이 문서에는 조선은행을 비롯해 일본은행권을 소유한 기관으로부터 경제기획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묻는 질의서를 첨부하면서 재산청구권 문제에 대한 정부 견해를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서를 가지고 개인청구권 문제 전체의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었다.

청구권 협정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은 합의의사록에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청구권의 정의가 분명하지 않아 보상청구 소송의 쟁점으로 되어 왔다.¹³⁾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교섭 당시 한국 정부의 인식은 李圭星 청구권 분과위원회 수석대표가 외무부장관에게 1965년 4월 10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보고한 문서에서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 이규성은 개인청구권 소멸후의 대처에 대해 1965년 4월 3일의 청구권협정 기본합의를 언급하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장래 양국이 각기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하고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으며, 따라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 두어야겠다"고 하면서 '① 북한 지역 청구권의 법적 문제, ② 조선총독부와 한국 정부 간의 계승 문제, ③ 재일한국인의 청구권 소멸의 범위, ④ 제2차대전 종결 시점의 해석 문제, ⑤ 기타'에 관한 협의를 요구했다.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개인청구권 문제의 소멸을 각기 국내문제로 처리함으로써 한일협정의 조기타결을 서두른 반면, 일본은 개인청구권 문제가 장래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소멸시켜 명문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확인해야 할 과제로 제기한 것은 재일한국인 문제와 북한 관계의 법적 문제였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피해보상 소송이 한국 국민으로부터 제기될 것이라는 상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부 모두 개인청구권 소멸에 식민지 지배의 피해보상이 어디까지 포함되는가라는 주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개인청구권의 소멸 범위는 청구권협정 합의의사록(g)에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요구요강'(소위 8개항목)에 속하는 모든 요구가 포함되며, 따라서 대일요구요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한일회담에서 요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재산권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권리가 대상으로 된 것인지 하는가였다.

일본군위안부, 재한 피폭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 문제에 대해 일본에 보상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도 법적 보상을 부정하면서도 인도적, 도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부분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한일회담 당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BC급 전범의 경우는 더 분명하다.

13) 일본정부는 1990년대에 있던 대일보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자 2000년대에 들어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한 견해를 보강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군인 군속과 위안부가 1991년 12월 6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태평양전쟁 한국인 피해자 소송 항소심(2003년 7월 23일 판결)에서 청구권협정의 '재산, 권리 및 이익'이란 미불 급여, 채권 등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해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이며 '청구권'은 그 외 개념으로 "한일청구권협정에 서명한 시점에서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도 포함해 국내 조치법(법률 제144호)에 의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뜻한다.

제1차 한일회담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제29차회의(1952년 2월 4일)에서 한국측이 BC급 전범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방침을 질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그것은 별개 문제이니 별도 연구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¹⁴⁾ 한일 양국 정부가 BC급 전범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과제가 남았음을 뜻한다. 1965년 7월 5일, 주일대사 김동조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에서 재일한인 전범자 단체인 '동진회'가 일본국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한일간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멸되었는지를 문의했다.¹⁵⁾ 이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1965년 9월 28일자 「동진회의 문의에 대한 회시」에서 "일본의 징용 및 징병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한국인의 대일청구권에 관해서는 '대일청구요강'의 일환으로 한일 회담을 통해 일본정부에 청구해 왔으나, 본 건인 연합국의 승리 및 전쟁 후의 전범재판에 기인한 한국인 전범의 피해에 관해서는 당초부터 일본에 대한 청구 대상이 아니었으며, 협정조인 후의 국내조치로서 개인 청구권 보상문제의 검토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일본인 전범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 조치는 전후 일본이 독립을 회복한 후에 취한 조치인 바, 재일한국인에 대하여는 그 보상사유의 특이성을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적절한 시기에 일본 측에 촉구할 것을 지시함"¹⁶⁾이라고 하여 BC급 전범이 '당초부터' 청구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2006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이후 피해자 구제조치가 검토될 당시 주목을 끈 것은 한일협정 교섭과정에서 일본이 피징용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援護法 적용을 시사한 발언이었다. 1962년 2월 8일 열린 제6차 한일회담 한일청구권소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宮川新一郎 수석대표는 "징용자 보상금에 관하여는 한국측은 생존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그 당시의 한국인의 법적 지위가 일본인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일본인에 지불된 바 없는 보상금은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망 및 傷病者에 대하여는 당시의 국내법에 의하여 급여금이 지불되었을 것인 바 미지불된 것이 있으면 피징용자 미수금으로 정리될 것이니 그 항목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피징용자 보상금이라는 독립된 항목으로서는 응하기 어렵다"¹⁷⁾고 발언했다. 외무성 또한 군인·군속과 징용자에 대한 '위로금(見舞金)' 지급을 검토한 바 있다.¹⁸⁾

이처럼 교섭 당시 일본정부가 징용자에게서 보상을 대신하는 위로금까지 검토했다는 사실은 2005년 7월 22일 한국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강제동원의 불법(일제 지배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불법)에 대한 배상적 성격인지, 특별한 희생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원호적 성격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 차원 등 별도의 고려에서 제기한 것"이라 하여 강

14) 「제29차 재일한국인 법적 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1952.2.4)」 『제1차 한일회담』, 81, 1011~1012쪽

15) 「한국 출신 전범자 보상」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협정 관계 설명자료,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1473, 66쪽

16) 「동진회의 문의에 대한 회시」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협정 관계 설명자료,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1473, 105쪽

17)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10차 회의록(1962.2.8)」 『제6차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750, 235~236쪽. 일본 문서(1220, 17쪽)에서는 먹칠

18) 아시아국, 「한국측대일청구권에 대한 대장, 외무 양성에 의한 사정의 상위에 대하여(1962.2.15)」, 1799, 1쪽

제동원피해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밝혔다.¹⁹⁾

2.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해석

2005년 8월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최종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국정부의 종합적인 최종적인 견해인 만큼 그 의미가 크므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⁰⁾

- ①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관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②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 ③ 사할린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④ 한일협정 당시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보상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 산정에 반영되었다.
- ⑤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
- ⑥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한 총액 결정 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한국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⑦ 한국정부는 일제 강점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UN 인권이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한다.

이 해석은 그동안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때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한국정부의 견해와는 달리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밝히긴 했으나, 위안부 문제 등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일본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에게 책임을 추궁할 있는 명분을 남겨 놓은 것이다.

19) 『국무총리실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활동백서』, 80~82쪽.

20)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 개최」, 2005년 8월 26일.

IV. 맺음말에 대신하여

20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병합을 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맞아 「20세기 식민지주의의 극복과 피해회복을 목표로 한 (한·일)민중선언과 행동 계획」(가)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연대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모색 중이다. 2010년 8월을 목표로 이 선언문 및 행동 계획을 일본, 한국, 북한의 시민, 피해자, 법률가, 연구자 등이 공동으로 만들고, 이 선언 및 행동 계획에 찬동·지지하는 세력을 결합해, 2010년 8월에 개최하는 시민선언 대회에서 채택한다.(UN 관계자도 참여)

[선언] 조선식민지가 불법인 과정, 제노사이드(genocide) 등의 사실을 확인한 위에 한일 협정(1965), 무라야마담화(1995), 한일공동선언(1998)을 거쳐도 여전히 식민지주의는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것이 일본과 한반도 사이의 미래를 여는 것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과거청산-피해회복(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선언은 2001년 8월 31일~9월 8일, 남아프리카의 더번에서 열린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번선언·행동 계획」의 정신과 함께 한다.²¹⁾

[행동 계획]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강제노동, 군 강제동원, 원폭피폭, 사할린, 관동대진재 학살 등의 피해에 대해 지금까지의 보상을 위한 행동 등을 총괄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향한 과제와 과제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한다.

또한 「선언과 행동 계획」 채택을 통해 2010년 8월에 한일 양국간 정부 수준에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신한일공동선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 한편, 향후 있을 조일수교에서 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한다.

[행동 계획] 의 방식으로 현재 일본내에서 추진중인 ‘전후보상법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위해 먼저 전후보상단체 관계자, 연구자, 법률가 등의 모임을 조직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켜 선언의 기초위원회를 구성한다. 전후보상법안의 추진 주체는 물론 일본 의회와 일본 시민사회이겠지만, 이에 대해 한국내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전문가 분석팀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21) “14 식민지주의가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배척과 관련한 불관용을 가져와, 아프리카인과 아프리카계 인민,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인민, 그리고 선주 민족은 식민지주의의 피해자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식민지주의에 의해 고통이 초래되어 식민지주의가 일어난 곳은 언제 어디서라도 비난받고 그 재발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됨을 확인한다. 이 제도와 관행의 영향과 존속이 오늘의 세계 각지에서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계속하게 한 요인이 된 것은 유감이다.”

公開された韓日協定文書と請求権問題：韓国

金敏喆(キム・ミンチョル)・金永根(キム・スンウン)

(民族問題研究所 責任研究員・先任研究員)

1. 文書公開訴訟の背景と評価

韓国人の対日過去清算訴訟は、日本軍'慰安婦'被害者たちが提起した訴訟を始めとして、1990年代に急激に増えた。しかし日本の裁判所は'時効消滅'と'国家無答責の原則'(敗戦前の日本には、国家の公権力行使に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主張)という法技術的な障壁を固守し、韓国人被害者の要求を拒否した。したがって日本政府としては、訴訟を起こされても裁判所を通じて棄却する戦略を取っていた。

しかし1998年4月27日山口地方裁判所下関支部が韓国人日本軍'慰安婦'被害者の請求を受け入れて一部訟訴判決を下し、下級審を中心に'時効消滅'と'国家無答責の原則'を排除する判決が出て来始めた。そして何よりも2000年からは、'時効消滅'と'国家無答責の原則'から自由な米国と韓国の法廷に、韓国人被害者たちが訴訟を起こして日本に圧迫を加えた。これに伴い日本政府は、国内外的に既存の'法技術的障壁'を利用できなくなり、韓国人個人が請求権に基づいて請求をしても、韓日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すべての請求権が解決'されたので、それに応じる法的義務がないと対応した。

日本の司法府は韓国人の裁判に対して、2003年3月に最高裁判所で5個の裁判が一括して棄却・却下された。1) もちろん高等裁判所段階で、画期的な判決もあった。すなわち"B C級戦犯"に対して、戦犯になることを命じたのは'安全配慮義務違反'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し、'国家無答責論'を認めなかった。しかしこれもまた、"韓日請求権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として棄却された。(7月遺族会訴訟)²⁾

1) 3月25日-関釜裁判(原告は慰安婦と女子勤労挺身隊。福岡地方裁判所で慰安婦に対しては勝訴したが、広島高等裁判で敗訴した。)

3月28日-宋神道裁判(日本に居住する慰安婦裁判、1、2審敗訴)、江原道(カンウォンド)遺族訴訟(軍人軍属、強制労働被害の裁判、1、2審敗訴)、韓国民族訴訟(慰安婦、軍人軍属、強制労働、離散家族、独立運動弾圧被害の裁判、1、2審敗訴)、三菱長崎訴訟(原告金順吉(キム・スンギル)氏、強制労働被害の裁判、1、2審敗訴)、東京朝日紡績裁判(女子勤労挺身隊裁判、1、2審敗訴)

2) 2001年12月6日軍人、軍属、慰安婦など原告40人が、日本政府を相手に東京地方裁判所に提訴。2001年3月26日1審裁判で棄却。控訴して2003年7月22日控訴審棄却。

これに、裁判で重要な争点になっている個人請求権の消滅の有無を、確認して貰わ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に立っていた強制動員被害者100人は、外交通商部を相手に文書公開を要請した。自分の権利が、韓日協定でどのように処理されたかを確認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しかし外交通商部は情報公開法の例外条項と外交部規則を掲げて、公開できないと回答して来て、2002年10月100人の被害者たち(途中1人死亡)は、韓国の外交通商部を相手に外交文書公開拒否処分取り消し行政訴訟を提訴するに至った。

協定文書は2005年1月17日個人請求権関連文書 5件、そして同じ年の8月26日に公開命令がなかった残りの156件が、韓国政府独自の決定によって公開された。³⁾しかし文書が全面公開されると、屈辱外交という韓日協定に対する既存の評価をひっくり返す、新しい主張が提起された。

韓日会談関連の外交文書を分野別に検討した「韓日修交会談文書公開審査班」は、当時交渉と関連して、「大体で当時与えられた状況では、熾烈に日本と交渉、国益のために最大限努力した結果」と評価した。そして文書検討に参加した民間専門家3人、チョン・ヒョンス慶北大教授、李元徳(イ・ウォンドク)国民大教授、チン・チャンス世宗(セジョン)研究所研究室長は、報道のインタビューで審査班を、評価のような内容で説明した。すなわち当時韓国は、1951年日本と2次大戦戦勝国間に結ばれ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正式署名国ではなかったため、賠償ではなく請求権を要求する他はない、国際法的地位にあった。したがって韓日会談が屈辱交渉という主張は、「このような冷徹な国際現実を勘案しない判断」だ。また韓国が受け取った無償3億ドルを含む6億ドルの請求資金も、当初日本は8,000万~1億5,000万ドルで妥結しようとしたが、わが代表団が最大限金額を引き上げて受け取ったもので、「代表団が最善の努力をした」というのだ。⁴⁾

このような評価は事実上、問題の焦点から完全に外れている。外務官僚が交渉で、有利な位置を占めるために熱心に努力したのは極めて当然なことで、歴史的評価の核心ではない。文書という'木'に陥って、'森'を見ることが出来ない主張だ。韓日協定を屈辱協定だと批判するのは、協定の根本的な性格のせいだ。協定文に日帝の植民支配に対する謝罪が抜けているのは勿論、曖昧な文章であたかも植民支配を正当化させるような誤りを犯した。韓日間の過去清算問題を、根本的に解決できない結果だ。熱心に努力したのに、むしろ根本的な問題を扱えないのは、交渉当事者たちが出発を間違ったからなのか、でなければ自分たちの意志とは関係なしに、政治的解決という次元で決定されたためだ。⁵⁾どちらにせよ屈辱外交という批判を免じることはできない。

また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枠の中では、どうしようもない限界があったという主張も、問題がある。また韓国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当事者国家で参加できなかったために、むしろ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に拘束される理由がない。'1957年12月31日付韓日間財産請求権問題に関する米国側覚書'でも明らかのように、韓日協定は当事国間の特別協定なので、当事国間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だ

3) 韓日協定文書公開と情報の民主主義という観点で扱った文としては、金敏喆(キム・ミンチョル)、韓日協定文書公開と強制動員被害者補償問題「明日を開く歴史」2005年夏号参照、

4) 「国政ブリーフィング」、2005年8月26日;「韓日協定、屈辱でない激しい外交折衝戦の結果」文化日報 2005年8月27日付社説;「韓日協定、韓国経済のために'実利'を選んだもの」ノーカットニュース 2005年8月27日; チョン・イルジュン、「韓日協定'評価、変えるべきか」京郷ドットコム、2005年8月28日

5) これに対する研究成果は、すでに充分にある。最近の代表的な文としては、チャンバクチン、2009、「植民地関係清算はなぜ成り立たなかったのか」論型を参照。

た。⁶⁾ 2000年9月21日米連邦地方裁判所が米軍捕虜強制奴隷労働賠償請求訴訟⁷⁾に対して、1951年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で請求権が消滅したという判決を下しながらも、米国や2次大戦当時連合軍所属でない他の原告たち(韓国、中国の民間が強制労働被害者)には、この判決が適用されないとして、適用対象から除外させた。⁷⁾ したがって予め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いう枠という限界を設定して、その限界の中で最善を尽くしたという主張は、それほど説得力がない。

韓国政府が多少譲歩しても'経済的実利という戦略的な選択'をすることで、経済発展に寄与できたという主張も受け入れ難い。経済的実利を選んだというのが、それが本当に実利だと大言壮語することができるのか。誰の実利なのか。政権の実利なのか⁸⁾、国民の実利なのか。経済開発にお金が必要だったからというが、この主張は李承晩政権や張勉政権でも、そのまま適用される論理だ。差異は朴正熙政権がクーデターで執権することで、権力維持の正統性が非常に脆弱だったという点だ。米国がこれを利用して、執権を認める代わりに韓日協定を強要したのであり、朴政権が国内の反対論を無視して、戒厳令下で推進した歴史的事実は、協定が持つまた他の限界をよく証明している。

そして"協定を改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主張に対しては、同意しない"と生半可に断言する根拠は何なのか、外交史から見ても両国間の協定が改正された例は、無数に多い。それが片方に顕著に不利な形態で結ばれた条約だったり、協定当時には予測できなかった懸案が発生したり、または協定当時相手を'欺瞞'して締結した条約は、当然再協議の根拠となる。現実的な力がなくて、改正を主張する実践力と説得力がないというならば、いっそ理解が出来るが、問題が程度に交渉が最善の結果をもたらしただろうか。それには協定から疎外された被害者の被害がとても大きく、今でも進行中であるということ認識する必要がある。改正の必要性は独仏協定の事例からも確認できる。

'請求権協定'に明示された徴用と徴兵などは、日本側にこれ以上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ないとしても、原爆被害者と軍慰安婦、在日韓国人、サハリン残留韓国人など、韓日協定当時議論にさえならない問題を置いて、韓国政府が協議に出る方式もある。条約法上の錯誤、事情変更などを理由に、日本政府に要求できる。

6) 「第7次韓日会談請求権協定関係説明資料」請求権および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関連資料、1963～65」、1580、330～332ページ。この覚書は韓国と日本の間の請求権処理に関する、日本の平和条約第4条の解釈に対する米国政府の立場を述べたもので、要旨は次の通りだ。韓国国内日本の財産権が、韓国側に帰属するという事により、韓国が日本に要求する請求権がある程度みだされたし、このような事項が平和条約の中で、これに対する解決を規定するのに十分な事実、または適用される法理論の十分な分析があるとは思わない。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問題は、全面的に関係国間の協定に従って、韓国と日本の特別協定に決定できる。平和条約で規定している当事国間の特別協定を締結して、在韓日本財産の韓国帰属が、どのように考慮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対し、米政府が意見を提示するのは適切ではなく、特別協定は関係当時国間の問題で、当事国が決め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からだ。

7) Judgment b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n re World War II Era Japanese Forced Labor Litigation.

8) "民主共和党が日本から資金を貰っているという非難は、恐らく根拠が充分だ。知られたところによれば日本企業が1961年から1965年の間に、当時民主共和党総予算の2/3を提供したが、各個別企業の支援金額が各々百万\$から一千万\$に達し、6個の企業が総6千6百万\$を支援した。"『韓日関係の未来』(1966年3月18日付米CIA報告書)-日本企業から無償資金の1/5に該当する政治資金受けた。(原文は民族問題研究所ホームページにある)

1969年締結されたウィーン条約第39条(条約の改正に関する一般規則)は、‘事情変更の原則’を認めている。実例として1960年独仏間包括交渉協定で、すべての請求権に対して完全妥結規定を置いたが、その後フランスが強制徴集者などに対して、追加補償を要求したことがある。これに対してドイツは1981年3月独仏理解増進の名目で、‘独仏理解増進財団に対する出捐条約’を作り、2億5千万マルクを出演した。協定を部分的に改正したのではないが、それに準じる政治的妥結を引き出したのだ。問題の核心は改正それ自体ではなく、韓国政府が被害者の被害回復にどれだけ積極的に努力するのかという意志なのである。

II. 韓日協定文書の構成

1. 構成とその内容

外交資料館において公開された韓日会談文書録(1848~1967)と『韓日会談外交文集解題集』I~Vを参照し、その分量はマイクロフィルムのフレーム番号に換算して作成した。

1950年から1965年まで、一度の予備会談と7次にわたる本会談を行なった韓日会談の文書は161巻の文書綴り、総37,233頁になる。韓日会談外交文書は「韓日協定」締結40周年である去る2005年1月、8月の二度にわたり政府が所蔵している全ての文書が公開された。

時期別の文書現況を見れば、本会談前後と、会談の中断期に進められた交渉会談を含め、李承晩政権期には文書綴り47巻と(9,765頁)、張勉政権期には10巻(1,946頁)とが保存されているのが実情だ。韓日会談文書全体のうちの3分の1に過ぎない。

在日韓国人の北韓送還および韓日両国の抑留者相互釈放関係綴り(9巻、3,382頁)を除けば、李承晩政権期の10年間に韓日会談文書が6千3百頁余りに過ぎない。当日の議題に関する文書綴りが3千頁余りなのに比べ、本会談関連文書がその2倍に留まっているのは文書作成そのものが低調だったというよりは、文書の保存とその管理がきちんと行なわれなかったものと推測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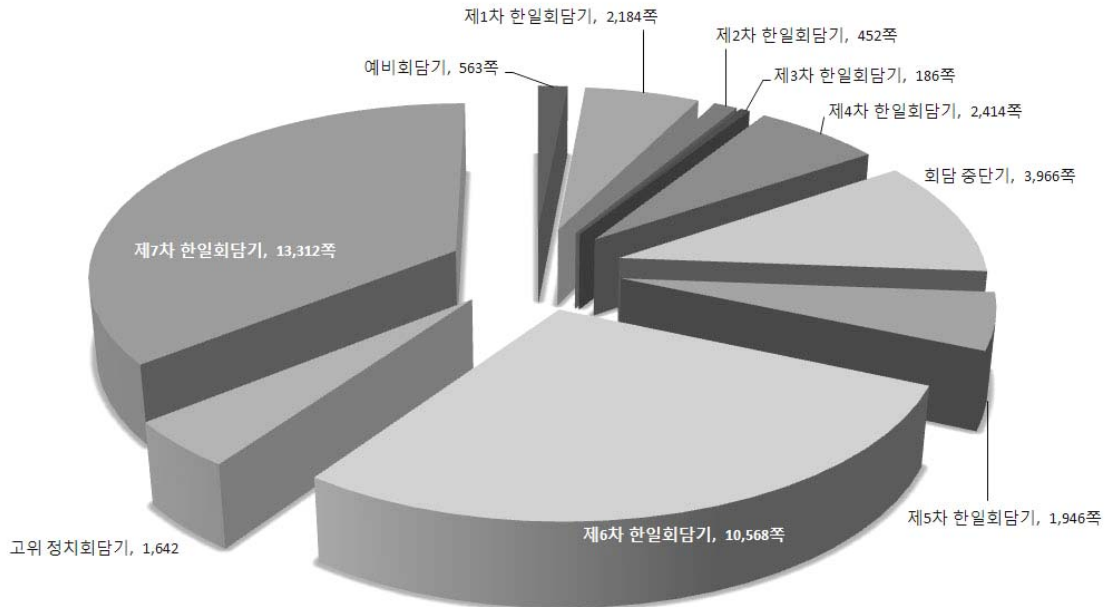
韓日国交正常化のための外交会談が本格的に進められた朴正熙政権期には会談前後の過程を窺わせる文書綴りが備えられている。第6次(46巻)、第7次(49巻)会談の関連文書は予備会談、事前の非公式会談、議題別小委員会会議録と関連資料集、本会議会議録、条約および協定、そして条約締結後の経済協力関連会談まで含んでいる。その過程において進められた12次にわたる政治会談と高位級の政治会談(9巻、1,642頁)の関連文書があり、会談の過程をより正確に理解できる。

表1. 時期別 韓日會談文書 現況

時期別	券數	分量(ページ)
豫備會談期(1951.10.20~12.4)	4	563
第1次 韓日會談期(1952.2.22~4.2)	8	2,184
第2次 韓日會談期(1953.4.15~7.23)	6	452
第3次 韓日會談期(1953.10.6~10.21)	4	186
第4次 韓日會談期(1958.4.15~60.4.19)	12	2,414
會談 中斷期(1950~1960)	13	3,966
第5次 韓日會談期(1960.10.25~61.5.15)	10	1,946
第6次 韓日會談期(1961~1964)	46	10,568
高位 政治會談期(1960~1965)	9	1,642
第7次 韓日會談期(1964~1966)	49	13,312
合計	161	37,233

1. 外交史料館 韓日會談文書目録(1948~1967)と『韓日會談外交文書解題輯I-V』を参照して作成する。
2. 分量はマイクロフィルムにフレーム番號で換算。

그림1. 時期別 分量(ページ)



韓日會談外交文書は基本的に時期別、テーマ別に既に分類されている。時期別文書綴りのうち、會談で扱かれた主要議題には、基本関係、国籍(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など)、請求権、船舶、漁業(平和ライン問題)、文化財、經濟協力などがある。また、各會談を進める前の予備交渉段階関連の文書綴りと本會議、各

条約と協定文書綴りも主要な部分をなしている。1955～60年に進められた在日韓国人の北韓送還および韓日両国の抑留者の相互釈放関係の綴り、1960～65年に進められた高位政治会談、米国関連文書綴りはその他に分類され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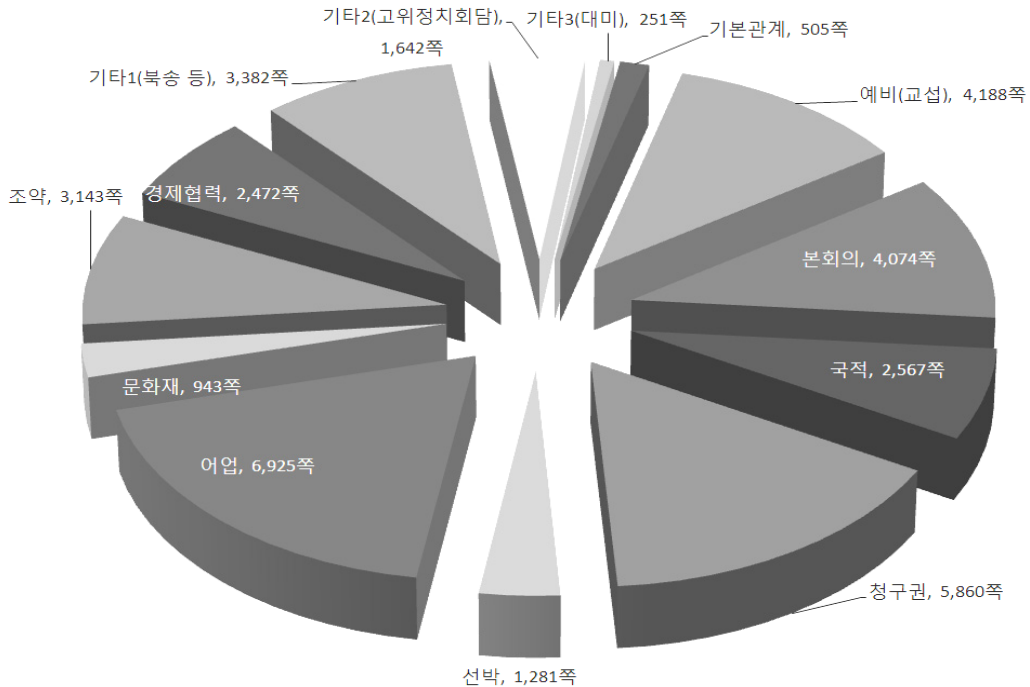
文書全体における主要議題のうちでは漁業関連文書綴りが最も多く、その次は請求権関連文書だ。漁業交渉は漁業権問題と韓日国交正常化会談の争点であった平和ライン問題と独島の領有権問題などが扱われた。請求権に関連した問題は韓国と韓国人の在日財産請求権問題、対日請求権の法的根拠、請求額算定資料、個人の請求権に対する韓日両国の解釈などを含んだ文書が含まれている。これらにより韓日協定条約の背後に隠されていた多くの問題を解明できることになった。

予備会談から第5次韓日会談まででもっとも比重の高い大量の文書は北送関係の文書綴りだ。この時期の資料はだいたい各小委員会の会議録と本会議会議録がほとんどだ。第6次、7次 会談期には政治会談に関連した資料が相当部分を占めている。予備交渉段階での多くの往復公式書翰と会議録と非公式会議での交渉資料なども多く含まれており、政策決定過程についての理解の助けになる。

表2. 主題別 韓日會談文書 現況

主題別	豫備會談期		第1次會談期		第2次會談期		第3次會談期		第4次會談期		會談會談期		第5次會談期		第6次會談期		高位會談期		第7次會談期		合計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券	本
基本關契	1	75	1	54											1	66			1	310	4	505
豫備(交渉)									5	1,040			1	93	9	2,528			5	527	20	4,188
本會議	1	168	1	136	1	47	1	82	1	120			2	602	9	2,484			1	435	17	4,074
國籍	1	149	1	468	1	75	1	18	1	265			1	231	3	768			2	593	11	2,567
請求權	1	171	2	510	1	43	1	40	2	283	1	26	2	466	7	1,422			7	2,899	24	5,860
船舶			2	699	1	15			1	289			1	207	2	71					7	1,281
漁業			1	317	2	272	1	46	1	168	3	558	1	211	11	2,858			7	2,495	27	6,925
文化財									1	249			1	31	3	225			2	438	7	943
條約																			11	3,143	11	3,143
經濟協力																			13	2,472	13	2,472
其他1 北送等											9	3,382									9	3,382
其他2 高位政治 會談																	9	1,642			9	1,642
其他3 大米													1	105	1	146					2	251
合計	4	563	8	2,184	6	452	4	186	12	2,414	13	3,966	10	1,946	46	10,568	9	1,642	49	13,312	161	37,233

그림2 主題別 韓日會談文書 現況



文書の種類別現況は『韓日會談外交文書解題集』(I~V)に載せられた分類により作成した。文書の種類は會議録、報告書、公式書翰、資料、交渉案、その他に分類されている。解題集において、報告書は序論と結論を備えており、ある事案について詳細に分析した文、公式書翰は国内外の各級官公署の間でやり取りされた文書、資料は會談の過程においてそれぞれの側から論拠として提示した情報、協定案は条約文が完成される過程においてそれぞれの側が提示するか合意されたこと、その他は以上の項目に含まれない説明書、メモなどを整理、紹介している。

それらの文書は各交渉の代表(韓国代表团)、在日代表部と政府(景武台、青瓦台)、主務部署である外交部、關係機關(長官)との間を行き交いながら作成されたものだ。我々側の交渉ラインにおいて交換された電文や訓令など、公式書翰と報告書、調査資料は韓日會談を進める過程に対する理解の助けになる。韓日両国間で交換された文書も当時の國際關係を理解する重要な資料だと言える。

公式書翰が全体のうちの62%であり、その他の文書の17%を除けば、會議録などの重要文書は20%に過ぎず、會談の過程をもっとも詳細に教えてくれる會議録の資料がひじょうに貧弱なのが実情だ。だが、残されている會議録もその内容を見れば、経過報告レベルにとどまる文書が相当数にのぼる。韓日會談記録が量的にも足りないだけでなく、質的にも多くの限界をもっていると言える。

また、文書には添付資料と明記されているが、落ちがあったり、報復文書の前後が書けている場合が多い。主要な調査資料も欠けている場合が多い。『対日賠償要求調査』(1954)など韓国政府の対日交渉

の基本的立場を読み取ることのできる政策説明資料などととも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だが、そうした資料もほとんどが対外秘として作成され、政策当局者たちの参考資料としてのみ活用され、失われた場合が多い。

表3. 文書種類別 韓日會談文書 現況

文書種類別(件)	豫備會談期	第1次會談期	第2次會談期	第3次會談期	第4次會談期	會談中斷期	第5次會談期	第6次會談期	高位政治會談期	第7次會談期	合計
會議錄	13	148	27	5	105	15	50	297	10	93	763
報告書	2	13	0	1	37	32	20	156	26	72	359
公翰	46	159	43	8	458	1150	367	2005	369	1990	6595
資料	14	36	1	0	45	27	24	192	7	81	427
協定案	1	18	5	0	68	25	10	30	22	463	642
其他	15	73	22	7	68	381	82	534	133	495	1810

그림3 文書種類別 韓日會談文書 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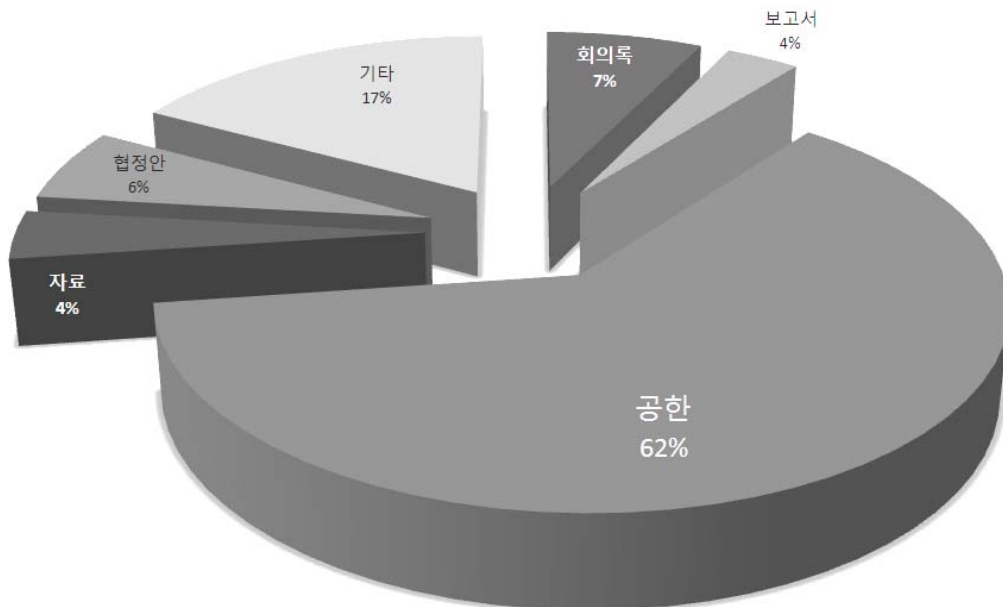


표4. 청구권 관련 한일회담문서 구성

시기별	등록 번호	문서설명	생산 년도	생산과	분량
예비회담	79	청구권 관계 자료집(일본에 있는 구왕실 재산목록)	1951	[정무2]	171
1차회담	86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1952	정무	196
	87	청구권 관계자료	1952-52	정무	314
2차회담	9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3.5.11-6.15	1953	정무	43
3차회담	97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9-15	1953	정무	40
4차회담	10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8.5.20-12.17	1958	아주	47
	105	청구권관계 자료	1958	아주	236
회담중단기	6885	재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1955	정무국 제1	26
5차회담	717	재일한인 재산반입 문제	1960	아주	38
	718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60-61	아주	428
6차회담	749	재산 청구권 관계 종합 자료집	1961	아주	132
	750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11차, 1961.10.27-62.32.6	1961-62	아주	324
	751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	1959-62	아주	90
	75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1963	1963	동북아주	213
	753	청구권 관계 자료-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1961-64	아주-조약	222
	747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청구권관계회의	1963	아주	285
	76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1964	동북아주	156
7차회담	1467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1 1965	1965	동북아주	116
	1468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1965	동북아주	411
		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V.3 1965.4-6	1965	동북아주	478
	6887	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1965	동북아주	343
	1469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1965	동북아주	188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19
	1580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1963-65	조약	427
	1473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5-66	동북아주	458
	1807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6	동북아주	9
	1474	[민간인(김태성) 등의 대일청구권 해결 문제	1955-65	동북아주	450

2. 評価:1950,60年代文書保存状況と関連して

一番目、公文書の再活用、不足な紙資源を補充するための一つの方法で、永久保存文書以外の公文書は、再び収集してリサイクル(末端官吏証言)9)

二番目、チャート文化の導入、米軍事学校卒業後帰国した軍人たちが5・16クーデターで政権を奪取後、行政報告がチャート形態に変わること、文書保存が不可能な状況、行政報告文化の変化が文書保存には災いとなる10)

三番目、政治的・理念的に問題になる公文書の廃棄処分;農地改革資料焼却命令(チャン・サンファン)

四番目、管理がいかげんなことによる亡失

事実上1960年代は公文書の受難時代と言われるほど、文書の保存状態が劣悪、幸い外交文書だったため、この程度でも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

(資料5 参照)

III. 請求権問題はどのように処理されたのか

1. 韓日協定で消滅した個人請求権の範囲(資料6 参照)

韓国外交通商部が2005年1月14日文書公開に先立ち、報道機関にブリーフィングしながら"被害者たちが最も知りたがる文書"と強調して紹介したものは、1964年5月8日付外務部長官が経済企画院長官に送った個人請求権補償措置に関する問い合わせに対する回答で、"日本と請求権問題を解決することになると、前記個人請求権も含んだ解決になり、したがって政府は個人請求権保有者に対して補償義務を負うことになると考える"として、韓国政府に補償責任があるという認識を現わした文書だった。9)

しかしこの文書には、朝鮮銀行をはじめ日本銀行権を所有した機関から経済企画院に対して、どのように対処すべきかを尋ねる質問書を添付して、財産請求権問題に対する政府見解を確認する内容であって、強制動員被害に対する補償問題は含まれていない。この文書を持って個人請求権問題全体の責任が、韓国政府にあるというのは拡大解釈だった。

請求権協定で言う'財産、権利および利益'は、合意議事録に"法律上の根拠に基づいて財産的価値が認められる実体的権利"と規定されているが、請求権の定義が明らかでなく、補償請求訴訟の争点になって来た。10)

9) 「民間人保有対日請求権に対する補償措置(1964.5.8)」続開第6次韓日会談請求権委員会会議録および経済協力問題 762(登録番号) 142ページ。

10) 日本政府は1990年代に相次いだ対日補償請求訴訟が提起されると、2000年代に入って個人請求権消滅に関する見解を補強し始めた。韓国人軍人軍属と慰安婦が1991年12月6日東京地方裁判所に提起した太平洋戦争韓国人被害者訴訟控訴審(2003年7月23日判決)で、請求権協定の'財産、権利および利益'というのは未払い給与、債権など、法律上の根拠に基づいて財産的価値が認められる実体的権利"であり、'請求権'はその他の概

個人請求権消滅に関する交渉当時、韓国政府の認識は李圭星(イ・ギュソン)請求権分科委員会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1965年4月10日と20日、26日の三回報告した文書に比較的良好に現れている。李圭星は個人請求権消滅後の対処に対して、1965年4月3日の請求権協定基本合意を言及しながら、"完全かつ最終的にすべての請求権が解決されたと解釈できるから、この問題に関しては将来、両国がそれぞれ国内的にどのように消化して処理するかという問題だけが残っており、したがって特別に問題はない"と発言した。これに対して日本側は、国内で処理するという方針に異議を提起せずに、"具体的にどのようなものが消滅した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お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て、'①北朝鮮地域の請求権の法的問題、②朝鮮総督府と韓国政府間の継承問題、③在日韓国人の請求権消滅の範囲、④第2次大戦終結時点の解釈問題、⑤その他'に関する協議を要求した。

この文書からわかるように、韓国が個人請求権問題の消滅を、それぞれ国内問題として処理することで、韓日協定の早期妥結を急いだ反面、日本は個人請求権問題が将来提起されることがないように、完全に消滅させて明文化することに重点を置いていた。しかし日本側が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課題として提起したのは、在日韓国人問題と北朝鮮関係の法的問題であって、日本軍慰安婦問題や被害補償訴訟が韓国国民から提起されるという想定は含まれなかった。韓日両国政府すべて、個人請求権消滅に植民地支配の被害補償が、どこまで含まれるのかという主題は十分に扱わなかった。

個人請求権の消滅範囲は請求権協定合意議事録(g)に、"韓日会談で韓国側から提出された韓国の'対日要求要綱(いわゆる8項目)に属するすべての要求が含まれ、したがって対日要求要綱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できない"となっている。問題は韓日会談で、要綱として具体的に議論された部分に対する権利が消滅したのか、でなければ財産権の一部を除いたすべての権利が対象になったのかということであった。

日本軍慰安婦、在韓被爆者、サハリン残留韓国人問題に対して日本に補償を要求し、日本政府も法的補償を否定しながらも、人道的、道義的支援の必要性を認めて、部分的に対応したということは、韓日会談当時、この問題が議論されていないことを反証している。B C級戦犯の場合はさらに明らかだ。

第一次韓日会談在日韓人法的地位委員会第29次会議(1952年2月4日)で、韓国側がB C級戦犯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方針を質問したことに対して、"日本側からそれは別個の問題だから、別途研究するという返事があった"という記録がある。¹¹⁾ 韓日両国政府がBC級戦犯を交渉対象から除外することに合意したということは、請求権が消滅しない課題が残ったことを意味する。1965年7月5日、駐日大使金東祚(キム・ドンジョ)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文書で、在日韓人戦犯団体の'同進会'が、日本国政府に対する補償請求権が、韓日間請求権協定によって消滅したのか問い合わせた。¹²⁾ これに対して外務部長官は、1965年9月28日付'同進会'の問い合わせに対する回示で、"日本の徴用および徴兵等の理由で発生した韓国人の対日請求権に関しては、'対日請求要綱'の一環で韓日会談を通して日本政府に請求してきたが、本件の連合国の勝利及び戦後の

念で、"韓日請求権協定に署名した時点で権利関係が明確でなかったもの"であると説明したが、控訴審判決はこの二種類を区分せずに、不法行為に基づいた損害賠償請求も含めて、国内措置法(法律第144号)により消滅したと判断した。依然争点として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の意味する。

11) 「第29次在日韓人法的地位分科委員会経過報告(1952.2.4)」第一次韓日会談、81、1011~1012ページ

12) 「韓国出身戦犯補償」第7次韓日会談請求権協定関係説明資料、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1965-66、1473、66ページ

戦犯裁判に起因した韓国人戦犯の被害に関しては、当初より日本に対する請求対象ではなかったし、協定調印後の国内措置として個人請求権補償問題の検討対象からも除外される。日本人戦犯に対する日本政府の補償措置は、戦後日本が独立を回復した後に取った措置なので、在日韓国人に対しては、その補償理由の特異性を考慮して措置するよう¹³⁾、適切な時期に日本側に促すことを指示すること¹⁵⁾として、B・C級戦犯が「当初から」請求の対象でないことを明確に明かした。

一方2006年韓日協定文書の公開以後、被害者救済措置が検討された当時、注目を引いたのは、韓日協定交渉過程で日本が被徴用死亡者と負傷者に援護法適用を示唆した発言だった。1962年2月8日に開かれた第6次韓日会談韓日請求権小委員会第10次会議で、宮川新一郎首席代表は「徴用者補償金に関しては、韓国側は生存者に対し精神的苦痛に対する補償を請求しているが、その当時韓国人の法的地位が日本人であったという点に照らして、日本人に支払われていない補償金は支払えないと考える。しかし死亡および傷病者に対しては、当時の国内法によって給与金が支払われたので、未支払のものがあれば被徴用者未収金として整理できるだろうから、その項目で検討するのが良いだろうと考えられ、したがって被徴用者補償金という、独立した項目では応じにくい¹⁴⁾と発言した。外務省もまた、軍人・軍属と徴用者に対する「見舞金」支給を検討したことがある。¹⁵⁾

このように交渉当時、日本政府が徴用者に、補償の代わりになる慰労金まで検討したという事実は、2005年7月22日韓国政府が日本から貰った請求権資金の性格を判断する時、一つの参考資料になった。しかし「日本から貰った資金が、強制動員の不法(日帝支配自体が国際法的に、また歴史的に不法)に対する賠償の性格なのか、特別な犠牲にあった被害者に対する援護の性格なのかは確実でない」と判断して、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慰労金支給は「韓国政府が政治的次元など別途の考慮で提起したこと」として強制動員被害者の権利が消滅してい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¹⁶⁾

2. 韓国政府の最終的な解釈

2005年8月韓日協定文書公開以後、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補償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政策を発表して、請求権協定に対する韓国政府の最終的な見解を明らかにした。韓国政府の総合的で最終的な見解であるだけに、その意味が大きいので主要内容を紹介すると、次の通りだ。¹⁷⁾

- ① 韓日請求権協定は基本的に、日本の植民地支配賠償を請求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かったし、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第4条に基づいて韓日両国間の財政的・民事的債権・債務関係を解決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
- ② 日本軍慰安婦問題など、日本政府・軍など、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に対しては、

13) 「同東進会の問い合わせに対する回示」第7次韓日会談請求権協定関係説明資料、韓日会談請求権関係者料1965-66、1473、105ページ

14) 「一般請求権小委員会第10次会議録(1962.2.8)」第6次韓日会談請求権委員会会議録、750、235～236ページ。日本文書(1220、17ページ)では墨塗り

15) アジア局、「韓国側対日請求権に対する大蔵、外務両省による事情の上位に対し(1962.2.15)」、1799、1ページ。

16) 「国務総理室韓日修交会談文書公開灯台本企画団活動白書」、80～82ページ。

17) 国務調整室報道資料「韓日会談文書公開、後続対策関連民官共同委員会開催」、2005年8月26日。

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と見ることはできず、日本政府の法的責任が残っている。

- ③ サハリン同胞、原爆被害者問題も、韓日請求権協定対象に含まれなかった。
- ④ 韓日協定当時、韓国政府は日本政府が、強制動員の法的賠償・補償を認めないことによって、‘苦痛を受けた歴史的被害事実’に基づいて、政治的次元から補償を要求したし、このような要求が両国間無償資金算定に反映された。
- ⑤ 請求権協定を通じて日本から貰った無償3億ドルは、‘個人財産権(保険、預金など)、朝鮮総督府の対日債権など、韓国政府が国家として持つ請求権、強制動員被害補償問題解決性格の資金など’が包括的に考慮されている。
- ⑥ 請求権協定は請求権各項目別の金額決定ではなく、政治交渉を通じた総額決定方式で妥結したので、各項目別受領金額を推定することが困難だが、韓国政府は受領した無償資金の内、相当金額を強制動員被害者の救済に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道義的責任があると判断される。
- ⑦ 韓国政府は日帝強制占領下、反人道的不法行為に対しては外交的対応方案を持続的に講じて行き、日本軍慰安婦問題に関してはUN人権委等国際機構を通じて、問題提起を継続する。

この解釈はこの間、強制動員被害者たちが日本政府と企業を相手に、訴訟を行う時曖昧な態度を取った韓国政府の見解とは違い、法的責任と道義的責任を区分して、明らかに被害者の権利を認めたという点で、その意義は大きい。しかし韓国政府が不法行為に対して、日本政府に法的責任がある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のが、慰安婦問題など強制動員被害者問題が外交問題で飛び火するのを憂慮して、日本政府を相手に積極的な要求はしなかった。被害者たちが韓国政府に責任を追及できる名分を残しておいたのだ。

Ⅳ. 結びに代え

2010年、日帝によって強制併合にあって100年になる年を迎え、「20世紀植民地主義の克服と被害回復を目標にした(韓国・日本)民衆宣言と行動計画(イ)を採択し、実行する連帯運動を展開しようとする動きが摸索中だ。2010年8月を目標にこの宣言文および行動計画を日本、韓国、北朝鮮の市民、被害者、法律家、研究者などが共同で作成し、この宣言および行動計画に賛同・支持する勢力を結合して、2010年8月に開催する市民宣言大会で採択する。(UN関係者も参加)

[宣言] 朝鮮植民地が不法な過程、ジェノサイド(genocide)等の事実を確認した上に、韓日協定(1965)、村山談話(1995)、韓日共同宣言(1998)を経ても、相変わらず植民地主義は克服されず、これを達成することが日本と韓半島間の未来を開くのに、決定的に重要だという点を確認し、そのために過去清算-被害回復(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補償)をすることが必要さを確認することにする。またこの宣言は2001年8月31日~9月8日、南アフリカのダーバンで開かれた「人種主義、人種差別、外国人排斥と関連した非寛容に反対する世界会議」で採択された「ダーバン宣言・行動計画」の精神と共にする。¹⁸⁾

18) “14植民地主義が人種主義、人種差別、外国人排斥と関連した非寛容をもたらし、アフリカ人とアフリカ系

〔行動計画〕 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強制労働、軍強制動員、原爆被爆、サハリン、関東大陳材虐殺などの被害に対して、今までの補償のための行動などを総括し、根本的な解決に向かった課題と、課題達成のための行動計画を設定して実行する。

また「宣言と行動計画」採択を通じて、2010年8月に韓日両国間の政府の水準で過去を克服するための新韓日共同宣言'を交換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提案する一方、今後あるだろう朝日修交で、宣言の精神と内容が反映されることを要求する。

〔行動計画〕 上の方式で現在、日本内で推進中の‘戦後補償法案’に対して、全般的な検討と分析のために、先に戦後補償団体関係者、研究者、法律家などの集いを組織し、今後これを発展させて宣言の起草委員会を構成する。戦後補償法案の推進主体は、もちろん日本議会と日本市民社会かもしれないが、これに対して韓国内でも、総合的な検討のための専門家分析チームが構成される必要がある。

人民、アジア人とアジア系人民、そして先住民族は植民地主義の被害者になって、今も変わらずその被害が続いていることを確認する。植民地主義によって苦痛がもたらされ、植民地主義が起きたところは、いつでも非難され、その再発を防止しなくてはならないことを確認する。この制度と慣行の影響と存続が、今日の世界各地での社会的・経済的不平等を継続させる要因になったことは残念だ。”

기본조약 제2조 문제와 청구권 문제에서의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청구권’ 개념에 대해(요약문)

오오타 오사무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공동대표)

들어가며

본 보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공개된 외교 문서를 읽고, 한일기본조약 제2조 문제와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청구권’ 개념에 대해 검토한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 문제는 재산청구권 문제의 처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제2조 문제는 한일 사이의 과거청산을 생각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내년 2010년은 한국 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00년째 되는 해이지만, 제2조를 둘러싼 한일 간의 해석은 다른 채로 있다. 한일 사이에 식민지 지배의 시점에 대한 공통의 역사인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 기회에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장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조기본조약을 생각하기 위해서도 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이 보고에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가 한일회담 중에서 어떻게 논의되어 만들어졌는지 새로운 자료를 기초로 검증하고, 그 위에 종래의 견해를 재검토해, 시론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제기하고 싶다.

이 글의 또 하나의 과제는 한일회담에서 청구권 문제의 논점을 정리해, 주로 새로 공개된 「일본외교문서」를 사용해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청구권’ 개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측의 식민지 지배 인식은 청구권 문제의 처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의 하나였으므로, 그것을 보다 깊게 파고들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1965년에 체결된 재산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의 목적의 하나는 문자 그대로 ‘청구권’을 처리하는 것에 있었지만, 원래 ‘청구권’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자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문제의 핵심에 가능한 한 접근해 보고 싶다.

1. 기본조약 제2조에서의 한국 병합 조약과 관계 협정의 무효 문제

한일 양정부의 다른 해석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의 한국 병합 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관계 협정의 무효를 확인하는 조항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것을 ‘당초부터’ 무효, 일본 정부는 ‘현재는 이미 효력이 없다’고 각각 해석했다.

지금까지 한일 사이의 이러한 해석의 차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2조에 삽입된 ‘もはや(이미, already)’라고 하는 문언이라고 되어 왔다. 그러나 신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もはや(이미, already)’를 넣은 것이 한일 사이의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고는 반드시 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신자료로부터 부각된 것—일본의 식민지주의, 한국측의 ‘강제와 폭력에 의한 원천무효론’

한국측은 제 1 차 회담에서 구조약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다(…are null and void)”라는 초안을 제시했다. 유진오가 말한 것처럼 “법이론을 관철할 때는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법이론은 그대로 두고 여하튼 무효”라고 하고, …are null and void는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도 모두 덮고 ‘무효’를 표현한 것이었다. 즉 한국측의 초안 …are null and void 자체가 언제부터 ‘무효’가 되었는가 하는 시간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외의 것은 아니었다. 한국측이 제 1 차 회담에서 제시한 초안 자체가 타협안이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해 식민지주의를 청산할 의사는 없고, 식민지 지배를 언급하는 것조차 피하려 했던 일본측은 무효의 시기를 대한민국 수립의 시기라고 해석하기 위한 용어 ‘もはや(now)’를 넣는 것을 한국측에 압박했다. 이렇게 해 1965년의 기본조약의 골조가 벌써 제 1 차 회담에서 제시되어 거의 합의하게 되어 있었다.

제 1 차 회담 토의에서 부각된 가장 중요한 점은 ① 일본의 식민지주의가 더 한층 명백하게 된 것과 ② 한국측이 한국 병합 조약과 그 이전의 관계 협정의 체결이 조선 민족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것”이며, “민족의 총의에 반하는 병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 무효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국측은 그러한 이해는 한국민의 “강한 신념·국민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②에 대해 한국측의 주장은 ‘강제와 폭력에 의한 원천무효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이 ‘무효론’은 1919년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임시정부-한국 독립 승인 청원서’나 1941년에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낸 「대일 정부 성명서」의 내용, 나아가 1949년에 작성된 『대일배상요구조서』 서문에 쓴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 국민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강제적 행위이며, 정의·공평·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폭력과 탐욕으로 지배했다” 라는 인식과 합치하는 것이다.

시론

한국 병합으로부터 100년째를 눈앞에 두고, 일본과 한반도의 사람들 사이에 식민지 지배의 시작 역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공통의 역사 인식을 구축하는 해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론으로서 한국 병합 조약 체결의 결과, 식민지 지배가 행해진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 사실이

라고 한 다음, 한국 병합 조약과 그 이전의 관계 협정은 강제적·폭력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한다고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다. 즉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주장한 ‘강제와 폭력에 의한 원천무효론’을 공통의 인식으로 하자는 안이다.

이처럼 한일간에 식민지 지배의 시작 역사에 대한 공통 인식을 가진 다음, 장래 체결되는 일조기본조약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조기본조약은 한일기본조약의 골조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해당하는 조문은 이 ‘강제와 폭력에 의한 원천무효론’에 의거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시안으로서 한일기본조약 제2조 문장 끝의 ‘...are already null and void’에서 already를 삭제해 ‘...are null and void’로 한다. 그리고 해석은 한국 병합 조약과 그 이전의 관계 협정은 강제적·폭력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천적 무효하다는 것이다.

이상은 현시점에서의 시론이지만, 향후 한일의 시민 사이에 식민지 지배의 시작 역사에 대한 공통인식을 갖고, 그것을 기초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공통의 역사인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연히 일·조 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 북한 사람들의 공통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2. 청구권 문제

논점의 정리

공개된 신자료에 따라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때, 앞으로 청구권 문제의 무엇을 어떻게 해명해 나갈 필요가 있는지, 그 논점을 정리해 두고 싶다.

첫째, 1965년에 체결된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의 중심 개념인 ‘청구권’이란 어떠한 것이었는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한일회담에서 재산청구권 문제를 토의하는 근거가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 a항에 규정된 ‘청구권’에 대해 논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당시의 국제 정세 및 국제법 아래에서 세계 기준으로서의 ‘청구권’을 어떻게 인식해 한일회담에서 토의했는지, 또 그것들이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을 어떻게 규정해 나가게 되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일 양정부의 식민지 지배 인식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것도 특히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인식, 이해를 분명히 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의 골조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일본측의 식민지 지배 인식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동시에, 당시의 세계 기준으로서의 식민지주의도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째, 한일 양정부가 특히 개인의 식민지 지배·전쟁 피해를 어떻게 인식해, 교섭의 장소에서 토의하고 있었는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① 피해와 가해의 진실 구명 ② ①에 근거한 책임의 추궁, ③ ①과 ②에 기초한 사죄, ④ 피해 보상, ⑤ 추도와 기억(기록의 보존, 교육)이 필요하지만, 각각이 한일회담에서 어디까지 검토되어 실시되었는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네째,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의 조문 작성 과정과 한일 양정부에 의한 국내법의 성안의 경위를 재검증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특히 1965년에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 제2조 제 1항의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하는 문장이 성안된 경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또, 2005년 1월에 공개된 한국 외교 문서안에 한국 정부가 개인청구권 보유자에 대해서 “보상 의무를 진다”고 하는 자료가 발견되어 주목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검토되어 최종적으로 재가가 내려져 1970년대의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 법안」 등의 제정으로 연결되어 갔는지 분명하지 않다.

일본 내에서도 「재산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 제2조 제1항의 청구권 소멸의 실시에 따른 국내법안을 작성할 준비가 이루어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호)이 제정되었지만, 이 국내법의 성안 과정도 분명하지 않다.

이 소론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자료를 기초로 처음과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청구권’ 개념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에서 말하는 분리”라는 식민지주의 비판을 결핍한 세계 기준이라고도 하는 사고방식에 따라 한일 사이의 “청구권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리 때의 나라의 재산과 채무의 승계관계로서 취해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청구권’ 개념을 이끌어냈다.

그러한 식민지 지배 인식 및 ‘청구권’ 개념에 기초하여 한일회담 때 청구권 문제에 대한 대처방침으로 양국의 ‘재산 및 채무’를 ‘서로 일괄 포기하는’ ‘상호포기’문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청구권 항목 교섭에서는 ‘확실한 증거자료’의 첨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한국측의 청구권을 ‘무너뜨려 간다’는 관료주의적인 방법이 검토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한일회담을 실시한 일본정부 측에서는 식민지 지배에의 성찰, 식민지 지배 비판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며, 1965년의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음을 확인’한 것은 식민지 지배 비판이 결핍한 “단순한 영토 분리 때의 나라의 재산 및 채무의 승계관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늘의 일본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반성한 1995년의 ‘무라야마담화’, 그것을 계승한 1998년의 ‘한일공동선언’, 2002년의 ‘일조평양선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이 빠져있던 한일회담과 한일 재산청구권 협정의 입장을 바꿔, 식민지 지배·전쟁에 의한 피해의 청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基本条約第二条問題と請求権問題における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について(要約文)

太田修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共同代表)

はじめに

本報告では、日韓で新しく公開された外交文書を読み、日韓基本条約第二条問題と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について検討する。

日韓基本条約第二条問題は、財産請求権問題の処理に間接的に影響を及ぼした。また、第二条問題は日韓間の過去の清算を考える場合に避けて通れない問題である。とりわけ来年2010年は韓国併合条約が締結されてから100年目の年にあたるが、第二条をめぐる日韓間の解釈は異なったままである。日韓の間に植民地支配の始点についての共通の歴史認識が築か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が、こうした状態をこの機会に克服していく必要がある。また、将来締結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日朝基本条約を考えるためにも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

この報告では、日韓基本条約第二条が日韓会談の中でどのように議論され作られていったのか新資料をもとに検証し、その上で従来の見解を再検討し、試論として「新しい」考えを提起したい。

本稿のもう一つの課題は、日韓会談における請求権問題の論点を整理し、おもに新しく公開された『日本外交文書』を使って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を検討することである。日本側の植民地支配認識は請求権問題の処理に最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要素の一つだったので、それをより深く掘り下げ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また、1965年に締結された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目的の一つは、文字通り「請求権」を処理することにあつたのだが、そもそも「請求権」とはいかなるものなのか、それは必ずしも自明のものではない。それらの問題の核心に可能なかぎり接近してみたい。

1. 基本条約第二条における韓国併合条約および関係諸協定無効問題

日韓両政府の異なる解釈

日韓基本条約第二条は、1910年の韓国併合条約とそれ以前に締結された関係諸協定の無効を確認する条項である。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韓国政府はこれを「当初から」無効、日本政府は「現在ではもはや効力がない」とそれぞれ解釈した。

これまで日韓間のこのような解釈の相違を可能にしたのは、第二条に挿入された「もはや（ヨ

「already）」という文言であるとされてきた。しかし、新資料を検討した結果、この「もはや（already）」を入れたことが、日韓間の別々の解釈を可能にした主要な要因だ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

新資料から浮かび上がってきたことー日本の植民地主義、韓国側の「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

韓国側は第一次会談で旧条約が「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are null and void）」という草案を提示した。兪鎮午が述べたように、「法理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法理論はさて置き、兎に角無効」とし、...are null and voidは、「いつから」というようなことも一切伏せて、「無効」を表現したものだ。つまり、韓国側の草案...are null and void自体がいつから「無効」となったのか時間を限定するものではなく、「無効である」ことを表す以外のものではなかった。韓国側が第一次会談で提示した草案自体が妥協案だったのである。

それに対して、植民地主義を清算する意思はなく植民地支配に言及が及ぶことすら避けようとしていた日本側は、無効の時期を大韓民国樹立の時期と解釈するための用語「もはや（now）」を入れることを韓国側に迫った。こうして1965年の基本条約の枠組みがすでに第一次会談において提示され、ほぼ合意するところとなっていた。

くわえて第一次会談での討議で浮き彫りになった最も重要な点は、①日本の植民地主義がよりいっそう明白になったことと、②韓国側が、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の締結が朝鮮民族の「意思に反して行なわれたもの」であり、「民族の総意に反する併合」だったので、「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解釈すべきだと主張したことである。韓国側は、そうした理解は韓国民の「強い信念・国民感情」だと強調していた。

特に②について、韓国側の主張は「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というべきものだった。この「無効論」は、1919年に金奎植がバリ講和会議に提出した「臨時政府・韓国独立承認請願書」や1941年に重慶の大韓民国臨時政府が出した「対日政府声明書」の内容、さらには1949年に作成された『対日賠償要求調書』の序文で表明された「1910年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の日本の韓国支配は、韓国国民の自由意思に反する日本の一方的な強制的行為であり、正義・公平・互恵の原則に立脚することなく、暴力と貪欲で支配した」という認識と合致するものである。

試論

韓国併合から100年目を目前にして、日本と朝鮮半島の人々の間に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の認識が存在しない状態が続いているが、この機を共通の歴史認識を築く年にする必要がある。

そこで試論として、韓国併合条約締結の結果、植民地支配が行なわれたことは動かしがたい歴史事実だとした上で、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は、強制的・暴力的に締結されたがゆえ

に、当初から無効だと解釈するという案を提示したい。つまり、日韓会談で韓国政府が主張した「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を共通の認識にするという案である。

このように日韓で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認識をもった上で、将来締結される日朝基本条約案を考える必要がある。日朝基本条約は、日韓基本条約の枠組みを踏襲したもの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が、日韓基本条約第二条にあたる条文は、この「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にもとづく内容に変更した方がよい。

一つの試案として、日韓基本条約第二条の文末の...are already null and voidからalreadyを削除し、...are null and voidとする。そして解釈は、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は、強制的・暴力的に締結されたがゆえに源泉的無効だとするのである。

以上は現時点での試論であるが、今後、日韓の市民の間で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認識をもち、それをもとに朝鮮民主主義共和国の人々との間にも共通の歴史認識を作りだすことが必要だろう。当然ながら日朝基本条約は日韓朝の人々の共通の歴史認識が反映されたもの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2. 請求権問題

論点の整理

公開された新資料によって新しい研究を始めるに際して、今後、請求権問題の何をどのように解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のか、その論点を整理しておきたい。

第一に、1965年に締結された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中心概念である「請求権」とはいかなるものだったのか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まず、日韓会談で財産請求権問題を討議する根拠とな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4条a項に規定された「請求権」について論究する必要がある。特に日本政府が、当時の国際情勢および国際法の下で世界基準としての「請求権」をどのように認識し日韓会談で討議したのか、またそれらが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をどのように規定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か、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

第二に、日韓両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これもとりわけ日本政府および日本人の認識、理解を明らかにし、それを抉り出すことがより重要となる。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枠組みの決定に最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のは日本側の植民地支配認識だったと考えられるからで、それをより具体的に解明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それは同時に、当時の世界基準としての植民地主義をも批判するもの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に、日韓両政府が特に個人の植民地支配・戦争被害をどのように認識し、交渉の場で討議していたのかを再検討することである。過去の清算のためには、①被害と加害の真実究明、②①に基づく責任

の追及、③①と②に基づく謝罪、④被害への補償、⑤追悼と記憶（記録の保存、教育）、が必要だが、それぞれが日韓会談においてどこまで検討され実施されたのかを確定する必要がある。

第四に、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条文作成過程および日韓両政府による国内法の成案の経緯を再検証することである。先行研究では、特に1965年に、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第2条第1項の「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文言が成案される経緯についての検討は充分になされたとは言いがたい。また、2005年1月に公開された韓国外交文書の中に、韓国政府が個人請求権保有者に対して「補償義務を負う」という資料が発見されて注目されたが、それがどのように検討され最終的に裁可が下され、1970年代の「対日民間請求権補償法案」などの制定につながっていったのか明らかでない。

日本国内においても、「財産請求権及び経済協力協定」第2条第1項の請求権消滅の実施に伴う国内法案を作成する準備がなされ、「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法律第144号）が制定されたが、この国内法の成案過程も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

この小論では私がこれまで読んだ資料をもとに第一と第二の論点について考えてみる。

日本の植民地支配認識と「請求権」概念

日本政府は「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植民地主義批判を欠落した世界基準とも言うべき考え方によって、日韓間の「請求権問題は単なる領土分離の際の国の財産及び債務の継承関係として取り扱われるべきもの」だという「請求権」概念を導き出した。

そうした植民地支配認識および「請求権」概念に基いて、日韓会談での請求権問題への対処方針として、両国の「財産及び債務」を「相互に一括放棄する」「相互放棄」論を確定し、具体的な請求権項目の交渉においては「確実な証拠資料」の添付を求めることによって韓国側の請求権を「崩していく」という官僚主義的な方法が検討されていたのである。

つまり、日韓会談を行った日本政府側には、植民地支配への省察、植民地支配批判は見られなかったものであり、1965年の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で「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したのは、植民地支配批判が欠落した「単なる領土分離の際の国の財産及び債務の継承関係」だったと言える。

長期的に考えるならば、今日の日本政府は、曲がりなりにも植民地支配と侵略を反省した1995年の「村山談話」、それを継承した1998年の「日韓共同宣言」、2002年の「日朝平壤宣言」の立場を取っている。だとすると、植民地支配への反省が欠落していた日韓会談と日韓財産請求権協定の立場をあらため、植民地支配・戦争による被害の清算に真剣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点を強調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基本条約第二条問題と請求権問題における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について(全文)

太田修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共同代表)

はじめに

本報告は、2005年から2008年までに韓国と日本で新しく公開された日韓国交正常化交渉（以下、日韓会談とする）関連の外交文書（以下、便宜上韓国で公開された外交文書を『韓国外交文書』、日本で公開された外交文書を『日本外交文書』とする）をもとに、日韓会談の過程で日韓両政府が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をどのように処理しようとしたのかを再検証し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新しく日韓で公開された外交文書約9万6000枚（韓国側約3万6000枚、日本側約6万枚）の全面的な検討は今後の課題とするとして、本報告では日韓基本条約第二条問題と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について検討したい。

まず日韓基本条約第二条問題は、本文でも述べるように財産請求権問題の処理に間接的に影響を及ぼしていた。両者とも植民地支配をどのように認識するかという問題とかかわっていたためである。それだけでなく、第二条問題は日韓間の過去の清算を考える場合に避けて通れない問題である。とりわけ来年2010年は韓国併合条約が締結されてから100年目の年にあたるが、第二条をめぐる日韓間の解釈は異なったままである。つまり日韓の間に植民地支配の始点についての共通の歴史認識が築か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だが、こうした状態をこの機会に克服していく必要がある。また、将来締結されることが予想される日朝基本条約を考えるためにも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である。

この報告では、日韓基本条約第二条が日韓会談の中でどのように議論され作られていったのか新資料をもとに検証し、その上で従来の見解を再検討し、試論的に「新しい」考えを提起してみたい。

本稿のもう一つの課題は、日韓会談における請求権問題の論点を整理し、おもに新しく公開された『日本外交文書』を使って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を検討することである。日本側の植民地支配認識は請求権問題の処理に最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要素の一つだったので、それをより深く掘り下げて検討する必要がある。また、1965年に締結された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目的の一つは、文字通り「請求権」を処理することにあつたのだが、そもそも「請求権」とはいかなるものなのか、その内容は必ずしも自明のものではない。ここでは、それらの問題の核心に可能なかぎり接近してみたい。

1. 基本条約第二条における韓国併合条約および関係諸協定無効問題

(1) 日韓両政府の異なる解釈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以下、基本条約)第二条はそれぞれ「日本文」「韓文」「英文」で以下のように表記されている。

【日本文】

第二条

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韓文】

1910년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英文】

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Japan and the Empire of Korea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already null and void.

この基本条約第二条は、1910年の韓国併合条約とそれ以前に締結された関係諸協定の無効を確認するものである。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韓国政府はこれを「当初から」無効、日本政府は「現在ではもはや効力がない」とそれぞれ解釈した。もう少し言えば、韓国側は「無効(Null and Void)」という用語自体が「国際法上の慣用語」としては「無効」を最も強く表示する文句であり、「当初から」効力が発生しないことを意味するものとして「이미」と強調されている以上、「遡及して無効」だとした¹⁹⁾。一方日本政府は、韓国併合条約は大韓民国が独立したときに効力を失い、併合条約以前の諸条約、協定はそれぞれの所定の条約の成就又は併合条約の発効とともに失効した²⁰⁾、と解釈した。

日韓両政府は、基本条約締結以来、それぞれの国民に対してそれぞれ別々の解釈をしてきた。韓国併合条約とそれ以前の諸協定の無効確認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解釈、いわばその歴史認識の違いは、1998年に交わされた日韓共同宣言においても解消されることがなく、今日も平行線のままである。

日韓間のこのような解釈の相違を可能にしたのは、第二条の中に挿入された「もはや(이미, already)」という文言であるとされてきた。つまり、この「もはや」を、韓国側は韓国併合条約および関係諸協定が締結された当時に遡って「当初から」、日本側は1948年の大韓民国の成立の時点だと解釈することによって、別々の理解がなされてきたというのである。

この問題について韓国の国際政治学者・李元徳氏は、「한일간 기본관계조약에 관한 교섭경위」(1965.2.20 『한국정부 미간행 비밀외교문서』)を見て李東元外務部長官が「이미 무효이다: are already null and void」という案を日本側に提案し、日本側がそれを受け入れたと叙述した²¹⁾。太田修は、金東祚の回顧録に韓国側が「이미 (already)」を挿入する妥協案を日本側に提示したとあること²²⁾、また李元徳が使用した韓国側外交文書を重視して、李元徳の見解に

19)대한민국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196년,

20) 外務省 『日韓諸条約につて』 1965年11月、3~4頁

21)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199년,26쪽

22)金東祚 『回想30年韓日会谈』 中央日報社, 198,27

従った²³⁾。

これに対して吉澤文寿氏は、韓国外務部の「未公開文書」である「基本関係問題実務者会議討議要約」（1965年2月18日）を引用して、「...are already null and void. (もはや無効である)」という案を提示したのは韓国側ではなく日本側であることを指摘した²⁴⁾。つまり、1965年2月18日に開かれた「基本関係問題実務者会議」において上記のような日本側の案が提示され、翌日の日韓外相会談で「韓国側が日本側から提示されていた、双方の解釈が可能な条文案を受諾することを決め、日本側はこれを了承した」²⁵⁾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は新しい事実であり、妥当な見解だと考えられる。

しかし、今回の新資料を読んで、この「もはや (이미, already)」を入れたことが、日韓間の別々の解釈を可能にした主要な要因だとは必ずしも言えないことがわかってきた。

(2) 日韓で公開された新資料

2005年に公開された韓国外交文書と2008年までに公開された日本外交文書には、第一次会談で設けられた「基本関係委員会」と日韓基本条約第二条に関わる多くの新しい資料がある。その中でも今回特に注目したものは、以下のような資料である。

<韓国外交文書>

a. 1455²⁶⁾ / 「第7次韓日会談：基本関係委員会会議録および訓令、1964.12-65.2」

<日本外交文書>

b. 973~980²⁷⁾ / 「日韓会談基本関係委員会議事要録」「日韓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第一回~第八回）

c. 1851 / 「日韓基本関係に関する1964年12月10日の日本側合意要綱案に対する修正案」1965年1月7日『日本外交文書』

d. 1853 / 「未定稿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案）」（1965年2月2日『日本外交文書』など。

1) 第一次会談での議論

周知の通り日韓基本条約第二条の内容は、1952年に始まった第一次会談の「基本関係委員会」で韓国側が提示した案がもとになっている。これまでの研究を簡単に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韓国側は「韓日間の基本条約」の第三条として「대한민국과 일본국은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구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を提案し、韓国併合条約及びそれ以前の諸協定が「始初から無効」であったと主張した。日本側は当初はその条文そのものに反対していたが、結局、「한일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조약」の前文に「일본국과 구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관계에 있어서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という文章を挿入することで妥協したのである。

23) 太田修『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クレイン、2003年、241

24) 吉澤文寿『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クレイン、2005年、226~227頁

25) 吉澤文寿、前掲書、230頁

26) 『韓国外交文書』は、便宜上、「登録番号」のみを付した。以下、同

27) 『日本外交文書』は、便宜上、「文書番号」のみを付した。以下、同

この議論の過程について李元徳氏は、韓国側の資料『韓日会談略記』²⁸⁾や兪鎮午の『中央日報』に連載された回顧録などを使って、その韓国側の主張やその立場を叙述した²⁹⁾。太田修も、それらの資料に加えて『世界週報』、米国外交文書などを使って書いた³⁰⁾。しかしこれらの研究には、基本文献としての「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の検討がなされていないという不十分さがあった。

今回日韓で公開された新しい資料により、研究の不十分さがいくぶん解消されることになった。第一次会談における「基本関係委員会」関連資料の中で特に注目すべきものは、日本側外交文書である³¹⁾。

まず、日韓予備会談が始まった直後に外務省が作成した文書が重要である。1951年10月31日に作成された「日韓両国の基本関係に関する方針（案）」には、日韓会談に臨む日本政府の基本的姿勢について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韓国側は交渉に臨む基本的態度として、日本による四十年の朝鮮統治が搾取的植民政治であったとの建前をもって来るべきことは、今次交渉における梁代表のオープニング・ステートメントによっても予見されるところである。我が方としては原則論としてかかる態度を論破する要があり、必要あれば何時にても韓国側及び世界の曲解ないし誤解を解く用に資するため、日本の朝鮮統治下における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の向上の実際面を具体的に説示した一般的なステートメントを準備し置く要があり、適当なる諸点については、他の外国のコローニアリズムとの比較を示すことも必要であろう。³²⁾

日韓会談において「朝鮮統治が搾取的植民政治であった」とする態度で臨んでくると予測される韓国側を、日本政府は論破する必要がある、「他の外国のコローニアリズム」とも比較しながら、「日本の朝鮮統治下における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の向上の実際面」を説く予定だという。

これは、大蔵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朝鮮篇全10冊の総論的性格をもつ鈴木武雄の論文「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通巻第11冊）の内容を念頭においたものと思われる。日本の植民地統治下において「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は「向上」したとい

28)外務部政務局『韓日会談略記』1952年この記録は、韓国外務部が韓国側の日韓会談関係者のため「問 輪 把하시느있어 하고 進 略記したものだった。なお195年の他195年、1960年版がある

29)이원덕, 앞의 책,58-6쪽

30)太田修、前書、82～88頁

31)な、第一次会談関連の韓国側資料として「第1次韓日会談(1952.2.15-4.21)：基本関係委員会会議録、第1-8次1952.2.22-4.2があるがこのファイルは「基本関係委員会」での合意事項を日韓双方が交替で英文でまとめた議事要録(summary recor)と双方が提出した条約草案からなるもので、それから議論の過程はわからぬ。また200年公開の『韓国外交文書』には、第一次会談「基本関係委員会」での韓国側が作成した議事録、訓令、報告などの内部資料が見あたらない

32)1835 / 「日韓両国の基本関係に関する方針（案）」1951年10月31『日本外務省文書』。この方針案は同年11月25日付「日韓基本関係調整交渉について留意すべき事項」（二六、一一、二五、管総）にも記載されており、正式な方針として確定されたようだ（1124 /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日本外交文書』）。

う考え方こそが、その後の日韓会談における日本の官僚を支配したものであり、日韓会談における日本側の植民地主義の一面を表していた。実際にこのような考え方は、1953年10月の第三次会談における「久保田発言」となって表れた。

1952年2月22日に「第一回基本関係委員会」が開かれ、冒頭に韓国側の兪鎮午代表が「韓日間に正常の外交交渉が行われたのはこれが四十七年目でありまして、一九〇五年日本の強権によって外交権を奪われて以来韓国はその意思をもって日本に接する事は出来なかったのですが、歴史は廻り、韓日両国は再び友好隣邦として世界平和と人権擁護とを目的とする国際連合に協力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と述べた³³⁾。

それに対して日本側は「両国が互に旧來の行懸りを一掃し、且つ、唇齒輔車の恒久的關係に立つという事実を深く認識し、相互の尊嚴と信頼とを基調とする善隣關係を樹立するべき好機である」という本会議での松本主席代表の挨拶を引用して挨拶した。韓国側が「一九〇五年日本の強権によって外交権を奪われて以来韓国はその意思をもって日本に接する事は出来なかった」と表現したのに対して、日本側は「互に旧來の行懸りを一掃し」と応じたことは、この基本関係委員会の行方を暗示させるものだった。

日本側は「第一回基本関係委員会」で「日韓友好条約案」を提示し、それを提案する三つの理由を述べた³⁴⁾。先に挙げた「日韓両国の基本關係に関する方針（案）」（1951年10月31日付）からも予想されるように、日本側の「日韓友好条約案」には過去の問題は一切ふれられていなかった。第二回、第三回の「基本関係委員会」では、この日本側案について議論がなされた。

2月27日の「第二回基本関係委員会」では、兪鎮午代表が日本側が提示した「友好条約」³⁵⁾という名称を批判し、「韓国政府としては過去両国間にあった各種の懸案特に一九一〇年より三十六年間にあった色々な問題を一掃して實質的には両国の平和条約となるものを結びたいという気持で、この条約もこの意味を有った名称のものとしたい」と述べた³⁶⁾。

そして、3月5日の「第四回基本関係委員会」で、韓国側は「大韓民国日本国間基本条約（案）」を提示した。この条約案の名称が「基本条約」であったことと、次の第三条が挿入され

33)93 / 「日韓会談第一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要録」1952年2月22日『日本外務省文書』

34)日本側は以下の3点をその理由として指摘した。①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2条により、日本は韓国の独立を認めたので、「相互に政治的独立と領土保全を尊重し外交及び領事關係を設定し」「両国間の恒久的平和と堅固な且つ永続的な友好及び經濟關係を維持する不動の基本原則を約定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②「大韓民國の獨立によって生ずべき韓人の国籍の変更について協定を遂げる必要がある」。③「財産権及び請求権の処理や海底電線の分割に関する事項、漁業協定交渉の開始に関する事項〔中略〕韓国が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適用を受け得る諸案件について」解決することを友好条約の中で確約する必要がある93 / 「日韓会談第一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要録」1952年2月22日『日本外務省文書』

35)日韓会談が開始される直前の外務省の方針案では、「日韓基本条約」（1951年12月20日）、「日韓和親条約」（1951年12月23日）、「日本国と大韓民國との間の和親条約」（1952年1月5日）、「日本国と大韓民國との間の友好条約」（1952年1月12日）、「日韓友好条約」（1952年2月5日）、「日本国と大韓民國との間の友好条約」（1952年2月13日）などの案があった。結局、「第一回基本関係委員会」に提示されたのは「日本国と大韓民國との間の友好条約」だった（1835 / 「日韓両国の基本關係に関する方針（案）」1951年10月31日『日本外務省文書』）

36)94 / 「日韓会談第二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952年2月27日『日本外務省文書』

たことが最も大きな特徴だった。

<英文>

Draft Basic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ticle III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nfirm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Empire of Korea and Government of Imperial Japan on and before August 22, 1910 are null and void.

<韓文>

大韓民国日本国間基本条約（案）

第三条

大韓民国과 日本国은 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에 旧大韓帝国과 日本国間에 締結된 모든 条約이 無効임을 確認한다.³⁷⁾

この韓国側草案に対する本格的な検討が第5回会議（3月12日）で行われた。日本側の大野勝巳代表が、韓国側草案の第三条の「無効」条項について、韓国併合条約は「当初から成立の要件を欠いていたために成立しなかったと主張されるのか。或は成立したが、その後失効したので現在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ことなのか」と尋ねた³⁸⁾。

それに対して韓国側の兪鎮午代表は次のように答えた。

これは重大な質問である。一九一〇年以前の条約は意思に反して行なわれたものであるので遡って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ぬ。しかしこの法理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法理論はさて置き、兎に角無効としたいというのである。韓国側では、併合条約は最初から無効とし、日本のポツダム宣言受諾により失効したとしているものではないが、この規定では右韓国側の主張をあからさまに云うのを避け、またポツダム宣言受諾の時より失効したとの説も避け、漠然と兎も角無効を確認したい〔後略〕³⁹⁾

韓国側が強調したのは、「一九一〇年以前の条約は意思に反して行なわれたもの」だったので、「遡って無効と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点だった。ただし、「法理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韓国側の主張をあからさまに云うのを避け、〔中略〕漠然と兎も角無効を確認したい」と言っているように、「法理論」上の「複雑な問題」があるとの認識だった。

この「法理論」上の「複雑な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兪鎮午代表はそれ以上展開していないので明らかでないが、1950年に「大韓民国駐日代表部」が作成した「韓日合邦条約無効論（抄）」⁴⁰⁾が参考になる。それによれば、「一．結論」は「韓日合邦条約は無効である」が、

37)97 / 「日韓会談第四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要録」1952年3月5日『日本外務省文書

38)977 「日韓会談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952年3月12日『日本外交文書

39)同前

「ただし国際秩序維持（時効の精神）または無理〔無権か？－太田〕代理行動の追認で無効を主張しない部分もある」としている。さらに同じ文書の「四. 韓日合邦条約無効の効力発生」では、「一. 原則 一九一〇. 八. 二九に遡及して無効効力が発生する / 二. 例外 黙認または追認により無効を主張しない」とされ、原則は「無効」とするが、「例外」として「無効を主張しない」もの、つまり「有効」とするものを設けるとしている。「三. 重要事項」ではその具体例が列挙され、「c. 朝鮮総督の一般行政」の「가. 純全たる行政面」の「I. 朝鮮銀行券」「II. 税金」「III. 公債」などは「有効」とすると記載されている。

そしてこの「韓日合邦条約無効論（抄）」の前に付されたの「説明書」（「大韓民国駐日代表部政務部」作成、1951年1月25日）は次のように「理論的矛盾」を指摘している。「韓日合邦条約에 對한 有効論 또는 無効論이 對立되어 있음을 看取할 수 있는데 無効論에 있어서는 三十五年間 舊朝鮮總督府에 依하여 統治의 認定事實에 對하여서는 舊朝鮮總督의 「無權代理」라는 理論下에서 此를 原則적으로 否認하면서도 社會秩序維持上에 必要한 總督府行政에 限해서는 追認한다는 立論은 過去日本の 帝國主義的秩序論을 認定하게 되는 理論的矛盾에 直面하였다」。

おそらく兪鎮午代表はこうした議論を踏まえて「法理論」上の「複雑な問題」があるので「漠然と兎も角無効を確認したい」と主張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これに対して大野代表は、「旧大韓帝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continuity〔連続性〕」についてはどう考えているかと質問した。兪鎮午代表は「継承したこととなるが、これも伏せてあって触れていない」と応じた⁴¹⁾。この「continuity」の問題についてそれ以上の議論がなく「伏せてあって触れていない」理由はよくわからないが、兪鎮午代表が言う「法理論」上の「複雑な問題」の一つだったと推測される。

大野代表は、「これらの条文は双方に過去を思い出させ、少なくとも日本側には好い印象を与えない」と述べた。その理由として「今日の日本人は何人も併合条約が今も有効であるとは思っていない」という点、法律的には「併合条約の成立とともに大韓帝国は消滅し国際法上の主体ではなくなった。当然、併合条約と共に、それ以前の条約は失効し、併合条約自体も併合の成立と同時に一方の相手方が消滅したのであるから当然にその時失効しているものである。旧大韓帝国が国際法上の主体として国家として消滅している以上、それは大韓民国とは別個のものでその間にcontinuityはない」、「消滅し去っている条約の無効を今更問題とすることは凡そ意味がない」という点をあげた。そして、「韓国側の政治的立場は分からぬ訳ではないが、条約の字面に出すことはどう見ても得策ではないと思う」「平地に波瀾を起こすことは避けてはどうか」と述べて第三条の削除を要求した⁴²⁾。

兪鎮午代表は、「第三条は平地に波瀾を起こすものとは思わない。むしろ過去の波瀾を収める規定である」と述べ、次のように反論した。

一九一〇年以前の条約は国民的に、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いう強い信念・国民感情が

40)76 / 「韓日合邦条約無効論（抄）」對日講和調査準備委員會「對日講和條에 한基本態와 그法근（駐日代表部案）」한일회담 예비회담1951.10.20-12.) 자료집: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195> 『韓國外交文書』

41)同前

42)同前

あるが、それをこの席上で私が強く主張すればこの会談が纏まらなくなる。日本側の立場もあろうし、また当時に遡って無効とすれば種々複雑な問題が生ずる。その点を避ければこの規定によって韓国の国民感情を収め得るし、日本側にとっても別に失うものは何もないので刺激することにならない筈だ [後略] 43)

金東祚代表も、「大韓帝国が大韓民国に継承されるか否かの問題は、国際法上は兎も角、当時の事情は民族の総意に反する併合」だったとし、第三条を入れて「過去の誤りを認めることが両民族の将来のためによいと思う」と述べた44)。

これに対して大野委員は、「政治的見解としては全然解らぬ訳ではないが」と前置きして次のように述べた。

個人間契約の場合は当事者に対する詐欺強迫があったときは契約が無効とされているが、条約締結の場合は国家間の関係であってこの場合は強迫が加えられて成立しても有効であるとされていることはご承知の通りである。日韓併合条約も、成立当時の事情は詳にしないが、国際間に有効適法の条約であったのは疑問の余地がなく、貴国の国民感情は兎も角として、我々現代の日本人は適法の併合であると思っている。45)

大野代表によれば、当時の国際法では、個人に対して「詐欺強迫」があった時は「無効」だが、国家間の関係においては「強迫が加えられて成立しても有効」だとされており、韓国併合条約も「国際間に有効適法の条約」であり、韓国併合も「適法の併合」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つまり、当時の国際法では植民地支配は認められていたのでありなんら問題ないということであった。

第六回基本関係委員会（3月22日）で、日本側より「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友好条約（案）」が提示され、その前文の第三項に「日本国と旧大韓民国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を規制するものでないことを確認するので、[後略]」という文章が挿入された。韓国側は、韓国側草案第三条の条文を前文に入れた点には異議なしとしたが、やはり韓国併合条約以前の条約・協定の「無効確認」を明確にすべきだと主張した46)。

第七回基本関係委員会（3月28日）は、第六回委員会に引き続き、日本側の友好条約研究草案について、韓国側が意見を述べた。しかしこの会議は、1965年6月に締結された基本条約の第二条の内容を考える上でとても重要な会議だった。

特に、第六回会議で提示された日本側草案の前文第三項に「日本国と旧大韓民国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を規制するものでないことを確認するので、[中略]」と表記された点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た。

本国政府から「無効」という字句を是非入れるように訓令してきているが、私は（併合

43)同前

44)同前

45)同前

46)978 「日韓会談第六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要録」 1952年3月22日 『日本外交文書』

条約等が) 始めから無効ということを手張すれば、条約が妥結に至らないであろうと考えて、議論になる点、例えば「いつから」というようなことも一切伏せて、ともかく無効というように表現したのである。この表現ならば、日本側は日本側として一応の説明がつき、韓国側も別の内容になるかもしれないが、説明がつく。であるから、韓国側の案のような表現にしたい。字句は別でもよいが、どうしても無効という意味を表したい。「規制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のでは、一時的の効力停止をも意味するから不十分である。(下線は太田修による、以下、同様)

ここで兪鎮午代表が「議論になる点、例えば「いつから」というようなことも一切伏せて」と言っているが、これは、第五回委員会で大野代表が「無効の時期を明にしなければ、日本側も韓国側もそれぞれ立場で別な解釈が可能となる。この条約が成立した場合、各自の国の議会で説明する必要が生ずる」⁴⁷⁾と異議を提起したことを意識しての回答であった。つまり兪鎮午は、双方の国会ではそれぞれ別の説明をするという考え方を提起したのであった。

それに対して平賀代表は「日本の法律用語として、無効という字句は、最初から無効であるという意味が入るから、ここでは不適當である」と述べたが、兪鎮午代表は「無効の語は民法上は、そのように解されるであろうが、一般的には、そうでないようにも混用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

これに対して大野代表が次のような重要な発言を行っている。

無効という字句を用いるなら、いつから無効であるかをはっきりさせなくてはならないから、「もはや」という字句を加えたい。英語のnowという程度の気持である」「nowとかno longerとか云う語を入れるのでなければ無効という字句は使えない。

結局、この委員会では妥協にはいたらなかったものの、この第一次会談の第七回委員会での議論は重要である。従来、韓国側が提示した「～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 (...are null and void)」に「もはや」という字句を加えて妥協し、「無効」の時期は日韓双方が別々に解釈、説明するという案は、第七次会談において考え出されたものだと考えられてきたが、1952年の第一次会談において提示さ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からである。

第一次会談の最後となった第八回基本関係委員会会議(4月2日)では、日本側によって作成された「共同試案(日韓友好条約案)」について審議され、①条約名称は「基本関係を設定する条約」とする、②前文第三項は「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関係において効力を有しないことを確認する」ことに合意が成立した⁴⁸⁾。しかし、第一次会談が請求権問題で決裂したことにより、この合意は結実せず、議論は1960年代の会談に持ち越されることになる。

2) 第7次会談でのnull and voidをめぐる議論

1953年4月の第二次会談、10月の第三次会談では、日本側の方針に変化が起っている。例え

47)977 「日韓会談第五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952年3月12日『日本外交文書

48)980 「日韓会談第八回基本関係委員会議事録」1952年4月2日『日本外交文書

ば、外務省が作成した4月8日付けの「日韓会談方針（案）」によると、1952年に合意をみた基本関係条約という形式を避け、「ビルマ、インドネシア、フィリッピン等と既に行っている如き交換公文」のような簡単なものとし、そのことによって「従来問題となっていた日韓併合条約等の無効の論議を避け得ることとなる」としている⁴⁹⁾。また10月17日付けの「高裁案 日韓交渉処理方針に関する件」では、「外交関係及び領事関係の設定」等を規定する「簡単な条約」とするという処理方針を決定している⁵⁰⁾。つまり、基本関係条約を「交換公文」「簡単な条約」にすることによって、韓国併合条約等の無効条項は条文に入れないという方針に戻っているのである。これは第一次会談での合意からの後退を示すものだが、この方針は第六次会談まで維持されることになる。

その後、日韓間の基本関係条約問題についての本格的な議論が行われたのは、1964年4月の再開第六次会談においてであった。1964年4月14日付けの外務省の「日韓基本関係問題の処理方針」では、「原則として国交正常化を中心とする、できるだけ軽い形式の文書（共同宣言又は交換公文）」とし、「国会の承認を要しないもの」とする。それは、国会の承認を求める「基本条約」の形式をとると、「旧条約効力問題」も含めるべきだとの議論が出され易いからだとしている。第1次会談では「旧条約効力問題」の挿入を認めたが、「12年以前とは全く異なり、かかる条項を設けることは、理論的にも実際的にも望ましくない」と結論している⁵¹⁾。

また、4月15日に開かれた外務省内での第二回打ち合わせ会議でも、「日本側としてはより軽い共同宣言の形式を主張することが確認され」、「第一次会談における昭27年4月4日付の日本側案（資料10）の形でいつから無効になったかということが出ないものなら差支えないが、なければそれにこしたことはないので、最初の日本側案の提示のときは削除しておくことが決定された。」⁵²⁾

実際に、4月23日に開催された再開第六次会談「基本関係委員会第1回会合」で韓国側の李玟容主査は、「韓国国民感情からみても、基本関係協定は、過去36年間の日本支配を清算し、新しい韓日関係の基礎となるものであるから、旧条約の無効確認に関する事項及び主権の尊重及び不干渉に関する事項が規定されねばならない」と説明したが、日本側の広瀬参事官は「請求権その他の日韓会談の懸案が解決したことを確認し、その上にたって外交関係を設定するという方針、[中略]共同宣言の形式が最もふさわしい」と述べ、「旧条約効力問題」を含まない「共同宣言」の形式を主張した⁵³⁾。

この会談は二回で中断し、その年の12月の第七次会談「基本関係委員会」で討議が本格化することになった。12月10日に開かれた第二回会合で、双方が交換した「기본관계에 관한 한국측 입장 요강안」と「日韓基本条約に関する合意要綱案」が討議のスタートとなった。日本側案は、予定通り「共同宣言」の名称を用いることが表明され、過去の問題には一切言及されてい

49)1050 / アジア局第二課「日韓会談交渉方針（案）」1953年4月8日『日本外交文書』

50)1060 / アジア局第二課「高裁案 日韓交渉処理方針に関する件」1953年10月17日『日本外交文書』

51)1847 / 「日韓基本関係問題の処理方針」1964年4月14日『日本外交文書』

52)1847 / 北東アジア課「日韓会談基本関係問題」1964年4月15日『日本外交文書』

53)448 / 「再開第6次日韓全面会談における基本関係委員会第1回会合」1964年4月27日、北東アジア『日本外交文書』

なかった。

韓国側案には、名称は「大韓民国と日本国間の基本条約」とすることが明記され、「唯一合法政府条項」と「1910年以前の条約協定無効条項」が入れられていた。過去の問題に限って言えば、まず前文に「한. 일 양국관계의 과거의 청산과 상호 주권 존중에 기한 새로운 관계의 수립」を叙述するという項目が際立っていた。

12日に開かれた第三回会合で日本側はさっそくこの点を取り上げ「過去関係の清算に関しては、これを条約や宣言の中で言及することは困難だ」と主張した。日本側の方針では、前文に「過去の清算」について叙述することは容認できない提案であり⁵⁴⁾、その後も受け入れられないと主張し続けた。

韓国側は、翌65年1月27日の首席代表の金東祚が外務部長官に宛てた電文で「1910年以前の諸条約及び協定の無効に関する規定（我方草案第3条）を置くことを前提に、過去の清算を意味する語句を前文に挿入しなくともよい」かどうか問い合わせた⁵⁵⁾。それに対する返信で李東元外務部長官は「我方は基本条約の目的が過去の清算と将来関係の設定という立場を取ってきた。国民にもそのように説明してきた。そのため「過去の清算」という表現がもたらす実質的な利益がなくとも特に国民感情上そのような表現を基本条約の中を含め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したがって基本条約の中に「過去の清算」を意味するものだと国民に説明できる最小限の表現でも規定するよう交渉してほしい」と指示した⁵⁶⁾。これは事実上前文に「過去の清算」を入れることをあきらめたことを示すもので、実際にその後の討議では「過去の清算」問題は取り上げられなくなった。

次に、「1910年以前の条約協定無効条項」については、12月10日の韓国側案に対して日本側は、大韓帝国が消滅したことにより条約が効力を失ったことは明らかなので言及する必要がない点、「違法的方法」によって結ばれたものであるから「無効」だと主張すれば「締結された事実自体が問題となる」点をあげて批判したが⁵⁷⁾、最終的には表現を修正することを前提に受け入れる方針だった⁵⁸⁾。

翌年1月26日の第7回会合において双方は、この会談最初の草案を交換し討議を行った。日本側草案は条約の形式を採用していたが、「1910年以前の条約協定無効条項」は依然としてなかった。韓国側草案の第三条は「It is confirmed that all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 Empire of Korea and the Empire of Japan on or before August 22, 1910 are null and voi

54)日本側仮訳した「基本関係に関する韓国側立場要綱（案）」には「前文（1）」「韓・日両国関係の過去の清算および」の中央に傍線が引かれ、その上に「オトス」と手書きされている（1851 / 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仮訳）基本関係に関する韓国側立場要綱（案）1964年12月10日」『日本外交文書』）

55)1455 / 首席代表の金東祚から外務部長官への電文、1965年1月27日『韓国外交文書』

56)1455외무부장관주일대사보전, 196 2『韓国外交文書』

57)1455한일회기본관위원회1964년 12월 12『韓国外交文書』

58) 日本側仮訳した「基本関係に関する韓国側立場要綱（案）」には「本文条項」の（1）韓国と日本国との間に1910年8月22日およびそれ以前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または協定が無効であるという事実の確認」の「無効である」の部分に「不可」、さらに「効力を有しない」「ならよい」と手書きされている（1851 / アジア局北東アジア課「（仮訳）基本関係に関する韓国側立場要綱（案）1964年12月10日」『日本外交文書』）

d.] だった。韓国側はこれについて、「乙巳保護条約などの無効規定に関してわが方は当初から (ab initio [ab initio-筆者]) 無効という立場から are null and void とした」と説明した。

「are null and void.」という表記は1952年の第一次会談の時から一貫したものである。

ところで、この間の日本の外務省内部の打合せの過程で注目すべき動きがあった。1月7日に作成された「日韓基本関係に関する1964年12月10日の日本側合意要綱案に対する修正案」には、「旧条約の失効については、次の趣旨であれば、基本関係合意に含めることを検討する用意がある。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関係においてはもはや効力を有しないことを確認する」と記されていた⁵⁹⁾。「もはや」を挿入する案がここに初めて出された。正確に言えば、第一次会談で日本側の代表が提案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第七次会談の外務省内部の打合せでは、現在の資料で確認できるかぎりでは、初めて検討されたのである。さらに2月2日付けの草案には、新しく設けられた第5条として「1910年8月22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に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が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においては効力を有しないことを確認する。」が成案されていた。この条文は外務省内部で検討されたらしく、下線部から余白に線を引いて、「null and voidを吞まされた時のためにとっておく。」、さらにその下には「「もはや」は条約局長オトス。」とメモされている⁶⁰⁾。これはそのまま読めば、「もはや」は「null and voidを吞まされた時のために」最後のカードとしてとっておくと条約局長が判断したということになる。また、当面の案として「out of effect / Without effect / Have no effect」のどれかを採用することが提案されたようだ。

2月5日に開かれた第9回会合において、日本側は外務省内部で検討された修正案が韓国側に手交された。この修正案において日本側は、第5条として初めて「1910年以前の条約協定無効条項」が挿入され、文末には「効力を有しないことが確認される。」（「have no effect」）が採用された⁶¹⁾。さらに2月10日付けの草案では「have become null and void.」に修正され⁶²⁾、最後の基本関係委員会第13回会合では、「無効となったこと（効力を有しないこと）が確認される」

「have become null and void. (have no effect)」が提示され、外相会談を目前にぎりぎりまで委員会での討議が続いたが、合意には至らなかった⁶³⁾。

そして18日に開かれた「基本関係問題実務者会議」⁶⁴⁾において、韓国側は旧条約が「are null and void」だという立場を貫いたのに対して、日本側は次のような三つの案を提示した。

가. ...are confirmed (as) null and void now.

59)1851 / 「日韓基本関係に関する1964年12月10日の日本側合意要綱案に対する修正案」1965年1月7日『日本外交文書』

60)1853 / 「未定稿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案）」（1965年2月2日）『日本外交文書』

61)1853 / 「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案）」1965年2月5日『日本外交文書』

62)1853 / 「(Preliminary translation.....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1965年2月10日『日本外交文書』

63)1455 / 한일회기본관위원회19년 2월『韓国外交文書』

64)会議参加者は、韓国側が外務部の延河亀アジア局長、金正泰東北アジア課長、呉在熙条約課長、日本側が外務省の後宮虎郎アジア局長、黒田瑞夫北東アジア課長、中江要介法規課長だった145 / 기본관계문실무회토요196 1『韓国外交文書』

나. ...have been invalidated and are null and void.

다. ...are already null and void.

実務者間の討議の結果、第三案の「...are already null and void.」を双方の上部にあげ決裁を仰ぐことになった⁶⁵⁾。結局、第三案は裁可され、20日にはそれで仮調印され⁶⁶⁾、6月22日には、この小論の冒頭にあげた基本条約第二条が成立したのである。

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韓国政府は1965年8月に開かれた批准国会でこれを「旧韓末のすべての条約はその当初から無効」だと説明し⁶⁷⁾、日本政府は同年11月の批准国会で「併合条約は韓国の独立宣言のときから無効である」と説明した⁶⁸⁾。このような日韓両政府による解釈の相違はその後とも解消されることなく今日まで続いている。

(3) 共通の歴史認識のための試論－無効 (null and void) 論をめぐって

太田修は『日韓交渉－請求権問題の研究』の中で、「韓国側の「旧条約無効確認条項」挿入論は、日本の植民地支配を批判する韓国民の意思・希望・仮定・理解を「吸収」したものであったが、直接的には日韓交渉を有利に進める上での政治的対抗措置としての性格が濃厚であった」、したがって「旧条約無効確認条項」をめぐる日韓両政府の論争は、「官僚主義的な対立であり、植民地支配・戦争の本質とそれによる被害の回復について議論するものではなかった」と論じた⁶⁹⁾。

しかし今日、その考えは修正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韓国側の「旧条約無効確認条項」挿入論には、「日韓交渉を有利に進める上での政治的対抗措置」として側面が見られ、それをめぐる日韓双方の論争は官僚主義的な一面があ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しかしそれよりも、「旧条約無効確認条項」挿入論にこめられた、日本の植民地主義を批判する韓国民の意思・希望こそを重視すべきではない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1905年から1910年にかけて、日本側による種々の協定と韓国併合条約の締結を強制し植民地化を進める過程において、大韓帝国皇帝や知識人、義兵によるさまざまな抵抗運動があったことはすでに先行研究で明らかにされている⁷⁰⁾。また、1919年に大韓民国臨時政府の代表金奎植はパリ講和会議に提出した「臨時政府・韓国独立承認請願書」で「合併条約の廃棄」を主張

65)145 / 기본관계문제 실무자 회의 토의 요 1965년 2월 18 『韓国外交文書』

66)145의무부장관이 주일대사 대리에게 보낸 전 19년 2월 『韓国外交文書』

67)李東元外務部長官의 發言 (『第五十二回国會會議錄第十二号』 1965年8月14日)

68)椎名悦三郎外務大臣の發言 『衆議院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會議錄第8号』 1965年11月1日

69)太田修、前掲書、87、338頁。なお吉澤文寿は、太田の「政治的対抗措置」という点について次のように批判している。「太田の(二)の議論について、若干の疑問を抱かざるをえない。...韓国政府は、少なくとも建国当初から、日本の植民地支配を「理論面」では認めていなかった。したがって、韓国政府の主張は「交渉技術としての政治的対抗措置」である以前に、朝鮮民族にとって解放以前から観念されてきたもの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この点については大韓民国臨時政府が唱えていた日帝「強占」論なども含めて、より歴史学的な考察が必要だろう。」(吉澤文寿、前掲書、43～44頁)

70)李泰鎮、康成銀召기、李宗鉉らの研究を参照(笹川紀勝・李泰鎮編『国際共同研究 韓国併合と現代－歴史と国際法からの再検討』明石書店、2008年)

し、1941年には重慶にあった大韓民国臨時政府の対日宣戦布告として知られる「対日政府声明書」には「1910年の合邦条約および一切の不平等条約の無効」が宣言されている⁷¹⁾。

こうした歴史事実から1910年韓国併合条約及びそれ以前の諸協定が無効だとする訴えには日本の植民地支配への批判と抵抗の意思がこめら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植民地支配批判としての旧条約無効論を継承した韓国政府は日韓会談においてそれを主張した。さらに旧条約無効論が、植民地支配下での「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の向上」を唱える日本政府および日本人の植民地主義に対する韓国人の批判の表明だったとするならば、旧条約無効論は重要な検討課題だと言わざるをえない。言うまでもなく旧条約無効論は植民地主義批判という点から再検証されねばならない。

しかも先にふれたように、植民地支配がいつに始まったかという、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認識が異なったままで共通の認識が存在しないことは、朝鮮半島と日本の未来にとって好ましいことではない。なんとか共通の歴史認識をつくるべく努力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考える。

さて、日韓基本条約第二条問題を考えるために、1910年の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諸協定の歴史的評価をめぐって李泰鎮氏や海野福寿氏らによってなされた論争についても言及しておく必要がある。その論争の概略はおおよそ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李泰鎮氏が日本の雑誌『世界』の1998年7・8月号に「韓国併合は成立していない(上・下)」を書いて論争が始まった。李泰鎮氏は1992年に奎章閣で第二次日韓協約(乙巳保護条約)調印書を発見して、併合条約締結にいたるまでの関連所協定の締結過程を再検討し、「関連協定の文案作成と手続き上」の不備・欠陥を指摘し、韓国併合条約および関連書協定は成立していないと結論した。そして、「不法性に対する論議がこのように併合自体が成立していないということから始められるならば、基本条約の「もはや無効」の時期に対する論争は、これ以上続ける必要がない」と述べている。

それに対する国際法学者坂本茂樹氏による反論、さらに坂本氏に対する国際法学者笹川紀勝氏の反論が掲載され、旧条約無効問題をめぐる論争は拡大した⁷²⁾。

李泰鎮氏の「不成立論」に対して歴史学の立場から本格的な反論を行ったのは海野福寿氏だった。海野氏は1999年の『世界』10月号に「李教授「韓国併合不正立論」を再検討する」を発表して、李泰鎮氏が不成立論の根拠とする条約の形式、全権委任状の欠如、第二次日韓協約の表題、高宗の批准の欠如を批判し「やはり不当ではあるが、旧条約は法的には有効に締結され、日本は韓国を併合し植民地とした」と結論した。そして「もし条約無効=植民地支配不法ならば、謝罪・賠償をしなければならぬが、もし条約有効=植民地支配合法ならば、謝罪・賠償をしなくてもよい、という排中立的な論理は、「過去の清算」に果たして有効かどうか疑問に

71)海野福寿『韓国併合史の研究』岩波書店、2000年、3～9頁

72)それに対して国際法学者の坂本茂樹氏が「日韓は旧条約問題の落とし穴に陥ってはならない—本誌・李泰鎮論文へのひとつの回答」を書き反論し(『世界』1998年9月。坂本氏は、国際法の立場から、当時の国際法が禁じていた「国の代表者に対する強制」であることを論証できず「無効とまではいえない」こと、形式の面からも当時の国際法にてらして無効だとはいえないと述べた。これに対して笹川紀勝氏は、国際法において国の代表者への強制と国家への強制をめぐって論争が行わ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さらなる検証の必要性を訴え(笹川紀勝「日韓における法的な『対話』」をめぐした)『世界』1999年7月

思われる」としている。

その後も両者の論争は、国際シンポジウムや、海野福寿氏の『韓国併合史』（2000年）、李泰鎮氏編著の『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など公刊された論文・著書などで続けられ、これに原田環氏、康成銀氏など歴史学者が加わって現在も続いている。

この旧条約の不法・合法論争によって、韓国併合条約が締結されるまでの諸協定の締結過程における歴史事実がかなり詳細にわかるようになり、国際法の側面からの議論もより深いものになった。その点でこの論争は大きな意義を持ったといえる。しかし、旧条約の不法・合法論争は、その名称が示すとおり当時の国際法に基づいて旧条約が不法であったのか、合法であったのかを論ずるものであり、当時の国際法をどのように解釈するかの問題であった。したがって、双方が歩み寄るためには、当時の国際法に対する理解を一致させることが必要となり、それはそれほど簡単なことではないと思われる。当時の国際法という基準からみるのではなく、植民地化されていく過程を歴史としてどのように考えるのかということが重要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こで今回公開された日韓会談関連の新資料の内容をもう一度検証してみよう。すでに紹介した通り韓国側は第一次会談で旧条約が「無効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are null and void）」という草案を提示した。兪鎮午が述べたように、「法理論を貫くときには実際には複雑な問題が起るので、法理論はさて置き、兎に角無効」としようとするものだった。...are null and voidは、「いつから」というようなことも一切伏せて、とにかく無効というように表現した」ものだった。1965年2月の韓国国会では、野党民政党の姜文奉議員は、「null and void」について「単に無効というだけで遡及して無効とする意味はない」という「Black's Law Dictionary」の説明を紹介して政府解釈の誤りを鋭く指摘していた⁷³⁾。今日においても、...are null and voidは時間的な制約を含意する用語ではない⁷⁴⁾。したがって韓国側の草案...are null and void自体がいつから「無効」となったのか時間を限定するものではなく、「無効である」ことを表す以外のものではなかった。韓国側が第一次会談で提示した草案自体が妥協案だったのである。

それに対して、植民地主義を清算するどころか植民地支配に言及が及ぶことすら避けようとしていた日本側は、無効の時期を大韓民国樹立の時期と解釈するための用語「もはや」を入れることを韓国側に迫ったのである。こうして1965年の基本条約の枠組みがすでに第一次会談において提示され、ほぼ合意するところとなっていた。

くわえて第一次会談での討議で浮き彫りになった、より重要な点は、日本の植民地主義がよりいっそう明白になったことと、韓国側が、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の締結

73)姜文奉議員によると、“Blacs Law Dictionarの1216頁を見れば、「null and void」という用語は、「The words null and void, When used in a contact or statute are often construed as meaningVoidabl」と定義されているという（『第四十八回国會會議録』第二,韓国国会事務,196년월2

74)1991年版の“BLACS LAW DICTIONARY”では、「Null and void」は「Naught; of no validity or effect. The words when used in a contract or statute are often construed as meaningvoidableNull and voi means that which binds no one or is incapable of giving rise to any rights or obligations under any circumstances, or that which is of no effect.」と説明されている。東澤靖弁護士、二関辰郎弁護士の教示による

が朝鮮民族の「意思に反して行なわれたもの」であり、「民族の総意に反する併合」だったので、「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解釈すべきだと主張したことである。韓国側は、そうした理解は韓国民の「強い信念・国民感情」だと強調していた。

1949年に作成された『対日賠償要求調書』の序文「対日賠償要求の根拠の根拠と要綱」では、賠償を求める「基本精神」で「(一) 1910年から1945年8月15日までの日本の韓国支配は、韓国民の自由意思に反する日本の一方的な強制的行為であり、正義・公平・互恵の原則に立脚することなく、暴力と貪欲で支配した〔後略〕」⁷⁵⁾と述べられている。こうした「強制的行為」「暴力と貪欲」による支配だったという認識が、「民族の総意に反する併合」であるゆえに「当時に遡って無効である」という第一次会談での主張を導き出した。そういう意味で、第一次会談での韓国側の主張は「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だったと言えよう。また、この「無効論」は、1919年に金奎植がパリ講和会議に提出した「臨時政府・韓国独立承認請願書」や1941年に重慶の大韓民国臨時政府が出した「対日政府声明書」の内容と合致するものである。

韓国併合から100年目を目前にして、日本と朝鮮半島の人々の間に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の認識が存在しない状態が続いているが、この機を共通の歴史認識を築く年にす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こで試論として、韓国併合条約締結の結果、植民地支配が行なわれたことは動かしがたい歴史事実だとした上で、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は、強制的・暴力的に締結されたがゆえに、当初から無効だと解釈するという案を提示したい。つまり、これまで韓国政府が主張してきた「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を共通の認識にするという案である。

このように日韓で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認識をもった上で、将来締結される日朝基本条約案を考える必要がある。日朝基本条約は、日韓基本条約の枠組みを踏襲したものになることが予想されるが、日韓基本条約第二条にあたる条文は、この「強制と暴力による源泉無効論」にもとづく内容に変更した方がよいだろう。

一つの試案として、日韓基本条約第二条の文末のare already null and void.からalreadyを削除し、are null and voidとする。そして解釈は、韓国併合条約およびそれ以前の関係諸協定は、強制的・暴力的に締結されたがゆえに源泉的無効だとするのである。

以上はあくまでも現時点での試論であるが、今後、日韓の市民の間で植民地支配の始まりの歴史についての共通認識をもち、それをもとに朝鮮民主主義共和国の人々との間にも共通の歴史認識を作りだす必要があろう。当然ながら日朝基本条約はその歴史認識が反映されたもの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今後議論を深めていく上で以上の試論が参考になればよい。

2. 請求権問題

(1) 論点の整理

1990年代初めに韓国側の外交文書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から、日韓間の請求権問題に関する

75)大韓国外務部政務局『対日賠償要求調書』1-ただこ『対日賠償要求調書で, 우리乙의을 際法으로 弁할 수도 있고 또카이포쓰의 宣의를 闡하여 日의 過三十六年의 支를 非合法的統로 烙하는 同에 其에 被입은 龍하고 도 無한 損에 하여 賠償을 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日賠償要求基本精에 비추어는 全然不에 부치는 마이として おこ時で「無効」採されていなかっ

研究が進み、本格的な研究がある程度蓄積されてきた。佐々木隆爾、李元徳、高崎宗司らの研究は韓国側の外交文書を使った初期の研究であり、1990年代末から太田修、吉澤文寿らが請求権問題に取り組んだ。その後、2005年にあらたに韓国外交文書が公開され、2006年から08年にかけて不十分ながら日本外交文書も公開され、資料状況は大幅に改善された。今後、そうした新しい資料に基づいて研究が進められ、よい深い議論が展開されていくものと思われる。今回のシンポジウムもその一環であるが、新しい研究を始めるに際して、今後、請求権問題の何をどのように解明していく必要があるのか、その論点を簡単に整理しておきたい。さしあたって以下のような4つの問題を明らかに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ている。

第一に、1965年に締結された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中心概念である「請求権」とはいかなるものだったのか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はまず、日韓会談で財産請求権問題を討議する根拠となっ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4条a項に規定された「請求権」について論究する必要がある。特に日本政府が、当時の国際情勢および国際法の下で世界基準としての「請求権」をどのように認識し日韓会談で討議したのか、またそれらが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をどのように規定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か、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今回公開された新資料で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草案過程における日本政府内部での検討作業、理解、行動などを記した記録類が重要である。

第二に、日韓両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を究明することである。これもとりわけ日本政府および日本人の認識、理解を明らかにし、それを抉り出すことがより重要となる。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枠組みの決定に最も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のは、日本側の植民地支配認識だったと考えられるからで、それをより具体的に説明する必要がある。その説明は同時に、当時の世界基準としての植民地主義をも批判するもの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そのためには主として、日本政府内部の議論を記した省庁間、省内「打合せ議事録」、請求権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基本方針などの資料類に注目すべきだろう。

第三に、日韓両政府が特に個人の植民地支配・戦争被害をどのように認識し、交渉の場で討議していたのかを再検討することである。過去の清算のための要素である、①被害と加害の真実究明、②①に基づく責任の追及、③①と②に基づく謝罪、④被害への補償、⑤追悼と記憶（記録の保存、教育）、のそれぞれが日韓会談においてどこまで検討され実施されたのかを確定する必要がある。

第四に、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の条文作成過程および日韓両政府による国内法の成案の経緯を再検証することである。先行研究では、1962年の金・大平会談とその前後の実務者会談での討議内容はある程度検討されてきたが、特に1965年に、財産請求権経済協力協定第2条第1項の「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文言が成案される経緯についての検討は充分になされたとは言いがたい。また、2005年1月に公開された韓国外交文書の中に、韓国政府が個人請求権保有者に対して「補償義務を負う」という資料が発見されて注目されたが⁷⁶⁾、それがどのような経緯で検討され最終的に裁可が下され、1970年代の韓国政府の「対日民間請求権補償法案」などの制定につながっていったのか明らかでない。

76)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 조(외무부 장관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보낸 전문, 1964년 5월 8일속개 제6차 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723.1JA/76 『韓国外交文書』 (2005年1月17日公開分)

日本国内においても、「財産請求権及び経済協力協定」第2条第1項の請求権消滅の実施に伴う国内法案を作成する準備がなされ、「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第二条の実施に伴う大韓民国等の財産権に対する措置に関する法律」（法律第144号）が日韓条約の批准書交換式がソウルで行われる前日の1965年12月17日に公布されたが、この国内法の成案過程も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

これらすべての論点についての検討は今後の課題とすることにして、この小論では私がこれまで読んだ資料をもとに第一と第二の論点について考えてみる。

（2）新しく公開された資料

1) 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国際法上に謂う分離」

おもに2006年から2008年にかけて新しく公開された日本外交文書を読み、1950年代日韓会談開始前後の時期に日本政府が「請求権」を理論的にどのようなものとして設定し日韓会談に臨んだのか、検討しておきたい。

まず、日韓会談開始以前の日本政府の認識が理解できる資料として、1949年3月に作成された「朝鮮における債務の処理について」という文書が重要である。その中に「朝鮮の独立」について次のように記述されている。

日本による朝鮮の併合は、日本と当時の朝鮮政府との間の併合条約に基いて適法に行はれたものである。従って今次朝鮮の独立は国際法上に謂う分離の場合である。/分離の場合の相続に関する国際法上の規定は、未だ確立した点が少く、その都度条約等により取極め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⁷⁷⁾。

この文書によると、「朝鮮の併合」は「併合条約」に基いて「適法」に行われたので、「朝鮮の独立」⁷⁸⁾は「国際法上に謂う分離」だという理解である。「朝鮮の独立」は、日本の植民地支配から解放され新しい国家が樹立されたことにより達成されたというのではなく、植民地支配からの解放という認識を欠いた「国際法上に謂う分離」だと認識していることが重要である。後の日本政府による「請求権」概念と「請求権」問題への基本方針は、「国際法上に謂う分離」だとの認識から導き出されたと考えられる。この「国際法上に謂う分離」は連合国の地位とは厳格に区別され、「日本と朝鮮との間には戦争関係はなかったのであるから、朝鮮は連合国の地位を持つものでもなく、又日本に対して戦争賠償要求をすることも出来ない」とされる⁷⁹⁾。

朝鮮の解放および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樹立を「国際法上に謂う分離」だと

77)1559 / 「朝鮮における債務の処理について」（昭24.3、外、管、経）1949年3月『日本外務省文書』

78)文書中の「朝鮮の独立」とは、朝鮮半島での新しい国家の樹立、つまり1948年の大韓民国、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樹立をさすと推測される

79)ただし、「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ことだけでは韓国側を説得できないと考えたためか朝鮮側には、日本の併合は不当に行はれたもので、日本は統治間の損害を賠償すべしとの、現状恢復的の意嚮が看取せられるから、（注一）両国間の実際の処理に当っては、かかる政治的見地も若干考慮に入れられるであろう」と付言されている。

いう認識に基いて、「請求権」概念の枠組みが設定されることになる。1952年に作成したと思われる「日韓請求権問題に関する分割処理の限界」では、日韓間の請求権問題について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る。

今回の桑港条約による朝鮮の独立承認については、朝鮮は日本とは戦争関係になかったのであるから、もとより賠償問題の生ずる余地はなく、従って両国間の請求権問題は単なる領土分離の際の国の財産及び債務の継承関係として取り扱われるべきものである⁸⁰⁾。

当時の国際情勢および国際法の下で日韓は戦争関係になかったので「賠償問題」は生ずる余地がないという考え方は、他の資料にも見られ知られている。この資料で注目すべきは、日本政府が寄って立っていたのは「単なる領土分離」、つまり先の資料の「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考え方であったことである。当然ながら、植民地支配に対する賠償というような考え方がそこに入り込む余地はなかった。

ただしここで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1950年前後において日本政府が植民地支配について意識もせず植民地主義批判のようなものをまったく想定していなかったわけではなく、むしろ逆にそれらをかなり強く意識し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例えば、日本政府の植民地支配認識に理論的根拠を与えたことで知られる鈴木武雄「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反省と反批判－」は次のように書いている。

日本の朝鮮統治が只管に帝国主義的植民地支配と搾取とに終始したといふ見解が内外に支配的であることは、今次終戦まで二十年間朝鮮に在住した一日本人として私の頗る遺憾とするところである。(中略)特に日本の朝鮮統治が欧米強国の植民地統治にも勝って朝鮮人を奴隷的に搾取し、その幸福を蹂躪したといふ論告に対しては正当な抗弁の余地がある⁸¹⁾。

また、すでに紹介したように、日韓会談予備会談が始まった直後の1951年11月に作成された「日韓基本関係調整交渉について留意すべき事項」でも、次のような基本方針を取り決めていた。韓国側が、日本による朝鮮植民地支配が「搾取的植民政治」であったとの基本的態度をもって日韓会談に臨んでくると予測し、日本側は「原則論としてかかる態度を論破する要」があり、「日本の朝鮮統治下における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の向上の実際面を具体的に説示した一般的なステートメントを準備し置く要あり」。

これらの資料からもわかるように日本政府は、日本の植民地支配を批判する見解が日本・世界を問わず「支配的」な状況があることを意識し、日韓会談においても韓国側が植民地支配を批判してくることを十分に想定していたのである。その上で、日本政府が拠り所としたのは、意図的に植民地主義批判を欠落させたとしか考えられない「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世界基

80)1300 / 「日韓請求権問題に関する分割処理の限界」(右下に27の数字、1952年作成か?)
『日本外交文書』

81) 鈴木武雄「朝鮮統治の性格と実績－反省と反批判－」(1947年末に作成か)大蔵省管理局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通巻第十一冊 朝鮮篇第十分冊、1951年(小林英夫監修
『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 第五巻 朝鮮篇4』ゆまに書房、2000年)

準だ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もし「朝鮮統治」の評価について韓国側と論争になった場合は、「韓国人の経済生活、文化生活の向上」があったことを、「外国のコロニアリズムとの比較」を示して訴え、韓国側を「論破」しようとしていたのである。

2) 日韓会談での交渉方針

次に日本政府は、以上のような植民地支配認識、「請求権」概念をもって、日韓会談でどのように交渉し「請求権」問題を処理しようとしていたのだろうか。

a. 「相互放棄」論の台頭

1956年にまとめられた文書「朝鮮問題（対朝鮮政策）」（昭和三十一年二月二十一日、亜五課）⁸²⁾に、1951年の日韓会談予備交渉が開催される直前頃の初期方針についての叙述がある。まず、その中で注目されるのは以下のような部分である。

二、対韓政策の大綱

[中略]（四）、文化的、経済的分野における緊密なる協力が日韓両国の共存共栄のための不可欠の要件である所以を韓国政府に十分認識せしめるに努める。/ 韓国側の右認識到達の度合いを見合って、わが国は米国側と十分に協議を遂げ、物心両面からする及ぶ限りの協力を行い、経済復興と生活水準の引上げを図り、もって韓国政府が共産主義勢力の浸潤を防ぐ基盤を作ることに努力する。 [中略]

三、対韓具体的方策

よって、わが方は日韓予備会談に臨む具体的方策として、次の諸項目を策定した。[中略] / （3）韓国の復興及び民生のために必要な物資の供給に関しては、米国の了解と援助の下に商品借款の供与を約束すること。

米国側との「協議」「米国の了解」のもとで、韓国の「経済復興」のために経済協力を行っていくという点が強調されている。

さらに、日韓会談では請求権問題と漁業問題において最も論議となることが予想され、特に請求権問題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な方針で対処するとされる。韓国側は日本による朝鮮統治は「搾取的植民政治」であったとの認識から「凡百の事項にわたる巨額の対日請求を提示し来るべきこと」が予見されたので、日本側は韓国側の「請求権に比して、はるかに膨大」な在韓日本財産に対する請求権を主張することにした。しかし、韓国側はそれに応じる可能性はなく、またそれは「バーゲニング・ツール」以上の意味を持たないので、以下のような段階で対応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

（1）、日本人所有にかかる財産権についてその正当性及び有益性を鑑別し、わが方が今後与うべき技術的、経営的援助と組合せることが適当と認められるもの、又は右財産権に基く経営を日本人に委ねる方が能率をあげ得るものは、これを日本人に返還することが両国の合作の大義に合致すべきことを提案する。

（2）、先方が、右に 応ぜざる場合は、双方の請求権を放棄し合い、両国国交の再出発を

82)67 / 「朝鮮問題（対朝鮮政策）」昭和三十一年二月二十一日亜五 『日本外交文書

円滑にするよう提案する。

(3)、右にも応ぜざる場合に至り、両国混合の調査委員会を設置して調査に着手することを約束し、問題の解決を持越す。

(1)の「返還」の可能性は小さいと想定されていたとすると、現実的には(2)の「双方の請求権を放棄し合」うという方法が模索さ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結果的には、(3)の委員会を設置して調査に着手し「問題の解決を持越す」という方法にそって処理が進められていくことになるのだが、ここでは請求権の相互放棄論が提起されていたことが重要である。

さらに1951年12月に作成された「財産、請求権処理に関する件」(二十六、十二、十、亜二)83)では、請求権問題への対処方針が次のように固められている。

およそ韓国側が膨大な在鮮日本資産を手中に収めつつなお日本側に対し諸種の請求権を提起することは不公正極まることであるのみならず、請求権処理問題を各項目毎に折衝することは極めて複雑且つ苛烈な論争を誘致し、日韓関係の再出発に暗影を投ずることとなるので、わが方としては相互に一括放棄する建前をもって終始すべく、そのためには在鮮財産に対する前述のわが方の立場を固守することが肝要となろう。

請求権問題を各項目ごとに折衝すれば「複雑且つ苛烈な論争」を引き起こすので「相互に一括放棄」することとし、それを貫くためにも在韓日本財産に対する請求権を主張し続けることが重要だとしている。強調点は後者の在韓日本財産に対する請求権の主張を固守することにあつたと言える。

周知の通り、第一次会談で日本側は在韓日本人私有財産請求権を強く主張した結果、「相互に一括放棄」する方向に進むこともなく対立は激化し決裂した。第一次会談が決裂した後、外務省は次のように方針を検討している。

[前略] 請求権に関するわが方従来の方式は必ずしも問題の最終的解決とならないとすれば、次に考えられるのは相互放棄乃至相殺方式である。 [中略] なお、この方式による時は、請求権者に対する国内補償の問題が残るが、本件は桑港条約第十四条および第十六条による在外資産について同性質のものであり、補償問題全般が取上げられる際に考慮されるべきものである。84)

ここでいう「従来の方式」とは在韓日本人財産請求権を主張することであるが、それが「問題の最終的解決」とならないとすれば、次に考えられるのは「相互放棄乃至相殺方式」だとしている。ただし、資料の後半部分に記されているように、請求権を「相互放棄」することになれば在韓日本人財産に対する「国内補償の問題」が起こってくるため、第一次会談決裂後の時点では大蔵省側が「相互放棄」案に反対していたが85)、第三次会談直前頃には大蔵省も「相互放

83)536 / 「財産、請求権処理に関する件」(二十六、十二、十、亜二『日本外交文書

84)1303 / 「日韓国交調整特に請求権問題について」(27.11.10、外務省アジア局第二課、『日本外交文書

85)657 / 「請求権問題外務、大蔵打合せ会」(27、7、22)『日本外交文書』

棄」案に接近したようである⁸⁶⁾。こうして少なくとも三次会談直前には日本政府の基本方針は「相互放棄」論に収斂していったのである。

「相互放棄」論が確定していく過程でもう一つの見逃せない日本側の動きがあった。例えば、1952年の第一次会談開始の直前に「請求権問題会談の初期段階における交渉要領」（昭二七、一、二三、アジア二課）⁸⁷⁾が作成されているが、その第三項は次のようなものである。

（三）なお、右請求には確実な証拠資料の添付を求める。これは先方に法外な請求を自制さす効あるのみならず、先方は戦乱の結果資料を欠くので我方に有利である。

「確実な証拠資料」の添付を求めるという戦術であるが、それは韓国側の「法外な請求を自制さす効」があるだけでなく、韓国側は朝鮮戦争で資料を紛失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ため日本側に有利だということである。1953年の第二次会談直後の時点で外務省と大蔵省が合同で開いた「請求権問題打合せ会」でも「イデオロギー的」なことは言わずに「実際的な問題から入って」いくこと、「原則論で対立しては納まらない」ので「実際的にやって崩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としている⁸⁸⁾。

これらの資料から、1960年代の日韓会談で日本側の大きな交渉の武器となった「事実関係」の確定という方法が韓国側の請求権を「崩して行く」のに有効な戦術となる、ということがすでに第一次会談の頃から検討されていたことがわかる。

以上の日本の植民地支配認識および「請求権」概念、それに基づく初期日韓会談での請求権問題への対処方針について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日本政府は「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植民地主義批判を欠落した世界基準とも言うべき考え方によって、日韓間の「請求権問題は単なる領土分離の際の国の財産及び債務の継承関係として取り扱われるべきもの」だという「請求権」概念を導き出した。そうした植民地支配認識および「請求権」概念に基いて、日韓会談での請求権問題への対処方針として、両国の「財産及び債務」を「相互に一括放棄する」「相互放棄」論を確定し、具体的な請求権項目の交渉においては「確実な証拠資料」の添付を求めることによって韓国側の請求権を「崩していく」という官僚主義的な方法が検討されていたのである。

今後の課題として、「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植民地主義批判を欠落した世界基準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その際に、日本政府が拠り所としていた「国際法上に謂う分離」という世界基準が「世界基準」であったがために免罪されるのではなく、日本政府の認識・方針とともに「世界基準」をも同時に批判していくことが必要だろう。

86)657 / 「請求権問題外務、大蔵打合せ」（1953年10月8日）『日本外交文書』

87)537 / 「請求権問題会談の初期段階における交渉要領」（昭二七、一、二三、アジア二課）『日本外交文書』

88)657 / 「外務大蔵第二回請求権問題打合せ会」（1952年7月26日）『日本外交文書』

안개 속으로 사라진 ‘한일회담’ 속에서의 ‘개인 청구권 문제’

이양수

(李洋秀, 日韓會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會 사무국차장)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의론되면서도 결국 결착을 보지 못했던 개인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나 독립 축하금으로 변해 갔는가, 또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갔는가를, 이번에 공개된 일본 측과 한국측 문서 원문을 참조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1. 회담이 시작하기 전에 한국측이 준비한 대일 배상 요구

한국측이 요구한 금액이 한일회담 석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한국측 문서 87의 163-166쪽입니다.

1949년4월7일 한국 외무부 정무국이 점령군 사령부에 제출한 [대일 배상 요구 일람표] 중

제1부 [현물 반환 요구의 부]

1. 지금 250톤, 2억8천만불
2. 지은 89톤, 596만6250불
3. 서적 212종류
4. 미술품 및 골등품 827개 기타
5. 선박270척
 - (1) 재일본 한국적 어선 91척
 - (2) 일반 어선 20척, 463만1690불(1,973만1,000엔) 전부 침몰
 - (3) 특수 어선 108척, 7,246만5,963불(3억870만5,000엔)
 - (4) 해사 화물선 48척, 18억4,417만8,404불(78억5,620만엔) 대부분 침몰
 - (5) 한군 군함 3척 강탈함

6. 지도 원판(숫자 생략)

7. 기타 조선측 은행 해외점포 동산, 부동산 190만2279불(810만3,707엔),
조선 전업(電業)회사 동경지점 사택 관계 4만5563불(19만4천엔),
섬진강 발전기 1대, 경성 전기회사 동경지점 비품 5,408불(2만3,089엔)

제1부 현물 총계 22억919만5,557불

(이 표의 마지막 환산율 4.25:1에 의하면 약93억8,908만800엔)

제2부 확정 채권 174억2,936만2,305엔

1. 일본계 통화 15억1,413만4,098엔
2. 일본계 유가 증권 74억3,510만3,942엔
3. 상해 달라 匁 (400만불)
4. 보험금, 은급, 기타 미수금 64억3,661만7,521엔
5. 통신 관계 특별 계정 20억4,350만6,744엔

제3부 중일 전쟁 및 태평양 전쟁에 기인한 인적 물적 피해 121억2,273만2,561엔

1. 인적 피해 5억6,512만5,241엔
2. 물적 피해 113억2,602만2,105엔
3. 8·15 앞뒤 일본 관리들의 부정 행위에 의한 손해 2억3,158만5,215엔

제4부 일본 정부의 저가격 매수에 의한 손해

1. 강제 공출에 의한 손해 18억4,777만437엔

요구 총액(제1부 제외) 314억97만5,303엔 = 73억7,112만970불

(1불 = 4.25엔으로 계산되고 있다. 제1부를 보태면 **95억8,031만6,527불**. 같은 환산율 4.25:1으로 계산하면 **약407억1,634만5000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쩐지 원문에는 이 합산 금액의 숫자 기재는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동년 6월 23일**자로 7월18일에 받은 답변 내용은 “극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연합국들 사이에서 협정되는 조약에基해서 **적당한 시기에 고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문서 87의 171-172쪽에서는. 전술한 제1부 ‘현물 반환 요구의 부’에 보태여, 제2부 ‘확정채권의 부’, 제3부 ‘중일 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피해’, 제4부 ‘일본정부의 저가격 수탈에 의한 피해의 부’를 보충해서, **1949년 9월**에 ‘대일 배상 요구 조서’를 완성시킵니다. 거기에는 일본 엔과 미국 달러로 숫자가 각각 나와 있으며, 그 총액은 미국 달러로 **94억 4,503만 618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환산율 4.26:1에 의하면 **402억 6,215만 3,800엔** 상당) 그러나 이 금액이 한일회담 안에서 일본 측에 제시된 일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비되는 일본 측 자료로서 제6차 공개 1171의 1627, 1951년10월 외무성 아세아 2과가 발행한 ‘일한 양국 간의 기본 관계 조정에 관한 방침’ 7~8쪽에는 “우리측이 갖고 있던 재조선 재산이 방대함을 감안해서, **한국측의 대일 청구는 원칙적으로 일체 포기시킬 것**”이라는 지시가 보입니다.

2. 회담 당초 한국측 요구액은 50억엔 내지 180억엔

1952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8번에 걸쳐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분과 위원회가 열렸으나, “金溶植의 회고에 의하면 한국 측은 이 교섭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오오타 오사무 저 『일한 교섭-청구권 문제의 연구』 8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구체적 숫자의 제시없이, 법 이론만을 가지고 의논이 계속 열을 띄었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일본 측 문서 72 **외무성 북동 아시아과 제작 문서 1958년10월16일** 「일한회담의 문제점」에는 한국측이 요구한 금액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어찌서 이렇듯 뻔한 거짓말을 김용식이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론 불명합니다. 외교 교섭이란 것은 그냥 믿고 받아 드리면 안된다는 정도일까요? 원문을 그냥 인용하겠습니

다.

1쪽 한국의 대일 재산 청구권에 대해서

1. 재산 청구권(2.문화재와 3.선박은 생략)

- (a) 금차의 일한 전면 회답에 있어서는(1958년의 제 5차 회답), 한국측의 사정에 의해서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측의 요구 내용도 그 금액도 알 수 없다.
- (b) 과거의 제1차 - 제3차 회답에 있어서 한국측이 제출한 요구 항목에 대해, 우리측이 추정에 의해 요구액을 시산한 바에 의하면 일단 180억엔(아주 드문 일본 측의 계산)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으나, 본래 이것은 다만 개산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측의 요구 항목은, 한국측이 1952년2월 우리측에 제시한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안에 제시되고 있으나, 요약하면
 - (1) 종전시에 조선 총독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이들 채권은 한국 정부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약20억엔)
 - (2) 한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던 일본 법인의 재일 재산(예컨데 조선 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등록 국채 50억엔 등이 포함된다.)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제한 재산의 몰수에 의해 이들 법인의 주주권이, 한국 정부에 이전해서 이들 법인이 한국 법인이 되었다는 근거에 서는 것으로 생각됨. 약90억엔)
 - (3) 한국 국민이 소유하는 일본의 국채, 공채, 주식, 일본 은행권의 결제(약50억엔)(국채, 공채의 대부분은 제한 일본 재산을 몰수한 결과로서 한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각되어 있으나 현존하는 한 상황에 응해야 한다는 의논도 있다),
 - (4) 기타 한국에서 운반해 간 자금, 지은의 반환 및 종전후 조선 총독부 특별 회계에 의해 대일 이송된 자금의 반환(약10억엔)이 주로 된다.
- (c) 위의 외, 한국측이 정식제시를 유보하고 있는 청구 항목(예컨데 강제 철거, 강제 공출 및 疎開에 의한 피해라든지 무역 보상금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올려져 있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불명)이 있고, 위의 개산 금액은 한국측 계산에 의하면 150억엔이다.
이하 먹칠된 부분의 뒤, 다음쪽은 불개시.

그러나 얼마 일본 측이 추정해서 요구액을 시산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180억엔, 또 한국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개산 금액 150억엔이라는 금액과 그 이전에 한국측 내부에서 검토되어 있었던 금액 95억8,031만 6,527불 = 약407억1,634만5,000엔이나 94억4,503만7618불 = 402억6,215만3,800엔과 비교하면, 한국측이 현실로 요구한 금액은 대폭 후퇴하고 있었던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 태도는 강경하며, 3월6일의 제5차 회의에서는 **‘제한 일본인 사유 재산 청구권’을 강하게 주장해서, 4월25일에 1차 회답은 결렬해 버립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재개된 제2차 한일회담에서도 구체적 금액의 명시는 없었으나, 1953년 6월 15일에 열린 청구권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각항목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실체가 명백히 되는대로 **반환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행할 것으로 합의를 보았음**”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측 문서번호92의 41-43페이지.

- 기 1. 한국 국보(중략)
2. 태평양전쟁중 피동원자의 미청산 계정에 관하여는 전체적 숫자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으나, 5월말일 현재로 공탁된 액수는 좌기와 여히 또 1인에 대한 계산의 기준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부양 수당에 관하여는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 한하여만 지불할 것이라 하였음.
 - (1) 육군관계 해당자/복원자 40,415명, 전사자4,087 공탁금 24,770,720엔(일화)
 - (2) 해군 관계 해당자 49,252건, 공탁금 53,402,000엔(일화)
- 3.유골 柱수
 - (1) 해군관계 보관분 2,672주, 기환송된 것, 전단 2,677주, 후단 7,422주
 - (2) 육군관계 보관분 1,448주,
4. 한국인 소유 유가 증권(주식 국채)에 관해서는 상호 자료를 대조하여 숫자적으로 실체를 밝혀서, 이에 대해서도 담당 사무자 회합을 구성하기로 했음.

이렇게 확실한 숫자가 나와 양쪽이 합의까지 한 예는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이 제2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제1-3차회의의 회의록(1953.5.11~6.15)은 일본 측이 공개한 6만페이지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부분 개시도 아니고 불개시도 아니며 완전히 말소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도 공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구보타 망언을 뒷받침하는 면밀한 계산에 의거한 일본 측의 요구

그러나 1953년10월15일에 열린 제3차 한일회담 제2차 청구권 분과 위원회에서 있었던 소위 구보타 망언, 즉 “한국이 배상을 요구한다면 일본은 그 동안 한인에게 준 은혜, 즉 치산, 치수, 전기, 철도, 항만시설에 대해서까지 그 반환을 요구하겠다. 일본은 매년 2천만엔 이상의 보조를 했다. 일본이 진출 안했으면 러시아, 아니면 중국에 점령되어 현재의 북한처럼, 더욱 비참했을 것이다.”는 말 때문에 완전 결렬, 5년간의 공백 기간에 들어 간 것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 구보타 망언에 시기를 맞추어서인지 1953년 11월에 발행된 외무성 정보 문화국이 발행한 잡지 『세계의 움직임』 특집호66이 제 6차 개시문서1163의 1234 「국회에 있어서의 재외 재산 보상에 관한 정부 답변 등」 54페이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한국에서 받아야 할 금액,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 그 차인 수취액’ 금액들이 모두 딱칠 되어 있고, ‘왼쪽에 쓴 숫자의 일본 측 액은 어떠한 근거에 따랐는가’라는 질문이 있는 것부터 보아서, 이 잡지만 입수할 수 있으면, 당시 일본 측이 계산하던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 잡지를 찾아보았는데, 이 호만 깨끗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 대학교의 도서관들에는 재고가 있는지, 국회 도서관 관계자에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부탁했는데, 역시 이 호만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외무성이 거기까지 손을 써서 회수 했을까요? 저에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철저히 숨기고 온 외무성이 발행한 이 책자를, 우리 단체의 한 회원인 고바야시씨라는 분이 찾아 주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찾아도 없었고 또 전국의 국립 도서관에서도 모습을 치웠던 그 책을 그 분이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외무성의 외교 자교관에는

없었지만, 외무성 건물 안에 있는 도서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바야시씨가 “그 책을 보여 달라”고 외무성에 요구했더니, “이것은 내부 자료이니 외부에게 넘겨 줄 수 없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국회의원을 통하여, “이렇게 오래된 정보마저 숨기는 것은 정보 공개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민주국가인 일본에서 이런 것을 숨기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싸운 끝에 얻어 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받아야 할 금액 약140억엔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 약120억엔
 차인 수취액 약 20억엔

그 당시의 환산율이 미국돈 1달러가 일본돈 15엔에 해당했다는 숫자로 계산해 보면 각자 약 9억3천만달러, 8억달러, 1억3천만달러로 되겠습니다. 즉 식민지 지배 미청산으로 남았던 빚보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기고 온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한국이 오히려 배상해야 한다는 계산 내용입니다. “일본 측 금액은 어떠한 근거에 의거한 것인가?”라는 상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받아야 할 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외무성이 당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들, 예컨대 조선 인양 동포 옹호회의 ‘재조선 일본인 개인 재산액 조사’, 조선으로부터의 인양자들 보고서를 될수록 폭넓게 참조해서, 굳이 숫자로 나타낸다면 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준비를 위한 숫자를 나타낸 것이며, 개개의 자료들로부터 쌓아 올려 추계한 것은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변명만 하고 있는 이 답변부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책 29페이지에서는 그 주장이 더 강력합니다. “한국에 두고 온 일본 국민들의 사유 재산은 종전시의 가격으로서 약120억 내지 140억엔에 달하며, 그에 대해서 한국이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한국에 있어서의 전재산 가치의 85%에 상당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이와 비교해 한국측은 일본에 두고 있는 재산 약90억부터 120억엔에 청구권도 있다고 한다. 그것들을 상쇄하자는 제안이 있으나 당지도 않은 이야기다. 이것은 실질상 20부터 40억엔을 한국을 위해 포기하는 셈이 된다.”

6.25동란의 불이 꺼져 몇달도 안되어 폭탄 냄새까지 아직 남아 있는 한국에 대해 막대한 돈을 요구한다니,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통하지 않은 것은 아예 일본 측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연하게 한국에 요구하지도 못했고, 지금에 와서도 감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계속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위의 방법으로 이 숫자를 입수하고 있었지만도, 다시 한 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더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집호6’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입력 못했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같았습니다. 다시 이 숫자를 입력해 보더니 지방에 있는 현 책방에서 500엔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주문하자 1주일 후에는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그 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일화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은 벌써 제4차 개시 때, 이미 공개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 헛수고는 무엇 때문이었던가? 또 그러면 4차에서 공개되어 있는 숫자를, 왜 6차에서는 먹칠했는가? 외무성의 쓸 때 없는 짓에 더 화가 났습니다.

4. 한국측 요구의 핵심, 청구권 8항목

‘청구권 8항목’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쯤부터 쌍방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대립하게 되었는가 확정 못하지만, 1958년에 열린 제4차교섭 일반청구권소위원회(12월1일)에서 한국측이 ‘청구권 8항목’ 금액 ‘3억 불 이상’, 이에 대해 일본 측이 ‘4천만불 내외’라고 추산해서 대립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일본 측, 한국측 공개 문서를 찾아보아도 전혀 안나오지만, 임병직 저 『임병직 회고록 - 근대 한국 외교의 이면사』 1964년의 책에 있다고, 다카사키 소오지씨의 책 『검증 한일회담』 93페이지와 오오타 오사무씨의 책 『일한교섭 - 청구권 문제의 연구』 206페이지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북송선 문제로 중단되던 제4차 한일회담이었지만 1959년에 들어서서 4월15일 재개됩니다. 그에 앞서서 사와다 렌조오 수석대표가 회의를 소집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세키 아세아 국장은 “문화재, 선박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 한국측에 약속하는 한편, 어업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양보시키며, 청구권 문제는 국교 수립후까지 미루는 기본 방침으로 임하고 싶으니, 각의 결정을 얻어, 개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에서 결정 하도록 하니, 각성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청구권 문제에 대해 대장성측은 “참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처리하고, 그렇게 안되는 것만을 남기는 방침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일본 측 문서125,188 페이지

4.19혁명을 거쳐 군사정권이 수립된 한국과의 제5차 한일 회담은 1960년 10월에 시작됩니다. 제1차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가 열린 11월10일 한국측은 [대일 청구 요강]이라고 해서 8개항목을 제시합니다. 그 날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아직 일본 측에 전달 안했으나, 벌써 한국 정부 내부에서 계산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알린 금액은 일본 측 문서에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서는 그것마저 6차 개시 1102의 1755 [일/한 청구 금액의 사정] 8쪽에서는 먹칠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무런 일관성 없는 외무성의 쓸 때 없는 먹칠에 화가 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측 문서에 나타나는 한국측 대일 청구액.(일본 측 6차공개 1102의 1736, 40페이지) **1962년 1월 10일** 오오히라 간방장관의 명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위는 100만엔입니다. 1736의 9,17페이지나 1178의1914,102페이지도 같은 숫자. 금액이 미확정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 I 지금 249톤, 지은 67톤 평가액 계101,582
- II 총독부 관계 우편저금 등 1,198, 조선 간이 연금 135, 해외 위체 저금 70, 동결 수취금 46
- V 한국인의 대 일본인 및 대 일본정부 청구,
유가증권8,735, 일본계 통화 1,526, 피징용자 미수금237,
피징용 보수금 364백만불, 은급306,
귀국 한국인 기탁금 중 통화류11,미결제 선은권49,
조련 기탁 차압금55,생보 준비금 청구438
총합계 엔 채무 12,805백만엔(853.6백만불), 달라 채무 364백만불,
현물(지금은)282백만불 계 **15억불**(단 엔채무의 달라 평가는 15엔 대 1불로 한다)

5.국립 공문서관 쓰쿠바 별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액

그러나 먹칠된 귀국 조선인 즉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에 대한 일본 측 계산 금액이 이번 우리 단체 회원의 노력으로 드디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별관에 있었습니다. (사료 [경제협력/한국105] ②65-0001-12698의 79부터119페이지.)

위의 피징용자 미수금 2억370만 엔의 내역이 써 있습니다. “사령부 섭외국으로부터 제일 한국 대표부에게 통지된 2억3700만엔은 사령부부터의 claims from Korea의 각서에 의거하여 1949년12월21일부 총사령부 앞으로 대장성에서 보고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령부 산출 추정.” 이런 돈은 그 당시 일했던 노동자들 본인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들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니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조사한 곳	건수	채무액(개산)	
국가지방경찰본부	2	1,708엔	
운수성 중앙 기상대	1	2,400엔	
우정성(우체부)	17	1,222.86엔	
농림성(임야청)	2	590엔	
궁내청	51	7,903.86엔	
운수성 선원국	311	417,500엔	
법무부	1,219,236	60,988,142.93 엔	
구육군		9,000,000엔	24,770,720.00
구해군	55,823	56,301,431.77 엔	53,402,980.61
노동성		110,843,254.53 엔	
	그 내역 공탁제	4,582,401.54엔	
	우편저금	9,450,428.03엔	중복차인176,680,320.64
	은행예금	13,465.49엔	
	유가증권	55,448.57엔	
	미수금	96,741,510.90 엔	
	총합계	237,564,153.95 엔	

이 미수금 문제에 대해서는 1961년5월10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일반 청구권 소위원회 제13차회의에서 거론됩니다. (한국 측 문서 718의 377페이지, 일본 측 3차 개시 2260의 9,522-23페이지). 3차는 아직 심하게 먹칠 안 되었기에 그냥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 대장성 이재국 차장 요시다 노부꾸니 주사 대리는 “우리들로서는 사망자, 상병자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의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유가족들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해 원호한다는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일본 측과 대조하는 준비가 있느냐?** (중략) **자기로서는 미수금은 지불해야 하며, 또 지불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원래 피징용자들이 정식 절차를 거치고 있으면 그 때 지불할 수 있었는데, 오늘까지 국교가 정상화 안 되어 있었기에 지불이 원활하게 행해지지 않았던 것이며, 이것은 **양국정부의 알선으로 당장이라도 지불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일본 측은 아주 선량한 버릇만 하면서, 속으로는 한국 측이 갖고 있을 수 없는 희생자들의 명단, 개인 정보들을 구해서, 결국 개인 보상에서 도망치는 길을 택합니다.

이 일본 측 발언에 대응해서 한국은행 국고부장 이상덕 주사대리는 같은 페이지에서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 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정부 손으로 하겠다.”고 해서 일본 정부 대신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섭니다.

다만, 이 회의 마지막에 한국측 이 주사가 “**당시, 한국에서는 길을 걷고 있는 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가장 혹독한 노동에 종사시킨 것이며, 소위 짐승 취급을 받은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인과 똑같이 취급했다고 하지만, 실정은 이렇듯 다른 것이며, 이런 취급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당연히 상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한국 측 문서에서는 웬지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신기합니다.

6. 흔들리는 한국측의 총청구 금액

같은 한국측 문서의 401페이지에는 **우리 측 제1안 13억 불, 제2안 9억 불, 개인 Base 추산 1억 불, 일본 측 개인 Base 추산 36:1환산으로 6천만 불, 1/2, 1/3 계산시 3천만 불, 또는 4천만 불**이라는 금액이 있으나 이 추산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397페이지에는 **대일 청구 금액 합계 4억4천만 불, 최소한 3억 불**이라는 숫자도 보입니다.

1961년8월10일 외무부의 림 참사관과 장 1등 서기관은 미국 국무성 한국과 과장 서리 “맨하드”씨, 일본과 과장 “스외인”씨를 오찬에 초청해서 한일회담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거기서는 “한국측이 원하는 총청구액이 (비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이라고 강조) **2억 5천 만불** 선까지 인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나오니, 한국측 숫자도 확정되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측 문서 720의 120페이지)

일본을 방문한 김윤택 경제기획원장은 1961년 9월 1일 고사카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총액 8억 불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에 대해 일본 측은 순청구권에 대한 변제로서 5천만 불, 그 외에 한국의 5개년 계획의 내용을 보고 무상원조의 형식으로 지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측 문서 721의 117페이지)

이와 관련해서 15일 마이니찌 신문은 “정부 수뇌부에 대하여 비공식으로 대일 재산 청구권에 관한 의향을 타진한 바 있었는데 그 때 김원장은 요구액으로서 8억불(일화 2천8백80억 엔)의 안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14일 정부 유력 소식통으로부터 밝혀졌다. ‘이승만’정권 시대에는 약20억불의 대일 요구액을 고려하였다 하여, 장면 정권 당시에는 12억불을 고려중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전했다고 같은 721의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국측 문서 721의 157페이지에는 1961년9월11일자로 “한일 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최종 양보

선”이라는 문장이 있어서, “액수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와 조리에 감하여 우리의 청구권 액수는 막대한 숫자에 달하는 것이지만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 일본의 지불 능력, 일본인의 과거 재한국 재산의 귀결, 앞으로 기대하는 양국간의 차관등, 경제 협력등등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까지 줄여 3.5억 액이상이면 해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7. 한국측 8항목에 대한 일본 측 검토

1961년 9월 14일자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 일본 측 6차 공개 1174의 13,604페이지 “일한 청구권 해결 방식에 대해서”에는 “형식, 명분에 사로잡히는 조선 민족성에 감해 보아도, 한국정부는 현안 해결 후 국교 회복, 그 다음에 처음으로 경제원조를 받아 들이는 방식에 고집할 것이다”고 약간 민족 차별적인 설명이 있는 뒤에, “청구권 안에는 (가)청구에 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과, (나) 응해도 응하지 않아도 이론적 설명 가능한 것들이 있다. 본래 relevant clause가 있으며, (가)도 (나)도 이것으로서 거부도 가능하겠지만, 또 거부의 정도도 관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원조 중 무상 원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나)에 돌리는 것이 실제적이지 아닐까. 6개 다 회담의 사무레벨에서는, (나)는 전혀 내지 않고, 정치적 해결 단계에서 처음으로 내야 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3. 한국 청구권을 이상의 생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가) 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

A. 대장성도 문제 없는 것

(1) 귀국 조선인의 세관 보호 기탁금 10,510,200엔58전(이 금액은 문서 안에서 다 먹칠 되어 있으니, 일본 측 문서736에 있었던 한국 측 요구액을 기재하겠습니다.)

(2) 군인,군속 및 정부 관계 징용 노무자에 대한 미불 임금

피징용 노무자 667,684 그 중 사망자 12,603, 부상자 7,000

군인, 군속 282,200 그 중 사망자 65,000, 부상자 18,000

생존자 930,081 X 200불 = 186,000천불

사망자 77,603 X 1,650불 = 128,000천불

부상자 25,000 X 2,000불 = 50,000천불

합계 3억6,400만불(역시 일본 측 문서 1736에서 인용)

(3) 귀국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불 임금 공탁제분(이것도 같은 문서736에 237백만 엔이라고 있고, 이번에 발견된 국립공문서관 쓰쿠바 분관에 있었던 자료에 의하면 2억 37,56만 4,153.95엔이라고 나왔습니다.)

(4) 1952년4월까지의 미불 은급 : 한국측 주장은 1,736에 306백만 엔이라고 있고, 일본 측 숫자도 한국 측 문서 752의 104페이지에 일본 측은 소화20년 8월 이후 27년 4월까지의 ‘조선 관계 은급 계수’를 제출해서 필요한 설명을 행했으나, 그 합계 숫자는 다음과 같다.(이 중 2,945,298엔은 이미 지불했음.)

은급국장 재정분 2,404명 145,111천 엔

조선 총독, 도지사 재정분 5,632명 261,468천 엔

B. 반환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 기타

- (1) 우편저금 : 개인통장 제시를 얻어 지불하기로 하면 북조선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하나, 625전쟁에 의해 통장을 분실한 경우도 많을 것이고, 또 주로 그 이유 아래 한국측이 동의 안한다고 생각된다. 우편국의 원장에 의거 한국인(북조선 재주를 제외) 예금자의 예금잔액을 지불하기로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한국측이 동의할까 어떤가. 다른 방법은 대장성 예금부의 과초금 지불에 응하여, 그 때 북조선 몫을 차인 하는 것이다. 6개 다 이 방법으로서는 relevant clause가 큰 문제가 된다. 이상 3 방법 중 하나를 선택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2) 간이 보험, 우편연금 : 우편저금과 같은 방법에 의함.
- (3)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한국측은 180만명이라는 숫자를 올리는 일도 있으나, 후생성 조사의 징용자 82만명, 군인, 군속 28만명, 계 110만명의 숫자는 고집할 것이다. 1인당 100불로 하여, 110만명이라고 하면 110,000,000불(1억1천만불). 그 중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겠다. 그러나 원칙으로 보면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등 원호법에 준한 원호를 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전상병자와 전몰자 유족들만이 대상으로 된다. 다만 이 방법에 의하면, 상병이 일본에 의한 피징용중의 것인가, 또한 그 정도의 인정이 곤란하게 된다. 원호의 금액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가도 불명하며, 혹은 전기의 방법에 의한 것이 간편할지 모르겠다.
- (4) 한국인의 대일본 정부 은급 관계 기타 : 은급법에 규정된 것에 준해서 지불한다. 그 대상은 구 은급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구 은급법부터 제외된 자에게 지불하는 이유 없음.) 문제는 상기(1)의 징용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한국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생계를 이루고 있는 한국인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싫어하는데 있다. 아마 은급 자금같은 것을 한국측에 넘기고, 거기서 지불시키는 것이 해결책으로 될 것이다.
- (5) 8월 9일이후의 내지 송금 : 12월 6일이후의 내지 송금은 반환해야 할 것이다. 날짜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2월 6일 이전이라고 추정할 것이 실정에 맞을 것이나, 타협해서 꺾으로 추정했어도 액은 적을 것이다.
- (6) 폐쇄기관, 재외 회사 관계 : 청산 시에 조선인 몫으로 인정된 것(공탁금액 이하 5글자 먹칠) 또는 제2회사 발족에 즈음하여 조선인을 위해 유보된 주식이며, 한국국적을 가진 자의 것.

(나) 반환에 있어서 relevant clause는 있지만, 타협을 고려할 수 있는 것.

(1) 조선은행 관계

(a) 선은 본점 계정으로 되어 있던 일은 등록 국채

(금액이 먹칠되어 있으나 일본 측 문서 1736에 나오는 한국측 요구를 보면) 73억7100만 엔이며 반환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b) 오사카 지점에 있던 지은 경위 여하에 있어서는 (가)로서 고려해야 할까 생각된다.

(2) 우편저금, 간이보험, 연금 : 상기 (가)B의 (a) 및 (b)에서 말한 바 같이 과초금을 지불하기로 할 때에는 개인 통장등에 의거, 일본 측에로의 지불 요구에 대해서는 면책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3) 일은권 : 한국 정부 또는 한국 국민이 소지하는 일은권 기타, 소각 일은권은 일정한 시기에 한해서 교환. 일본 정부 지폐도 또 같음.

(4) 국채 : 한국 정부 기관 및 한국인 소지의 국채를 반환한다.

(5) 과실 : 은행권에 대해서는 고려의 여지 없으나, 국채, 우편저금, 간이보험, 연금에 대해서는 고려한다.

이렇듯 개인 청구권을 지불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었던 일본 정부인데, 어떻게 그것이 무산되어 경제 협력이나 독립 축하금으로 변해 버렸을까요? 그 과정을 계속 살펴 보도록 합시다.

8. 큰 차이를 보이는 외무성과 대장성의 계산 금액

1961년 11월 12일 박정희 의장이 이케다 수상과 회담을 갖는데 거기에서 거론된 금액은 5천만 불에 불과합니다. 한국 측 문서786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 일본 방문” 228쪽에는 “한국측이 청구하고 있는 것은 배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청구권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지은, 우편저금, 보험금, 징용자에 대한 미수금,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 년금등 상당한 액수의 청구권을 한국은 가지고 있는데 일본 측은 5,000만불 운운하고 있으니 부당하다고 말하였는바, ‘이케다 수상’은 ‘고사카 외상’이 그렇게 말한 모양이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도는 아니라는 듯한 취지를 이야기 하였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본 측 문서 5차 개시 1088의 968 “이케다 총리, 박정희 의장 회담 요지” 3~4페이지에서는 완전히 먹칠해서 숨기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는 “‘이케다’ 수상은 일본 입장으로는 과대한 금액을 지불하기는 곤란하니 법적 근거가 확실한 항목에 대하여서만 청구권으로 지불하고, 그 외의 항목을 다른 명목으로 지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다른 명목으로 지불함에 있어서는 무상 원조로 하면 한국의 국민 감정상 곤란할 것 같으면 경제 협조등의 명목으로 장기 저이자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본 측 문서에서는 청구권이라는 말들이 다 먹칠되어 있습니다.

한국 측의 8항목 청구에 대하여, 일본 측도 대장성과 외무성이 각각 계산을 내고 있었던 것이, 6차 공개 1102의 1736, 17 페이지에 1961년 11월 9일 대장성 이재국이, 1962년 1월 9 일 외무성 아시아국이 계산을 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5차 공개 804의 376, 1962년 2월 26일 대장성 이재 국외채과 발행의 「일한 관계 예상 질문(미정고)」에서는, 역시 일본 측의 금액은 커녕 주장조차도 먹칠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40 페이지에는, 1월 10일 대장성 시산액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위의 11월 9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산액과 시산의 근거가 쓰여진 1963년 3월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가 발행한 「일한 청구권 문제 참조 자료(미정고, 제2분책)」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츠다쥬쿠 대학의 타카사키 소오지 교수가 도쿄 칸다의 고서점에 유출되어 있었던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렇듯 결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이번에 공개되었다고 하는 6만 쪽에 이르는 일본 측 문서들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 책자의 72 페이지에는 1961년 11월 9일 대장성에서는, 다음 숫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1. 약간 딱딱한 추정에 의한 것(약300만불), 2. 달게 추정한 것(1500만 불), 3. 아주 달게 추정한 것(3,000만불)의 3개 계산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는데, 당시의 오오히라 관방 장관의 강한 지시가 나와, 회계국과도 상의한 후, 1962년 1월 10일 대장성 시산으로서 제출한 금액은 약 1600만불이었으며, 같은 때 외무성이 제출한 시산액은 7,000만불이었습니다. 위의 마지막 숫자 1600만 불과 7,000만 불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해라는 말도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 조정 안된 채 마쳤다고 합니다.

이 숫자 1600만 불과 7,000만 불은 타카사키 교수의 『검증 일한회담』 126페이지와 오오타 오사무 준교수의 『일한 교섭 - 청구권 문제의 연구』 206페이지에 인용되고 있지만, 300만, 1500만, 3000만불이 공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2분책]은 전체적인 개략의 숫자만이고, 각 항목별의 자세한 숫자는 모두 [제3분책]에 들어 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이번의 공개로 재판 진행중인 외무성이 아니라, 대장성의 관할이니 조속히 재무성의 정보 공개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낡은 자료이기 때문에’라고 기다리기를 40분, “1962년 2월 26일의 「일한 관계 예상질문(미정고)」 는 없다”는 대답이었지만, “1963년 3월의 「일한 청구권 문제 참조 자료(미정고)」 는 국립 공문서관에 보관되고 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자료가 존재하는 것까지는 판명되었지만, 이것이 먹칠인지, 정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관의 홈페이지에 들어 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간단히 나와, 쓰쿠바 분관에 있다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정부의 은폐 체질이 외무성만이라고는 생각 안했지만, 정말로 철저합니다.

9. 애매한 개인 청구권의 행방

그래도 1961년 12월 21일에 열린 제6차 한일회담 일반 청구권 위원회 제8차회의에서 한국측은, 아직 개인 청구권이 남는다 주장을 합니다.(한국측 문서750의 182페이지)

김윤근 수석 대표 : 우리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인(자연인,법인)의 일본인(자연인, 법인)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한 권리로서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후라 할지라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양국간의 국교가 정상화 할 때까지는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오시오가 주사 대리: 제1항목 내지 제5항목에 들어 있는 개인 청구권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김 대표 : 그것은 이 회담에서 일괄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개인으로서는 주장할 수 없고,그 외의 것

은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우라베 부주사 : 국채등은 후에 개인이 가지고 올 경우에도 그 지불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인가.

김 대표 : 그렇다.

우라베 :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군령 33호 관계로 회담이 시초로 돌아 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모처럼 정부간의 결정을 보더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큰 “루푸 홀”이 남는 것이 아닌가.

김 대표 : 그것은 다시 정부간에 회담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청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루푸 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요시오카 : 이 문제는 상당히 이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 대표 : 그런 개인의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회담에서 다시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담은 이것으로 끝내고 그러한 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펴 놓자는 의미이다.

우라베 : 군령 제33호와의 관계로서 한국인의 대일 부채는 없어지고 대일 청구권은 회담 성립후에도 남는다고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김 대표 : 군령 제33호와는 관계가 없다. 이것은 그러한 청구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를 정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여지는 아직 있게 하자는 것**이다.

요시오카 : 취지는 알겠으나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라베 : 역시 **곤란한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김 대표 : 일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을 것이다.

우라베 : 우리로서는 역시 **자연인이나 법인 관계의 청구권 일체가 이 회담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일본에서는 **개인 관계의 사유 재산권은 보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으로 항목을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남게 될 것이다.**

김 대표 : 그러나 회담에서 지금까지의 항목에 나온 것이나 안 나온 것이나 **모두 회담 성립이라는 이유로서 소멸된 것이라고 하면 소송이 있을 때 재판소에서 판단 하는데 오히려 곤란 할 것이다.**

사쿠라이 보좌 : 그렇게 되면 군령 33호와의 관계로서 사적 청구권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김 대표 : **8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개인 청구는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재판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주장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이다.

우라베 : 내가 듣기에는 한국인 귀환자가 대판에서 예금한 것이 있으나 아직 찾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

김 대표 : 예금 채권등을 이 회담이 성립한 후, **청구 못한다고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라베 : 사유 재산이 보호되고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은 별문제이겠지만, 그 외의 경우는 간단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 대표 : 개인 재산이 존중되는 경우라도 정부간에 **일단 협정이 맺어져 이 회담을 방패로 거부**하게 되면 곤란하다.

우라베 : 이것은 역시 문제가 크다고 본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필요도 없는 것**임으로 일단 검토한 후에 다시 우리측 의견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역시 이렇게 아무것도 결정 못한 채 다음 회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개인 청구권을 떠나 정부간의 경제 협력 차원으로 변해가면서, 한일 회담은 청구권 소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에 자리를 옮겨 토의하게 되어,

금액만에 대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10.수령에 빠진 금액 논쟁

1962년 3월 15일에 열린 고사카/최 한일외상회담 제3차 회의에서, 최덕신 장관이 “최근에 나타난 숫자로 는 김유택 경제기획원장이 제시한 8억불이 있다”고 연설했으며, 3월 26일에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일측이 제시한 숫자는 청구권7천만, 차관은 2억(차관은 아측이 숫자 제시를 요구치 않았으나 일측이 제시함)”이라는 금액이었으며 이것이 처음으로 한일회담 안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된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측 문서 733의 184, 211, 347페이지)

1962년 8월 21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제1회 회의에서 일본 측 스기 미치 스케 수석대표는 “청구권만을 사용한다면 외상회담에서 말한바 같이 7천 만불이 되는데 이 숫자도 대장성은 1천5백만불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외무성이 여러가지 이유를 붙여서 그러한 숫자를 낸 것이다. (중략) 만일 청구권과 무상 공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청구권에는 추정숫자를 넣을 수 없으므로 그 액수가 지극히 적어 질 것이며 3-4천만불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은 한국측으로서도 곤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합니다. (한국측 문서 736의 181페이지.)

같은 문서 197페이지에서도 “청구권으로 일본 측이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전쟁후의 혼란이나 조선 동란등으로 관계서류들을 망실했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납득이 가는 한도 내에서 추정의 요소를 가 미했다고 할지라도, 겨우겨우 수천만불에 머물어,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지는 수억불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습니다. (중략) 일본 측이 도달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구권의 해결이라면 어떻게 하여도 수천만 불밖에 지불 못한다. 하지만 청구권의 해결과는 떠나,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며 한국에 있어서의 민생 안전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무상 아니면 유상의 경제 원조라는 형태라면, 상당한 금액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국민들의 납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어서 9월 13일에 열린 제6회 회의에서 한국측 대표 배의환 대사는 “양측 주장이 일본의 1.5억불에 대하여 한국 측은 3억불이라고, 3억불로 되어있어 거리가 너무 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측 문서 737의 41페이지) 또 같은 문서 45페이지에는 일본 측 외무성 ‘이세키’ 아세아 국장의 “한국측은 2억불로 올리 라고 하지만, 1억 7천만불 정도로 밖에 올리지 못한다. 한국측은 출발숫자가 컸던 것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11. 「김 · 오오히라 메모」로 결착으로

결국 9월26일에 열린 제8회 회의에서는 의논이 막혀 버려서, 금액 문제는 <제2차 정치회담>(오오히라김 종필 회담)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의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받고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 측 문서796의 3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면 “총액이 6억불이하로 내리는 것은 혁명 정부로서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청구권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는 것이나, 일본 측이 국회와 국민들에 대한 설명에 난점이 있고, 순변제라는 명목만으로서의 한국측 요구 금액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해 왔기에, 순변제와 무상 조건 지불을 합친 총액 지불을 받아드리는 것으로 양보한 것이다. 우리의 최종 양보 타결 금액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통보한 일이 있다. 교섭의 기술상 **일본 측이 1억 5천만 불을 제시하면 우리는 6억불을 제시하여라. 또 일본이 2억으로 올리면 우리도 5억으로 내려도 된다. 일본이 2억5천만불까지 접근하면,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교섭에 들어가도록 방침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오히라김종필 회담에 즈음하여 일본정부는 최종안으로 무상공여 2억5천불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6차개시 1165의1824,1 및 16페이지) 실지로 **10월 21일** 회담에 들어 가자 **오오히라 외상**는 “자기로서는 되도록 3억불의 희망에 가까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같은 문서 35페이지), 김부장은 “당초의 **18억불부터 점차 6억불까지 내리는데** 아주 고생했다며(36페이지), 표면상의 숫자를 6억불에 끌어 올리는 수단으로서도 차관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40페이지)”고 말해서, 미국 방문후 “귀국할 도중 다시 회담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 회담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의 이케다 수상과의 회담**에서는, 다시 후퇴한 금액이 제시됩니다. 이것은 수상과 외상 사이의 의사 소통이 안되어 있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케다 수상은 “무상조 지불은 사실상 법적근거에 의거한 순변제액은 아무리 후하게 계산하여도 **7,000만 불**에 불과하지만, 타결하고자 상당한 고려를 하여서 금번 예비 회담에서 1.5억불을 제시한 것이며, 무상조로 그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일본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표명합니다. (한국측 문서 796의 120페이지, 10월22일, 오후4시 [이케다 총리/ 김종필 회담])

11월8일 박정희 의장은 미국 방문중인 김종필 부장에게 아래 훈령을 내립니다. (한국측 문서796의 150페이지)

“2내지 2.5억불(순변제+무상조)+2.5내지 3억불(차관)=6억(총계)”

그래서 1962년 11월 12일 제2차 오오히라/김종필 회담에서 유명한 “오오히라” 메모가 전달되어 “무상3억불, 유상2억불, 자금협력 1억 프라스 알파”로 이 오래동안 계속된 한일회담이 결착된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측 문서796의162페이지,172-173페이지)

12.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청구권」의 명칭

명목에 대해 일본 측은 제2항에서 “양체약국은 평화조약제4조에 의거한 한국 내지 한국구국민의 일본국 내지 일본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이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서를 준비하여 회담에서 한국측에 메모가 전달되었습니다. (일본 측 6차공개 1165의 1826의 3,16,27 및 한국측 문서796의 168,175페이지, 다 일어로 된 일본 측이 만든 같은 문장)

그러나 실지로는 “한국측의 안으로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며, 또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예비 교섭에 있어서 토의를 진행하기로 되었다.”는 토의로 마쳤습니다. (일본 측 6차공개 1165의 1826의 43페이지)

그 예비절충에서 일본 측은 회의 명칭마저 청구권이 아니라 ‘경제 협력’으로 하자고 제안합니다.

한국측 문서738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제27차회의’ 146페이지

배 의환 대사 : 작일의 청구권 관계 회합에서, 일본 측은 동 회합의 명칭을 “경제 협력 관계 회합”으로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는데, 과거 10년 동안이나 사용해 오던 회의 명칭을 지금 와서 고친다는 것은 부당하며, 또 이러한 문제로 한국의 국내 여론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니,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종래의 명칭대로 하도록 하자.

우시로꾸 아에아 국장 : 사소한 문제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는 청구권 문제 회합이라고 칭해도 무방하다. 일본 측은 “그 회합” 정도로 부르겠다.

배 대사 : 양측이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동 회합은 어디까지나 한국 청구권의 해결을 위한 회합이니 당연히 청구권 관계 회합이 될 것이고, 동 회합에서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가 토의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청구권 문제의 방법의 하나로서 토의되는 것이지 청구권을 떠나서 경제 협력 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아니다.

우시로꾸 : 명칭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이 문제는 결정을 보류하고, 빨리 실질 문제의 토의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최 영택 참사관 : 한국측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청구권 해결을 위한 세목 규정을 토의하자는 것이므로, 청구권을 떠나서 경제 협력 문제를 토의하자고 하면, 그러한 회합에는 참석하기 곤란할 것이다.

우시로꾸 : 처음 일본 측은 OA 및 정부 차관의 상환 기간등 청구권 문제의 원칙이 해결되기 전에는 청구권 관계 회합의 개최를 반대한 것인데, 한국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일본 측은 내부적으로, 그러면 청구권 문제의 원칙 토의는 보류하고 경제 협력에 관한 세목 규정만 토의할 것이며, 지금 “경제 협력 회합”이란 명칭은 안된다고 나오면, 관계 각성에서는 회합에 안나오겠다고 할런지도 모른다.

배 대사 : 일본 측 전문가도 청구권 해결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것인데, 그 회의의 명칭을 청구권 회의라고 하면 출석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한국측으로서는 과거에 써 오던 명칭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다.

스기 수석 대표 : 이 문제는 일본 측이 연구하여 다음 회의시에 결정을 지우기로 하자. 그런데, 회합의 명칭 문제로 처음부터 의견이 대립될 바에는 차라리 청구권 관계 전문가는 회합을 갖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르겠다.

최 참사관 :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일측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일본 측이 계속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의 회담의 분위기가 우려된다.(중략) 청구권, 선박, 문화재는 처음부터 별개 문제이며, 선박을 청구권에 포함시켜 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일본 측이 아무래도 선박 관계 회합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면, 선박 관계 전문가의 비공식 회합이라도 갖도록 마련해 주게 바란다.

스기 : 일본 측으로서는 선박 문제는 청구권에 포함되어 이미 토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최 참사관 : 예비 절충에서는 선박 문제는 토의가 시작도 안되었는데 끝이 났다니 무슨 말인가?

우시로꾸 : 이론상으로 일본은 평화조약 4조 a항에 의한 청구권의 지불로서 청구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

되는 것이고, 선박을 별도로 줄 의무는 없다. 즉 선박, 문화재가 다 청구권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 문제는 청구권과는 관련 없이 문화 협력이라는 뜻에서 얼마를 한국에 기증하려는 것이다.

최 참사관 : 선박, 문화재 문제는 아직 미해결채 있는 것이다.

배 대사 : 일본 측은 청구권으로서 막대한 금액을 제공키로 했다고 하지만, 한국 국민은 자유당 시절에 20억불이니 하면 청구권을 3억불밖에 못받게 하였다고 하여 오히려 불만이 많다.

그러나 결국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는 거론 안되었으며, 한국의 군사 정권의 연장으로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자 그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주요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같은 문서 263페이지를 보면 3월 28일에 열린 예비 절충 제32회 회의에서 우시로쿠 국장은 “청구권은 제도적인 정보의 교환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앞으로는 OA와 정부 차관의 상환 기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더 토의할 것이 없고”라는 말에 대해서, 배 대사는 “청구권 문제에 관하여는 본국에서 훈령 온 것이 있으니, 더 토의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답변하니 마지막까지 평행선입니다.

그 후 내용적으로 별로 진전을 못 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4월 3일에 열린 한일 비공식 외상 회담에서 합의를 봅니다.(일본 측 문서 1136의 739, 3페이지, 한국측 1486,248페이지.)

13.외상 간의 합의 문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시이나 에쓰사부로 외무 대신간에 다음의 사항이 합의되었다.

1. 무상 제공(생산물 및 용역)

총액 3억불, 10년간 균등 제공. 단, 재정 사정에 따라서는 양국 정부 합의에 의하여 조상 실시할 수 있다.

2. 장기 저리 차관(경제 협력 기금에 의함)

총액 2억불, 10년간 균등 제공. 금리는 년3.5%, 상환 기간은 7년의 거처 기간을 포함하여 20년. 단, 재정 및 자금 사정에 따라서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민간 신용 제공(상업 베이스에 의거한 통상의 민간 신용 제공)

(1) 민간 신용 제공 총액은 3억불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2) 어업 협력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9000만불 및 선박 도입을 위한 민간 신용 제공 3000만불은 상기 (1)에 포함되어, 또한 관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한일 청산 계정 잔고에 대하여 확인된 대일 채무(약4573만불)

(1) 10년간 균등 분할 지불, 금리는 없음.

(2) 매년도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일본 측의 새로운 동의를 요함이 없이 당해년도에 있어서의 일본으로부터의 무상 제공 중에서 감액함으로써 현금 지불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5. 청구권의 해결

관계 협정의 성립시에 존재하는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상항 평화 조약 제4조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단, 한일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권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서, 종전후 통상의 거래, 계약등으로부터 생긴 관계에 의거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한일 간의 문화재 문제 해결 및 문화 협력 증진에 관련하여 품목 기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일본국은 한국에 대하여 한국 문화재를 인도한다.

이 문서는 어쩐지 일본 측 문서에는 (불공표)라고 적혀 있으나 한국측 문서에는 그런 표시는 없습니다.

(불공표) (합의 의사록)

1965년4월3일, 도쿄에서

오늘 “이니시알”된 일한간의 청구권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

(이하 [합의 사항]이라 함)의 교섭에 있어서 다음의 양해가 확인되었다.

1. 합의 사항5.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일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 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동 대일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여하한 주장도 없게 된다는 것이 확인되다.
2. 합의 사항5.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전기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의한 일본 어선의 나포로부터 생긴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관계 협정의 발효에 의하여 그와 같은 모든 청구권은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됨이 확인된다.

13.결국 합의 안되었던 청구권의 개념

이제 타결 직전이었던 한일 회담인데, 청구권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일치 안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1965년 5월 14일에 열린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폭로됩니다. (한국 측 문서 1468의 160페이지)

일본 측 니시야마 대표 :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제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한국측 김대표 : 이.시이나 합의 사항을 보면 청구권 및 경제 협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 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생각이 엄연히 표현되어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 해결로 이야기 가 시작되다가 두가지 다 집어 놓게 된 것이다.**

니시야마 : 우리는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 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한국측 이규성 수석 대표 : 우리도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니시야마 : 협정 안문을 작성할 때에는 두가지 다 포함되게 되지만 여기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경제 협력에 관한 것이다.

김대표 : 경제 협력만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도입 절차를 토의하고 있는 것이다.

니시야마 : 청구권의 의미가 포함은 되어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청구권의 대가라는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기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정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니 마음대로 하여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김대표 :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도 청구권 해결에다가 경제 협력이라는 생각이 가미되어서 결국 청구권 및 경제 협력이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드리는 생각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변해 버리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니시야마 : 그러면 한국에 대한 제공은 정치적인 관계가 깊은 일한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경제 협력이라고 할 것인가?

이 수석 : 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김대표 : 일본 측의 생각을 이해하기 곤란한데, 배상은 아니나 그러나 청구권에 연유하는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일본 측 야나기야 보좌 : **일본 측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경제 협력**이라는 생각이었다.

한국측 정순근 전문위원 : 문제의 시초가 청구권에서 시작된 것인지 한국의 사정이 어려워 도와 달라는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으나?

야나기야 : 그것은 알고 있다.

이 수석 : 결국 일본 측 입장은 순수한 경제 협력이라는 것인가?

니시야마 : 그렇다.

한국측 오재희 전문위원 :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원래 경위를 보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섭이 시작되었고, 청구권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제 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 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니시야마 : **이 문제는 너무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고 여하간 우리로서는 **빨리 협정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듯 이야기는 언제까지나 평행선이었고 개인 청구권에 대해 아무 것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그냥 다음 의제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회담이 타결되어 조인에 이르는 제7차 한일 회담이지만, 일본 측은 이 7차 회담에서 있었던 청구권 및 경제 협력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열렸다는 사실마저 지을 수는 없으니 회의가 열렸다는 기록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예컨대 일본 측 6차 공개, 827의 493, 「일한 관계 연표(4)」30 페이지에는, 1965년 6월 1일 청구권 경제협력 분과회 제 1회, 2일 청구권 경제협력 분과회 제 2회, 제3회, 청구권 분과회 제 1회, 3일 청구권 분과회 제 2회, 4일 청구권 경제협력 분과회가 열렸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또 일본 측 6차 공개, 번호 827의 489, 「한일 회담 일지(5) 재개 제 6차 회담·제7차 회담(미정고)」53

페이지에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청구권 분과회」 제1회가 1965년 6월 2일에 열려 「제7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5.31)에서 일본 측 제시의 청구권 사항에 대해 일본 측이 설명해, 질의응답」이라고 있습니다.

3일의 제2회에서는 「일본 측으로부터 삼각지대의 일본 재산, 미군정으로 몰수된 일본인 소유의 유가증권에 대한 한국측의 조치에 대해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54 페이지에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경제협력 분과회」가 6월 1일 제 1회, 2일 제 2회, 제3회 「제7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5.31)에서 일본 측 제시의 청구권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4일 「제13회의 토의 성과에 대하여 검토」라고 있습니다.

당시 토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일본 측 문서 6차 공개 1161의 1316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의 기록 총설 12’(1965.3.6-6.22)의 27쪽에 “제7차 회합(5월31일)에 이르러, 일본 측으로부터 협정, 의정서, 교환 공문, 합의 의사록 등 모두 7개의 하기 문서를 제출했다”라는 기술이 있으며, 그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파일 1316의 75쪽(기재된 번호는 13-339)에서는, 일본 측이 내부에서 검토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래 무상 3억, 유상2억의 경제협력이라는 해결방식 자체, 일본 측은 주로 장래를 향한 경제협력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측은 주로 과거에 대한 보상으로 본다등,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며, 특히 대장성 사무 당국에는 3억,2억의 해결방식은 **외무성이 멋대로 독주한 것을 억지로 추진 당했다**는 감정이 강하며, 개개 조항의 검토에 있어서는, 은혜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입장을 엄수한 내용으로 할 것을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외무성측은, 본건 교섭의 종래부터의 경위를 다시 설명하면서, 일본안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완화 내지 탄력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서, 또 어떻게 해서도 이 단계에서는 각 성청 간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면은 굳은 안을 내지만, 한국측의 반발 정도를 보면서, 언젠가 일본안을 완화, 수정하는 것에 대한 각 성간의 사전 양해를 얻을 수 있게끔 극력 노력했다. (일본안 제출후의 교섭 석상에 각성 담당관을 되도록 많이 끌고 온 것도, 한국측의 사고 방식을 각성 담당관들에게 직접 인상을 주는 의도에서부터였다.)”

14. 포기 못해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한국 정부

이렇듯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일체 타협을 배제하는 단호한 태도로 조인에 임한 일본 측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측은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방황하며 헤메이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같은 시기의 한국측 문서, 등록 번호 6887 「제7차 한일 회담 : 청구권 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1965전 3 책속 v.3 미해결 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v.1, v.2는 2005년 1월 17일에 공개제)」에서 그 진행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6월 15일 13:02 수석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보.

14일 20:30 - 23:45 청구권의 해결 문제에 관련된 제2조를 토의하기 위하여 회담하였는바, **양쪽 의견이 대립된**

채 결론을 보지 못하고 산회하였음.

17일 11:31 수석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보.

16일 오후 9시 부터 작업을 계속하여 청구권 소멸 문제(협정 제2조) 및 협정에 관한 분쟁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조문화를 완성하였음.

18일 18:12 수석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문.

청구권 관계 협정 제2조의 청구권 해결에 관하여, 일본 측은 조안문을 최종안이라 하며 우시바 심의관에 직접 지시하여 왔음. 아측은 일측안이 약간의 IMPROVEMENT는 있으나 아직 몇 가지 점에서 수락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교섭의 진전을 위하여 아측의 기본 입장을 가능한 한 일측안에 접근된 안을 제시하고 장시간 토의하였음.

제1항 맨끝은 “해결된 것으로 됨을 확인한다”로 하기로 하였음.(아직 상항 평화 조약 4조(A)만을 언급하는가, 4조 전반을 언급하는가의 대답이 있음)

그러나 제2조의 제3항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자기측 안을 받아드리지 않는한 토의에 응할 수 없으며, 일측안이 최종 입장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음.

18일 23시 외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에게 보낸 전문.

청구권 관계 협정 제2조에 관하여는 일측 안 대로 하는 경우 재일교포를 포함하여 아국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에 비추어 문제가 중대함으로 계속 강한 입장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람.

19일 새벽1시58분 수석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지급 전보.

철야 작업으로 임하고 있는 한일 현안 협정 전반의 조문화를 위한 당지 힐튼 호텔 회담의 6월 19일 오전1시 현재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협정 제2조(청구권 소멸 조항)에 관한 토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바, 아측은 일본측 안을 그대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즉, 아측은, 일본 측 안의 제2항 (A),(B)의 일자가 1945.8.15.이 되고, 제3항의 조치의 대상이 제한되고, 합의 의사록 일본 측 안에서 거주에 관한 제한 규정이 해제되지 않은 한, 일본 측 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일본 측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19일 수석 대표가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손으로 쓴 전문.

청구권 관계 협정 2조에 관하여는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함.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일본측에 제시코자 하오니 가부를 시급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타협안 내용

1. 일본안 2항(a) 교포 재산에 관하여 47년8월15일 일자를 수락한다.
- 단, 1) 합의 의사록의 거주에 관한 규정은 삭제한다. 이로서 47년8월15일 이후에 귀국한 자로서 일본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주 기간 1년미달인 자가 구제되고 현재 일본 거주자 중 비합법적 거주자도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2) 합의 의사록 형식으로 45년8월15일부터 47년8월15일까지 귀국자의 재산, 권리, 이익 중 부동산(특별 조치 대상은 제외)은 일본이 취할 조치의 대상으로 안한다는 약속을 받는다. 유가증권등은 8개 항목 조로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2. 2항의 (b) 통상 접촉 개시 일자는 45년8월15일로 계속 주장하되, 최종적으로는 무역 재개일(47.8.15)을 수락한다.

3. 4. 생략

21일 1시 9분 수석 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긴급 전보 JAW-06490호

청구권 협정 제2조에 관하여 19일 저녁밤 및 20일 아침 3차에 걸쳐 일본 측과의 회의 와 금일 오후의 우시바 심의관과의 교섭을 통하여, 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문안에 합의하였사오니 본부 승인 여부를 지급 회전하여 주시기 바랍.

2항(a) 재일 교포 또는 교포였던 사람의 재일 재산에 있어 1947년8월15일은 45년부터 그 때까지 약100만 명의 귀환자가 있음으로 일본 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며 구지 1945년으로 할 경우에는 법적 지위와 같이 계속 거주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함. 따라서 합의 의사록 일본안 중 거주에 관하여 외국인 등록 조건을 삭제하고 1년 이상 거주를 47년 8월 15일까지 1년이 된 자로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또한 45년부터 47년간에 귀국한 자라도 일본 소재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양해 하에 47년8월15일을 수락기로 함.

2항에서 청구권에 인용되지 않은 것은, 일본은 청구권을 개인의 채권 등이 아닌 외교 법권적인 정부 청구권으로 해석한다함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재산, 권리 및 이익에 포함된다는 뜻의 합의 의사록을 작성함.

제2조 (합의안)

1.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9월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 (A)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8월18일(15일?)부터 본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 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 (B)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1947년8월18일(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 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합의 의사록

협정 제2조에 관하여

(A)“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질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B)이하 생략

본직을 비롯한 현지 교섭 대표로서는 상기 합의안은 제2조 타결을 위하여 일본 측과 타협할 수 있는 마

지막 안이라고 사료하오니 수락하도록 21일 오전중으로 회전바랍니다.

20일 이 동원 외무부 장관은 일본에 가서 22일 조인식에 참석하는 준비를 하게 되니, 여기부터 후의 외무부 앞으로의 전보는 외무부 장관이 받고, 국무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일11시40분 동북아 과장으로부터 연하구 아주국장, 전상진 통상국장 앞으로 보낸 전문.

청훈하신 청구권 협정 제2조 안문에 관하여서는 본국에서 긴급 검토중인 바, 금일 오후에나 최종 지시가 가능할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21일13시26분 외무부 장관이 국무 총리 앞으로 보낸 긴급 전보.

JAW-06490으로 청훈한 청구권 협정 제2조 및 이에 관련한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서는 법무부 법무국장을 포함한 대표단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측에 만족한 내용으로 타결된 것이라 하오니 본직으로서 이 문안으로 합의함이 적당하다고 사료함. 따라서 문안 표현에 정부로서 별도 재교섭 지시가 온다면 명일 조인이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침착하여 주시기 바람.

21일 16시 30분 수석대표가 외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지급 전보

청구권 제2조에 관하여서는 금조의 외무부 장관 건의 전문대로 결정 될 것을 전제로 조약문 작성을 하고 있음. 나머지 남은 한가지 문제는 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상 보고를 침착하여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명일 있을 조인식 스케줄을 즉시 발표하시기 바람.

더 이상의 수정은 명일 조인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있는데, 본국에서는 아직 포기 못하고 계속 지시가 날아 옵니다.

21일18시40분 외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에게 보낸 긴급 전보

청구권 제2조에 관하여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현재 관계부 장관 회의를 개최, 신중 논의중에 있으므로 그리 아시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람.

그 검토 결과가 다음

21일 22시 55분에 외무부 장관, 주일 대사 앞으로 외무부 장관이 보낸 긴급 전보.

청구권 제2조의 규정에 관하여서는 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무 총리, 이후락 실장 및 관계 각료 연석 하에 신중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음으로 금일 밤중에 곧 시이나 외무대신과 회담하시어 이의 관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때가 늦은데 '47.8.15'를 '45.8.15'로 변경해라든지, 합의 의사록 (C)거주의 정의와 (D) 및 (F)도 삭제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또 무책임하게 '이상의 선에 따라 귀하의 최선을 다하여 교섭하시되, 그 결과와 전망에 관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명조 8시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건투와 성공을 바랍니다.'고 집착을 보입니다.

결론은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22일새벽2시32분에 장관과 수석 대표는 외무부 차관 앞으로 긴급 전보를 보냅니다.

청구권 제2조 및 합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일측으로서는 현재의 안이 최종적 타협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섭의 단계로 볼 때 현실점에서의 재교섭은 불가능시 됨.** 위를 참작하여 명조 08:00시까지 다시 훈령바람.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일아침8시25분 외무부 차관의 장관, 수석 대표 앞으로 보낸 대지급 전보.

전문 접수하였오며, 귀지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문제가 중대함에 비추어 아측 입장의 관철을 위하여 일차 노력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니 금일 오전중으로 최단 시간내에 시이나 외상과 접촉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고 본국측에서는 드디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22일11시45분 외무부 차관이 외무부 장관, 주일 대사에게 보낸 전보.

청구권 제2조 문제에 관하여는 귀견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애매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면서도 시간에 쫓겨 그냥 돌입하는 식으로 조인된 한일 협정이었으나 문제는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한일회담 문서를 중심으로 협정 당일까지의 질 좋지 않은 촌극같은 내막을 보여 준 과정을 살펴왔습니다. 기본 관계, 독도, 재일 교포 3세4세들의 법적 지위, 개인 청구권 등 전혀 결착을 보지 못하면서 문제를 수북으로 쌓아 올려 남긴 채 그냥 발표시켜 버린 빛이 44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무력으로 합병시킨 경위, 그 책임부터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 군인·군속, 강제 연행에 대한 사죄나 전후 보상, 재일 교포의 국적, 복지, 교육, 영주권과 강제 퇴거 사항, 북한 귀환 사업등, 오늘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의 어디가 도대체 “완전 및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되었고, 또 무엇이 정해졌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霧の中に消えた日韓会談の中の‘個人請求権問題’

李洋秀

(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事務局次長)

日韓会談で議論されながらも結局決着を見られなかった個人請求権問題が、どのように国家間の経済協力や独立祝い金に変わって行ったのか、またその金額がどのように算定されたのかを、今度公開された日本側と韓国側文書原文を参照しながら調べてみました。

1. 会談開始前に韓国側が用意した対日賠償要求

韓国側の要求する金額が、日韓会談の席上で初めて登場するのは、韓国側文書87の163 - 166頁です。

1949年4月7日韓国外務部政務局が占領軍司令部に提出した[対日賠償要求一覧表]

第1部 現物返還要求の部

1. 地金250トン 2億8千万ドル
2. 地銀89トン 596万6,250ドル
3. 書籍 212種類
4. 美術品及び骨董品827個その他
5. 船舶270隻
 - (1) 在日韓籍漁船91隻
 - (2) 一般漁船20隻 463万1,690ドル(1,973万1,000円) 全部沈没
 - (3) 特殊漁船108隻 7,246万5,963ドル(3億870万5,000円)
 - (4) 海事貨物船 48隻 18億4,417万8,404ドル(78億5,620万円) 大部分沈没
 - (5) 韓国軍艦 3隻 強奪した
6. 地図原版(数字省略)
7. その他朝鮮側銀行海外店舗の動産、不動産190万2,279ドル(810万3,707円)、朝鮮電業会社東京支店社宅関係4万5,563ドル(19万4千円)、蟾津江発電機 1台、京城電気会社東京支店備品5408ドル(2万3,039円) 第1部現物総計22億919万5,557ドル
(この表の最後の換算率4.25:1によれば約93億8,908万800円)

第2部 確定債権 174億2,936万2,305円

1. 日系通貨 15億1,413万4,098円
2. 日系有価証券 74億3,510万3,942円
3. 上海ドル価 (400万ドル)
4. 保険金、恩給、その他未収金 64億3,661万7,521円

5. 通信関係特別計定 20億4,350万6,744円
第3部 中日戦争及び太平洋戦争に起因した人的物的被害 121億2,273万2,561円

1. 人的被害 5億6,512万5,241円

2. 物的被害 113億2,602万2,105円

3. 8・15前後日本官吏の不正行為による損害 2億3,158万5,215円

第4部 日本政府の低価格買収による損害

1. 強制供出による損害 18億4,777万437円

要求総額(第1部除外) 314億97万5,303円 = 73億7,112万970ドル

(1ドル = 4.25円で計算してある。第1部を足すと95億8,031万6,527ドル。同じ換算率4.25:1で計算すると約**407億1,634万5千円**。しかしなぜか原文には、この合算金額の数字の記載はない。)

これに対して日本側から**同年6月23日付**で7月18日に貰った返事の内容は、[極東委員会の指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し、指示がない場合には連合国の間で協定される条約に基づいて**適当な時期に考慮される**]というものでした。

しかし韓国側は文書87の171 - 172頁では、前述の第1部[現物返還要求之部]に加え、第2部[確定債券の部]、第3部[日中戦争及び太平洋戦争に起因した被害]、第4部[日本政府の低価格買収による被害の部]を補って、[対日賠償要求調書]を**1949年9月**に完成させます。そこには日本円と米国ドルで数字がそれぞれ出ていて、その総額は米ドルで**94億4503万618ドル**(この表にある換算率4.26:1によると**402億6,215万3,800円相当**)になります。でもこの金額が韓日会談の中で、日本側に提示された事はありませんでした。

それに対比する日本側資料としては、第6次公開1171の1627、1951年10月外務省アジア2課が発行した[日韓両国間の基本関係調整に関する方針]7 - 8頁には、[我が方の有した**在韓財産の膨大なるにかんがみ、韓国側の対日請求は原則として一切放棄させること**]という指示が見られます。

2. 会談当初の韓国側要求額は**50億円**ないし**180億円**

1952年2月20日から4月1日まで8回第1次韓日会談請求権分科委員会が開かれてましたが、「金溶植の回顧によれば、韓国側はこの交渉で金額を提示しなかった」と太田修著[日韓交渉 - 請求権問題の研究]88頁にあります。

しかし何の具体的数字なしの、法理論だけをもって議論が延々と白熱したというのも、現実味が薄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果たして日本側文書72外務省北東アジア課制作の文書1958年10月16日「日韓会談の問題点」に、**韓国側が要求した金額**として出て来ました。

なぜ、こんなウソを金溶植が言ったのかは、勿論不明です。外交交渉なんて鵜呑みにしてはならない程度でしょうか?

原文を、そのまま引用します。1頁

韓国の対日財産請求権について

1、財産請求権(2、文化財と3、船舶は省略)

(a) 今次の日韓全面会談においては(1958年の第5次会談)、韓国側の都合により委員会が一回も開催されていない。従って韓国側の要求内容もその金額も判らない。

(b) 過去の第一次～第三次会談において韓国側が提出した要求項目について、わが方が**推定により要求額を試算したところによれば、一応180億円(数少ない日本側の計算)**という数字が出ているが、もとよりこれは全くの概算に過ぎない。

韓国側の要求項目は、韓国側が1952年2月わが方に提示した「韓日間財産及び請求権協定要綱」中に示されているが、要約すれば

- (1) 終戦時に朝鮮総督府が日本政府に対して有していた債権(これら債権は韓国政府によって継承されたとの建前に立つものと考えられる。約20億)
 - (2) 韓国に本店又は主たる事務所を有していた日本法人の在日財産(例えば朝鮮銀行が所有していた登録国債50億円等が含まれる。)の返還を要求するもの(在韓財産の没収によりこれら法人の株主権が、韓国政府に移転しこれら法人が韓国法人となったとの根拠に立つものと考えられる。約90億)
 - (3) 韓国国民が保有する日本の国債公債株式日本銀行券の決済(約50億)(国債公債の大部分は、在韓日本財産を取り上げた結果として韓国人が保有しているものと推定される。日本銀行券については大部分は焼却されているが現存している限り償還に必ずしとの議論もある)、
 - (4) その他韓国から運び来った地金地銀の返還ならびに終戦後朝鮮総督府特別会計より対日移送された資金の返還(約10億)が主である。
- (c) 右の他韓国側が正式提示を留保している請求項目(例えば強制撤去、強制供出ならびに疎開による被害とか貿易補償金とかいう項目のみがあがっているが、韓国側から説明がなかったため内容は不明)があり、右の概算金額は韓国側の計算によれば150億である。以下黒塗りの後、次頁不開示。

しかし幾ら日本側が推定により要求額を試算したと言っても一応180億円、また韓国側から聞いたとされる概算金額150億円という金額と、それ以前に韓国側内部で検討されていた金額95億8,031万6,527ドル = 約407億1,634万5,000円や94億4503万618ドル = 402億6,215万3,800円と比べると、韓国側が現実要求した金額は大幅に後退したことが証明されました。

しかしそれでも日本側の態度は強硬で、3月6日の第5次会议では[在韓日本人私有財産請求権]を強く主張し、4月25日に1次会談は決裂してしまいます。

アメリカの介入で再開された第2次韓日会談でもやはり具体的金額の明示はなかったのですが、1953年6月15日に開かれた請求権委員会制3次会议には、[各項目別に小委員会を構成して、その実体が明白になり次第返還支払いできるものは即時実行することで合意を見た]とあります。

韓国側文書番号92の 41 - 43頁。

記 1. 韓国国宝(中略)

2. 太平洋戦争中被動員者の未清算計定に関しては、全体的数字はまだ計出されていないが、5月末現在で供託された金額は左記の通り。また1人に対する計算の基準は、日本人に等しく取扱い、扶養手当てに関しては日本に居住する家族に限ってだけ支払うものとした。

(1) 陸軍関係該当者/復員者40,415人、戦死者4,087
供託金 24,770,720円(日本貨)

(2) 海軍関係該当者49,252件、供託金 53,402,000円(日本貨)

3. 遺骨 柱数

(1) 海軍関係保管分2,672柱、既還送されたもの、
前段2,677柱、後段7,422柱

(2) 陸軍関係保管分 1,448柱、

4. 韓国人所有有価証券(株式国債)に関しては、相互の資料を対照して数字的に実体を明らかにして、これに対しても担当事務者会合を構成する事にした。]

このように確実な数字が出て、両方が合意までした例はとても珍しいものです。しかしこの第2次韓日会談請求権委員会第1 - 3次会议の議事録(1953. 5. 11 - 6. 15)は、日本側が公開した 6万頁中に含まれていません。部分開示でもなく、不開示でもなく、完全に抹消されています。この文書も絶対に、公開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3.久保田妄言を裏付ける、綿密なる計算に基づく日本側の対韓要求

しかし1953年10月15日に開かれた第3次韓日会談第2次請求権分科委員会であつたいわゆる[久保田妄言]、すなわち「韓国が賠償を要求するなら日本はその間、韓人に与えた恩恵、即ち治山、治水、電気、鉄道、港湾施設に対してまで、その返還を要求する。日本は毎年2千万円以上の補助をした。日本が進出しなかったらロシア、さもなくば中国に占領され現在の北朝鮮のように、もっと悲惨だったろう。」と言う発言のせいで完全に決裂、5年間の空白期間に入ってしまったことは、あまりにも有名です。

この久保田妄言に時を合わせてか、1953年11月に発行された外務省情報文化局が発行した雑誌[世界の動き]特集号66が、日本側第6次開示文書1163の1234「国会における在外財産補償に関する政府答弁等」54頁に引用されています。

そこには「日本が韓国から受け取るべき金額、日本が韓国に支払うべき金額、差引受取額」の金額が皆黒塗りになっていて、「左記の数字の日本側の額は、どのような根拠によったのか。」と言う質問があることから見て、この雑誌さえ手に入れることができれば、当時日本側が計算した数字が分かります。

それで私が国立国会図書館を尋ねてこの雑誌を捜して見たのですが、この号だけきれいになくなっていました。それで日本全国にあるすべての国立大学の図書館には在庫があるのか、国会図書館の係員に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を頼んだのですが、やはりこの号だけすべて消えてありません。外務省がそこまで手を回して回収したのでしょうか？ 私には判りません。

しかしこのように徹底的に隠して来た、外務省が発行したこの冊子を私たちの団体の一会員である小林さんという方が捜し出しました。

私が国会図書館で捜してもなかったし、また全国の国立図書館からも姿を消していたその本を、その方がどのようにして捜し出したのかと言うと、あちこち捜してみたら外務省の外交史料館にはなかったのですが、外務省の建物の内にある図書館の中にあつたそうです。それで「その本を見せてくれ」と要求したところ、「これは内部資料なので外部に渡すことはできない」と断られました。するとその方は国会議員を通じて、「このように古い情報すら隠すのは、情報公開法の精神に外れることだ。民主国家である日本で、こういうものを隠したりしてはいけない。」と喧嘩したあげく、やっと手に入れたと言います。そこにはこのように書かれています。

日本が韓国から受け取るべき金額	約140億円
日本が韓国に支払うべき金額	約120億円
差引受取額	約 20億円

その当時の換算率は米貨1ドルが日本円15円にあたるという数字から計算して見ると、各各約9億3千万ドル、8億ドル、1億3千万ドルになります。

すなわち植民地支配の未清算として残った借金より、日本が韓半島に残して来たお金がもっと多いので、韓国がむしろ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計算内容です。

「日本側の額は、どのような根拠によったのか。」という想定質問に、返事が用意してありません。

「日本が韓国から受取るべき額の算定においては、外務省が当時入手しうる資料、例えば朝鮮引揚同胞世話会の[在朝鮮日本人個人財産額調]、朝鮮からの引揚者の報告書をできるだけ幅広く参照して、強いて数字で表わせばこの程度になろうという腰だめの数字を示したもので、個々の資料から積み上げて推定したものではない。」

確かではないと言い訳ばかりしているこの答弁からは、どのように計算したのか、その根拠は全く捜すことができません。

同じ本の29頁では、その主張がもっと強烈です。

[韓国に置いて来た日本の国民の私有財産は終戦時の価格で約120億ないし140億円に対してはクレームを有すると主張する。これが韓国における全財産価値の85%に相当すると言うのは、とんでもない大げさな話である。これに対し韓国側は、日本における財産約90億ないし120億円にクレームを持つという。それを相殺しようという提案がある。これは実際上20ないし40億円を韓国のために放棄することになる。]

6. 25動乱の火が消えてまだ数ヶ月、爆弾の匂いが残る韓国に対して莫大なお金を要求するのは、これがどれほど不当で呆れた話なのは、ここで説明する必要ないと思います。

しかしこんな要求が通じないことは、初めから日本側もよく知っていたようです。だから大っぴらに韓国に要求することもできず、今のところ隠すしかないようです。

しかし冊子に対してはまだ、その続きがあります。

私は既に上の方法でこの数字を入手していたのですが、念のため一度インターネットで検索して見たところ、簡単にヒットしました。当初は[特集号6]という数字を入力する事ができなかったのを探せなかったのですが、地方にある古本屋で売っているのです。注文したところ、1週間後にはその本が到着しました。ここにその実物があります。

そこにまた、もう一つのエピソードまで出て来ました。この本は第4次開示の時、既にもう公開されていたそうです。それではここまでの、私の努力は何だったのでしょうか？ またそれなら4次でもう公開してある数字を、なぜ6次では黒塗りにするのでしょうか？ 外務省の無駄な仕事に、余計に腹が立ちました。

4. 韓国側要求の柱、請求権8項目

[請求権 8項目]の金額に対してはいつ頃から双方が具体的な金額を提示しながら対立するようになったのか確定できませんが、1958年に開かれた第4次交渉 [一般請求権小委] (12月1日)で韓国側が[請求権 8項目]金額[3億ドル以上]、これに対する日本側が[4千万ドル内外]と推算して対立したそうです。この数字は日本側、韓国側公開文書を探してみてもなかなか出て来ませんが、林炳植著 [林炳植回顧録 - 近代韓国外交の裏面史] 1964年の本にあると、高崎宗司さんの本 [検証韓日会談] 93頁と、太田修著 [日韓交渉 - 請求権問題の研究] 206頁に引用されています。

北朝鮮帰国問題で中断していた第4次韓日会談ですが、1959年に入り4月15日に再開されます。それに先立ち澤田廉三首席代表は会議を召集しますが、その席で伊関アジア局長は[文化財、船舶の問題については日本側から韓国側に約束する一方、漁業問題については先方に譲歩させ、また請求権問題は国交樹立の後に持越すという基本方針をもって会談に臨みたく、大体閣議決定を得ておき、個々の問題については会談で決定した後、改めて協力を要請]します。しかし請求権問題に対して大蔵省側は、[真に処理すべきものは処理し、しからざるもののみを残す方式も考慮すべきである]と言う意見を表明します。日本側文書3次開示125の188頁

4. 19革命を経て軍事政権が樹立した韓国との第5次韓日会談は、1960年10月に始まります。第1次一般請求権小委員会が開かれた11月10日、韓国側は[対日請求要綱]といって8個項目を提示します。その日には具体的な金額をまだ日本側に伝えませんでした。既に韓国政府内部では計算が皆できていました。

日本政府に知らせた金額は、日本側文書でもあちこちでよく出て来ます。しかし場所によっては、それすらも例えば6次開示1102の1755 [日・韓請求金額の事情]8頁では 黒塗りにしているので、何の一貫性もない外務省の下らない黒塗りにには本当に頭に来ます。

日本側文書に表れる韓国側の対日請求金額。日本側6次公開1102の1736、40頁。1962年1月10日大平官房長官の命によって作成されたものと書かれています。単位は100万円です。1736の

9、17頁や1178の1914、102頁も同じ数字。金額が未確定な部分は省略しました。

I 地金 249トン、地銀67トン 評価額係101,582

II 総督府関係郵便貯金等 1,198、朝鮮簡易年金 135、海外為替貯金70、凍結受取金 46

V 韓国人の対日本人及び対日本政府請求、

有価証券8,735、日系通貨 1,526、被徴用者未収金237、被徴用補修金 364百万ドル、恩給306、帰国韓国人奇託金の内通貨類11、未決裁鮮銀券49、朝連寄託差押分55、生保準備金請求438

合計 円債務 12,805百万円(853.6百万ドル)、ドル債務364百万ドル、

現物(地金銀)282百万ドル

計 15億ドル(但し円負債のドル評価は15円対1ドルとする)

5. 国立公文書館つくば別館に保管されていた被徴用韓人の未収金額

しかし黒塗りされた帰国朝鮮人、即ち被徴用韓人の未収金に対する日本側計算金額が遂に、今度初めて私たちの団体の会員の努力で発見されました。それは国立公文書館つくば別館にありました。史料 [経済協力/韓国105]②65 - 0001 - 12698の79から119頁。

上の被徴用者未収金2億3700万円の内訳が書いてあります。

[司令部渉外局から在日韓国代表部に通知された2億3700万円は、司令部からの claims from Koreaの覚書きに基づき、1949年12月21日付総司令部宛に大蔵省から報告された、下のような内容の司令部算出推定。

このお金はその当時働いていた労働者たち本人が、当然受け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賃金なのに、それが今まで放置されているなど開いた口が塞がりません。

調査した所	件数	債務額(概算)	
国家地方警察本部	2	1,708円	
運輸省中央气象台	1	2,400円	
郵政省(郵便部)	17	1,222.86円	
農林省(林野庁)	2	590円	
宮内庁	51	7,903.86円	
運輸省船員局	311	417,500円	
法務省	1,219,236	60,988,142.93円	
旧陸軍		9,000,000円	24,770,720.00
旧海軍	55,823	56,301,431.77円	53,402,980.61
労働省		110,843,254.53円	
その内訳供託制		4,582,401.54円	
郵便貯金		9,450,428.03円	重複差引176,680,320.64
銀行預金		13,465.49円	
有価証券		55,448.57円	
未収金		96,741,510.90円	
総合計		237,564,153.95円	

この未収金問題に対しては 1961年5月10日第5次韓日会談予備会談一般請求権小委第13次会議で取り上げられます。韓国側文書718の 377頁、日本側 3次開示2260の 95、22 - 23頁。3次公開ではまだひどい墨塗りが少なかったもので、そのまま公開されたようです。

日本側大蔵省理財局次長吉田信邦主査代理は [自分達としては死亡者、傷病者に対してはできるだけのことはしたいという気持をもっている。遺族の場合には相続人に対して援護する等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うが、韓国側で具体的な調査をされ、それを日本側とつぎ合わせをする用意があるか? (中略) 自分としては未収金は払うべきであり、また払い得る措置がとられてい

るものである。これらは元来被徴用者が正式な手続きを経てやめていれば(?)そのとき支払いえたものが、今日まで国交が正常化していなかったため支払が円滑に行われなかったもので、これは**両国政府のあっせん**で直にでも支払わ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必要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と述べます。

この文章はこれをそのまま信じて鵜呑みにしてはならず、日本側はとても善良そうな振りをしておいて、その裏で韓国側が持っている筈もない犠牲者の名簿、個人情報等を要求し、結局個人補償から逃げる道を選びます。

この日本側発言に対応して韓国銀行国庫部長李相徳主査代理は、同じ頁で [補償金支払い方法問題だが、われわれはわれわれの国内問題として措置する考えであり、この問題は人員数とか金額の問題があるが、とにかくその支払いはわが政府の手です。]と言い、日本政府の代わりに韓国政府が責任を負うと発言します。

ただ、この同じ会議の最後に、韓国側李主査が「**当時韓国では道路を歩いている者を引っぱって行って最も激しい労働に従事させられたもので、言わば牛馬の扱いを受けたものである**。これが公の文書としてポツダム宣言、カイロ宣言の表現となって現われたものである。日本側では**同じ日本人の扱いをしたと言われるが実情はこのように違うのであって、このような扱いを受けた者に対し、当然相当な補償がなくてはならないと述べた**」とありますが、韓国側文書ではなぜ、この部分が省かれたのかが不思議です。

6. 揺らぐ韓国側の総請求金額

同じ韓国側文書の401頁には「**わが側第1案13億ドル、第2案9億ドル、個人 Base 推算1億ドル、日本側個人Base推算36:1換算で6千万ドル、1/2, 1/3 計算時 3千万ドル、または 4千万ドルという金額があります**が、この推算が何に根拠を置いたものかはよくわかりません。また397頁には**対日請求金額合計4億4千万ドル、最小限 3億ドル**という数字も見えます。

1961年8月10日外務部の林参事官と張1等書記官はアメリカ国務省韓国課課長署吏 “マンハ - ド” 氏、日本課課長 “スウェイン” 氏を午餐に招待し、韓日会談に関する意見を交換しました。そこでは [韓国側が望む総請求額が(非公式的に表明されたことと強調) **2億5千万ドル**の線まで引き下されたと伝えられている]と出ていて、韓国側の数字も確定されたものではなく、ふらふら揺れて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韓国側文書 720の 120頁。

日本を訪問した金潤沢経済企画院長は1961年9月1日、小坂外務相との会談で総額 8億ドルを提示しました。またそれに対して日本側は、純請求権に対する弁済として 5千万ドル、それ以外に韓国の 5ヶ年計画の内容を見て無償援助の形式で支払いたいと言います。韓国側文書 721の 117頁。

これに関連して15日の毎日新聞は [政府首脳部に対して非公式に対日財産請求権に関する意向を打診した事があったが、その時金院長は要求額として 8億ドル(日本円2, 880億円)の案を提示したという事実が14日、政府有力消息筋から明かにされた。“李承晩” 政権時代には約20億ドルの対日要求額を考慮したと言ひ、張勉政権当時には12億ドルを考慮中だったと伝えられている。]と伝えたと、と同じ721の189頁にあります。

韓国側文書721の 157頁には1961年9月11日付で [韓日各懸案問題解決のためのわが側の最終譲歩線]という文章があり、 [金額については法的根拠と条理に鑑み、わが側の請求権金額は莫大な数字に達するものだが、国交正常化のための対局的見地、日本の支払い能力、日本人の過去在韓国財産の帰結、今後期待する両国間の借款等、経済協力等を考慮して最小限度にまで減らし、3.5億ドル以上なら解決することに決心するものです]と記述されています。

7. 韓国側請求8項目に対する日本側の検討

1961年9月14日付日本外務省の内部文書、日本側 6次開示1174の1360、4頁 [日韓請求権解決方式に対して]には、[形式、名分にとられる朝鮮民族性に鑑みても、韓国政府は懸案解決後国交回復、そして始めて(ママ)経済援助受入れとの方式に固執するであろう。]と、少し民族差別的な説明があった後に、[請求権には(イ)請求に応ずるを妥当とするものと、(ロ)応否何れにも理屈の立つものがある。もとよりrelevant clauseがあり、(イ)も(ロ)もこれにより拒否も可能であろうが、また拒否の程度に手心も加え得るであろう。経済援助中無償援助として考えられるものを、この(ロ)にまわすのが実際的ではなからうか。6つとも会談の事務レベルでは、(ロ)は全然出さず、政治的解決の段階で最後に出すべき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

3. 韓国請求権を以上の考え方で整理して見ると次の如くなるであろう。

(イ) 応ずるのが妥当とするもの

A. 大蔵省も問題のないもの

(i) 帰国朝鮮人の税関保護預り金 10,510,200円58銭

この金額は文書の中ですべて黒塗りになっているので、日本側文書1736にある韓国側の要求額を記載します。

(ii) 軍人、軍属及び政府関係徴用労務者に対する未払賃金

被徴用労務者 667,684 その内死亡者 12,603、負傷者 7,000

軍人、軍属 282,200 その内死亡者 65,000、負傷者 18,000

生存者 930,081 X 200ドル = 186,000千ドル

死亡者 77,603 X 1,650ドル = 128,000千ドル

負傷者 25,000 X 2,000ドル = 50,000千ドル

合計 3億6,400万ドルも日本側文書 1736から引用

(iii) 帰国朝鮮人労務者に対する未払賃金供託済み分

これも同じ文書1736に 237百万円とあり、今回発見された国立公文書館つくば分館にあった資料による237,564,153.95円と一致します。

(iv) 昭和27年4月までの未払恩給

韓国側主張は1736に306百万円とあり、日本側の数字も韓国側文書 752の 104頁に [日本側は昭和20年8月以後27年4月までの{朝鮮関係恩給係数}を提出して必要な説明を行ったが、その合計数字は次の通りだ。(この内 2,945,298円は既に支払い済み。)]

恩給局長裁定分 2,404人 145,111千円

朝鮮総督、道知事裁定分 5,632人 261,468千円

計 8,036人 406,579千円] と明らかになりました。

B. 返還に応じるのが妥当だと思われるものその他

(i) 郵便貯金

個人通帳提示を得て支払うこしすれば、北朝鮮の問題も生ぜず好都合だが、動乱のため通帳紛失のケースも多いだろうし、また主としてその理由の下に韓国側が同意しないと思われる。郵便局の元帳擦り、韓国人(北朝鮮在住をのぞく) 預金者の預金残高を支払うことにすれば、それも一方法だが、韓国側が同意するかどうか。他の方法は、大蔵省預金部の過超金の支払いに応じ、その際北朝鮮分を差引くことである。もっともこの方法ではrelevant clauseが大きい問題となる。以上3方法の1を選ばせ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

(ii) 簡易保険、郵便年金

郵便貯金と同じ方法による。

(iii) 戦争による被徴用者の被害に対する補償

被徴用者については韓国側は180万人との数字を挙げることもあるが、厚生省調

査の徴用者82万人、軍人、軍属28万人、計110万名の数字は固執しそうである。一人100ドルとし、110万人とすれば110,000,000ドル(1億1千万ドル)。そのうち韓国人のみを対称(ママ)とし得れば、これも解決の一方法であろう。しかし建前から言えば戦傷病者戦歿者遺族等援護法に準じた援護を行うべきであろう。この際は、戦傷病者と戦歿者遺族のみが対称(ママ)となる。但し、この方法による際、傷病が日本による被徴用中のものか、またその程度の認定が困難となる。援護の金額が最終的にどの程度となるかも不明で、あるいは前記の方法によるのが、簡便かも知れない。

(iv) 韓国人の対日本政府恩給関係その他

恩給法に規定されたところに準じて支払う。その対象は旧恩給法によって規定していた筈だ。(旧恩給法から外されていたものに支払う理由なし。)問題は、上記(iii)の徴用者の場合もそうだが、韓国側は日本政府より金を貰って生計を立てる韓国人を持ち続けることを嫌やがることにある。恐らくは恩給資金の如きものを韓国側に渡し、それより支払わせることが解決策となろう。

(v) 8月9日以後の内地送金

12月6日以後の内地送金は返還すべきであろう。日付が明確でないものについては、12月6日以前と推定するのが実情に合っているが、妥協して逆に推定しても額は小さいであろう。

(vi) 閉鎖機関、在外会社関係

清算時に朝鮮人持ち分として認められたもの(供託金額以下 5字黒塗り)、又は第2会社発足に当り朝鮮人のため留保された株式で、韓国国籍人のもの。

(ロ) 返還につきrelevant clauseはあるが、妥協を考慮し得るもの。

(i) 朝鮮銀行関係

(a) 鮮銀本店勘定になっていた日銀登録国債

(金額が黒塗りされているが日本側文書 1736に出る韓国側要求を見ると) 73億7 100万円余で、relevant clauseはあるが、返還に必ずべきかと思われる。

(b) 大阪支店にあった地銀

経緯次第によっては(イ)として考慮すべきかと思われる。

(ii) 郵便貯金、簡易保険、年金

上記(イ)Bの(a)及び(b)で述べたように、過超金を支払うこととする時は、個人通帳等に基く日本側への支払要求については免責を明確にしておかねばならない。

(iii) 日銀券

韓国政府又は韓国国民所持の日銀券のほか、焼却日銀券の一定時に限っての引換え。日本政府紙幣また同じ。

(iv) 国債

韓国政府機関及び韓国人所持の国債を返還する。

(v) 過失

銀行券については考慮の余地なきも、国債、郵貯、簡易保険、年金については考慮する。

このように個人請求権を支払うという内部方針を建てた日本政府だったが、どのようにそれが霧散し、経済協力や独立祝賀金に変わって行くのか?その過程を観察してみましょう。

8. 大きな隔たりを見せる、外務省と大蔵省の計算金額

1961年11月12日朴正熙議長が池田首相と会談を持ちますが、そこで話された金額は 5千万ドルに過ぎません。韓国側文書786 [朴正熙国家再建御前会議議長日本訪問]の228頁には[韓国側

が請求しているのは賠償的性質のものではなく、十分に法的根拠がある請求権であると説明し、地金銀、郵便貯金、保険金、徴用者に対する未収金、戦死者に対する補償金、年金等、相当な金額の請求権を韓国は持っているのに、日本側は5,000万ドル云々と言うのだから不当だと言ったところ、池田首相は小坂外相がそう言ったようだが、それは自分自身の意図ではないというような趣旨を話した]とあります。この部分も日本側文書「5次開示1088の968[池田総理、朴正熙議長会談要旨]」3 - 4頁では完全に黒塗りにして隠しています。

同じ頁には「池田首相は日本の立場としては過大な金額を支払うのは困難なので、法的根拠が確実な項目についてだけ請求権として支払い、それ以外の項目は他の名目で支払うのが良い」と言い、他の名目で支払う際には無償援助にすると韓国の国民感情上困難ならば、経済協助等の名目で長期低利子借款を提供するのも方法だろうと話した]とあります。ここも日本側文書では、請求権という言葉がすべて黒塗りされています。

韓国側の8項目請求に対して、日本側も大蔵省と外務省がそれぞれで計算を出していたことが、6次公開1102の1736、17頁から1961年11月9日大蔵省理財局が、1962年1月9日付外務省アジア局が出していたことは判りました。また5次公開804の376、1962年2月26日大蔵省理財局外債課発行の『日韓関係想定問答(未定稿)』では、やはり日本側の金額どころか主張すらも黒塗りされていました。ただこの40頁には、1月10日大蔵省試算額とありますので、上の11月9日とは少し違うようです。

ところがおどろいたことにこの試算額と試算の根拠が書かれた1963年3月大蔵省理財局外債課が発行した『日韓請求権問題参照資料(未定稿、第二分冊)』がみつかりました。これは津田塾大学の高崎宗司教授が東京神田の古書店に流出していたのを探し出したそうです。

こういう決定的ともいえるほど大事な文書が、今回公開されたという6万頁に及ぶ日本側文書の中に、含ま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大問題です。

この冊子の72頁には1961年11月9日、大蔵省では次の数字を出したとあります。「①ややかたい推定によるもの(約300万ドル)、②あまい推正によるもの(1500万ドル)、③大幅にあまい推正によるもの(3,000万ドル)の3本立ての試算表を作成し、省議にかけたがそのまま立ち消えになりかけたが、1962年1月当時の大平官房長官の強い指示があり、主計局にもはかった上、1962年1月10日大蔵省試算として提出した金額は約1600万ドルで、**同じ時に外務省が提出した試算額は7,000万ドル**でした。しかし両省案の開きが多すぎるのでなんとか調整をはかれと指示されたともいわれるが、調整されないままに終わった。」とあります。

上の最後の数字約1600万わずか約7,000万ドルは、高崎教授の「検証日韓会談」と太田修准教授の本[日韓交渉 - 請求権問題の研究] 206頁に引用されていますが、300万、1500万、3000万ドルが公開されるのは、今回が初めてのようです。

でもこの『第二分冊』は全体的な概略の数字だけで、各項目別の細かい数字は皆『第三分冊』に収められているそうです。それでこの冊子は、今回公開で係争中の外務省ではなく、大蔵省の管轄なので早速、今は名称が変わった財務省の情報公開室を訪ねました。

「何分古い資料なので」と待たされること40分、「1962年2月26日の『日韓関係想定問答(未定稿)』はない」という返事でしたが、「1963年3月の『日韓請求権問題参照資料(未定稿)』」は国立公文書館に保管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た。資料が存在していることまでは判明したのですが、さてこれがまた黒塗りなのか、本当に見ることができるのか心配になりました。そこで公文書館のアーカイブスに入って検索してみました。すると簡単にヒットしてつくば分館にあることは判ったのですが、すべて非公開でした。政府の隠蔽体質が外務省だけ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が、本当に徹底しています。

9. うやむやな個人請求権の行方

それでも1961. 12. 21に開かれた第6次韓日会談一般請求権委員会第8次会议で韓国側は 　　ま

だ、個人請求権があると主張します。韓国側文書750の 182頁。

金潤根首席代表：わが側が主張する内容は、韓国人(自然人、法人)の日本人(自然人、法人)または日本政府に対する権利として、要綱第1項ないし第5項に含まれないものは韓日会談の成立の後にも、これを個別に行使できること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両国間の国交が正常化するまで、時効は進行しないものとする。

吉岡主査代理：第1項目ないし第5項目に入っている個人請求権関係はどうなるのか。

金代表：それはこの会談で一括して決定するようになるので、個人としては主張できないし、それ以外のものは実際にあるのかわからないが、ある場合にはその権利を主張でき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ものだ。

ト部副主査：国債等は後に個人が持って来る場合にも、その支払いをしなくても良いという意味か。

金代表：そうだ。

ト部：しかしそうなると軍令 33号関係で、会談が初めに戻る帰ことになる結果になる怖れがある。せっかく政府間の決定を見ても、このようなものがあると大きい“ループホール”が残るのではないか。

金代表：それは再び政府間で会談するのではなく、個人的に請求するようになるので“ループホール”とは見ない。

吉岡：この問題は相当異論があるものと思う。

金代表：そういう個人の請求権があっても、この会談で再び討議しようというのではなく、この会談はこれで終わらせてそういう請求権は、個別的に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道を開いておこうという意味だ。

ト部：軍令第33号との関係から韓国人の対日負債はなくなって、対日請求権は会談成立後も残るとなれば、大きい問題が起こるのではないか。

金代表：軍令第33号とは関係ない。これはそういう請求権が成立するかしないかを定める段階までは行かないで、請求権があると主張する場合、裁判所で裁判する余地はまだあ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のだ。

吉岡：趣旨は分かるが、いろいろ問題があると思う。

ト部：やはり**困難な問題が起こる**と思う。

金代表：起きないだろうから安心して良いだろう。

ト部：私たちとしてはやはり**自然人や法人関係の請求権一切が、この会談で解決されたら**という希望だ。また日本では**個人関係の私有財産権は保護す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ので、項目を入れなくても**その権利は残る**ようになるだろう。

金代表：しかし会談で今までの項目に出たものや、出なかったものや、**皆会談成立という理由で消滅**としたら、**訴訟がある時裁判所で判断するの**にむしろ**困難**だろう。

桜井補佐：そのようになると軍令33号との関係として私的請求権に関しては、根本的に再考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

金代表：**8個項目に入っていない個人請求は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裁判所で主張できないものとするなら知らないが、**主張さえできなくしたらそれも困難な問題**だ。

ト部：私が聞くところでは、韓国人引揚者が大阪で預金したことがあるが、まだ下ろせないものがあると言う。

金代表：預金債券等をこの会談が成立した後、**請求できないとしたら困難**だと言うのだ。

ト部：私有財産が保護され、状況が悪くないものは別問題だろうが、それ以外の場合は簡単なものではないので、やはり**困難な問題**があると思う

金代表：個人財産が尊重される場合でも、政府間で一応協定ができて、この会談を盾に拒否することになれば**困難**だ。

ト部：これはやはり**問題が大きい**と思う。**今すぐに結論を出す必要もない**ので一応検討した後、またわが側の意見を話すことにする。

やはりこのように何も決められないまま、次の会議に移ってしまいました。個人請求権から

離れて政府間の経済協力次元が変わって行きながら、韓日会談は請求権小委員会ではなく、本会議に席を移して討議するようになり、金額だけに対して論争がくり広げられます。

10. 泥沼にはまった金額論争

1962年3月15日に開かれた小坂/崔韓日外相会談第3次会議で、崔徳新長官が「最近現われた数字では金裕鐸経済企画院長が提示した 8億ドルがあると演説します。また、3月26日に開かれた第4次会議で、[日本側の提示した数字は、請求権7千万、借款は 2億(借款はわが側が数字の提示を要求しなかったのに日本側が提示した)]という金額でしたが、これが韓日会談の中で初めて公式に提示された日本側金額でした。韓国側文書733の184、211、347頁

1962年8月21日第6次韓日会談第2次政治会談予備折衷本会議第1回会議で日本側杉道助首席代表は、「請求権のみを使うのなら外相会談で言ったように7千万ドルになるが、この数字も大蔵省は1千5百万ドルにしかならないというのを、外務省がさまざまな理由をつけそういう数字を出したものだ。(中略)もし請求権と無償供与を同時に使う場合には、請求権には推定数字を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その金額が極めて少なくなるだろうし、3 - 4千万ドルにしかならないが、これは韓国側としても困難なものだと思う」と発言します。韓国側文書 736の 181頁。

同じ文書の197頁にも「請求権で日本側が支払いを認められるのは、戦後の混乱や朝鮮動乱で関係書類を失くした等の事情を考慮して、納得が行く限度内で推定の要素を加味したとしても、やっと数千万ドルにとどまり、韓国側が期待していると伝えられる数億ドルとは、とても遠い距離にあります。(中略)日本側が到達した結論を一ことと言うと、請求権の解決とするとどうしても数千万ドルしか支払いできない。しかし請求権の解決からは離れて、韓国の独立を祝い、韓国においての民生安全と経済発展に寄与するための無償もしくは有償の経済援助という形態ならば、相当な金額を供与することについて、日本国民の納得を得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いう内容があります。

続いて9月13日に開かれた第6回会議で韓国側代表裴義煥大使は「両側の主張が日本の 1.5億ドルに対して韓国側は 3億ドルと 3億ドルとなっていて距離がとても大きいので」と言っています。韓国側文書737の41頁。

また同じ文書 45頁には日本側外務省伊関アジア局長の「韓国側は 2億ドルに上げろと言うが、1億7千万ドル位にしか上げられない。韓国側は出発の数字が大きかったのだ。」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

11. 「金・大平メモ」で決着へ

結局 9月26日に開かれた第8次会議では議論が詰まってしまい、金額問題は[第2次政治会談](大平 - 金鐘泌会談)で決めるようになります。

金鐘泌中央情報部長は朴正熙議長から、次のような指示を受けて日本を訪問します。韓国側文書796の 31頁から。

手短かに説明すると[総額が 6億ドル以下に下りるのは、革命政府として到底受け入れられない。われわれの請求権は法的根拠に基づくものなので、日本側が国会と国民に対する説明に難点があり、純弁済という名目だけでは韓国側の要求金額を満足させにくいと言って来たので、純弁済と無償条件の支払いを合わせた総額支払いを受け入れることに譲歩したものだ。

われわれの最終譲歩妥結金額をケネディ大統領に通報したことがある。交渉の技術上、日本側が 1億5千万ドルを提示したらわれわれは6億ドルを提示せよ。また日本が 2億に上げたらわ

れわれも5億に下げても良い。日本が2億5千万ドルまで接近したら、政府の指示を受けて交渉に入るように方針を決めた。]となっています。

大平・金鐘泌会談に臨んで日本政府は最終案として、無償供与2億5千万ドルを決めていました。日本側6次開示1165の1824、1及び16頁。

実際に10月21日会談に入ると大平外相は、[自分としては、できるだけ3億ドルの希望に近づけるために努力はしているけれども]と言ったが(同じ文書 35頁)、金部長は[当初の18億ドルから漸次6億ドルまで下るのに非常に苦労したものであり(36頁)、表面上の数字を6億ドルに引き上げる手段としても、借款の問題を考えている。(40頁)]と述べ、アメリカ訪問の後[帰国する途次再び会談したい旨述べた。(46頁)]と言って、次の会談を迎えることになります。

しかしその翌日の池田首相との会談では、再び後退した金額が提示されます。これは首相と外相間の意思疎通ができていないことを物語ります。

池田首相は[無償助支払いは事実上、法的根拠に基づいた純弁済額はいくら厚く計算しても7,000万ドルに過ぎないが、妥結しようと相当な考慮をして今回の予備会談で1.5億ドルを提示したものであり、無償助でそれ以上を支払うのは、日本国民が納得し難い問題]であると表明します。韓国側文書796の120頁、10月22日午後4時[池田総理・金鐘泌会談]

11月8日朴正熙議長は金鐘泌部長に下の訓令を下します。韓国側文書796の150頁

[2~2.5億ドル(純弁済+無償助)+2.5~3億ドル(借款)=6億(総計)]

それで1962年11月12日第2次大平・金鐘泌会談で、有名な「大平メモ」が渡され、[無償3億ドル、有償2億ドル、資金協力1億プラスアルファ]で、この長い間続いた韓日会談が決着したのは、あまりにもよく知られた事実なので、ここでの詳しい説明は略します。(韓国側文書796の162頁、172 - 173頁)

12. 揉めるに揉めた「請求権」の名称

名目について日本側は第2項で、[両締約国は、平和条約第4条に基づく韓国または韓国国民の日本国または日本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が、完全に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という文書を準備して、会談で韓国側にメモが渡されました。(日本側 6次開示1165の1826の3、16、27及び韓国側文書796の168、175頁、すべて日本語で書かれた日本側が作った同じ文章)

しかし実際には [韓国側の案として、{韓日間の請求権問題を解決し、かつ、韓日間の経済協力を増進するため、次の措置を取るものとする……………}という提案があり、予備交渉において討議を進行する事になった。]という討議で、この会議を終えました。(日本側 6次開示1165の1826、43頁)

その予備折衷で日本側は、会議名称さえ「請求権ではなく[経済協力]にしよう」と提案します。韓国側文書738[第6次韓日会談第2次政治会談予備折衷第27次会議]146頁

裴義煥 大使：昨日の請求権関係会合で、日本側は同会合の名称を“経済協力関係会合”にしようと言ったが、過去10年間も使って来た会議の名称を今になって直すということは不当で、またこのような問題で韓国の国内輿論を刺激するのは良くないと思われるので、このような些少な問題で時間を浪費せずに、従来名称どおりにしよう。

後宮アジア局長：些少な問題であれこれ言う必要がないと思う。韓国側では請求権問題会合と称しても構わない。日本側は“その会合”程度に呼ぶ。

裴大使：両側が互いに違う名称を使うというのは笑わせる話だ。同会合はどこまでも韓国の請

求権の解決のための会合なので、当然請求権関係会合になるもので、同会合で経済協力に関する問題が討議されることはあるが、それはあくまでも請求権問題の方法の一つとして討議されることであり、請求権を離れて経済協力問題を討議するのではない。

後宮：名称問題で時間をむだ使いするより、この問題は決定を保留して、早く実質問題の討議をさせる方が良くないか？

崔英沢参事官：韓国側としてはあくまでも請求権解決のための細目規定を討議しようということなので、請求権から離れて経済協力問題を討議しようと言うなら、そういう会合には出席するのが困難だろう。

後宮：初め日本側はOA及び政府借款の償還期間等、請求権問題の原則が解決される前には請求権関係会合の開催を反対したのだが、韓国側の強力な要請があって、日本側は内部的に、それなら請求権問題の原則討議は保留し、経済協力に関する細目規定だけを討議するものであり、今“経済協力会合”という名称はダメだと出たら、関係各省からは会合に出ないと言うかも知れない。

裴大使：日本側の専門家も請求権解決のために会議に参加するのに、その会議の名称を請求権会議としたら出席しないかも知れないというのは理解するのが困難だ。韓国側としては過去に使って来た名称を、そのまま使おうというものだ。

杉首席代表：この問題は日本側が研究して、次の会議時に決定することにしよう。ところで、会合の名称問題で初めから意見が対立するのなら、いっそ請求権関係専門家は会合を持たない方がよいかも知れない。

崔参事官：名称を変えないと会議に出席できないという、日本側の真意がどこにあるのか疑わざるを得ない。万一、日本側がそういう立場を取り続けるなら、今後の会談の雰囲気が憂慮される。(中略)請求権、船舶、文化財は初めから別個の問題で、船舶を請求権に含ませて解決するというのはありえないことだ。しかし万一日本側がどうしても船舶関係会合を持つ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立場なら、船舶関係専門家の非公式会合でも持つように用意して欲しい。

杉：日本側としては船舶問題は請求権に含まれていて、もう討議が終わったものと思っている。

崔参事官：予備折衷で船舶問題は討議が始まってもないのに、終わったなど何の話か？

後宮：理論上で日本は平和条約4条a項による請求権の支払いで、請求権問題は最終的に解決したのであり、船舶を別に与える義務はない。すなわち船舶、文化財がすべて請求権に含まれるというのだ。しかし文化財問題は請求権とは関連なく、文化協力という意でいくらかを韓国に寄贈しようというものだ。

崔参事官：船舶、文化財問題はまだ未解決のままである。

裴大使：日本側は請求権として莫大な金額を提供することにしたと言うが、韓国国民は自由党時代に20億ドルだったとすると、請求権を3億ドルしか貰えなくなったと言って、むしろ不満が多い。

しかし結局この次の会議でこの問題は取り上げられなかったし、韓国の軍事政権の延長で国内情勢が不安になると、そんな問題に対する質問が主要内容になりました。

同じ文書の263頁を見ると 3月28日に開かれた予備折衷第32回会議で後宮局長は、[請求権は制度的な情報の交換はもうほとんど終わったし、これからはOAと政府借款の償還期間問題が解決される前には、もう討議することがない]としたのに対して、裴大使は[請求権問題に関しては、本国から訓令来たことがあるので、もっと討議する問題が残っている]と答弁するのですから、終わりまで平行線でした。

その後、内容的にあまり進展が見られなかった請求権問題は1965年4月3日に開かれた韓日非公式外相会談で合意を見ます。日本側文書1136の739、3頁。韓国側148、248頁。

13. 外相間の合意文書

[韓日間の請求権問題解決及び経済協力に関する合意事項]

李東元外務部長官と椎名悦三郎外務大臣間で、次の事項が合意された。

1. 無償提供(生産物及び用役)

総額 3億ドル、10年間均等提供、但し財政事情によっては両国政府の合意の上くり上げ実施し得る。

2. 長期低利借款(経済協力基金により)

総額 2億ドル、10年間均等提供、金利は年3.5%、償還期間は7年の据置期間を含み20年。ただし、財政及び資金事情によっては双方合意の上償還期間を延長しうる。

3. 民間信用供与(商業ベースに基づく通常の民間信用供与)

(1) 民間信用提供総額は3億ドル以上に達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2) 漁業協力のための民間信用供与9000万ドルおよび船舶輸出のための民間信用供与 3000万ドルは前記(1)に含まれ、かつ、関係法令の範囲内において容易化されるものとする。

4. 韓日オープン勘定残高について確認された対韓債務(約4573万ドル)

(1) 10年間均等払い、金利なし。

(2) 毎年度韓国の要請により、日本側の新たな同意を要せずに、当該年度における日本よりの無償供与よりの減額により現金支払とみなすこととする。

5. 請求権の解決

関係協定の成立時に存在する韓日両国および両国民の財産ならびに両国および両国民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は、桑港平和条約第4条に規定するものを含めて完全に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する。

但し、韓日両国および両国民の財産権ならびに両国および両国民の間の債券債務関係であって、終戦後通常の取引、契約等から生じた関係に基づくものは影響を受けない。

6. 韓日間の文化財問題の解決および文化協力の増進に関連し、品目その他につき協議の上日本国より韓国に対し韓国文化財を引渡す。

この文書はなぜか日本側文書では(不公表)となっていますが、韓国側文書にそんな表示はありません。

(不公表) (合意議事録)

1965年4月3日に東京で

今日イニシアルされた日韓間の請求権問題解決及び経済協力に関する合意事項(以下[合意事項]という。)の交渉において次の了解が確認された。

1. 合意事項5.におい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日韓両国及び両国民の財産並びに両国及び両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には、韓日会談において韓国側から提出された「韓国の対日請求要綱」(いわゆる 8項目)の範囲に属するすべての請求権が含まれており、したがって、関係協定の発効により、同対日請求要綱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なしえないこととなることが確認される。

2. 合意事項5.におい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前記の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には、現在までに大韓民国による日本漁船の拿捕から生じたすべての請求権が含まれており、関係協定の発効により、それらのすべての請求権は、もはや大韓民国政府に対して主張しえないこととすることが確認される。

14. 結局合意されなかった請求権の概念

もう妥結直前まで行った韓日会談なのに、請求権に対する概念が、一つも一致していないままだったという事実が、1965年5月14日に開かれた[請求権及び経済協力委員会第6次会議]で暴露されます。韓国側文書1468の160頁

日本側西山代表：韓国に対するわが側の提供は、あくまでも賠償のように義務的に与えるのではなく、それよりは経済協力という基本的な思考を持っている。

韓国側金代表：李・椎名合意事項を見れば、請求権及び経済協力となっていて、経済協力というのもあるが、請求権的な考えが厳然と表現されている。結局初めに韓国の請求権解決から話が始まり、二つ皆入れてしまうことになったのだ。

西山：われわれは賠償とは違い、経済協力という面が強いという考えだ。

韓国側李圭星首席代表：われわれも提供が賠償ではなく、特殊なものという考えだが、その表現は請求権及び経済協力という表現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西山：協定案文を作成する時には、二つ皆含まれるようになるが、ここで今しているのは経済協力に関するものだ。

金代表：経済協力のみをやるというのはおかしい。請求権及び経済協力に関する導入手続きを討議しているのだ。

西山：請求権の意味が含まれてはいるが、韓国側では請求権の対価という意向があるようだが、わが側ではそのように考えていないし、したがって基本的な思考の差があるが、これは是正調整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日本の一方的な義務に立脚して提供することになったら困る。韓国側でこのお金はわれわれが貰わ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だから、勝手にすると言ったら困難だ。

金代表：全然義務がないというのは話にならない。最小限度、請求権解決に経済協力という考えが加味され、結局請求権及び経済協力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国民の感情が請求権を受け入れるという考えで一貫しているので、万一請求権という表現が変わったら、これは重大な問題が起きるだろう。

西山：それなら韓国に対する提供は、政治的な関係が深い日韓両国間の友好的な関係のための経済協力だと言うのか？

李首席：請求権という言葉が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

金代表：日本側の考えは理解しにくいだが、賠償ではなく、しかし請求権に縁由するということは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

日本側柳谷補佐：日本側の考えは、あくまで経済協力という考えだ。

韓国側鄭淳根専門委員：問題の始祖が請求権から始まったのであって、韓国の事情が苦しくて助けくれということから始まったのではないではないかと？

柳谷：それは知っている。

李首席：結局、日本側の立場は、純粋な経済協力というのか？

西山：そうだ。

韓国側呉在熙専門委員：そのように言うが、元来経緯を見たら請求権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交渉が始まったし、請求権を解決するにおいて経済協力という言葉が出るようになった。したがって政治的な経済協力として提供するというのはあり得ない。

西山：この問題はあまり触れないで次に移ることにして、とにかくわれわれとしては早く協定文を作り上げるのが重要ではないかと？

このように話はいつまでも平行線で、個人請求権に対しては何も合意を見られないまま、そのまま次の議題に移ってしまいます。

会談が妥結され調印に至る第7次韓日会談ですが、日本側はこの7次会談であった請求権及び経済協力委員会の会議録を公開していません。もちろん会議が開かれたという事実すらも消し去ってしまうことはできないので、会議が開かれた記録はあちこちに出て来ます。例えば日本側6次公開827の493「日韓関係年表(4)」30頁には、1965年6月1日請求権経済協力分科会第1回、2日請求権経済協力分科会第2回、第3回、請求権分科会第1回、3日請求権分科会第2回、4日請求権経済協力分科会が開かれたと記載されています。

また日本側6次公開827の489「韓日会談日誌(V)再開第6次会談・第7次会談(未定稿)」53頁にも、「請求権及び経済協力委員会、請求権分科会」第1回が1965年6月2日に開かれ「第7回請求権

及び経済協力委員会(5.31)で日本側提示の請求権事項に対して、日本側が説明し質疑応答」とあります。3日の第2回では「日本側から三角地帯の日本財産、米軍政に没収された日本人所有の有価証券に対する韓国側の措置に対して質問」とあります。次の54頁には「請求権及び経済協力委員会、経済協力分科会」が6月1日第1回、2日第2回、第3回「第7回請求権及び経済協力委員会(5.31)で日本側提示の請求権事項に対して質疑応答。」、4日「第1-3回の討議成果に対して検討」とあります。

当時、討議された内容に関しては、日本側文書6次公開1161の1316「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十二」(1965.3.6-6.22)の27頁に「第7回会合(5月31日)に至って、日本側から協定、議定書、交換公文、合意議事録など全部で7つの下記の文書を提出した」という記述があり、それらの文書が添付されています。

また同じファイル1316の75頁(記載は13-339)には、日本側が内部で検討した様子が窺えます。「もともと無償3億、有償2億の経済協力という解決方式自体、日本側は主として将来に向けての経済協力と考え、韓国側は主として過去の償いとみなすなど、政治的妥協の産物であり、とくに大蔵省事務当局には3億、2億の解決方式は外務省が独走したものを、むりやり追認させられたとの感情が強く、個々の条項の検討に当たっては、恩恵的な経済協力という立場を厳守した内容とすることを強硬に主張した。これに対し外務省側は、本件交渉の従来の経緯をあらためて説明しつつ、日本案の内容を少しでも緩和ないし弾力的とすることに努め、また、どうしてもこの段階では各省間の話がつかないものについても、当面は堅い案を出す、韓国側の反発具合をみて、いずれ日本案を緩和、修正することについての各省間の事前了解をとりつけることにも極力努力した。(日本案提出後の交渉の席上に各省担当官をなるべく大勢引き出したのも、韓国側のものの方を考え方を各省担当者に直接印象づける意図からであった。)」

15. 諦めきれず最後まで必死にもがく韓国政府

このように万端の準備をしながら、一切の妥協を排除する断固たる態度で調印に臨んだ日本側とは対照的に、韓国側は最後の日、最後の瞬間まで彷徨しながら、迷いっぱなしのまま条約を結ぶこととなります。

同じ頃の韓国側文書、登録番号 6887「第7次韓日会談：請求権関係会議 報告及び訓令、1965全3巻中v.3未解決問題討議及び条文化作業(v.1、v.2は2005年1月17日に公開済み)」から、その進行過程を紹介します。

6月15日13:02 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電報

[14日20:30-23:45 請求権の解決問題に係わる第2条を討議するために会談したところ、**両方の意見が対立したまま結論を見られずに散会した。**]

17日11:31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電報

[16日午後9時から作業を続けて**請求権消滅問題(協定第2条)及び協定に関する紛争問題を除いて、ほとんど条文化を完成した。**]

18日18:12 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電文

[請求権関係協定第2条の請求権解決に関して、日本側は条案文を最終案と言って牛場審議官に直接指示して来た。わが側は日本側の案が少しのIMPROVEMENT(改善)はあるが、**まだいくつかの点で受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交渉の進展のためにわが側の基本立場を、可能な限り日本側案に接近した案を提示して、長期間討議し**

た。

第1項の最後は“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することにした。(まだ桑港平和条約4条(A)のみを言及するのか、4条全般を言及するのかの対立がある)

しかし第2条の第3項に関しては、日本側が自分側の案を受け入れない限り、討議に応じることができないし、日本側の案が最終の立場ということを固執している。]

18日23時外務部長官が首席代表に送った電文

[請求権関係協定第2条に関しては日本側の案通りにする場合、在日韓国人を含んでわが国民の財産権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ようになるのに照らし、**問題が重大なので、継続して強い立場を続けて下さるようお願いする。**]

19日深夜1時58分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至急電報

[徹夜作業で臨んでいる韓日懸案協定全般の条文化のための当地ヒルトンホテル会談の6.19.午前1時現在の現況を、下のように報告します。

協定第2条(請求権消滅条項)に関する討議はまだ続いています。わが側は**日本側案をそのままでは到底受諾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とを明白にした。即ち、わが側は、日本側案の第2項(A)、(B)の日付けが1945.8.15.になり、第3項の措置の対象が制限され、合意議事録日本側案から居住に関する制限規定が解除されない限り、**日本側案を受諾できないことを説明して、日本側の再考を促した。**]

19日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に送った手書きの電文

[請求権関係協定2条に関しては、まだ妥結を見られない。膠着状態を打開するために、次のような妥協案を日本側に提示しようと思うので、可否を至急訓令して下さい願う。]

妥協案内容

1. 日本案 2項(a) 僑胞財産に関して47年8月15日付を受諾する。
但し、1) 合意議事録の居住に関する規定は削除する。これで47年8月15日以後に帰国した者で、日本で外国人登録をしなかったり、居住期間1年未満の者が救済され、現在日本居住者の内非合法的居住者も救済対象になれる。
2) 合意議事録形式で45年8月15日から47年8月15日までの帰国者の財産、権利、利益の中で不動産(特別措置対象は除く)は、日本が取る措置の対象にしないという約束を貰う。有価証券等は8個項目条として当然主張できないものと解釈される。
2. 2項の(b)通常接触開始日時は45年8月15日とずっと主張するが、最終的には貿易再開日(47.8.15)を受諾する。
3. 4. 省略]

20日李東元外務部長官は来日し、22日の調印式に備えることになるので、これから後の外務部宛の電報は外務部次官が受取り、國務総理や大統領秘書室に届けられたものと思われます。

21日1時9分首席代表が外務部に送った緊急電報 JAW - 06490号

[請求権協定第2条に関して 19日夜及び20日の朝、3度にわたって日本側との会議と今日午後の牛場審議官との交渉を通じて、本国政府の承認を条件に次のような文案に合意したので、本部の承認余否を至急回電して下さい願う。]

2項(a) 在日僑胞または僑胞だった人の在日財産において、1947年8月15日は45年からその時まで約100万名の帰還者がいるので、日本側が絶対譲歩できないだろうし、敢えて1945年にする場合には法的地位のように継続して居住する者のみを対象にするしかないそうです。したがって合意議事録日本案の内、居住に関して外国人登録の条件を削除し、1年以上の居住を47年8月15日まで 1年になった者に含むように修正して、また45年から47年の間に帰国した者でも日本所在の不動産は実質的に影響を受けないという了解の下に、47年8月15日を受諾することにした。

2項で請求権に引用されないものは、日本は請求権を個人の債券等ではない、外交法権的な政府請求権と解釈することで、個人の請求権は財産、権利及び利益に含まれるという意味の合意議事録を作成する。

第2条（合意案）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1951年9月8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4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になることを確認する。
2. この条の規定は次のもの(本協定の署名の日までにそれぞれ締約国が執った特別の措置の対象となったものを除く。)に影響を及ぼすものではない。
 - (a) 一方の締約国の国民で1947年8月15日から本協定の署名の日までの間に他方の締約国に居住した事がある者の財産、権利及び利益
 - (B) 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1947年8月15日以後における通常の接触の過程において取得され又は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ことになったもの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って本協定の署名の日に関与する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っ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できないものとする。

合意議事録

協定第2条に関して

(A)「財産、権利及び利益」とは、法律上の根拠に基づき財産的価値を認められるすべての種類の実質的権利を言うことと了解された。(B)以下省略

本職を始め現地交渉代表としては、上記合意案は第2条妥結のために日本側と妥協できる最後の案と思量するので受諾するよう、21日午前中に回電を望みます。]

20日李東元外務部長官は日本に行き22日の調印式に出席する準備に入るので、ここから後の外務部宛の電報は外務部次官が受取り、國務総理や大統領秘書室に渡したものと考えられます。

21日11時40分北東アジア課長から延河亀アジア局長、全相振通商局長宛に送った電文

[請訓された請求権協定第2条案文に関しては本国で緊急検討中なので、今日の午後にも最終指示が可能そうなので諒知なさるよう願います。]

これに対して21日13時26分外務部長官が國務総理宛に送った緊急電報

[JAW - 06490で請訓した請求権協定第2条及びこれに関した合意議事録については、法務部法務局長を含む代表団の専門知識を総動員して検討した結果、わが側に満足な内容で妥結したものであると、本職としてこの文案に合議するのが適当だと思量します。したがって文案表現に政府として別途、再交渉指示が来ると明日の調印が不可能という実情を斟酌して下さるようお願い。]

21日16時30分首席代表が外務部長官宛てに送った至急電報

[請求権第2条については今朝の外務部長官建議の電文の通り決まることを前提に、条約文作成をしています。あと残った一つの問題は上手く処理できると予想されます。したがって以上の報告を斟酌して、既に報告したように明日ある調印式のスケジュールを、即時発表なさるようお願い。]

これ以上修正すると、明日の調印が不可能という報告があるのに、本国からはまだ諦めきれずに、続けて指示が飛んで来ます。

21日18時40分外務部長官が首席代表に送った緊急電報

[請求権第2条に関しては問題の重大さに照らして、現在関係部長官会議を開催、慎重に論議中

なので、そうお知りおきの上進行させて下さるようお願い。]

その検討結果が、次の 21日22時55分に外務省長官、駐日大使これから外務省長官が送った緊急電報。

[請求権第2条の規定については問題の重大さに照らして国務総理、李厚洛室長及び関係閣僚連席下で慎重に検討した結果、下のような結論を下したので今夜中に椎名外務大臣と会談なされ、この貫徹のために最善の努力を尽くされるよう願います。]

もう時が遅いのに [47. 8. 15]を [45. 8. 15]に変更せよとか、合意議事録(C)居住の定義と(D)及び (F)も削除せよと指示を下します。また無責任に、[以上の線に従って貴下の最善を尽くして交渉なされ、その結果と展望に関して可能な限り早急に、遅くとも明朝 8時まで報告なさるよう願います。貴下の健闘と成功を願います。]と執着を見せます。

結論は火を見るように明らかです。22日の深夜2時32分に長官と首席代表は、外務省次官宛に緊急電報を送ります。

[請求権第2条及び合意議事録に関しては、日本側としては現在の案が最終的妥協案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るだけでなく、交渉の段階から見た時、現時点での再交渉は不可能視されます。上を斟酌して明朝 08:00までに再び訓令願います。]

それでもまだ諦めません。22日朝8時25分、外務部次官の長官、首席代表宛に送った大至急電報

[電文接受しましたし、貴地の事情は充分理解しますが、問題が重大なのに照らしてわが側の立場貫徹のために、再度努力しなければならぬという決定があったので、今日の午前中に最短時間内に椎名外相と接触し、その結果を知らせて下さるよう願います。]

結局これに対する返事はなく、本国側としてはやっと諦めることになりました。

22日11時45分外務部次官が外務部長官、駐日大使に送った電報

[請求権第2条問題に関しては、貴見のように処理なさるよう願います。]

このように個人請求権に対しては曖昧なまま、最後の最後の瞬間まで争いながらも、時間に追われてそのまま突入してしまい、調印された韓日協定ですが、問題はうやむやのまま解決されていないことは、誰もが知る事実です。

ここまで日韓会談文書を中心に協定当日までの、ドタバタ解決を見て来ました。玉虫色どころか、基本関係、竹島、在日3世4世の法的地位、個人請求権等々何の決着も見られず、問題山積みのまま見切り発車してしまったのです。

韓日併合の経緯、責任問題から植民地支配に対する合法性と清算、軍人・軍属、強制連行に対する補償と謝罪や戦後補償、在日韓国人の国籍、福祉、教育、永住権と強制退去、北朝鮮帰還事業等、現在に直結するこのような問題の、一体何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のか、そして何がどのように互いに話され、また何が決まったのか、徹底的に検証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제3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피해회복과 청구권문제

김창록

(金昌祿,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문제의 정리

○ 「청구권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인가, 아니면 개인의 청구권도 해결된 것에 포함되는가?

○ 1990년대 초의 일본 정부의 주장

- 1991년 8월 27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야나이(柳井俊二)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 :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일한 양국간에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외교보호권의 행사로서 문제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 1993년 5월 26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탄바 외무성 조약국장의 답변 :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외교적 보호의 포기여에 머무르고 있다. 개인의 소위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 그러한 형태로는 존재할 수 있는 것.”

○ 2000년대 초의 일본 정부의 주장

- 예를 들어 2003년 9월 19일 朴昌煥 외 39명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준비서면 : “‘청구권’에 관해서는,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 3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 협정 제2조 1에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있다. ... ‘청구권’에 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고,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은, 한국 및 그 국민이 어떠한 근거에 기초하여 일본국 및 그 국민에게 청구하더라도, 일본국 및 그 국민은 그것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한국국민이 이 ‘청구권’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 청구를 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그것에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는 것이 된다.”

○ “외교보호권만 포기했으며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 “한국 국민의 청구에 대해서도 법적인 의무가 없다.”

II. 일본 재판소의 주장 - 나고야미쯔비시근로정신대 소송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결

○ 항소인의 주장 : “협정에 의해 청구가 배척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여 소송을 제기한 항소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의칙(민법 1조 2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禁反言).”

○ 재판소의 주장 : “피항소인 일본국은, 이 건 협정의 체결 당시부터,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 건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 1. “협정의 문언”

← 2. 1965년 11월 5일에 개최된 제50회 국회 중의원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조약 및 협정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에서의 시이나(椎名) 외무대신의 답변 :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표현은 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그것을 일단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다, 이런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한청구권이라는 것에 대해 외교보호권을 포기했다, 그 결과,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상태를 어쩔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구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 야나이 조약국장의 답변은? --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하는 비난은 면할 수 없다”

○ 요컨대, 나고야 고등재판소의 주장은,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도 “최종적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2000년대에 들어와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1990년대의 야나이 조약국장 등의 답변은 “불충분한 것”, 다시 말해 실수에 불과했다는 것임.

III. 일본 재판소의 주장의 문제점

○ 시이나 외무대신의 답변은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b) (일본국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열거하는 지역에 있는 합중국군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시수에 따라 이루어진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에 대한 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에 관한 것임.

- 한반도와 관련하여, 위 조문의 “합중국군 정부에 의해, 또는 그 시수에 따라 이루어진 일본국 및 그 국민의 재산에 대한 처리”란, 1945년 미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한 처리임.

-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해 미군정은 일본 정부 및 그 국민의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기타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최초협정」에 의해 미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그것을 이양했음.

- 요컨대, 시이나 외무대신의 답변은, 일본 정부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법적 조치의 결과, 일본인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한국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임.

- 따라서, 그것은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한국인의 '청구권'에 대해 적용될 수 없는 논리임.

○ 만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청구권도 “최종적으로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부터 취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 1990년대 초 야나이 조약국장 등의 답변은 단순히 “불충분한 것”에 머물 수 없음.

-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고령의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까지 가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든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같은 전제에 입각할 때, 일본 정부의 사과는 진실성을 상실하게 됨.

- 「청구권협정」의 결과 한국인 피해자 개인의 청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다.’

- ‘무상 3억 달러는 청구권문제의 해결과는 관련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독립축하금’일 뿐이다.’

→ ‘한국인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의무는 없다.’

-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의심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함.

- 1998년 10월 8일의 김대중-오부찌 공동선언 : “과거의 한시기에 한국 국민에 대해 식민지 지배에 의해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함.

→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할 커다란 손해와 고통을 식민지 지배에 의해 한국 국민에게 주었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의무는 없다.’

IV. ‘전쟁책임·전후보상’ 으로부터 ‘식민지책임’ 으로

○ 문제의 근본원인으로서의 ‘식민지책임’ 의식의 결여

○ ‘전쟁책임·전후보상’의 한계

-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일본 신민이 되어” “일본 국적을 가지는 일본 국민이었던 것은 분명” 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똑같이 수인해야 할 전쟁희생 내지 전쟁손해와 동일시해야 한다.”

○ 1910년 조약 체결 100년을 맞아 ‘식민지책임’에 주목해야 할 것임.

強制動員被害者の法的被害回復と請求権問題

金昌祿

(慶北大学校 法学専門大学院 教授)

I. 問題の整理

○ 「請求権協定」によって解決されたのは国家の外交保護権だけなのか、それとも個人の請求権も解決されたものに含まれるのか。

○ 1990年代初めの日本政府の主張

－ 1991年8月27日の参議院予算委員会での柳井外務省条約局長の調弁：「日韓両国が国家として持っております外交保護権を相互に放棄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したがって、いわゆる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日韓両国間で政府としてこれを外交保護権の行使として取り上げることはできない、こういう意味でございます。」

－ 1993年5月26日の衆議院予算委員会での丹羽外務省条約局長の答弁：「請求権につきましては、外交的保護の放棄ということにとどまっておる。個人のいわゆる請求権というものがあるとすれば、・・・そういう形では存在し得るものである。」

○ 2000年代初めの日本政府の主張

－ たとえば、2003年9月19日朴昌煥外39人が控訴した事件での準備書面：「請求権」については、日韓請求権協定2条3において、一律に「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とされており、同協定2条1において、「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る。・・・「請求権」について、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ず、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したとは、韓国及びその国民が、どのような根拠に基づいて日本国及びその国民に請求しようとも、日本国及びその国民はこれに応じる法的義務はないという意味である。・・・したがって、韓国国民がこの「請求権」に基づいて、我が国に請求をしたとしても、我が国はこれに応じる法的義務がないこととなる。」

○ 「外交保護権を抛棄しただけであって、個人の請求権を消滅させたわけではない。」

→ 「韓国国民の請求に対しても法的な義務がない。」

II. 日本の裁判所の主張—名古屋三菱勤労挺身隊訴訟の名古屋高等裁判所判決

○ 控訴人の主張：「協定により訴えが排斥されることはないと確信して訴訟関係に入った控訴人らとの関係においては、信義則（民法1条2項）に反し許されない（禁反言）。」

○ 裁判所の主張：「被控訴人国は、本件協定の締結当時から、請求権については本件協定により最終的には法的救済が得られない状態にあることを主張していたものと認められる。」

← 1. 「協定の文言」

← 2. 1965年11月5日に開かれた第50回国会衆議院「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条約及び協定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での椎名外務大臣の答弁：「個人の請求権を放棄したという表現は私は適切でないと思います。・・・政府がこれを一たん握って、そしてそれを放棄した、こういうのではないのでありまして、あくまでも政府が在韓請求権というものに対して外交保護権を放棄した、その結果、個人の請求権というものを主張しても向こうが取り上げない、その取り上げないという状態をいかんともできない、結論において救済することができない、こういうことになる。」

○ 柳井条約局長の答弁は？ -- 「不十分なものであったとの誹りは免れない」

○ 要するに、名古屋高等裁判所の主張は、日本政府は1965年「請求権協定」の締結の当時から「請求権協定」によって請求権も「最終的には法的救済が得られない状態にある」と主張したので、つまり、事実上消滅したと主張したので、日本政府が2000年代に入って「法的義務がない」と主張したことは信義則違反ではなく、1990年代初めの柳井条約局長らの答弁は「不十分なもの」、つまりただの過ち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III. 日本の裁判所の主張の問題点

○ 椎名外務大臣の答弁は、「日本国との平和条約」4条（b）（日本国は、第二条及び第三条に掲げる地域のいずれかにある合衆国軍政府により、又はその司令に従って行われた日本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の処理の効力を承認する。）に関するものである。

－ 韓半島に関連して、上の条文の「合衆国軍政府により、又はその司令に従って行われた日本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の処理」とは、1945年の米軍政法令33号「朝鮮内所在の日本人の財産権の取得に関する件」と1948年の「大韓民国政府と米合衆国政府間の財政及び財産に関する最初協定」による処理である。

－ 米軍政法令33号によって、米軍政は、日本政府及びその国民の「金、銀、白金、通貨、証券、銀行鑑定、債権、有価証券」その他の「財産及びその収入に対する所有権」を取得し、「最初協定」によって米政府は大韓民国政府にそれを移譲した。

－ 要するに、椎名外務大臣の答弁は、日本政府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に対する上記のような法的措置の結果、日本人が韓国の法院に訴訟を提起しても、韓国の法院がその請求を受け入れないであろうという趣旨である。

－ したがって、それは、なんの法的措置もとられなかった韓国人の「請求権」にたいして適用されえない論理である。

○ もし、「請求権協定」によって、請求権も「最終的には法的救済が得られない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つまり「法的義務がない」ということが、1965年「請求権協定」締結の当時から取られてきた日本政府の立場であるなら、1990年代初めの柳井条約局長らの答弁は単に「不十分なもの」にはとどまらない。

－ 個人の請求権が消滅されなかったという日本政府の答弁を聞いて、高齢の韓国人被害者たちが日本にまでいって訴訟を提起するようにしたことに伴う責任を負うべきである。

○ 同じ前提に立脚するとき、日本政府のお詫びはその真実性を失うことになる。

－ 「『協定』の結果、韓国人被害者個人の請求に対して法的義務がない。」

－ 「無償3億ドルは請求権問題の解決と関連がなく、どこまでも『独立祝賀金』であるだけである。」

→ 「韓国人たちの被害に対してなにもやったことはないけれども義務はない。」

－ 1995年8月15日の村山談話：「植民地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疑うべくもないこの歴史の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する。

－ 1998年10月8日の金大中-小淵共同宣言：「過去の一時期韓国国民に対し植民地支配により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と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る。

→ 「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述べるべき損害と苦痛を植民地支配により韓国国民に与え、それに対して何もやったことはないけれども、義務はない。」

IV. 「戦争責任・戦後補償」から「植民地責任」へ

○ 問題の根本原因としての「植民地責任」意識の欠如。

○ 「戦争責任・戦後補償」の限界。

－ 「韓国併合二閣スル条約に基づき日本臣民とされていた」ことから「日本国籍を有する日本国民であ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る」ので、「日本国民が等しく受忍すべき右戦争犠牲ないし戦争損害と同視すべきもの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

○ 1910年条約の締結100年を迎えて、「植民地責任」に注目するべき。

제2차 후지코시 소송에 대해

시마다 히로시¹⁾

(島田 廣, 후지코시재판 변호사)

1. 소송의 개요

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한국인 여성 21명, 징용피해자인 한국인 남성 1명이 주식회사 후지코시와 국가를 피고로 1944년부터 1945년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후지코시(당시 후지코시철재공업주식회사)의 공장에 강제 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데 대한 미불임금 상당 손해금과 위자료의 지불과 사죄를 요구한 소송이다.

후지코시에서의 강제연행강제노동에 대해서는 1992년 9월에 후지코시만을 피고로 한 같은 소송(제1차 후지코시 소송)이 원고 3명으로 제기되어 지법, 고법에서 패소한 후 2000년 7월에 최고재판소에서 피고 후지코시가 원고를 포함한 합계 9명의 관계자에게 해결금을 지불하는 화해가 성립되어,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묻는 재판이었다.

2) 2003년 4월 1일 후지코시와 국가를 피고로 제소하여, 원고 8명의 본인심문, 국제법 학자 1명 심문을 거쳐, 2007년 9월 19일에 판결이 내려졌으나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그 중 1명은 청구 각하)하는 부당한 판결이었다. 곧바로 22명의 원고가 항소하여 올해 10월 5일에 결심이 이루어졌다.²⁾ 피해자인 항소인들은 내년 3월까지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 피해 실태

1) 원고들이 연행된 것은 1944년부터 1945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이며, 당시 원고들은 12~15세의 아직 어린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에게 존경의 대상인 초등학교 선생과 지방관청의 관리들이 “후지코시에 가면 상급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차와 꽃꽂이를 배운다” “돈을 모을 수 있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권유하여 군수공장인 후자야마의 후지코시 공장으로 연행해서 후지코시에서는 비행기의 부품생산 등의 중 노동을 소녀들에게 강요해(야근을 강요한 적도 있었다)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사건이다.

후지코시는 1934년에 해군성 지정공장이 되어 1938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육해군 공동관리공장의 지정을 받았으며, 1944년에는 군수공장의 지정을 받은 군수산업의 중핵적 기업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

1) 泉法律事務所 日本國 福井縣 福井市 寶永 4-9-15 910-0004 iumi-smd@law.email.ne.jp

2) 변호단은 항소심 중에 피해자 몇 명이 고령으로 사망하고 남은 피해자들도 고령화한 상황을 지적하고 조기에 화해에 의해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으나 국가와 후지코시는 부당하게도 화해를 거부했다.

양전쟁 당시 1,089명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로 「반도여자근로정신대」를 동원하여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의 모델기업으로 상찬되고 있었다.(덧붙여 미츠이 나고야공장에 동원된 「반도여자근로정신대」 인원은 300명이었다)

2) 종전까지 열악한 조건하에서 가혹한 중노동을 강요당한 데다 귀국 후에도 피해자들은 ‘정신대=위안부’라는 한국사회에 퍼져있는 오해 때문에 가까운 벗과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고통스런 체험에 대해 말할 수 없고, 게다가 정신대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가정 붕괴에 이른 예도 다수 있었다.(주지하듯이 한국에서는 학교의 교과서와 많은 국어사전, 독립기념관의 자료에서도 정신대는 위안부로 설명되어 있다.)

3) 전쟁 중이라 해서 이러한 유과납치와 같은 방법으로 어린 소녀에 대한 강제연행·강제노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1932년에 비준한 강제노동조약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이정한 강제노동조차 건강한 성년 남성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의 행위는 명확한 강제노동조약 위반이며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였다. 또한 일본인 중에는 비슷한 나이의 소녀들이 이런 유과납치 같은 방식으로 강제노동·강제동원된 예가 없으므로 민족차별적이며 범죄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3.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강제노동을 명확하게 인정한 제1심 후지야마지법 판결

원고들이 청구 이유로 낸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 위반), 그리고 국제법(강제노동조약)상의 청구권이다. 다수의 고령 원고들에게서 사정 청취는 곤란한 작업이었지만, 변호단이 몇 차례나 한국을 방문해서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원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재판소에 제출하고, 정성 들인 준비 하에 8명의 원고에 대해 일본 법정에서의 본인신문을 실현하여, 피고의 실태를 전했다.

피고국은 다른 전후보상소송에서처럼 사실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가무답책, 시효·제척,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 포기라는 법률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 후지코시는 강제연행·강제노동의 사실 자체를 다투어 강제는 없었다든가 원고들만 차별적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며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고, 임금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권유할 때 다수의 원고가 기망과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 이러한 위법한 권유가 피고국의 지방 관리, 교원 등의 공무원이 관여해서 조직적으로 되었다는 사실, 열악한 환경 하에서 중노동이 강제되었다는 사실,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소녀에 대한 유과납치 같은 강제연행·강제노동이라는 부끄러운 범죄적 행위·인권침해 행위를 재판소에서 인정하고 단죄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피고들에게는 문제해결 책임을 지도록 요구했다.

4. 항소심에 대해

1) 항소 이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 간의 외교보호권 포기 규정이라는 점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1965년 체결 당시부터 2000년에 설명을 변경하기까지 일관되게 국가간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한 것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 왔다.

또한 미야자와(宮澤喜一)수상 시대에는 수상 스스로 1992년 1월의 방한 전에 한국 보도기관과의 취재에 답하는 가운데 한국국민이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한쪽의 계약국인 한국에서도 1990년대 한국 외무부장관의 국회답변과 2005년 8월 한일회담문서공개후속대책민간공동위원회가 분명하게 밝힌 해석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포기된 것은 외교보호권이라는 해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경위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4조 (b)와 같이 "포기한다"는 표현을 피한 조문의 체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간의 외교보호권 포기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의 부당성

1심 후지야마지법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이 전쟁배상에 대해 일부 배상을 포기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에 따른 취지이며,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제3항의 청구권포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14조 (b)의 청구권포기(이 조항은 2007년 4월 27일의 니시마츠사건 최고재판소 판결로 피해자들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강제력을 갖지 않는 자연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되었다)와 마찬가지로, 이 청구권포기에 따라 일본국과 일본기업이 이미 피해자 개인의 청구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나고야 미츠이여자근로정신대 소송에 대한 나고야고법 2007년 5월 31일 판결도 같은 취지)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전쟁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 출석을 거부당한 것은 지지하는 바이며, 계약국이 아니라 연합국에도 포함되지 못한 제3국인 한국에 대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 어떤 법적 구속력을 미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상 있을 수 없다.

또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국가 간의 전쟁상태를 종결시켜 전쟁배상 문제 등의 전후처리를 하는 조약인 것에 비해, 한일청구권협정은 전쟁배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일본측은 이를 한일교섭 석상에서 되풀이하여 주장했다), 국가의 분리 독립에 따른 재산처리를 하는 조약이며, 양자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임은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시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봐도 분명하다.

이 점에서 전혀 법적 성격이 다른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틀'을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끌어온 1심 후지야마지법판결은 국제법 해석에서 초보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

(3) 한일청구권협정은 직접 적용을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 변화는 상술한 바와 같지만, 조문 표현상에도 '포기한다'는 명확한 글을 사용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14조 (b)와 다른 표현이 사용되어 있으며, 굳이 종전과 같은 청구권포기 조항의 정식을 피했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합의의사록 2항 (e)³⁾에는 청구권에 대해 한일 쌍방에서 국내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정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직접 적용으로 개인의 청구권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데 필요한 규정의 명확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직접 적용이 예정된 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청구권 포기 주장은 권리의 남용이라는 것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와 인도법 위반의 피해자, 국제법상의 강행법규(유스 코겐스)에 위반한 위법행위 피해자에 대해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무효하다는 국제법상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으며(제네바 4조약 공통조항, 빈조약법 조약 53조, 60조), 최근에는 국제연합인권소위원회가 1999년 8월 26일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유사관행」에 관한 결의 1996/16을 채택하였고,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군대위안부 등의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 등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상을 받은 권리는 평화조약 등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게다가 2005년 12월 16일,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따른 희생자의 구제·보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있어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의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받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행정, 입법 및 사법에서 원상회복, 금전배상, 치료 및 만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효과적 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⁴⁾

강제노동은 국제법상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국제법상의 범죄행위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포기조항을 이러한 본건의 청구권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전의 외교교섭에서도 소녀들을 유괴·납치와 같은 방법으로 연행한 근로여자 정신대와 군대위안부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논의한 흔적이 없으며, 이것이 청구권 포기의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상정되어 있었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령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일반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효과를 미친다고 해석했다하더라도 일본이 조직적으로 한 국제법상의 범죄행위의 피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인 본건에 대해 가해자인 국가와 후지코시가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포기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한일청구권협정이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재산을 보장한 헌법 29조에 위반하고 있다는 점, 국가에 의한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변경은 금반언(禁反言)에 반하고 있다는 점, 강제노동조약에 기초한 강제노동 피해자의 구제는 국제법상의 의무라는 점 등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3) "(e) 同條3에 의해 집행된 조치는 동조1에서 말하는 양국과 그 국민의 재산, 권리와 이익 및 양국과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각 국가의 국내조치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

4) 앞서 기술한 국제연합인권소위원회 결의와 국제연합가이드라인의 채택은 모두 일본의 군대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에 미친 충격이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5. 항소심 심리와 ‘세 가지 원군(援軍)’

1) 항소심 심리

항소심에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여자근로정신대 등의 인권 침해는 하등 고려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일근현대사 연구자이고 한일교섭사에 관해 저서가 있는 한일관계 역사학자인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壽) 니가타국제정보대학 준교수가 의견서를 내고 동시에 재판소에서 증언을 했다. 요시자와 교수는 이용할 수 있는 한일회담 관계문서를 정밀히 조사해 보아도 15년 동안의 한일교섭 중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1심 도야마지방재판소에서도 증언해 준 이가라시 마사히로(五十嵐正博) 고베대학 교수에게 다시 의견서와 증언을 요청했다. 이가라시 교수는 1심 판결에 의한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이 국제법상 성립할 수 없다는 것, 국제사회는 피해자의 구제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항소심에서 국가와 후지코시로부터 간단한 반론이 있었으나 두 명의 승인이 명백히 한 사실과 후술하는 외무성 내부문서에 관한 구체적인 반론은 일체 없고 항소인측이 국가와 후지코시를 압도하는 형태로 심리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문서공개로 밝혀진 외무성 내부문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일본의 외무성이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에 그 협정에 따른 청구권 포기가 일본의 개인 청구권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토한 내부문서가 발견되었다.

2005년 8월 한국에서 한일회담 한국측문서의 전면공개에 촉발되어 일본에서도 한일회담의 일본측 문서 공개를 구하는 운동이 추진되어,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문서공개가 되어 귀중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다.⁵⁾ 특히 2008년에 청구권 관계의 중요한 문서가 몇 가지 공개되고, 그 가운데 한일청구권협정에 있어 청구권 포기는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체약국의 국내조치에 따라 처분한다(협정이 직접 처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 되어 있는 외무성 조약국의 내부문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⁶⁾

상기 각 문서는 모두 일본인 개인의 한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정부가 이들 개인에게 보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생각되지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 포기 효과를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별해서 편면적(片面的)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외무성의 내부문서의 견해 따르면, 동 협정의 청구권 포기는

5) 이 문서공개는 한일시민으로 구성된 ‘한일시민으로 만든 한일회담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http://www.7b.biglobe.ne.jp/~nikkan/)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한일시민의 연대가 창출한 귀중한 성과이다. 이 모임에는 나고야 미즈비시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한 사람들도 많이 참가했고 부당한 패소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맨몸으로 활동하여 성과를 쟁취한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6)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작성한 1965년 4월 6일자 「평화조약에 있어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그리고 외무성 조약국이 작성한 1965년 5월 28일자 「일한청구권협정 제2조(안) 나포어선문제」.

전체로서 국가의 외교보호권만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항소인)측은 이 내부분서를 이가라시 교수(국제법)의 의견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다시 한 일청구권협정은 외교보호권만 포기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이 점에 관해 국가도 후지코시도 전혀 반론을 하지 못했다.

3) 이탈리아에서의 피해자 구제의 진전

이탈리아는 독일의 동맹국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는 동맹국에서 이탈하고 독일에 선전포고하여, 독일이 이탈리아북부로 진주하는 사태가 벌어져 빨치산의 저항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나치스독일에 의한 주민학살이 각지에서 발생했다. 이탈리아는 1947년에 연합국과 체결한 평화조약에서 독일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고, 또한 1961년에는 독일과 포괄적인 청구권 포기 규정을 포함한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치스독일로부터 피해를 받은 이탈리아사람들이 독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탈리아국내 재판소에 제기할 경우, 법적 장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들의 청구권 포기이며, 또 하나는 주권국가는 타국 재판소의 재판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의 원칙이었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파기원(破棄院)은 2004년 페리니사건 판결 이후 이러한 청구권 포기는 국제법상 범죄행위의 피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나치스에 의한 주민학살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조약에 의한 청구권 포기에 대해 2008년 10월 21일 이탈리아파기원(형사통합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이탈리아북부의 데스토모마을에서 일어난 나치스독일에 의한 빨치산 사냥을 명목으로 한 200명이 넘는 주민 학살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직접 가해자와 독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형사재판에 따른 개인소송(私訴??) 사건이다. 상기 두 개 조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해서 청구권 포기 효과를 부정한 항소원 판결을 지지하여 가해자와 독일정부에 대해 손해배상 지불을 다시 명령한 것이다.

후지코시소송의 경우는 가해국인 일본의 재판소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주권면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⁷⁾ 주권면제라는 중용한 국제법상의 원칙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보상을 우선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판결의 등장은 중대한 인권 피해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한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 것이며, 한일청구권협정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의사를 무시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어로 번역해 재판소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4) 친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

한국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2008년 11월 한국 전역에서 116명의 후지코시 피해자를 포함한 183명의 여자근로정신대의 피해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리 보고했다.

그 때까지 1차, 2차 소송을 통해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는 30명도 안 되었으므로 비유를 들자면 점에 지나지 않았던 피해가 한국 전국에 걸쳐 면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되고, 또 일본국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 조직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7) 이 점은 오히려 한국 국내 재판소에 대해 일본 국가를 피고로 제소할 경우에 참고가 될지도 모르겠다.

요시자와 교수의 의견서에 의해 이 귀중한 조사 결과가 재판소에 보고되었으며, 이 점이 재판소의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6. 향후 전망에 대해

1) 앞서 말했듯이 항소심 심리과정 전체에서 원고(항소인) 측은 효과적인 주장 입증을 하고 재판소도 이가 라시, 요시자와 등 두 명의 학자 증언을 채택하여 원고(항소인)의 주장에 일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후보상소송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태도가 지극히 정치적인만큼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일청 구권협정에 관한 불합리한 해석은 시정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변호단은 판결에서도 피해 회복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도록 10월에 있을 결심을 향해 전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2. 소송의 귀추 여하에 관계없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화해 가는 가운데, 피해 사실을 어떻게 후세에 전 할지가 과제이다. 특히 많은 일본의 양심적인 교육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 세대에 일본 이 한반도를 식민지 지배한 실태가 충분히 전달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향후 한일관계의 발전에 중대한 염려 요소이다. 이 점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행규명위원회의 충실한 조사가 앞으로 계속되어, 그 조사결과가 일본의 젊은 세대에게도 이용가능한 정보로 공개되길 기대한다.

第2次不二越訴訟について

島田 広¹⁾

弁護士事務所長（弁護士）

第1 訴訟の概要

1. 女子勤労挺身隊被害者である韓国人女性21名、徴用被害者である韓国人男性1名が、株式会社不二越及び国を被告として、1944年から1945年にかけて被告株式会社不二越（当時は不二越鋼材工業株式会社）の工場に強制連行され過酷な労働を強制されたことに対する未払賃金相当損害金及び慰謝料の支払いと謝罪を求めた訴訟である。

不二越における強制連行・強制労働については、1992年9月に不二越のみを被告とした同様の訴訟（第1次不二越訴訟）が原告3名から提起され、地裁、高裁で敗訴の後、2000年7月に最高裁で被告不二越が原告を含む合計9名の関係者に解決金を支払う和解が成立しており、同様の被害を受けた被害者達をどう救済するのかが問われた裁判であった。

2. 2003年4月1日に不二越と国を被告として提訴し、原告8名の本人尋問、国際法学者1名の尋問を経て、2007年9月19日に判決が下されたが、原告全員の請求を棄却（うち1名は請求却下）する不当判決であった。

直ちに22人の原告が控訴し、今年10月5日に結審された²⁾。被害者である控訴人らは、来年3月までには判決がなされるものと思われる。

第2 被害実態

1. 原告らが連行されたのは1944年から1945年のアジア・太平洋戦争末期で、当時原告らは12歳から15歳というまだ幼い少女達がほとんどだったが、その彼女たちに、尊敬の対象であった国民学校の先生や、地方官庁の役人達が、「不二越に行けば上級学校の勉強ができる」「お茶やお花が習える」「お金が稼げる」などの甘言を弄して勧誘し、軍需工場である富山の不二越の工場に連行し、飛行機の部品生産等の重

1) 泉法律事務所 日本国福井県福井市宝永4-9-15 910-0004 izumi-smd@law.email.ne.jp

2) 弁護士は、控訴審の中で、被害者らが何人か高齢のために死亡し、残っている被害者らも高齢化している状況を指摘し、早期に和解により救済が図るよう求めたが、国と不二越は不当にも和解を拒否した。

労働を少女達に強制し（夜勤を強制されたものもあった。）、賃金も払わなかった、という事件である。

不二越は1934年に海軍省指定工場となり、1938年から翌年にかけて陸海軍共同管理工場の指定を受け、1944年には軍需工場の指定を受けた軍需産業の中核的企業の一つであり、またアジア・太平洋戦争当時1089名という国内最大の規模で「半島女子勤労挺身隊」を動員し、同挺身隊動員のモデル企業として賞賛されていた（ちなみに三菱名古屋工場への「半島女子勤労挺身隊」動員は300名であった。）。

2. 終戦まで劣悪な条件下で過酷な重労働を強いられた上に、帰国後も、被害者らは「挺身隊＝慰安婦」という韓国社会に広まった誤解のもとで、親しい友人や家族にさえ自らの苦しい体験について語ることができず、夫に挺身隊に参加したことがばれて家庭崩壊に至った例も複数あった（周知のとおり韓国では、学校の教科書や、多数の国語辞典、独立記念館の資料にも挺身隊は慰安婦として説明されている。）。

3. 戦争中だからといってこのような誘拐・拉致まがいの方法による幼い少女に対する強制連行・強制労働が許されるものではない。日本が1932年に批准した強制労働条約は強制労働を禁じており、例外的に認める強制労働でさえ健康な成年男性に限定しているため、被告らの行為は明らかな強制労働条約違反であり犯罪として処罰されるべき行為であった。また、日本人の同年代の少女達にこのような誘拐・拉致まがいの方法で強制労働・強制動員された者はなく、民族差別的で犯罪的な行為であったといえる。

第3 請求は棄却したが、強制労働を明確に認定した第一審富山地裁判決

原告らが請求の理由としたのは、民法上の不法行為、債務不履行（安全配慮義務違反）、そして国際法（強制労働条約）上の請求権である。

多数かつ高齢の原告らからの事情聴取は困難な作業であったが、弁護団が何回も韓国を訪問して膨大な時間と労力を使って原告の陳述書をまとめ、裁判所に提出し、入念な準備のもとに8名の原告について日本の法廷での本人尋問を実現し、被害の実態を伝えた。

被告国は、他の戦後補償訴訟同様事実の認否すら行わずに、国家無答責、時効・除斥、そして日韓請求権協定による請求権放棄という法律論だけで、原告らの請求は棄却されるべきだと主張した。

被告不二越は、強制連行・強制労働の事実自体を争い、強制はなかったとか、原告らだけを差別的に取り扱ったものではなく違法なことはしていない、賃金も支払った、などと主張した。

判決は、勧誘の際に多くの原告が欺罔や脅迫を受けたこと、かかる違法な勧誘が被告国の地方の役人、教員等の公務員が関与して組織的になされていたこと、劣悪な環境のもとで重労働が強制されたこと、賃金の支払いがな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を認定した。

少女に対する誘拐・拉致まがいの強制連行・強制労働という、恥ずべき犯罪的行為・人権侵害行為が裁判所によって認定され断罪されたことの意味は大きく、不二越のある富山県内や周辺地方を中心にマスコミでも大きく報道された。被告らには問題解決の責任を果たすことが求められる。

第4 控訴審について

1. 控訴理由の骨子は以下のようなものである。

(1) 日韓請求権協定は国家間の外交保護権放棄の規定であること

日韓請求権協定の解釈については、日本政府は1965年の締結当時から2000年に説明を変更するまで一貫して国家間の外交保護権を放棄するものであって個人の請求権を直接処分するものではないとの説明を行ってきた。

また宮沢喜一首相の時代には、宮沢首相自ら1992年1月の訪韓前に韓国の報道機関の取材に答える中で、韓国国民が日本の裁判所に損害賠償請求訴訟等を提起することは可能との説明を行っていた。

一方の締約国である韓国でも、1990年代の韓国外務部長官の国会答弁や2005年8月に韓日会談文書公開後統対策関連連民間共同委員会が明らかにした解釈において、日韓請求権協定で放棄されたのは外交保護権であるとの解釈がとられている。

こうした経緯と、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14条(b)のように「放棄する」との表現を避けた条文の体裁からして、日韓請求権協定は国家間の外交保護権放棄の規定と解すべきである。

(2)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枠組み」が日韓請求権協定に及ぶとしたことの不当性

一審富山地裁判決は、日韓請求権協定が戦争賠償について一部賠償を放棄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枠組み」にしたがう趣旨のものであるとして、日韓請求権協定第2条第1項・第3項の請求権放棄について、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14条(b)の請求権放棄（この条項は、2007年4月27日の中国人強制連行西松建設事件最高裁判決により、被害者らの補償を受ける権利を強制力を持たない自然債務にするものだと判示されていた。）と同様、この請求権放棄により日本の国や企業にはもはや被害者個人からの請求に応ずる法的義務はないと主張できる、と判示している（なお、名古屋三菱女子勤労挺身隊訴訟についての名古屋高等裁判所2007年5月31日判決も同旨であり、同行当裁判所判決について最高裁判所は、2008年11月11日に形式的な判断により被害者らの上告を退けた。）。

しかし、韓国が日本と戦争状態になかったことを理由に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会議への出席を拒否されたことは周知のとおりであり、締約国でなく連合国にも含まれないとされた第三国である韓国に対して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が何らかの法的拘束力を及ぼすことは、国際法の基本原則上あり得ない。

ま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は国家間の戦争状態を終結させ戦争賠償問題等の戦後処理を行う条約であるのに対して、日韓請求権協定は戦争賠償に関するものではなく（このことは日韓交渉の席上日本側によって繰り返し主張されていた。）、国家の分離独立に伴う財産処理を行う条約であって、両者の法的性格が全く異なるものであることは、日韓請求権協定締結時の国会での議論をみても明らかである。

この点で、全く法的性格の異なる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枠組み」を日韓請求権協定の解釈において持ち出した一審富山地裁判決は、国際法解釈において初歩的な誤りを犯している。

(3) 日韓請求権協定は直接適用を予定していないこと

日韓請求権協定の解釈の変遷は上述のとおりだが、条文上も「放棄する」という明確な文言を用いた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14条(b)と異なる表現が用いられており、あえて従前からの請求権放棄条項の定式を避けたと思われる。

また、合意議事録2項(e)³⁾には請求権について日韓双方において国内法による「措置」がとられることを予定した規定が存在している。

したがって、日韓請求権協定には、直接適用により個人の請求権に法的効果を及ぼすのに必要な規定の明確性の要件を欠いており、直接適用が予定された規定とはいえない。

(4) 請求権放棄主張は権利の濫用であること

国際法上の重大な人権侵害や人道法違反の被害者、国際法上の強行法規(ユス・コーゲンス)に違反する違法行為の被害者については、加害国を免責する条約は無効とする国際法上の法理が確立されており(ジュネーブ4条約共通条項、ウィーン条約法条約53条、60条)、最近では、国連人権小委員会が1999年8月26日「武力紛争下の組織的強姦、性奴隷および奴隷類似慣行」に関する決議1996/16を採択し、特に重大な人権侵害である軍隊慰安婦等の武力紛争下の組織的強姦等の性暴力被害者の補償を受ける権利は、平和条約等によっても消滅しないことを明確にしている。さらに、2005年12月16日、国連総会が採択した「国際人権法および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による犠牲者の救済・補償の権利に関する基本原則およびガイドライン」において、国際人権法又は国際人道法の重大な違反により精神的苦痛や経済的被害を被った被害者とその家族らは個人の尊厳と人権を尊重され人道的に扱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行政、立法と並んで司法において、原状回復、金銭賠償、治療及び満足を含む被害者らの効果的救済が図られるべきであるとされている⁴⁾。

強制労働は、国際法上絶対に許されない国際法上の犯罪行為なのであり、強制労働被害者らの救済を受ける権利が奪われてはならず、日韓請求権協定の請求権放棄条項をこうした本件の請求権に適用することは許されない。

また、日韓請求権協定の締結前の外交交渉においても、少女らを誘拐・拉致まがいの方法で連行した勤労女子挺身隊や軍隊慰安婦等の重大な人権侵害被害者の救済について議論された形跡はなく、これらが請求権放棄の対象として具体的に想定されていたとも考えられない。

したがって、仮に日韓請求権協定が個人の一般的な請求権については効果を及ぼすものと解釈したとしても、日本が組織的に行った国際法上の犯罪行為の被害であり重大な人権侵害被害である本件について、加害者である国と不二越が日韓請求権協定の請求権放棄による免責を主張することは、権利濫用であって許され

3) 「(e) 同条3により執られる措置は、同条1にいう両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のために執られるべきそれぞれの国の国内措置ということに意見の一致をみた。」

4) なお、上記国連小委員会決議及び国連ガイドラインの採択は、いずれも日本の軍隊慰安婦問題が国際社会に与えた衝撃をその端緒の一つとするものであり、それだけに日本にはこれを重く受け止め尊重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ない。

このほか、日韓請求権協定が個人の請求権を放棄するものであるとすれば個人の財産権を保障した憲法29条に違反していること、国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の解釈変更は禁反言に反していること、強制労働条約に基づく強制労働被害者の救済は国際法上の義務であることなどを控訴理由として主張しているが、紙幅の関係で割愛する。

第5 控訴審の審理と「3つの援軍」

(1) 控訴審の審理

控訴審では、日韓請求権協定の締結過程において女子勤労挺身隊等の人権侵害は何ら考慮されていない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日韓近現代史の研究者であり日韓交渉史について著書のある日韓関係の歴史学者である吉澤文寿新潟国際情報大学准教授に意見書を作成していただくと共に裁判所で証言していただいた。吉澤准教授は、利用可能な日韓会談関係文書を精査しても、15年にわたる日韓交渉の中で、女子勤労挺身隊被害については全く考慮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

また、一審の富山地裁でも証言いただいた五十嵐正博神戸大学教授に再度意見書と証言をお願いし、一審判決による日韓請求権協定の解釈が国際法上成り立ち得ないものであること、国際社会は被害者の救済を強く求めていることを、具体的に明らかにしていただいた。

控訴審において、国と不二越からは、簡単な反論があったものの、上記2人の承認が明らかにした事実や、後述の外務省内部文書に関する具体的な反論は一切なく、控訴人側が国や不二越を圧倒する形で審理が終結したといえる。

(2) 文書公開で明らかになった外務省内部文書

控訴審の審理の過程で、日本の外務省が日韓請求権協定締結の直前に同協定による請求権放棄が日本の個人の請求権にいかなる効果を及ぼすかを検討した内部文書が発見された。

2005年8月の韓国における日韓会談韓国側文書の全面公開に触発されて、日本でも日韓会談の日本側文書公開を求める運動が進められ、これまでに6次におたり文書公開がなされて貴重な資料が入手できるようになった⁵⁾。特に2008年に請求権関係の重要な文書がいくつか公開され、その中に、日韓請求権協定における請求権放棄は国の外交保護権を放棄するものであり、個人の請求権については確締約国の国内措置によって処分がなされるものである（協定が直接処分するのではない）旨の説明がなされている外務省条約局の内部文書が含まれていたのである⁶⁾。

5) この文書公開は日韓の市民で構成された「日韓市民で作る日韓会談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http://www7b.biglobe.ne.jp/~nikkan/>)の活動によるもので、日韓市民の連帯が生み出した貴重な成果といえる。同会には名古屋三菱女子勤労挺身隊訴訟を支援した人々も多く加わっており、不当な敗訴判決にも屈せず地道に活動し貴重な成果を勝ち取った人々に改めて敬意を表したい。

6) 外務省条約局法規課が作成した1965年4月6日付「平和条約における国民の財産及び請求権放棄の法律の意味」、及び外務省条約局が作成した1965年5月28日付「日韓請求権協定第二条（案）とだ捕漁船問

上記各文書は、いずれも日本人個人の韓国政府に対する損害賠償請求権が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直接影響を受けるものではなくしたがって日本政府がこれらの個人に補償の責任を負うものではないことを説明するために作成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が、日韓請求権協定の請求権放棄の効果を日本人と韓国人で区別して片面的なものとして解釈す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こうした外務省の内部文書の見解にしたがえば、同協定の請求権放棄は全体として国家の外交保護権のみを放棄するものだと解釈するほかない。

原告（控訴人）側はこの内部文書を五十嵐正博教授の意見書と共に書証として提出し、改めて日韓請求権協定は外交保護権のみを放棄したものであると主張したが、この点に関して国も不二越も全く反論をなしていない。

(3) イタリアにおける被害者救済の前進

イタリアは、ドイツの同盟国でありつたが第2次世界大戦末期には同名から離脱してドイツに宣戦布告し、ドイツがイタリア北部に進行する事態となつて、バルチザンによる抵抗が展開され、これに対してナチスドイツによる住民虐殺が各地で生じた。イタリアは1947年に連合国との間に締結した平和条約でドイツに対する請求権を放棄しており、また1961年にはドイツとの間に包括的な請求権放棄規定を含む条約を締結している。

ナチスドイツから被害を受けたイタリア人がドイツに対して損害賠償請求訴訟をイタリア国内裁判所に提起する場合、法的障害は2つあり、一つはこれらの請求権放棄であり、もう一つは主権国家は他国の裁判所の裁判権威服さないと「主権免除」の原則であった。後者については、イタリアの最高裁にあたる破棄院は、2004年のフェリーニ事件判決以来、これらの請求権放棄は国際法上の犯罪行為の被害には及ばないとして、ナチスによる住民虐殺等の被害者を救済する態度をとるようになった。

条約による請求権放棄について、2008年10月21日、イタリア破棄院（刑事第1部）は、注目すべき判決を下した。イタリア北部のディストモ村で起きたナチスドイツによるバルチザン狩りを名目とする200人を超える住民の虐殺について、被害者遺族らが損害賠償を直接の加害者とドイツに損害賠償を求めた刑事裁判における付帯私訴の事件で、上記二つの条約の適用範囲を制限して請求権放棄の効果を否定した控訴院判決を支持し、加害者とドイツ政府に対して損害賠償の支払いを改めて命じたのである。

不二越訴訟の場合は加害国である日本の裁判所に訴訟が提起されているため主権免除は問題とならないが⁷⁾、主権免除という重要な国際法上の原則についても被害者の補償を優先してその適用範囲を限定する判決の登場は、重大な人権被害の被害救済を目指す国際法と国際社会の傾向を一層強く示すものであり、日韓請求権協定もこうした国際社会の意思を無視して解釈してはならないことを教えているといえる。

この判決については日本語に翻訳して裁判所に書証として提出した。

(4) 真相糾明委員会による報告書

韓国の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は、2008年11月に116人の不二越での被害者を含む合計183人の女子勤労挺身隊被害の調査を韓国全体で展開し、その結果を報告書にまとめた。

それまで、1次訴訟、2次訴訟を通じて被害を申告した被害者は30人に満たず、いわば点でしか

題」。

7) この点はむしろ、韓国国内の裁判所に対して日本の国を被告として提訴する場合に参考になるかもしれない。

かった被害が、韓国全国にわたって面をなして広がっている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た日本の国と企業が一体となって組織的に被害を発生させていたことが調査の結果浮き彫りになっており、被害者救済の必要性が一層明確となった。

吉澤文寿准教授の意見書により、この貴重な調査結果が裁判所に報告されており、この点が裁判所の判断にどう反映するかが注目される。

第6 今後の展望について

1. 上記の通り控訴審の審理過程全体において、原告（控訴人）側は効果的な主張立証を行い、裁判所も五十嵐正博教授及び吉澤文寿教授の2人の学者証人を採用し、原告（控訴人）の主張に対して一定の関心を示し、主張立証においては控訴人側が国と不二越を圧倒して審理が終了した。

戦後補償訴訟に対する日本の最高裁判所の態度が極めて政治的なものだけに予断は許さないが、日韓交渉についての秘密文書の開示という新たな展開のもとで迎える初めての判決であり、少なくとも日韓請求権協定についての不合理な解釈は是正できると確信している。

2. 訴訟の帰趨のいかんにかかわらず、被害者らがいずれも高齢化している中で、被害の事実をいかにして後世に伝えていくかが課題となっている。特に、多くの日本の良心的な教育関係者の努力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若い世代には日本の韓半島に対する植民地支配の実態が十分伝えられていないことは、今後の日韓関係の発展にとっての重大な懸念材料である。この点で日帝強占下強制動員被害真相糾明委員会による地道な調査がさらに継続され、その調査結果が日本の若い世代にも利用可能な情報ソースとして公開さ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

以上

전후 보상 재판과 한일 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의의

장 계 만
(변호사)

1 머리말

저는 재일 한국인 3세로, 일본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다루고 왔습니다만 이 공개소송의 원고인 최봉태변호사님의 권유로 변호단에 한국인 변호사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재판의 도중부터 변호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공개 소송의 변호단에 참가했습니다만, 이번, 청구권과 한일 협정에 관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전후 보상 재판과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2 전후 보상 재판과 한일 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의의

일본국내에 있어서의 전후 보상 재판이라고 한다고, 구식민지이었던 한국·중국·타이완 등 여러가지 나라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추구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만, 이번은, 한국인 피해자에 관한 전후 보상 재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전후 보상 재판이 왜 제기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태평양 전쟁후 60년 이상이 경과하고, 현재도 아직 전쟁의 피해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국민일반의 의식은, 전쟁 피해에 관해서 「과거의 문제다」라든가 「일본인도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참아라」라든가, 제멋대로인 주장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피해를 입은 한국인에 있어서는, 피해가 풀어지는 날이 올때 까지, 결단코 「과거」의 문제로 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해서, 여러가지로 전후 보상 재판이 제소되었습니다만, 그 피해회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매우 간단히 밟아 뭉개기 위해서 일본의 재판소가 채용하는 근거가, 하나는 「시효」이며, 또 하나는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시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문제등, 그 부당성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제 발표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한일 협정으로 한국인피해자 모두의 전쟁 피해가 보상되어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현재도 괴로워하고 계시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눈을 돌릴려고 하지 않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나 일본 국민이, 참으로 자신의 전쟁 책임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기, 독일의 바이트제카 대통령은 「과거에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 대하여도 맹목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나 일본 국민이 현재에 대하여 맹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진실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되고, 한일 회담으로 전쟁 피해에 관한 보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행해진 것인가, 그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의의는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후 보상 재판에 기여하는 것도 그 목적중의 한가지입니다만 한국 및 일본의 쌍방으로부터 개시된 외교 문서등을 정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도 반성을 촉구하고,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나 법조가 일체가 되고 일본은 물론 한국에 있어서도 전쟁 피해자에 대한 정책·입법이 행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3 한국인피해자에 관한 전후 보상 재판의 예

1) 그럼, 일본에 있어서의 한국인피해자에 관한 전후 보상 재판의 예를 설명한다면, 잘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서 ① 강제 연행·강제 노동에 관한 사건, ② 중군 위안부에 관한 사건, 및 ③ BC급 전범이나 군인 군속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부는 소개할 수 없으므로, 상기 사건에 대해서 이하에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2) 또한 일본국내에서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에 관한 소송도, 큰 시점에서 말하면 전후 보상 재판의 한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로 전 일본인이었던 조선인에게서 일방적으로 국적을 박탈했습니다. 210만명은 있었다고 하는 조선인 중 140만명정도는 귀국한 것 같습니다만 65만명정도의 재일 한국, 조선인이 일본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의 재일 한국, 조선인에게서는 일본 국적이 없는 것으로 일본국내에서의 수많은 차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전후 보상 재판 전에 재일 한국인의 차별 철폐에 대한 운동이나 소송으로서 ① 연금문제 · ② 취직 차별 소송 · ③ 공무원취임권 소송을 간단히 소개해 둡니다.

① 연금문제입니다만, 재일 한국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일본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많은 재일 한국인 고령자가 여생을 경제적인 빈곤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차별 철폐 운동이 행해지고, 그 후, 일본이 난민조약에 가맹한 것으로 1982년의 개정
에 의해 재일 한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1월 1일에 60세를 넘고 있었던 고령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행해지지 않고, 무연금인채 방치
되고 있어 완전한 차별 철폐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② 취직 차별 문제입니다만 1970년대 경까지 일본국내에서의 재일 한국인에 대한 취직 차별은 지독하고
소위 대기업은 재일 한국인인 것만으로 그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대기업인 일본의 히타치
(日立)라고 하는 회사에 차별 철폐를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히타치(日立) 소송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면 그것만으로 제한 시간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판결의 사실 인정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재일 한국인
에게 대한 취직 차별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리했고 재일 한국인에게 대한 취직 차별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
습니다.

③ 공무원 취임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단의 일원으로서 돌아가신 김정득 변호사님과 함께
다툼 소송이 있습니다. 이미 차별 철폐 운동이나 소송의 성과로서 지방공무원에 관해서 재일 한국인에게도
문호가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방공무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당연히 승진해 간 다음 관리직으
로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생겨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도쿄도(東京都)의 보건부에 관한 관리직 채용시험
에 대해서, 도쿄도(東京都)는 외국인에게 수험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재일 한국인인 원고에 대하여 관리직
채용시험의 수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험 자격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만, 결과는 1심의 지방 재판소
에서는 패소하고, 2심의 고등 재판소에서 역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최고재판소에서는 「외국인을
지방공무원의 관리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는 일본의 헌법을 비롯해서 어느 법률이라도 규율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체가 마음대로 정하여도 상관없다. 도쿄도(東京都)는 관리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판
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원고를 패소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일본인의 제멋대로다」라고 하는 일본의 정치가가 자주 말하는 논리로, 도저히 시인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만, 여기에 일본의 재판소의 전후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전후 보상 재판의 쟁점과 판결

1)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전후 보상 재판으로 이야기를 되돌리겠습니다.

① 강제 연행이나 강제 노동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후지코시(不二越) 사건의 시마다(島田) 변호사님으
로부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소는 강제 연행이나 강제 노동의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도 불법 행위의 제척 기간(20
년)의 경과등에 의해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거나 또 미불 임금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의해, 재한 한국인(원고)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거나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불 임금에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일본에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정

중에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온 조선인이나 귀국한 조선인 등에 대한 기업의 미불 임금이 있습니다만, 한일 협정의 체결을 예상하고, 일본정부가 지불에 대비해서 기업에 대하여 공탁하도록 지시한 결과, 약2억엔 가까이 공탁이 행해지고 그 후 이 공탁 금은 특별법(공탁 금의 환부 청구권이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이 제정되어서 현재도 약2억엔 가까이 공탁 금이 일본은행(日本銀行)에 잠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탁 금이기 때문에 권리자인 전쟁 중에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온 한국인이나 그 유족이 지불을 추구하고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만, 도대체 누구한테 공탁되었는가 아무에게도 모르기 때문에 현실로서는 지불되지 않은 채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억엔은 이른바 한국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쌓은 재산이며 정확하게는 개인의 재산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각 개인에 대하여 환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다 못해 한국의 전쟁 피해자전체의 보상으로 충당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종군 위안부 소송에서는 종군 위안부로서 강제적으로 성 노예로 여겨진 피해의 회복을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만, 일본의 재판소는 종군 위안부로서 강제적으로 매춘하게 된 사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해도 국가 무담책의 논리나, 제척 기간의 논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이 발효된 1965(쇼와(昭和)40)년부터 20년이 경과한 단계에서 원고의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BC급 전범이나 군인 군속 재판에서는 군인연금이나 유족연금,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등 원호법에서의 국적조항 차별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재판소는 구제를 위한 입법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국적조항에 의한 차별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의 문제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역시 전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위금 지급법의 제정

제2차 세계대전중 「일본병」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일본정부로부터 일절의 보상을 거절당하여 온 재일 한국-조선인이나 타이완 출신자에게 보상 금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전후 55년을 경과해서 드디어 의원입법으로 실현되었습니다만, 내용은 대상자를 전사자-중도 전상병자에 한하여 최고 400만엔을 한번만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도 전상병자」에서는, 일본인이라면 가장 계급이 낮은 「병사」라고 상병의 정도에 따라 최저 약169만엔에서 최고 약1000만엔이 매년 지급되어 1953년의 현행 제도 창설이래의 수급 총액은, 1인당 약1억 3400만엔에서 4800만엔에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과의 격차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한일 회담 문서공개 소송의 의의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한국측의 공개 소송, 일본측의 공개 소송을 시작하는 계기이었던 것은 조금전에 말했습니다.

한일 협정에는 2조와 3조가 있습니다. 2조에 대해서는 일본의 재판소는 개인의 청구권도 완전히 포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동(同)조의 존재를 방패로 전쟁 책임을 계속 회피해 왔습니다.

상기의 전후 보상 재판으로 소개했던 대로, 일본의 재판소는 국가무담책이나 시효·제척 기간에 있어 문제가 되는 논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방해하는 결론을 내는 최종적인 근거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 규정의 존재를 내 오는 것입니다.

즉, 전후 보상 재판으로 논의되어 있는 것의 본질은 바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 규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재판소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있어서의 청구권 포기 규정을 개인의 청구권도 완전히 포기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올바른 해석이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은 결국 한일 회담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의 올바른 해석은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올바른 해석을 요구한다고 하는 점이 전후 보상에 한일 회담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재시도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3조에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것에 기하여 한일 양정부가, 다시 한번 전후 보상에 관해서 대화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공개 소송의 다음 과제로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戦後補償裁判と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

張 界 満
(弁護士)

1. はじめに

私は在日韓国人3世で、日本の弁護士資格を持っています。主に、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問題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が、この公開訴訟の原告である崔鳳泰弁護士に誘われて、弁護団に韓国人の弁護士も必要だということで、裁判の途中から弁護団に加わることになりました。私自身は、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についての議論につい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公開訴訟の弁護団に加わったのですが、今回、請求権と韓日協定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ということですので、戦後補償裁判と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について、簡単に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2 戦後補償裁判と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

日本国内における戦後補償裁判と言いますと、旧植民地であった韓国・中国・台湾など様々な国の被害者が提起する「日本の戦争責任を追及する裁判」のことを言いますが、今回は、韓国人被害者に関する戦後補償裁判について、簡単にご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

戦後補償裁判が何故に提起されているかについて、ここにお集まりの皆さんにご説明する必要はないと思いますが、太平洋戦争後60年以上が経ち、現在もなお、戦争の被害に苦しむ人たちがいるにもかかわらず、あいかわらず、日本の国民一般の意識は、戦争被害に関して「過去の問題である」とか「日本人も被害を受けたのだから我慢しろ」とか、勝手な言い分が世論を支配しています。

しかし、戦争被害を受けた韓国人にとっては、被害が癒される日が来るまで、決して「過去」の問題にはならないのです。

このような被害者の被害回復に関して、いろいろと戦後補償裁判が提訴されましたが、その被害回復を求める心をいとも簡単に踏みとじるために日本の裁判所が採用する根拠が、ひとつは、「時効」であり、もうひとつは、「日韓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言い訳なのです。

時効の問題については、国際法上の問題など、その不当性はさまざまありますが、私の発表では「日韓協定で解決済み」という問題について、検討したいと思います。

では、果たして、本当に韓日協定で韓国人被害者全ての戦争被害が補償され、解決されたといえるのでしょうか？

現在も苦しんでおられるご高齢の被害者の方が存在していることをみれば、そんな事実がなかったことは明らかであります。

しかし、この現実を目を向けようとしない日本という国や日本の国民が、真に自らの戦争責任を反省し、被害者らに対して被害回復を図るべきだと思ひ直すためには、そのきっかけが必要であると思います。

かつて、ドイツのヴァイツゼッカー大統領は「過去に目を閉じる者は、現在に対しても盲目となるでしょう」という言葉をのこしました。

日本という国や日本の国民が現在に対して盲目とならないためには、過去の真実に目を向けなければならず、韓日会談で戦争被害に関する補償につき、どのような話しがなされたのか、その真実を確かめ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思います。

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は、後に述べるように、戦後補償裁判に寄与することもその目的の一つではありますが、韓国及び日本の双方から開示された外交文書等を精査し、それをもとに、日本政府や日本国民だけでなく韓国政府にも反省を促し、韓日両国の市民団体や法曹が一体となって、日本はもちろんのこと韓国においても戦争被害者に対する政策・立法がなされる契機となることを目的とするところにその意義があると、私は考えます。

3. 韓国人被害者に関する戦後補償裁判の例

- 1) では、日本における韓国人被害者に関する戦後補償裁判の例をご説明しますと、よく知られる事件としては①強制連行・強制労働に関する事件、②従軍慰安婦に関する事件、及び③BC級戦犯や軍人軍属に関する事件があります。他にも様々な事件がありますが、時間の都合で全部はご紹介出来ませんので、上記の事件について以下簡単にご説明します。
- 2) なお、日本国内での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に関する訴訟も、大きな視点からいえば、戦後補償裁判のひとつであるといえます。日本政府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締結をもって、元日本人であった朝鮮人から一方的に国籍を剥奪しました。210万人はいたとされる朝鮮人のうち140万人程度は帰国したようですが、65万人程度の在日韓国朝鮮人が日本に残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れらの在日韓国朝鮮人には日本国籍がないことで、日本国内での数々の差別が生じていました。戦後補償裁判の前に、在日韓国人の差別撤廃に対する運動や訴訟として①年金問題・②就職差別訴訟・③公務員就任権訴訟を簡単にご紹介しておきます。

① 年金問題ですが、在日韓国人が外国人であるという理由で日本の国民年金に加入出来ず、多くの在日韓国人高齢者が余生を経済的な貧困の中で過ごさ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いう問題がありまし

た。

この問題に関しては、差別撤廃運動がなされ、その後、日本が難民条約に加盟したおかげで、1982年の改正によって、在日韓国人も国民年金に加入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しかし、1982年1月1日で60歳を越えていた高齢者については、救済がなされず、無年金のまま放置されており、完全な差別撤廃には至りませんでした。

- ② 就職差別問題ですが、1970年代頃まで、日本国内での在日韓国人に対する就職差別はひどく、いわゆる大企業は、在日韓国人であるというだけで、その人を雇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中で、大企業である日本の日立という会社に、差別撤廃を求めて訴えたのが日立訴訟です。事件の内容を話すと、それだけで持ち時間を超えてしまいますので、判決の事実認定では、大企業による在日韓国人に対する就職差別が認定されて原告の勝利となり、在日韓国人に対する就職差別が緩和されるきっかけとなりました。
- ③ 公務員就任権に関する問題については、私も、弁護団の一員として、お亡くなりになった金敬得弁護士と一緒に争った訴訟があります。すでに、差別撤廃運動や訴訟の成果として、地方公務員に関して、在日韓国人にも門戸が開か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が、そうして地方公務員になった人たちの中には、当然に、昇進していき、次に、管理職になれるレベルまで到達する人も出てきました。そのようななかで、東京都の保健婦に関する管理職への採用試験について、東京都は外国人に受験資格がないと言って、在日韓国人の原告に対し管理職への採用試験の受験を認めませんでした。受験資格を争う事件でしたが、結果は、1審の地方裁判所では敗訴し、2審の高等裁判所で逆転勝訴しました。しかし、最後の最高裁判所では「外国人を地方公務員の管理職にできるかどうかは日本の憲法を始めどの法律でも規律されていないので、地方自治体が勝手に決めていい。東京都は管理職にできないと判断したのだから、その判断を尊重する」として、原告を敗訴させたのです。これは「外国人を煮て食おうか焼いて食おうか日本人の勝手だ」という日本の政治家がよく言う論理で、到底是認出来る論理ではありませんが、ここに日本の裁判所の戦後補償に対する根本的な姿勢があるといえます。

4. 戦後補償裁判の争点と判決

- 1) 話しが長くなりましたが、戦後補償裁判に話しを戻したいと思います。①強制連行や強制労働に関する事件については、不二越事件の島田弁護士より発表がありましたので、それを参考にして頂ければと思います。

基本的に、裁判所は、強制連行や強制労働の事実があったことを認めても、不法行為の除斥期間（20年）の経過などにより、原告の請求権は消滅したと判断したり、また、未払い賃金については、日韓請求権協定の締結により、在韓韓国人（原告）の日本企業に対する請求権は消滅したと判断したりして、原告の請求を棄却しています。

ここで、未払い賃金に関連して、いまだ解決されていない問題が日本にあることをご紹介しておきます。戦中に日本へ強制連行されてきた朝鮮人や帰国した朝鮮人などに対する企業の未払い賃金があるのですが、韓日協定の締結を予想して、日本政府が支払に備えて企業に対し供託するように指示した結果、約2億円近くの供託がなされ、その後、この供託金は、特別法（供託金の還付請求権が消滅時効にかからないという内容を含んでいます）が制定されて、現在でも、約2億円近くの供託金が日本銀行に眠っています。当然、供託金ですから、権利者である戦中に日本へ強制連行されてきた韓国人やその遺族が支払を求めれば、支払われることになるのですが、一体、誰に対して供託されたか、誰にもわかりませんので、現実としては、支払われずに眠ったままになっているのです。この2億円は、いわば韓国国民が血と汗を流して築いた財産であり、正確には個人の財産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それを完全に各個人に対して還付することは不可能ですので、せめて韓国の戦争被害者全体の補償に充てられ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 2) 従軍慰安婦訴訟では、従軍慰安婦として強制的に性奴隷とされた被害の回復を争う事件でしたが、日本の裁判所は、従軍慰安婦として強制的に売春させられた事実があったことを認めても、国家無答責の論理や、除斥期間の論理から、日韓請求権協定が発効した1965（昭和40）年から20年経過した段階で、原告の請求権は消滅したと判断して、戦争責任を回避しています。
- 3) BC級戦犯や軍人軍属裁判では、軍人恩給や遺族年金、戦傷病者戦没者遺族等援護法での国籍条項差別を争いました。しかし、日本の裁判所は、救済のための立法措置が望ましいとしながらも、国籍条項による差別については立法裁量の問題で憲法に違反しないと判断して、やはり、戦争責任を回避しているのです。

甲慰金支給法の制定

第2次世界大戦中「日本兵」として戦いながら日本政府から一切の補償を拒絶されてきた在日韓国・朝鮮人や台湾出身者に補償金を支給する法律が制定されました。戦後55年を経てようやく議員立法で実現しましたが、内容は対象者を戦死者・重度戦傷病者に限り、最高400万円を一回だけ支払うというものでした。

「重度戦傷病者」では、日本人なら最も階級が低い「兵」でも傷病の程度に応じ最低約169万円から最高約1000万円が毎年支給され、1953年の現行制度創設以来の受給総額は、一人あたり約1億3400万円から4800万円にも達するのですから、日本人との格差は大きい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

4. 韓日会談文書公開訴訟の意義

「戦後補償問題は、韓日請求権協定で最終的に解決されたのか?」というのが、韓国側の公開訴訟、日本側の公開訴訟を始めるきっかけであったことは、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

韓日協定には、2条と3条があります。2条について、日本の裁判所は、個人の請求権をも完全に放棄する規定であると解釈しており、同条の存在を盾にして、戦争責任を回避しつづけてきました。

上記の戦後補償裁判でご紹介したとおり、日本の裁判所は、国家無答責や、時効・除斥期間において問題となる論点について、被害者の請求を妨げる結論を出す最終的な根拠として、韓日請求権協定における請求権放棄規定の存在を出してくるわけです。

つまり、戦後補償裁判で争われていることの本质は、まさに、韓日請求権協定における請求権放棄規定の解釈に関する紛争であったといえます。

日本の裁判所では、韓日請求権協定における請求権放棄規定を個人の請求権をも完全に放棄する規定であると解釈してきましたが、果たして、それが正しい解釈であったのか、間違っているのか、それは、結局、韓日会談でどのような議論がなされていたかを検討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うでなければ、韓日請求権協定第2条の正しい解釈はできないといえるでしょう。

その正しい解釈を求めるとい点が、戦後補償に韓日会談文書の全面公開を求める訴訟が寄与出来る点であり、その意義があると言えます。

そして、正しい解釈を決められないというのであれば、韓日請求権協定には、やり直し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条項が3条に規定されておりますので、これに基づいて、韓日両政府が、再度、戦後補償に関して話し合いをもつ必要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が、これについては、公開訴訟の次の課題として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以上

〈자료1〉

소 장

원고 : 별지목록 원고 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1동 831-1 한국빌딩7층

담당변호사 김 진 국

피고 : 외교통상부장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2. 9. 23. 원고들에게 한 “한일협정관련기록(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등

57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일제강점하 피해자 대표입니다(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근로정신대피해자,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피해자, 원자폭탄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피해자, 일본제철피해자, B·C급 전범 피해자, 노무동원피해자, 군인동원피해자, 군속동원 피해자).

2. 피고의 거부처분 경위

가.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강점을 당하여 신산의 고통을 당하던 끝에 1945. 8. 15.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남북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에 이은 냉전에 의해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해결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1965년 비록 한일 간에 국교가 재수립 되었으나 국교 재수립의 전제가 되는 일제강점기 지배의 법적 성격과 일제강점하의 피해자들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양국 간의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현재까지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의 바람직한 미래설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피해에 대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탓에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일본과 명확한 인식의 일치를 보지 못한 탓에 현재 일본과 북한간의 외교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 원고들을 위시한 일제강점하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가해자인 일본 및 일본 기업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들을 청구하는 활동을 하여 오고 있는 바, 이러한 소송에서 가해자들의 항변은 일제강점이 불법이 아니므로 일제시대 하 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징용징병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가 1965. 6. 22. 소외 일본국과 맺은 협정에 의해 국민들의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이하 한일기본조약이라함) 제2조에 규정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이라함) 제2조 1항에 규정된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의 제조약이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으나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비로소 무효가 되었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해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청구권 협정의 관련 규정을 뺏으며 대한민국은 결코 일제강점이 합법적이었다고 인정을 한 적이 없고 아울러 국민인 피

해자들의 청구권을 피해자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멸시킨 것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국간의 외교문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관계로 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련 조항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맺어졌는지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그 해석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및 일본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피고가 일본국과 1965. 6. 22. 맺은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들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양국간에 어떤 주장과 협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에 대해 양국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2. 9. 5. 위 문서를 관장하는 치고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해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였던 바 위 외교통상부 장관을 2022. 9. 23. 자로 문서공개를 거부한다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서번호 : 아일 22000-5509로 이금주 등 총 100명의 청구인께서 2002년 9 월 5일(목) 우리부에 접수시킨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등 총 57건의 문서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한 결과 공개청구대상 문서철 전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제7조 제1항 제2호로 보임)에 의거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러나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하는 문서의 공개로 인하여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위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소송을 통하여 찾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이를 초래한 책임있는 기관으로서 그 문서의 공개조차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원고들은 위 처분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강제 제1호증 | 한일협정 관련자료의 정보공개요청회신 |
| 1. 강제 제2호증 | 정보공개청구관련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입증방법 | 각1통 |
|-----------|-----|

- 1. 소장부분 1통
- 1. 위임장 2통
- 1. 담당변호사 지정서 2통

2002. 10. 11.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 봉 태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진 국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공개요청 목록

생산기관명	생산년도	과 제	문서번호	필름번호
외무부	1952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5차)	88-74	88-1221
	"	제1차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1-8차)	88-75	"
	"	제1차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8차)	88-79	"
	1950-52	제1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88-80	"
	1953	제2차 한일회담 본회의록(1-3차)	88-82	"
	"	제2차 한일회담 기본관계 회의록(1-2차)	88-84	"
	"	제2차 한일회담 청구위원회의록(1-3차)	88-87	"
	1953	제3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결렬경위 (1-3차)	88-86	"
	"	제3차 한일회담 기본관계회의록(1차)	88-90	"
	"	제3차 청구권위원회의록(1-2차)	88-92	"
	1956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3	"
	1957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4	"
	1958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95	"
	"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3차)	88-98	"
	"	제4차 청구위원회 관계자료	88-99	"
	1958-60	제4차 한일회담 교섭 및 훈령	88-101	"
	"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 문제	88-102	88-1225
	1960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1-15차)	88-103	"
외무부	196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재일한인 재산 반입 문제	88-114	88-1227
	1960-61	제5차 한일회담 대표단 임면	88-115	88-1227
	"	제5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회담보고	88-116	"
	"	제5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1-13차)	88-121	"
	1961	제5차한일회담미일평화조약제4조(청구권)의해석에관한 미국방성 각서 공개	88-122	"
	1960-61	제5차 한일회담 일반문제	88-123	"
	1961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88-124	88-1229
	"	"	88-1226	"
	1961-62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88-126	"
	1962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회의(동경)	88-130	88-1230
	"	"	88-131	"
	"	제6차 한일회담 제1차 정치위원회 이후의 교섭	88-132	"

	1961-62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위원회 회의록(1-11차)	88-133	"
	1962	제6차한일회담제2차정치회의대비석출(析表)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 미합의점	88-134	88-1231
	1959-62	한일회담청구권관계자료: 일본의대미GARIOA,EROA 채무변제	88-135	"
	1963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의(동경)	88-139	"
	"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담 예비 석출 청구권 관계회의	88-140	"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	88-141	"
	1961-64	제6차 한일회담:대표단 임면관계	88-142	88-1232
	"	제6차 한일회담:제2차 정치회담 예비 석출 본회의(1-65차)	88-149	"
	"	"	88-150	"
	"	"	88-151	88-1234
	"	"	88-152	"
	"	"	88-153	"
	1961-64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	88-154	"
	1963-64	제6차 한일회담: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문제점 연구	88-155	88-1235
	"	제6차 한일회담(속개):본회의를 위한 예비회담 및 본회의	88-156	"
	"	제6차 한일회담:본회의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의(1-21차)	88-157	"
	"	제6차 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	88-158	"
	"	속개6차한일회담:청구권위원회회의록및경제협력 문제	88-162	88-1236
	1963-64	속개 6차 한일회담: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	88-163	"
	1964-65	제7차 한일회담:대표단 임면관계	88-164	"
	"	제7차 한일회담:본회의 및 수석대표회담	88-165	"
	"	제7차 한일회담: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88-166	"
	"	제7차 한일회담:법적지위위원회의록 및 훈령	88-167	"
	"	"	88-168	"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회의 및 훈령	88-175	"
	"	"	88-176	"
	"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88-177	"

〈자료2〉

서울행정법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 3394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국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 허보열
변론종결 2004. 1. 9.
판결선고 2004. 2. 13.

주 문

1. 피고가 2002. 9. 23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강점기에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강제동원되거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원자폭탄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및 그 유족이라고 하면서 2002.9.5 피고에게 1952.부터 1965.까지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 별지 공개청구목록 기재 문서들(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문서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2.9.23. 그 공개를 거부한(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일본과 일본기업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함과 아울러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65. 6.22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에 관한 그러한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문서를 통하여 청구권협정의 경위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으니, 이에 반한 피고

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들은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문서는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는 청구권협정 및 그 부속서인 합의의사록에 의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이 있을 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에 관하여 보상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거나 원고들이 그에 의하여 실제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문서는 일본에 대한 민간청구권 외에 어업 및 평화선, 문화재,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의사항들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국의 심각한 입장 차이와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져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양국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반일, 반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제외교관례상 이와 같은 문서는 당사국간에 협의를 통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과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들어 우리 정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바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공개할 경우 국제관계에서 국가적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입법목적 및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 할 것이므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80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공지의 사실 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7,8,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의상의 증언,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한일회담의 경과 및 이 사건 문서의 구성

1951. 10. 21. 예비회담을 거쳐 1952. 2. 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 개최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2.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청구권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 4개의 부속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문서는 그 과정에서 작성된 각 회의록, 양국의 교신서류, 우리 정부와 주일 대표부의 교신서류,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령, 교섭 내용이나 전략에 관한 각종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청구권협정의 주요 내용

청구권협정은 제1조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10년간에 걸쳐 3억 달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행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위 제2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a) “재산, 권리 및 이익”이라 함은 법률상의 근거에 의거하여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실제

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되었다.

...

(g) 동조 1에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의사록에 적시된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본으로 반출된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 조선총독부 체신국에 대한 각종 저금, 채권 등, 1945. 8. 9. 이후 일본인이 한국의 은행으로부터 인출해간 예금액, 대체 또는 송금된 금품, 한국 법인의 재일 재산, 한국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본의 유가증권, 은행권 등과 함께 “피징용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인의 대 일본국정부 청구 은급(恩給)관계,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3)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논란

청구권협정 제2조와 합의의사록이 위와 같이 정하고 있음에 관하여,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된 것인지(그리고 그것이 포기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 정부의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 것일 뿐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포기되지 않은 것이고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입론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과 그와 달리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우리 국민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대립하였고,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던 원고 김분선, 황금주 등이 2000. 9. 18.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일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당 재판부에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는 등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 정부의 보상조치

정부는 1966. 2. 19.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1945년 8월 15일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청구권은 이 법에서 정하는 청구권자금

중에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5조 제1항), 1971. 1. 19.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신고기간, 증거조사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1974. 12. 21.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금액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각 법률규정상 피징용사망자와 재산권을 보상대상으로 할 뿐 피징용부상자, 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신고기간도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시행 60일 경과 후부터 10월 이내로 한정되었으며, 보상금은 피징용사망자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에 대하여는 일본국 통화 1엔당 30원으로 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 대하여 약 25억 7천만원, 예금채권 등 재산 74,967건에 대하여 약 66억 2천만원, 합계 약 91억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위 각 법률은 1982. 12. 31. 모두 폐지되었다.

정부는 그 후 1990. 원폭피해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1993. 6.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생존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5)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에 관한 피고의 내부결정

1993. 7. 28. 제정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에는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피고가 외교문서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 1월에 일반에게 공개하되, 다만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가 이익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제4조 제1항, 그 후 정보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8. 7. 6. 위 규칙이 개정되어 비공개 대상을 위 심의회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93. 10. 경 이 사건 문서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면서 외교관례에 따라 당사국인 일본 정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일본 정부가 장기간에 걸친 교섭기록이므로 일반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일괄 취급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되 일본의 외교기밀에 관한 중요 사항이 담겨 있어 일본 정부도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상호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개 여부를 신중히 심사하고 공개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양국이 동시에 공개함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 오자, 피고는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 외교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1994. 1. 경 이 사건 문서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결정하였고, 그 후 1997. 1. 경 일본정부는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문서를 당분간 공개하지 말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6) 원고들의 손해배상소송

일부 원고들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일본과 일본기업을 상대로 군위안부, 근로정신대,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되거나 일본기업에서 강제근로를 함으로써 또는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등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제소원고	제소일	제소법원	상대방	사유
51. 김분선, 60. 황금주	2000.9.18.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일본	군위안부
62. 양금덕, 63. 김혜옥	1999.3.1.	나고야지방법재판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	근로정신대
64. 나화자, 65. 김정주, 66. 성순님, 70. 박소득	2003.4.1.	도야마지방법재판소	일본, (주)후지코시	근로정신대
71. 진승렬, 72. 문병식, 73. 김동천, 74. 서준호, 75. 박장수, 78. 박진주, 80. 김두진	1992.8.25.	교토지방법재판소	일본	우키시마루호 폭침
94. 이근목, 95. 이병목	1995.12.11	히로시마지방법재판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91. 정창희, 92. 정상화, 93. 김도영, 94. 이근목, 95. 이병목	2000.5.1.	부산지방법원	미쓰비시중공업(주)	강제징용
1. 신천수, 2. 여운택	1997.12.24.	오사카지방법재판소	일본, 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3. 이상구	1995.9.22.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신일본제철(주)	강제징용
11. 이의도	1995.5.10.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B,C급 전범으로 몰림
59. 이순덕	1992.12.25.	야마구치지방법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일본	군위안부
12. 나철웅, 13. 오행석, 14. 김기호, 16. 최순주, 17. 김문영, 31. 광중석, 32. 오시남, 33. 한형복, 34. 전병설, 35. 최용수, 36. 장근영, 37. 김행진, 40. 조무연, 47. 윤옥중, 79. 임서운	2001.6.29.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38. 이병주, 39. 이희백	2003.6.12.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인, 군속
18. 박매자, 19. 조영순, 20. 송건태	2000.11.28.	서울지방법원	대한민국	군인 군속 사망자 유족인도청구
41. 이금주, 42. 노정희, 43. 오병익, 44. 오병권, 45. 정화근, 46. 노동호	1993.6.30.	도쿄지방법재판소	일본	군속

나. 판단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 제6조), 이 사건 문서가 한일회담의 최종결론에 이른 의사결정과정과 내부검토단계의 정보라 하여 비공개대상으로 할 법률상의 근거나 합리적 이유는 없다(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단계의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장차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최종결론이 난지 30여년이 경과한 이 사건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한다).

그리고 청구권협정 및 합의의사록의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합치된 해석이 어려워 많은 논란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조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문언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당사국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여기에 조약 체결시의 역사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의 해석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약의 준비문서도 해석을 위하여 이용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권협정 해석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이 사건 문서를 이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 정부가 앞서 본 보상관련 법률에 의하여 이미 마쳤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국민 일부에 대한 그리고 피해의 일부에 대한 보상에 그친 것이므로, 그러한 보상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보상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국민이 더 이상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그러한 보상 등을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통하여 보호받을 실제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문서를 보충적 수단으로 삼아 청구권협정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원고들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차의 판단 사항일 뿐이다).

(2) 한편 이 사건 문서에는 한일회담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여러 현안에 관한 구체적 주장 및 대응 내용, 교섭방침에 관한 지시 및 훈련, 교섭전략 등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그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개를 보류하여 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 자체가 외교관계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외교관계에 따르거나 국제적 신뢰관계 유지를 위하여 당사국인 일본의 요청을 존중하는 것도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은 특히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피고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을 이루면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1조, 제10조, 제21조, 제34조 제1항 참조)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법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위와 같은 알 권리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한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국민이 입게 되는 구체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국익의 정도를 비교衡量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문서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원고들이 이 사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할 것이고, 과연 그러한지 여부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공개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그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 이익 등과 피고가 공개를 거부할 사유로서 드는 외교관계 등에의 영향, 국가이익의 실질적 손상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비공개문서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 중 순번 36번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에 1963. 3. 5.자 외무부의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라는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제1차부터 그때까지의 한일회담 경과, 우리 정부가 제시한 청구항목,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 청구권협정의 세목에 관한 토의 등이 정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에 작성된 순번 48번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순번 55, 56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전2권), 순번 57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양국의 인식을 표시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순번 48, 55, 56, 57번 문서에는 개인적 청구권의 해결과 무관한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순번 36번 문서와 달리 관련 부분을 따로 특정하기 어렵다), 그 외의 문서들에도 우리 국민의 개인적 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에 정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은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의 일본이나 일본기업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유력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고(그 외의 문서들은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 문제의 판단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나이가 매우 많아 그들에게 개인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으며, 위 문서들은 생산된지 30년이 훨씬 지나 당시의 외교 기밀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그 비밀성을 유지하여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볼 것인 데다가(외교기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비공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면 생산 또는 접수된 후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외교문서보존및공개에관한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위 문서들의 공개로 인하여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있어 다소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일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원고들 중 소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본 강점기에 입은 피해에 대한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익의 보호를 구한 사람들은 그 소송에서의 청구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위 순번 36번 문서 중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제와 순번 48, 55, 56, 57번 문서들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한편 이를 비공개함으로 인하여 보호되는 국익은 그들의 위와 같은 이익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고 볼 것인바, 결국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정보의 부분공개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위 문서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문서들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고, 다만 그 밖의 원고들은 일본 강점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뿐 위와 같은 특별하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별지 공개허용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별지 공개대상목록 기재 문서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그 밖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후단(전부 패소한 원고들에 대하여), 제10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영호
	판사	김관중
	판사	조철호

별지 원고목록
---(이하 생략)

별지 공개허용 원고목록

---(이하 생략)

별지 공개청구 문서목록

---(이하 생략)

별지 공개대상 문서목록

공개청구목록 기재 각 문서 중

1. 순번 36번 '제6차 한일회담청구권 관계자료(1963)'에 포함된
1963. 3. 5.자 외무부의 "한일회담 일반청구권문제"
2. 순번 48번 '속개 제6차 한일회담 :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3. 순번 55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4. 순번 56번 '제7차 한일회담청구권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5. 순번 57번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내용 설명 및 자료'

- 이상

〈자료3〉

一次訴訟と異議申立



※注(1)情報公開法 第1章 総則
第11条 (開示決定等の期限の特例) 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著しく大量であるため、開示請求があった日から60日以内にそのすべてについて開示決定等を行うことにより、業務遂行に著しい支障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前条(30日・60日)の規定に係らず、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うちの相当の部分につき、当該期間内に開示決定等をし、残りの行政文書については相当の期間内に開示決定をすれば足りる。

※注(2)異議申立
第18条 (審査会への諮問)
開示決定等について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について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当該不服申立てに対する採決又は決定をすべき行政機関の長は審査会に諮問し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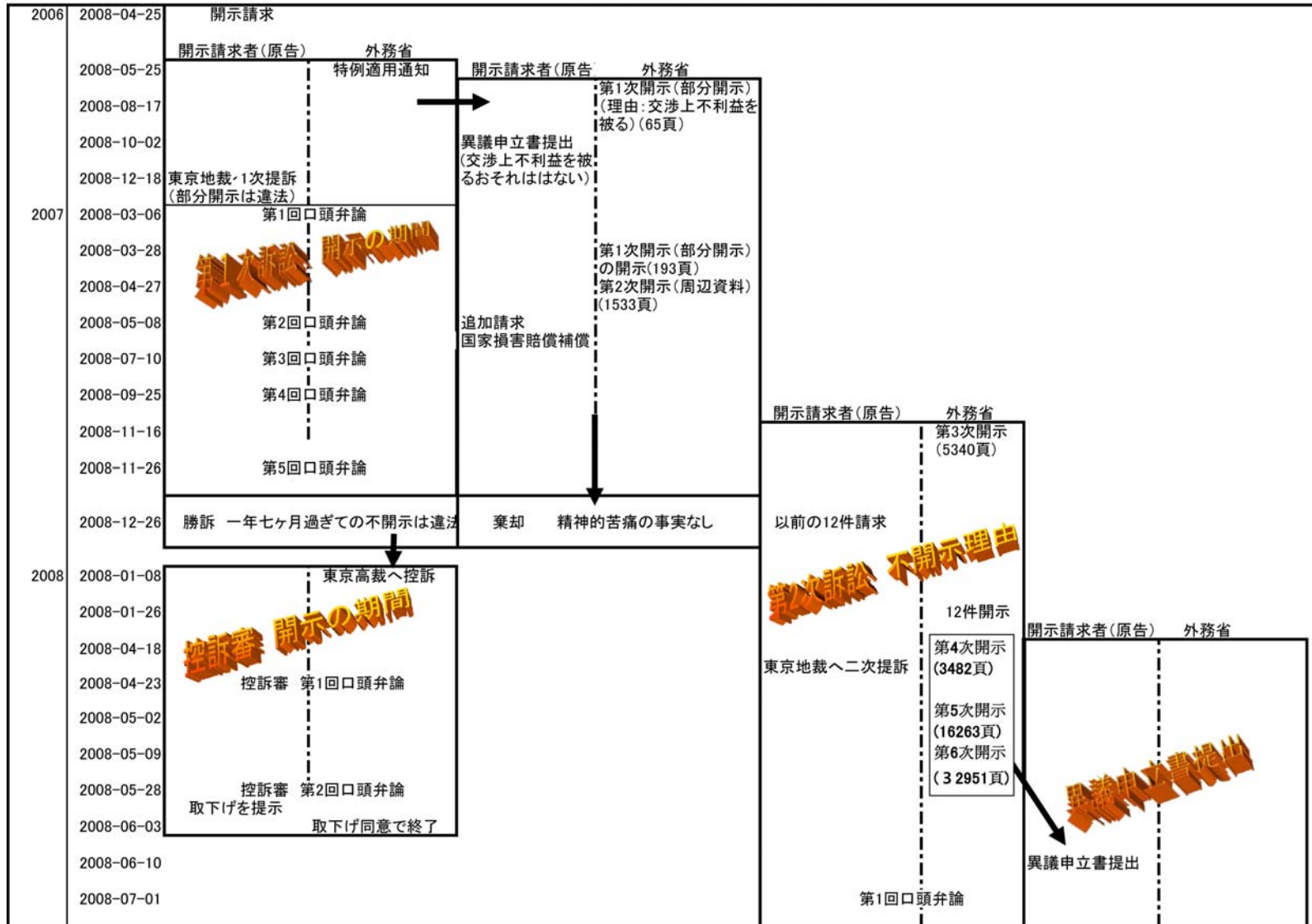
※注(3)情報公開法 第1章 総則
第5条 開示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情報のいずれか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3項 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他国もしくは国際機関と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おそれ又は他国もしくは国際機関との交

〈자료4〉

日韓会談文書 開示請求から今日までの流れ

		開示請求	備 考
2006	2008-04-25	開示請求 開示請求者(原告) 外務省	<p>※注(1) 情報公開法 第11条 (開示決定等の期限の特例) 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が著しく大量であるため、開示請求があった日から60日以内にそのすべてについて開示決定等を行うことにより、業務遂行に著しい支障が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前条(30日・60日)の規定に係らず、行政機関の長は開示請求に係る行政文書のうちの相当の部分につき、当該期間内に開示決定等をし、残りの行政文書については相当の期間内に開示決定をすれば足りる。</p>
	2008-05-25	特例適用通知(注1)	
	2008-08-17	開示請求者(原告) 外務省 第一次開示(部分開示)(理由:交渉上不利を被る)65頁	
	2008-10-02	異議申立書提出(交渉上、不利益を被るおそれはない)	
	2008-12-18	東京地裁へ一次提訴(部分開示は違法)注(2)	
2007	2008-03-06	第1回口頭弁論	<p>※注(2) 情報公開法 第5条 開示請求があったときは、次の各号に掲げる情報のいずれかが記録されている場合を除き、開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3項 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他国もしくは国際機関と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おそれ又は他国もしくは国際機関との交渉上不利を被るおそれがあると行政機関の長が認めることにつき相当の理由がある情報」</p>
	2008-03-28	第一次開示(部分開示)の開示	
	2008-04-27	第二次開示(周辺資料)193頁	
	2008-05-08	追加請求 国家損害賠償補償	
	2008-04-10	第2回口頭弁論	
	2008-09-25	第3回口頭弁論	
	2008-11-16	第4回口頭弁論	
	2008-11-26	第5回口頭弁論	
	2008-12-26	棄却 精神的苦痛の事実なし	
	2008-12-26	勝訴 一年七ヶ月過ぎでの	
2008	2008-01-08	外務省 東京高裁へ控訴	<p>2006. 4.25以前 請求の12件請求</p> <p>以前請求の12件 開示</p> <p>東京地裁へ二次提訴(部分開示は違法)注(2)</p> <p>第3次開示(5330頁)</p> <p>第4次開示(3482頁)</p> <p>第5次開示(16263頁)</p> <p>第6次開示(約31071頁)</p>
	2008-01-26	控訴審	
	2008-04-18	第1回控訴審	
	2008-04-23	第二次訴訟 不開示理由	
	2008-05-02	...	
	2008-05-09	...	
	2008-05-28	第2回控訴審	

日韓会談文書 開示請求から今日までの流れ



日韓会談文書 開示請求から今日までの流れ

年	月 日	一次訴訟	二次訴訟	三次訴訟	異議申立
2006	4月25日	開示請求			
	2008-05-25	特例適用通知			
	2008-08-17	1次部分開示(65頁)			
	2009-10-02	上記の異議申立			
	2008-12-18	東京地裁へ提訴			
2007	2008-03-06	第1回口頭弁論			
	2008-03-28	1次の逆転開示(193頁)			
	2008-04-27	2次開示(1533頁)			
	2008-05-08	第2回口頭弁論	争点: 不開示の理由: 個人・法人情報を除く		
	2008-07-10	第3回口頭弁論			
	2008-09-25	第4回口頭弁論			
	2008-11-16		国側3次開示(5340頁)		
	2008-11-26	第5回口頭弁論			
	2008-12-26	原告: 勝訴			
2008	2008-01-08	国: 東京高裁へ控訴			
	2008-01-26				
	2008-04-18	控訴審第1回口頭弁論			
	2008-04-23	原告: 東京地裁へ提訴			
	2008-05-02				
	2008-05-09	第2回口頭弁論			
	2008-05-28	原告: 取下げを提示			
	2008-06-03	国: 取下げ同意で終了			
	2008-06-10				
	2008-07-01	第1回口頭弁論			
	2008-07-07				
	2008-08-29				
	2008-09-09	第2回口頭弁論			
	2008-10-14				
	2008-11-25	第3回口頭弁論			
	2008-12-17				
2009	2008-02-17	第4回口頭弁論			
	2009-02-19				
	2009-02-26				
	2009-03-04				
	2009-04-06				
	2009-04-15	第5回口頭弁論			
	2009-05-26				
	2009-06-09	第6回口頭弁論			
	2009-07-08				
	2009-07-28				
	2009-09-01				
	2009-10-21	第7回口頭弁論(結審)			
	2009-12-08				
	2009-12-16	判決			
				開示請求者(原告) 国(外務省)	
				4次開示(3482頁)	
				5次開示(16263頁)	
				6次開示(32951頁)	
				東京地裁へ提訴	
				第1回口頭弁論	
				第2回口頭弁論	
				第3回口頭弁論	
				第4回口頭弁論	
				第5回口頭弁論	
				原告: 異議申立書提出	
				国(外務省): 第1次補正命令	
				原告: 同意書提出	
				異議申立に関する申し入届	
				国(外務省): 第2次補正命令	
				原告: 回答及び申入書提出	
				国(外務省): 第3次補正命令	
				原告: 回答及び申入書提出(再度)	

〈자료5〉

不開示理由一覽 (外務省の説明による)

理由記号	不開示とした理由	法5号該当号
A	(個人の氏名、住所及び所属は、) (公にする慣行のない) 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1号
B	法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公に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2号
B'	(公にしないことを前提に提供された情報や) 法人に関する (公にされていない) 情報であって、公に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2号
C	公にする慣行のない個人の情報であって特定の個人が識別できる情報であり、また、法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公に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1号、2号
D	(韓国との間での交渉の様子や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 公にすることにより、今後予想される北朝鮮との交渉におけるわが国の立場を不利に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
D'	(韓国との間での交渉の様子や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 公にすることにより、他国等と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おそれがあるほか、今後予想される北朝鮮との交渉におけるわが国の立場を不利に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
D''	現在においても、わが国と外国等の間で (日韓間で) 立場の異なる問題に関する交渉の様子や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詳細に記されてお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わが国の今後の交渉上の立場を不利に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
D'''	公にする慣行のない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り、また、公にすることにより、他国等との信頼関係が損なわれ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1号、3号
D''''	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があるほか、他国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
E	((他国との意見交換や) 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 (公にしないことを前提とした政府内部の検討事項であり、) 公にすることにより、他国等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があるほか、国の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6号
E'	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相手国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または交渉上不利を被るおそれがあるほか、外交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6号
E''	(現在においても、日韓間で立場の異なる問題に関する交渉の様子や) (他国との協議や) 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他国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があるほか、我が国の今後の交渉上の立場を不利にするおそれがあり、国の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6号
E'''	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他国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国の安全を害するおそれがあり、また、犯罪の予防、鎮圧等の公共の安全と秩序の維持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ほか、国の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6号
E''''	公にする慣行のない個人に関する情報であって特定の個人を識別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であるほか、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安全が害されるおそれ、相手国との信頼関係を損ねるおそれ、または交渉上不利を被るおそれがあり、また、外交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3号、6号
F	・関係法人から公にしないとの条件で任意に提供されたものであって、当該法人等における通例として、公に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ものであり、公にすることにより、当該法人の持つノウハウなどの正当な利益を害する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2号)。	3号、6号
G	公にすることにより、犯罪の予防、鎮圧などの公共の安全と秩序の維持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ほか、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4号、6号
H	(公表の慣行のない政府機関の連絡先であって、) (国の機関の公表されていない連絡先であり、) (政府部内での検討の様子が子細に記されており、) 公にすることにより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6号
H'	個人の情報であって、特定の個人を識別できる情報であり、また、公にすることにより、国の事務の適正な遂行に支障を及ぼすおそれがあるため、不開示としました。	1号、6号

<자료6>

한일회담 문서목록(1948~1967)

	시기별	등록번호	분류번호	문서철명	생산년도	생산과	MF플레이	쪽수	주제별	
1	예비회담	76	723.1JA 자1950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근거	1950	정무	006-0080	75	기본관계	
2		77	723.1JA 본1951	본회의 회의록, 제1-10차, 1951.10.20-12.4	1951	정무	0081-0248	168	본회의	
3		78	723.1JA 법1951	제일한인의 법적 지위문제 사전교섭, 1951.5-9	1951	정무	0249-0397	149	국적	
4		79	723.1JA 청1951	청구권 관계자료집(일본에 있는 구왕실 재산목록)	1951	[정무2]	0398-0568	171	청구권	
								563		
5	1차회담	80	723.1JA 기1952	기본 관계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2-4.2	1952	정무	0569-0622	54	기본관계	
6		81	723.1JA 법1951-52	제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36차, 1951.10.30-1952.4.1	1951-52	정무	0623-1089	468	국적	
7		82	723.1JA 본1952	본회의 회의록, 제1-5차, 1952.2.15-4.21	1952	정무	1090-1225	136	본회의	
8		83	723.1JS 선1951-52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33차, 1951.10.30-52.4.1	1951-52	정무	1226-1669	444	선박	
9		84	723.1JA 어1952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5차, 1952.2.20-4.21	1952	정무	1670-1986	317	어업	
10		85	723.1JA 선1948-52	한국선박 반환관계(1948-1952)	1948-52	정무	0006-0260	255	선박	
11		86	723.1JA 청1952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8차, 1952.2.20-4.1	1952	정무	0261-0456	196	청구권	
12		87	723.1JA 청1950-52	청구권 관계자료	1952-52	정무	0457-0770	314	청구권	
								2,184		
13		2차회담	461	723.1JA 국195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6차, 1953.5.13-6.19	1953	정무	0771-0845	75	국적
14			89	723.1JA 본1953	본회의 회의록, 제1-3차, 1953.4.15-30	1953	정무	0846-0892	47	본회의
15			90	723.1JA 선1953	선박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5.8	1953	정무	0893-0907	15	선박
16	91		723.1JA 어1953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53.5.6-7.23	1953	정무	0908-1114	207	어업	
17	92		723.1JA 청1953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3.5.11-6.15	1953	정무	1115-1157	43	청구권	
18	93		723.1JA 어1951-53	어업관계자료	1951-53	정무	1158-1222	65	어업	
								452		
19	3차회담	94	723.1JA 국1953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 제1차, 1953.10.10	1953	정무	1223-1240	18	국적	
20		95	723.1JA 본1953	본회의 회의록 및 제1-3차 한·일회담 결렬경위, 1953.10-12	1953	정무	1241-1322	82	본회의	
21		96	723.1JA 어1953	어업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8-14	1953	정무	1323-1368	46	어업	
22		97	723.1JA 청1953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2차, 1953.10.9-15	1953	정무	1369-1408	40	청구권	
								186		
23	4차회담	99	723.1JA 예1956-58	예비교섭 V.1 경무대와 주일대표부와의 교환공문, 1956-57	1956-58	경무대/아주	1479-1687	209	예비(교섭)	
24		100	723.1JA 예1956-58	예비교섭 V.2 1957			1688-1910	223	예비(교섭)	
25		101	723.1JA 예1956-58	예비교섭 V.3 1958.1-4			1911-2187	277	예비(교섭)	
26		102	723.1JA 문1958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1958	아주	0006-0254	249	문화재	
27		103	723.1JA 선1958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제1-24차, 1958.6.6-12.6	1958	아주	0255-0543	289	선박	
28		104	723.1JA 청1958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58.5.20-12.17	1958	아주	0544-0590	47	청구권	
29		105	723.1JA 청1958	청구권관계 자료	1958	아주	0591-0826	236	청구권	
30		107	723.1JA 1958-59	제일한인의 법적지위 위원회 회의록, 제1-22차, 1958.5.19-59.11.2	1958-59	아주	0846-1110	265	국적	
31		706	723.1JA 교1958-60	교섭 및 훈령	1958-60	아주	0001-0221	221	예비(교섭)	
32		707	723.1JA 대1958-60	대표단 임면관계	1958-60	아주	0001-0110	110	예비(교섭)	
33		708	723.1JS 본1958-60	본회의 회의록, 제1-15차, 1958.4.15-60.4.15	1958-60	아주	0001-0120	120	본회의	
34		709	723.1JA 어1958-60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1958-60	아주	0001-0168	168	어업	
								2,414		
35	회담중단기	6885	723.1JA 1955	제한 구일본 재산의 소유권 문제	1955	정무국 제1	0001-0026	26	청구권	
36		458	743.4 1949-52	한국의 어업 보호 정책: 평화선 선포	1949-52	정무	1111-1498	388	어업	
37		328	743.4 1953-55	평화선 선포와 관련된 제문제	1953-55	정무1	0083-0179	97	어업	
38		460	743.41 1953-55	한국의 어업자원보호법 공포와 관련한 한·일간의 분쟁	1953-55	정무2	1526-1598	73	어업	

39		765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169	169	기타1_북송 등
40		766	723.1JA 복1955-60	V.1 오우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북송희망자의 석방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414	414	기타1_북송 등
41		767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473	473	기타1_북송 등
42		768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403	403	기타1_북송 등
43		769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434	434	기타1_북송 등
44		770	723.1JA 복1955-60	V.5 북송연장을 위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간의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169	169	기타1_북송 등
45		771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548	548	기타1_북송 등
46		772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116	116	기타1_북송 등
47		773	723.1JA 복1955-60	재일한인 북한송환 및 한·일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철	1955-60	아주	0001-0656	656	기타1_북송 등
				V.9 오우라(大村) 수용소에 수용중인 일본 밀입국 한국인				3,966	
48	5차회담	710	723.1JA 대1960-61	대표단 임면관계	1960-61	아주	0001-0093	93	예비(교섭)
49		711	723.1JA 문1960-61	문화재 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	1960-61	아주	0001-0031	31	문화재
50		712	723.1JA 법1960-61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비공식 회담 보 고	1960-61	아주	0001-0231	231	국적
51		713	723.1JA 본1960-61	본회의 회의록 및 사전교섭 비공식 회담 보고, 1960.10- 61.5	1960-61	아주	0001-0330	330	본회의
52		714	723.1JA 선1960-61	선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및 대일반환청구 선박 명단, 1960.11-61.5	1960-61	아주	0001-0207	207	선박
53		715	723.1JA 어1960-61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비공식회담 보고	1960-61	아주	0001-0211	211	어업
54		716	723.1JA 일1960-61	일반문제	1960-61	아주	0001-0272	272	본회의
55		717	723.1JA 재1960	재일한인 재산반입 문제	1960	아주	0001-0038	38	청구권
56		718	723.1JA 청1960-61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회의록, 제1-13차	1960-61	아주	0001-0428	428	청구권
57		719	723.1JA 청1961	미일 평화조약 제4조(청구권관계)의 해석에 관한 미국우성 각서 공개	1961	아주	0001-0105	105	기타3_대미
								1,946	
58	6차회담	720	723.1JA 예1961	예비교섭. V.1 7-8월	1961	아주	0001-0226	226	예비(교섭)
59		721	723.1JA 예1961	예비교섭. V.2 9-10월			0001-0261	261	예비(교섭)
60		722	723.1JA 대1961-64	대표단 임면관계	1961-64	아주	0001-0211	211	예비(교섭)
61		749	723.1JA 청1961	재산 청구권 관계 종합 자료집	1961	아주	0001-0132	132	청구권
62		750	723.1JA 청1961-62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제1-11차, 1961.10.27-62.32.6	1961-62	아주	0001-0324	324	청구권
63		751	723.1JA 청1959-62	일본의 대미 GARIOA, EROA 채무변제	1959-62	아주	0001-0090	90	청구권
64		752	723.1JA 청1959-62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자료, 1963	1963	동북아주	0001-0213	213	청구권
65		753	723.1JA 청1961-64	청구권 관계 자료 - 일본의 동남아제국에 대한 배상문제	1961-64	아주·조약	0001-0222	222	청구권
66		723	723.1JA 문1962-64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아주	0001-0151	151	문화재
67		727	723.1JA 선1961-62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961-62	아주	0001-0008	8	선박
68		106-	723.1JA 선1952-62	제1-6차 한·일회담시 제시한 반환청구 선박명부(1)	1952-62	아주	0827-0845	19	선박
69		754	723.1JA 회1963-64	제1-6차 한·일회담시 제시한 반환청구 선박명부(2) 회담단계 각료회의 및 회담관계 제문제점 연구	1963-64	아주	0001-0044 0001-0344	44 344	선박 예비(교섭)
70		724	723.1JA 법1961-6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관계회의, 1961.10-64.3	1961-64	아주	0001-0428	428	국적
71		725	723.1JA 법1961-62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관계 참고자료(각국의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관계 법령 및 관례조사)	1961-62	아주	0001-0213	213	국적
72		726	723.1JA 본1961-62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1961-62	아주	0001-0436	436	본회의
73		729	723.1JA 어1961-62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기본정책, 1961.10- 62.3.5	1961-62	아주	0001-0265	265	어업
74		98-	723.1JA 어1952-63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일 어업협정 관계 자료(1)	1952-63	아주	1409-1478	70	어업
75		730	723.1JA 어1960-63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에서 토의된 한·일 어업협정 관계 자료(2)	1963	동북아주	0001-0071	71	어업
76		731	723.1JA 어1963	한·일회담에 관한 대책회의 - 어업문제를 중심으로, 1963.5-9	1963	아주	0001-0167	167	어업
77		732	723.1JA 청1962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 전2권 V.1 예비교 섭, 1962.1-3	1962	아주	0001-0217	217	예비(교섭)
		733	723.1JA 청1962	제1차 정치회담. 동경, 1962.3.12-17.V.2 최덕신-고사까 (小坂) 외상회담, 1962.3.12-17			0001-0533	533	예비(교섭)

78		734	723.1JA 정1962	제1차 정치회담 이후의 교섭, 1962.2.3-7	1962	아주	0001-0453	453	예비(교섭)
79		735	723.1JA 정1962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한·일회담 회의록 합의·미합 의정 대사작업, 1962.7-9	1962	아주	0001-0144	144	예비(교섭)
80		736	723.1JA 정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1962-64	아주	0001-0339	339	본회의
81		737	723.1JA 정1962-64	V.1 1-3차, 1962.8.21-29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1962-64	아주	0001-0466	466	본회의
82		738	723.1JA 정1962-64	V.2 4-21차, 1962.9.3-12.26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1962-64	아주	0001-0269	269	본회의
83		739	723.1JA 정1962-64	V.3 22-32차, 1963.1.11-3.28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1962-64	아주	0001-0309	309	본회의
84		740	723.1JA 정1962-64	V.4 33-46차, 1963.4.3-7.25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1-65차, 1962.8.21-64.2.6.	1962-64	아주	0001-0280	280	본회의
85		1452	723.1JA 정1962-64	V.5 47-65차, 1963.8.8-64.2.6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본회의, 제32차, 1963.3.28(대 표자격에 관한 건)	1963	동북아주	0001-0014	14	본회의
86		741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V.1 1962.6-12	1962-64	아주	0001-0264	264	어업
87		742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V.2 1963.2-5	1962-64	아주	0001-0347	347	어업
88		743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V.3 1963.6-9	1962-64	아주	001-0342	342	어업
89		744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V.4 1963.10-64.1	1962-64	아주	0001-0378	378	어업
90		745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 1962.6-64.3. V.5 1964.2-3	1962-64	아주	0001-0246	246	어업
91		1805	723.1JA 어1962-64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어업관계 회의록, 1963.4-64.1	1962-64	아주	0001-0262	262	어업
92		747	723.1JA 청1963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청구권관계회의	1963	아주	0001-0285	285	청구권
93		6886	723.1JA 문1963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 문화재 관계회의, 동경	1963	아주	0001-0061	61	문화재
94		755	723.1JA 예1963.64	속개 제6차 한·일회담(1964.3.12-4월) : 본회의 개최를 위한 예비교섭(최규하 본부대사 방일 접촉보고) 및 본회의, 1963.6-64.3	1963-64	아주	0001-0139	139	예비(교섭)
95		756	723.1JA 기1964	속개 기본관계위원회	1964	아주	0001-0066	66	기본관계
96		6883	723.1JA 문1964	속개 문화재소위원회 회의, 제1차	1964	동북아주	0001-0013	13	문화재
97		757	723.1JA 법1964	속개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제1-3차, 1964.4.22-5.14	1964	아주	0001-0127	127	국적
98		758	723.1JA 본1964	속개 본회의 수석 대표간 비공식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회합) 제1-21차, 1964.3.26-11.5	1964	아주	0001-0231	231	본회의
99		759	723.1JA 어1964	속개 농상회담(어업관계) 동경, 1964.3.10-4.6. V.1 사진 교섭 및 회의보고	1964	아주	0001-0243	243	어업
100		760	723.1JA 어1964	속개 농상회담(어업관계) 동경, 1964.3.10-4.6. V.2 회의 록 및 결과보고	1964	아주	0244-0446	203	어업
101		762	723.1JA 청196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1964	동북아주	0001-0156	156	청구권
102		763	723.1JA 현1963-64	속개 현안문제에 관한 한국측 최종입장, 1963.4-64.3	1963-64	아주	0001-0140	140	본회의
103		764-	723.1JA 1961-65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1961-65	아주	0001-0092	92	기타3_대미
				한·일회담에 대한 미국의 입장			0001-0054	54	기타3_대미
								10,568	
104	고위 정치회담	846	724.32JA 1960	고사까(小坂) 일본 외상 방한, 1960.9.6-7	1960	아주	0001-0066	66	기타2
105		855	724.42JA 1961	스기 미쯔스게(杉道助) 일본 특사 (제6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방한, 1961.11.2-[11.4]	1961	[아주]	0001-0037	37	기타2
106		786	724.11JA 1961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일본 방문, 1961.11.11-12	1961	아주	0001-0339	339	기타2
107		795	724.41JA 1962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2.19-24	1962	아주	0001-0027	27	기타2
108		796	724.41JA 1962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10-11	1962	아주	0001-0248	248	기타2
109		748	723.11JA 정1963	제2차 정치회담(김용식 - 오히라 외상회담) 동경, 1963.7.25-31	1963	아주	0001-0078	78	기타2
110		791	724.31JA 1964	정일권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4.4.3-7	1964	동북아주	0001-0012	12	기타2
111		1486	724.31JA 1965	이동원 외무부장관 일본 방문	1965	동북아주	0001-0467	467	기타2
112		1500	724.32JA 1965	시아나 에쓰사부로(椎名悦三郎) 일본외상 방한, 1965.2.17-20	1965	동북아주	0001-0368	368	기타2
								1,642	
113	7차회담	1454	723.1JA 1964-65	[개최] 경위	1964-65	동북아주	0001-0081	81	예비(교섭)
114		1456	723.1JA 대1964-65	대표단 임면관계	1964-65	동북아주	0001-0063	63	예비(교섭)
115		1459	723.1JA 본1964-65	본회의 및 수석대표 회담	1964-65	동북아주	0001-0435	435	본회의

116	1457	723.1JA 법1964-65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V.1 제1-24차, 1964.12.7-65.4.16	1964-65	동북아주	0001-0322	322	국적
117	1458	723.1JA 법1964-65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V.2 제25-40차, 1965.4.21-6.15			0001-0271	271	국적
118	1934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자료	1964-66	조약	0001-0162	162	조약
119	1460	723.1JA 어164-65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V.1 어업 및 평화 신위원회, 1964.12-65.2	1964-65	동북아주	0001-0397	397	어업
120	1461	723.1JA 어164-65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V.2 농상회담 : 어 업관계, 1965.3.3-4.2	1964-65	동북아주	0001-0506	506	어업
121	1462	723.1JA 어164-65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V.3 합의사항 초 안 및 한국측 요약 회의록	1964-65	동북아주	0001-0236	236	어업
122	1463	723.1JA 어164-65	어업관계회의 및 훈령, 1964.12-65.6. V.4 1965.4.3 가 서명 이후의 어업 및 평화신위원회, 1965.4-6	1964-65	동북아주	0001-0454	454	어업
123	1464	723.1JA 어1965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 위.V.1 교섭경위 및 첨부물. 1-15	1965	동북아주	0001-0258	258	어업
124	1465	723.1JA 어1965	1965.4.3 가서명 이후의 어업문제 교섭(1965.4-6) 경 위.V.2 첨부물. 16-21	1965	동북아주	0001-0393	393	어업
125	1466	723.1JA 어1965	한·일간의 어업협정 시행을 위한 추가 합의 사항에 관한 안정	1965	동북아주	001-0353	353	조약
126	6888	723.1JA 문1965	문화재위원회 회의의 개최 계획	1965	동북아주	0001-0073	73	문화재
127	1471- 문1965-66	723.1JA 문1965-66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1965-66	동북아주	0001-0076	76	문화재
			한·일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이후의 문화재 인수(1966.5.28)			0001-0289	289	문화재
128	1547	723.1JA 1965	한·일회담 각 현안에 관한 양측입장과 해결방안	1965	동북아주	0001-0054	54	예비(교섭)
129	1470	723.1JA 1965	1965.6.22 한·일간의 제협정 서명 이후의 합의사항 실시 를 위한 관련조치, 1965.7-8	1965	동북아주	0001-0067	67	예비(교섭)
130	1472	723.1JA 자1964-66	한·일회담 관계자료	1964-66	동북아주	0001-0262	262	예비(교섭)
131	1455	723.1JA 기1964-65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12-65.2	1964-65	동북아주	0001-0310	310	기본관계
132	1565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V.1 교섭 및 서명	1964-65	조약/동북아 주	0001-0362	362	조약
133	1566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V.2 국회비준 심의	1964-65	조약/동북아 주	0001-0515	515	조약
134	1567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V.3 비준서 교환	1964-65	조약/동북아 주	0001-0401	401	조약
135	1568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V.4 국내조치	1964-65	조약/동북아 주	0001-0486	486	조약
136	1569	741.12 조624기	한·일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등]V.5 일반사항	1964-65	조약/동북아 주	0001-0078	78	조약
137	1467	723.1JA 청1965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V.1 1965	1965	동북아주	0001-0116	116	청구권
138	1468	723.1JA 청1965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V.2 1965.4.3 가서명 이후	1965	동북아주	0001-0411	411	청구권
		723.1JA 청1965	청구권관계회의의 보고 및 훈령. V.2 1665.4-6	1965	동북아주	0001-0478	478	청구권
139	6887	723.1JA/196	V.3 미해결문제 토의 및 조문화 작업	1965	동북아주	0001-0343	343	청구권
140	1469	723.1JA 청1965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1965	동북아주	0001-0188	188	청구권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설명자료, 1965			0026-0044	19	청구권
141	1580	741.22 조624청	한·일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 력에 관한 협정(자료집)	1963-65	조약	0001-0427	427	청구권
142	1473- 청1965-66	723.1JA 청1965-66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5-66	동북아주	0001-0458	458	청구권
	1807	723.1JA 청1966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자료	1966	동북아주	0001-0009	9	청구권
143	1474	723.1JA 청1965-65	[민간인(김태성) 등]의 대일청구권 해결 문제	1955-65	동북아주	0001-0450	450	청구권
144	1942	741.22 조624청	[한·일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 협정. V.1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5.6-12	1965-66	동북아주/조 약	0001-0336	336	조약
145	1943	741.22 조624청	[한·일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 협정. V.2 협정실시를 위한 추가 합의사항 교섭, 1966.1-3	1965-66	동북아주/조 약	0001-0117	117	조약
146	1944	741.22 조624청	[한·일간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제1의정서 제7조 및 제1의정서의 실시 세목...협정 및 제1조 2의 합동위원회... 협정. V.3 추가 합의사항 체결 국내조치	1965-66	동북아주/조 약	0001-0299	299	조약
147	1570	723.1JA 기1964-65	본정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의 효력발생일자에 관한 건, 1965-66	1966	조약	0001-0034	34	조약
148	1971	741.72 조624어	한·일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1965-66	동북아/조약	0001-0251	251	어업
149	1999	761.1JA 1965-66	대일 경제협력정책	1965-66	경제협력	0001-0113	113	경제협력
150	2003	761.311JA 1966	한·일 경제각료간담회. 서울, 1966.9.8-10	1966	경제협력	0001-0473	473	경제협력

151	2009	761.61JA 1966	청구권 자금 제2차년도 실시계획(안)에 관한 한·일간 실무교섭, 1966.6-10	1966	경제기획원	0001-0069	69	경제협력
152	1658	761.64JA 1965	대일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1965	경제협력	0001-0024	24	경제협력
153	1662	761.65JA 1964-65	대일 운활유공장 건설차관 도입	1964-65	경제협력	0001-0066	66	경제협력
154	1661	761.65JA 1962-67	대일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차관 도입	1962-67	경제협력	0001-0276	276	경제협력
155	1664	761.66JA 1963-65	장기결재방식에 의한 대일 자본재 도입	1963-65	경제협력/동북아	0001-0219	219	경제협력
156	1963	761.66JA 1964-65	대일 2,000만불 연지불 도입에 관한 한·일간의 각서교 환.V.1 1964.6-9	1964-65	경제협력	0001-0442	442	경제협력
		761.66JA 1964-65	대일 2,000만불 연지불 도입에 관한 한·일간의 각서교 환.V.2 1964.10-65.4	1964-65	경제협력	0443-0818	376	경제협력
157	2023	763.73JA 1966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1차. 서울, 1966.[2.25-26]	1966	동북아주/조약	0001-0021	21	경제협력
158	2024	763.73JA 1966	한·일 민간어업합동위원회, 제1차. 동경, 1966.12.19-20	1966	동북아주	0001-0042	42	경제협력
159	1665	763.83JA 1965	한·일 농상회담. 서울, 1965.12.18-19	1965	동북아주	0001-0064	64	경제협력
160	1675	765.311JA 1965	한·일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1965	동북아주	0001-0142	142	경제협력
161	1676	765.311JA 1965	한·일 무역회담, 제2차. 서울, 1965.12.15-18	1965	동북아주	0001-0145	145	경제협력
							13,312	
합계							37,233	

〈자료7〉 청구권 관련 처리표

I.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723.1JA 청1959-62, 752,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문제, 1963.3.5)

문 제	한국측 주장	일본측 주장	비고
청구권	대일청구요강(소위 8항목)	한국에 남기고 온 일본의 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역청구권)	재산청구권은 양국이 소멸되었음을 확인. 위안부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음.
청구권의 범위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북한까지 포함	행정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남한에만 국한	
평화조약 제4조 해석	미국의 각서에 의하면 구 일본인재산의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3.8선 이남에 국한 3.8선 이북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을 처분한 적 없다.	
증거	일본의 증거인멸, 한국전쟁으로 증거 불충분, 조리에 의한 판단	청구권이므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엄격해야 하며, 증거가 확실해야 함	일본정부는 관련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증거주의 주장
8항목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확실함으로 청구권에 대한 변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변제할 수 없음	일본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청구금액	순변제 7억불	순변제 74만불 및 차관 2억불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 상업차관 3억불로 타결

항 목	한 국	일 본	비고
제5항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	- 피징용자(군인군속 포함) 봉급, 임금, 연금, 수당 등 약 2억 3,700만엔. 인수는 불명(1950년 SCAP으로부터 해당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서한)	- SCAP서한의 숫자에 착오가 있으나 쌍방이 납득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싶다.	SCAP문서 확인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에 대해 3억 6,400만불(사망자, 부상자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인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 생존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 ○ 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31 282,000 930,081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186,000천불 사망자 1인당 2650불 128,000천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50,000천불 계 364,000천불	- 피징용 한인은 당시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었으며, 일본인에게는 징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인에 대하여도 같은 취급 -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원호조치는 당시의 국내법에 근거 지급했기 때문에 미불금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 - '조선관계 군인,군속수' 및 조선인 노무자 관계의 각종 자료에 근거 ○ 군인군속수 총원 사망 계 군인 110,116 6,173 116,294 군속 110,043 16,004 126,047 계 220,159 22,182 242,341 (부상자의 수는 불명임) 집단이입 조선인 노무자수 667,684명 종전시 현재수 322,890명	1) 노무자 수 667,684명은 일본 후생성 노동국 통계 2) 군인군속의 경우,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60여만명으로 추정 1938-43년 육군특별지원병 : 약 17,000명 징병 : 210,000명 학도지원병 : 4,385명 해군특별지원병 및 해군 : 약 22,000명 군속 : 약 150,000명 군위안부 : 약 200,000명
은금	- 종전시 한국인도 은금기금을 납부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 - 국적이 없어지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 은금 지불에 대해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국고지불분) 이외에는 응할 수 없음 -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국적 상실한 때 이후의	관련 근거자료 제시 필요

	<p>되어 있으나 스스로 포기하고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로 현재 문제와 성격이 상이</p> <p>- 자료 : 1947년 미군정청 우편관서를 통해 조사</p> <p>연금 35,120명 289백만엔 일시금 20,268명 16백만엔 계 55,388명 306백만엔</p>	<p>지급에는 응할 수 없음</p> <p>- 군인은 군인은급부할 시기와의 관계로서 증가등급과 같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의 여지가 없음</p> <p>- 군속은 미복원자 급여법에 의한 지급 이외는 고려할 수 없음</p> <p>- 자료 : 1945년 8월 이후 1952년 4월분까지의 '조선관계은급계수'를 제출</p> <p>은급국장 재정분 2404명 145,111천엔 조선총독도지사 재정분 5,632명 261,468천엔 계 8,036명 406,579천엔</p>	
기탁금	<p>- 종전후 재일한국인이 귀국시 일본정부에 예치한 것으로 청구금액은</p> <p>세관에 예치된 통화액 10백만엔 鮮銀券과 교환한 日銀券 48백만엔</p> <p>구 朝運에 기탁하여 현재 일본정부에 차압된 것 54백만엔 계 113백만엔</p>	<p>- 세관에 기탁한 통화수 및 鮮銀券과 교환한 日銀券 금액에 대한 조정을 본 후 고려</p> <p>- 구 朝運에 기탁하여 현재 일본정부에 차압된 것은 재일 조선인의 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지출</p> <p>- 조선인의 보관물건 '집계표'</p> <p>日銀券 10,048,746엔63전 鮮銀券 3,994,892엔50전</p>	
한국인의 대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p>-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으로 한정</p> <p>- 금액 438000천엔(일본회사 19개)</p> <p>- 가입자명부는 없어졌으나 회사별로 조사한 것 있음</p> <p>- 개인대 회사의 관계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움</p> <p>- 전쟁중 저축장려의 일환으로 반강제적으로 가입</p>	<p>- 남선지구의 한국인 계약자에 대응하는 분으로서 한국측 요구금액의 1할 정도이며 회사수도 18개사이다.</p>	<p>관련 일본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확인 필요</p>
제6항 한국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권리행사	<p>-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일회담 수립 후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p> <p>-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p>	<p>-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한일회담에서 결말을 짓자는 취지이며, 후일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어서는 곤란</p> <p>- 요강의 대부분은 사적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회담은 사적 청구권을 포함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p>	
기 타	<p>- '기타'로 표시된 항목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의를 보류하는 취지</p>	<p>- 평화조약 제4조에 제시된 재산과 청구권은 모두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어야 재산 또는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음</p> <p>-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다</p> <p>- '미국측 해석'에 따라 재한일본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어느 정도 삭감 또는 총족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금액은 적어질 것</p>	<p>불확정성 권리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p>

II. 속개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 문제 (723.1JA 청1964, 762)

일자	발신처	수신처	내 용	쪽수	검토의견
1964. 2.3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외 무 부 아주국장	7. 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어 정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까	1596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질의
1964. 2.5	외무부 아주국장	경제기획원 경제기획	문7에 대하여 대일 청구권 금액은 양측의 법이론과 사실인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결국 김.오하라 합의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일괄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	1598	대일청구권은 소멸, 한국정부에게 요구할 개인청구권은 소멸되

		국장	은 아니며, 정부는 개인 청구권을 각 항목별로 이에 대한 가부, 기준 및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 않았다는 외교부 입장
1964. 5.2	경제기획원	외무부 장관	조선은행을 비롯한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에 관하여. 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구권의 해결교섭이 타결될 경우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청구권은 삭감되는 것인지 만약 삭감된다면 국제법상의 근거는 무엇 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일교섭은 민간보유 대일재산청구권의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개별적인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다.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의 여러가지 문제는 여하히 처리할 방침인지	1663	개인청구권 소멸 여부에 대한 질의
1964. 4.7	재무부	경제기획원 장관	조선은행을 비롯한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에 관하여. 3. 한국정부의 대일본재산청구권 총액중 이러한 민간인에 관련된 부분은 (1)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2) 또 정부는 다만 민간인을 위하여 재산청구권행사를 대항했다는 점에 비추어 한일회담이 종결되는대로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금액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상조치를 강구해 주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사료됩니다. 4.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에 관하여도 진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5. 다만 청구권 액수가 한국정부에서 일본정부에 제시한 재산청구명세에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타결될 액수이기 때문에 본건 민간인 보유 대일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1) 보상을 요하는 재산의 종류 (2) 보상액 (3)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의하에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 요청됩니다.	1664	청구권 자금내에 민간인 재산청구권 부분 포함. 보상을 위한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성 인식
1964. 5.8	외무부	경제기획원 장관	민간인 보유 대일 재산청구권에 대한 보상조치. 2. 한일회담에 있어서 아축이 일본측에 제시한 청구권은 대일평화조약 제4조 (a)항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에는 정부 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아국 국민(법인포함)이 보유하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한일회담에서 청구권문제를 교섭함에 있어서 한일 양측은 (1)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 근거, (2) 각 청구항목에 관한 사실관계의 규명(증거제시 문제), (3) 일본 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4) 대일평화조약 제4조 (b)항에 대한 미국측 해석 각서에 표시된 미국측 의견의 처리문제, (5) 아국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의 처리문제(소위 남북한 문제) 등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양측 입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4. ...아축 청구권에는 위 2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국 국민(법인 포함)이 보유하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번에 일본과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기한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개인 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당부로서는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있어서는 아축이 일측과 교섭하였을 시에 문제되었던 제 문제점 즉 (1) 청구권의 법률근거, (2) 증거의 제시문제, (3) 일본 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의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할 것임으로...	1667	청구권에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면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입장 ('교섭경위 및 해결원칙에 관하여는 별첨책자 참조'하라고 되어 있으나 별첨책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음)

Ⅲ.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회의 보고 및 훈령
(723.1JA 청1965, 1467, V.1 1965.3.18~4.3까지의 교섭)

일자	발신처	수신처	내 용	페이지	검토의견
1965. 4.6	주일대사	외무부 장관	합의사항 5.에 있어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된 한일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 있어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소위 8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관계협정의 발표에 의하여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다.	1653	대일청구요강 8항목에 대해서는 청구권 포기

Ⅳ.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관계 회의 보고 및 훈령
(723.1JA 청1965, 1468, V.2 1965.4.3 가서명 이후)

일자	발신처	수신처	내 용	페이지	비고
1965. 4.10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3. 제1항에서 언급된 청구권 청산에 관한 일본측과의 토의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 기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696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 필요성 주장
1965. 4.20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가. 전문 보고와 같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회의(4월 20일)에서 일측은 장차 소멸될 대일 청구권에 관련된 소위 원칙문제 또는 법적문제로서 다음의 제점을 시사하였으므로 이를 추가 보고함. 1. 청구권 소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인적 대상 2. 조선총독부의 법적지위, 조선총독부가 한국정부에 의하여 계승되었느냐의 여부 :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예컨대 간이보험(한국인과 제3군인, 2차대전 전에 가입한 것), 우편저금, 주식 등이 있다고 함. 3. 재일한국인의 청구권 문제 : "한국인"이라는 경우의 그 대상과 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된다고 함. 4. 2차대전 후의 통상적인 채권채무 관계(소멸되지 아니하는 청구권) :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또한 그 시점이 문제된다고 함. 나. 일본측은 소멸되는 청구권이 직접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고 그 내용과 종류가 가지각색으로 복잡하며, 한일간의 기본관계 조약의 규정이 막연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에 관해 명백히 해야한다고 주장(외아북-주일정)	1710	청구권협정 타결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 검토
1965. 4.26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사본: 경제기획원 장관)	제7차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1차회의 회의록 송부. 수석대표 이규성 : 일본측에서 북한에 관한 문제에 무슨 처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측으로서는 지난번 가조인을 본 양국간 기본관계조약에서 이에 관한 지침이 될만한 규정이 두어졌으므로 그것은 그것으로서 처리하면 별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1714	가조인 회담 회의록 검토 필요
			사도 대표 :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 사항에 의하여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여 두어야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므로 본 협정에 집어 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1716	청구권 소멸의 범위를 확실히 할 필요성 지적(국내적 조치 필요함)

		<p>사다게 대표 : 청구권 소멸문제에 관하여 이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 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하여는 청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또한 종전 전에 있던 조선 총독부의 법적지위랄까 즉 조선총독부와 한국정부와의 관련(청구권과 관련하여 계승 되었느냐의 여부)을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이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되어 있음) 또는 우편저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일본정부의 처리나 한국정부의 처리가 00가 맞아야 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제일 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하면 2차대전 후의 통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는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가 됨)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밖에도 청구권의 내용이 각양각색이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후일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며...</p>	1716	청구권 소멸범위가 왜 중요한지 일본 측의 문제의식을 제기
		<p>이수석 : 지금까지의 청구권 문제 해결의 경위로 보면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p>	1716	한국은 크게 고심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줌
1965. 5.14	수석 대표	<p>외무부장관(참조 경제기획원장관)</p> <p>... 니시야마대표로부터 한일경제협력은 타국에 대한 배상과 달라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협력이고 본 위원회도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오직 경제협력만을 전제로 하여 그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 있었음. 나. 이에 대하여 아츨은 .. 경제협력을 별도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시작하였고 경제협력이라는 개념은 후에 첨가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p>	1842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별개의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일본측이 제안한 것에 대해 한국은 별도 논의가 필요치 않음을 주장
1965. 5.14		<p>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회의 회의록</p> <p>니시야마 :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한국측은 위와 같은 우리측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상에 근본적인 차이가 큰데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좁힘으로서 협정으로 이끌 것인가 이를 위하여는 양측의 지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p>	1848	청구권협정의 성격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p>니시야마 :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는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p> <p>이수석 : ...우리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공이 배상이 아니라 특수한 것이라는 생각이나 그 표현은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는 표현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p>	1851	한일 양국이 청구권협정이 배상협정과 다름에 동의. 이후 논의에서 인식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정문 작성 협의에 들어감
1965. 6.1		<p>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1차 전문가 회의 회의</p> <p>다까나기 : ... 이 회의에서는 청구권 법적문제를 제외한 것을 다루되 사무레벨에서 합의되는 것은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고 합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은 상급 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p> <p>정순근(전문위원) :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p>	1927	협정을 체결한 1965년 6월초까지 청구권 법적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못함.
1965. 6.9	외무부 수석	<p>(3) 청구권의 해결에 관한 규정 :</p> <p>신중히 일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특히 소멸의 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한 후 귀하의 재량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람. 이에 관하여는 합의할 수</p>	2040	최초로 외무부가 청구권 협상에 대해 수석대표에게

		대표	있는 내용을 귀하의 의견과 함께 사전 보고하시기 바람.		지시(협정체결 2주 전에 소멸대상이 되는 청구권의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
1965. 6.12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청구권 법적문제회의 보고 1965.6.12 개최된 청구권법적문제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42	기쿠이름이 처음 나오나,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첨부돼 있지 않음
1965. 6.16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4. JAW-06272로 보고한 청구권 소멸에 관한 토의는 금 16일로 연기되었음.	2051	JAW-06272의 문서가 없음
1965. 6.17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참조 :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장관, 중앙정보부장)	작 16일 오후 9시부터 "힐튼"에서 속개된 기초위원회에서는 금조(6.17) 2시까지 작업을 계속하여 청구권 소멸문제(협정 제2조) 및 협정에 관한 분쟁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조문화를 완료하였음.	2053	1965.6.16 5시간동안 회의에서 다른 부분은 합의했으나 청구권 소멸문제는 합의하지 못함. 논의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음.
1965. 6.17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 소멸되는 청구권의 범위 일본측안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 - 소멸되지않는 청구권의 범위 일본측안 1947년 8월 15일부터 협정까지 타방의 체약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의 재산 권리 및 이익 1947년 8월 15일 이후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서 취득, 관할하에 들어간 것 통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은 여하한 주장도 할 수 없음	2056	한국은 평화조약 제4조와 1945년 8월 15일부터, 일본은 평화조약 제4조(A)와 1947년 8월 15일부터 주장 일본은 통일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음을 추가로 제기
1965. 6.18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4. 그러나 제2항의 제3항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자기측 안을 받아드리지 않는 한 토의에 응할 수 없으며, 일측 안이 최종 입장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음. 5. 일측 안은 지금까지 청구권 대상이 되지 않았던 우리교포 또는 기타 재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일측의 입장이 상기 보고와 같이 강경함에 비추어 대표단으로서의 일측 안을 수락할 수 있을는지 또는 아측 안과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수정이 있으면 가할지 또는 아측 안을 고집할 것인지 법적 면에서 신중 검토하시오 지금 훈령하여 주시기 바람.	2064	일본과 재일 교포 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차이를 두고 있어 법률적인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훈령해 줄 것을 요청
1965. 6.00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하여 : 협정 제22조(청구권 소멸조항)에 관한 토의는 아직 계속되고 있는 바, 18일(확인필요) 하오 10:30부터 약 1시간 동안의 회담에서 아측은 일본측 안(참조 : JW-06394)을 그대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음, 즉 아측은 일본측 안을 제2항(A), (B)의 일자가 1945.8.15이 되고 제3항의 조치의 대상이 제한되고, 합의의사록 일본측안에서 거주에 관한 제한규정이 배제되지 않는 한, 일본측 안을 수락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일본측의 재고를 촉구하였음.	2694	한국측의 단호한 입장을 주장
1965. 6.20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합의 의사록이 6.19 최종 합의되었음을 보고함.	2699	합의의사록 최종 합의
1965. 6.21	수석 대표	외무부 장관	청구권 협정 제2조에 관하여 19일 저녁밤 및 20일 아침 3차에 걸친 일본측과의 회의(0통상국장과 사토 심의관)와 금일 오후의 후시바심의관과의 교섭을 통하여 본국 정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문안에 합의하였으나 본부승인여부를 지금 회전화여 주시기 바람.	2154	1965년 6월 20일 협상 최종단계에서 문안 합의 본국 정부의 승인 요청 (전문 수록)

영터리!! 일본 외무성의 문서 [공개]?

(문장 책임) 「한일 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사무국차장 이 양수
2009년 12월 4일

「일한 회담 문서·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이하, 「요구하는 모임」으로 함)의 원고들, 한국 재주 188명, 일본 재주 143명, 계 331명은 2006년 4월 25일, 처분청인 외무 대신에 대해, 정보 공개법에 의거, 일한 회담 관련 문서의 전면 공개를 요구해서, 도쿄(東京) 지방 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하여 외무 대신은, 같은 해 8월 17일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에 먹칠을 한 문서를 65쪽(후일에 193쪽을 공개)을 공개했다. 계속해서 2007년 4월 27일에 1,930쪽, 같은 해 11월 26일에도 5,339쪽의 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2005년에 공개한 한국 정부측 문서의 양 35,000쪽과 비교했어도, 방대한 양에 달하는 동 회담 관련 문서의, 지극히 일부에 지나치지 않았다. 따라서 결국 「**공개·불 공개의 결정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내려졌다. (도쿄 지방 재판소 민사 제 38부, 2007년 12월 26일 판결) 결과, 외무 대신은 2008년이 되어, 4월 18일에 3,482쪽, 5월 2일에 16,263쪽, 5월 9일에 31,071쪽의 문서를 공개하기에 이르렀지만, 그 안에는 완전히 불공개로 한 문서들 22개 (불공개이기 때문에, 몇쪽 있는지조차도 불명)와, 아주 중요한 것들이 모두 다 먹칠된 부분 공개 문서 509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의 문서 안에 몇군데, 몇줄 숨긴 것들도 있고, 심하게는 몇페이지부터 수십 몇페이지까지 불공개로 한 것들이 있었다. 특히 각종 청구권의 금액들은 꼼꼼하게, 모두 지워지고 있다. 즉 서류로서의 모습이라고 말 못하는 문건들이 많았다. 외무 대신으로서의 위법 판결을 받고, 할 수 없이 공개에 이르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라고 하면, 공개가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절처하게 은폐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내외의 관계자, 지식인, 언론들, 한국에 살고 있는 일체 피해자들은, 『먹칠 문서』라고 비웃는 대상으로 되었고, 강한 항의의 목소리가 일어났다. 이를 받아 「요구하는 모임」에서는, 불공개 부분의 전면공개를 요구해서, 2008년 4월 23일에 제 2차 소송을, 같은 해 10월 14일에 제 3차 소송을 도쿄 지방 재판소에 일으켰다.

그 숨겨진 부분들의 양은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 전부를 여기에 소개하면 몇만쪽에 달한다. 따라서 여기는, 전체의 30%를 넘는 개인 정보들, 사람이나 회사의 이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

안에서, 정보 공개법의 원칙과 취지를 외면하여, 마구 「먹 칠」한 것 안에서 극히 일부만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다른 문서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 포함시킨 곳들은, 회담 내용의 중요성으로부터 판단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구권·독도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떡칠」의 실태와 엉터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선택하였다.

I, 공개 대상에 안들어 있는 한일 회담의 중요 문서

여기서는 외무성의 떡칠이 얼마나 엉터리이며, 불성실한가를 설명하고 싶은데, 그 이전에 외무성의 문서공개 실태는, 가지가지의 중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일한 회담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의 존재

여기에 1 권의 파일이 있다. A5 판으로 340 페이지라고 페이지수가 적혀 있지만, 양쪽 페이지가 좌우 양면으로 펼쳐지니, A4로 계산하면 그 절반인 170 쪽.

제목은 『일한 청구권 문제 참고자료(미정고, 제 2 분책)』 (1963 년 6 월) , 발행소는 이재국 외채과, 물론 일본 대장성이다.

한국측의 대일 요구 【쿠레임】(청구)에 대하여, 거의 내부 사정을 밝히지 않는 일본측 내부 검토 자료가 포함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일부 인용해 보자.

「일본측 조사 금액

제 6 차 회담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 상층부에게 금액에 관한 견적을 내라는 강한 요망이 나왔다고 하는 정세하에서, 아직 금액을 시산하는 단계가 아니었으나, 당시 단계에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채과에 있어서, ①약간 딱한 추정에 의한 것(약 300 만불), ②너그러운 추정에 의한 것(1,500 만불), ③아주 너그러운 추정에 의한 것(5,000 만불)의 3 개의 시산표를 작성, 1961년 11월 9일의 회의에서 거론한 적이 있었다.

그냥 그 의제는 사라지는 듯 했지만, 1962년 1월, 당시의 오오히라(大平) 관방장관의 강한 지시가 있어서, 외무, 대장 양성에 금액 검산을 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기에, 이재국에서는 전기 ②의 시산의 선에서 일단 시산을 하여(약 1600 만달러), 주계국과도 상의한 뒤, 1월 10일 대장성 시산으로서, 외무성이 작성한 금액 시산(약 7,000 만불)과 함께, 동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양성 안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어떻게 조정 해라고 지시받았다고도 하지만, 조정되지 않은 채 끝났다. (당시의 신문지 상에서 게재된 것들은, 이 때의 숫자이다)

이하의 숫자는, 그 때의 시산을 중심으로, 그 후의 조사에 의한 다소의 수정을 보탠 것을 기재했다.」

이것은 한일 회담 연구의 선구자였던 모 교수가, 도쿄 간다(神田)의 고서점에 유출되어 있었던 이 책자를 구입하여, 모 사립 대학교 도서관에 연구용으로서 기증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문서가, 한일 회담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아, 이렇듯 숨겨진 채의 문서들이, 아직 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고라는 의혹을 가져다 준다.

관련해서 그 제목에 『제 2 분책』으로 있는 이상, 제 1 나, 제 3 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 교수도 이 『제 2 분책』만을 입수한 뿐이어서, 그 앞뒤 문서의 입수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더니, 매우 쉽게 발견되었다. 책자 이름은 한자이니 그냥 복사했다.

<http://www.digital.archives.go.jp/DAS/meta/MetaOutServlet>

經濟協力・韓国 2 5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日韓請求權問題の概要 (第 1 分冊)

公文書 > *大蔵省 > 連合國財産・戦後賠償・在外財産等關係

[請求番号] 分館-06-024-00・平 1 2 大蔵 03368100 [作成部局] 國際金融局 [年月日] 昭和 38 年 06 月 - 昭和 38 年 06 月

經濟協力・韓国 2 6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第 2 分冊)

公文書 > *大蔵省 > 連合國財産・戦後賠償・在外財産等關係

[請求番号] 分館-06-024-00・平 1 2 大蔵 03369100 [作成部局] 國際金融局 [年月日] 昭和 38 年 06 月 - 昭和 38 年 06 月

經濟協力・韓国 2 7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第 3 分冊)

公文書 > *大蔵省 > 連合國財産・戦後賠償・在外財産等關係

[請求番号] 分館-06-024-00・平 1 2 大蔵 03371100 [作成部局] 國際金融局 [年月日] 昭和 38 年 06 月 - 昭和 38 年 06 月

經濟協力・韓国 2 8 ・日韓請求權問題參考資料 (第 4 分冊)

公文書 > *大蔵省 > 連合國財産・戦後賠償・在外財産等關係

[請求番号] 分館-06-024-00・平 1 2 大蔵 03372100 [作成部局] 國際金融局 [年月日] 昭和 38 年 06 月 - 昭和 38 年 06 月

그러나,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들 문서는 모두, 아직 비공개인 상태이다. 한일 회담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재판의 대상으로도 안되고 있는 이것들 중요 서류를, 어떻게 공개시킬 수 있는가? 우리들의 역량이 시험된다.

그러나 한일 회담 문서들 안에서는 숨겨 놓고도 다른 곳에서는 공공연히 노출되고 있는, 일본의 관청에 있어서의 기밀 공문서의 취급. 정말로 숨기고 싶다면, 이런 목록에 기재 하면 안되는데 라고, 누구나 생각할 테인데... 또 이 문서의 존재는 이미, 「요구하는 모임」의 공동 대표인 오오타 오사무씨나, 요시자와 후미토시씨의 저작에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회담을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감추는 **외무성과 대장성의 은폐 체질은, 정보 공개법의 정신에 반하며, 절저히 규탄 받아야 할 것이다.**

2. 메모와 바뀌어져 없어진 회의록

전형적인 2 개국 간의 외교 교섭인 한일 회담에서, 공식적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도대체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참으로 기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본 외무성이 2007년 11월 16일에 공개한 제 3 차공개 안의 문서, 「제 7 차 회담 전면 회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소위원회」의 안에서, 제 20~23 회 (문서번호 101)과 제 33 회~40 회 회합 (문서번호 105)들의 회의록이다.

놀랍게도 이 회의록들은 모두 말소되어, 대신에 회의가 끝난지 5 년후에 씌어진 쓰루타(鶴田)라는 사무관의 메모와 바뀌어져 있다.

그러면 이 숨겨진 회합에서는, 어떤 의논이 있었던 것일까?

예를 들면 제 39 회 회합에 관한 모든 기록이지만, 쓰루타 메모에는 이것 밖에 씌어져 있지 않다.

○ 1965년 6월 11일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소위원회 제 39 회 회합

지난번 일본측부터 제시된 퇴거 강제의 경과 조치에 관한 설명 자료에 관해 토의가 집중되어, 그 타협안의 축성에 대해서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똑 같은 회의에 대한 한국측 문서를 보면, 이런 의논이 있다.

한국측 문서 1458 [제 7 차 한일 회담 법적 지위 위원회 회의록 및 훈령, 1964-65 전 2 권 중 v. 2 제 25 회 - 40 차, 1965. 4. 21 - 6. 15]부터

190 쪽 제 39 차 회의록 1965. 6. 11. 10:30-11:30 토의 안에서

야기 마사오(八木正男) 입관국장: 한국인과 중국인에 대하여는 강제 퇴거에 대한 인수 여부에 대하여 우리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수 의무의 규정이 필요하다.

이 경호 대표 : 한국인과 중국인은 야만 미개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나?

나카무라(中村) 입관국 차장: 전후 입국자로 강제 송환 되는 자를 한국 정부가 인수하고 있다라고 하나, 이는 Over-Stay 한 자와 밀입국한 자뿐이다.

이 대표: (중략) 이는 한국 정부를 불신 하는 데서 연유하는 것이니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일반 외국인에게는 필요없는 이런 규정을 본 협정에 두는 것은 한국인을 모욕하는 것인데, 나는 이러한 모욕적인 규정을 받아 가면서 회담 대표로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토의할 필요도 없으니, 오늘 회의는 그만두자.

야기 : 그렇다면 일본측이 6. 4. 제시한 설명 자료 문서 자체를 철회하겠다.

이 대표: 그것은 곤란하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를 철회할 필요는 없다.

야기 : 그렇다면 진전도 없으니 본 위원회는 6. 20 까지 그만 두자.

라고 드잡이의 싸움 겨우겨우의 아슬아슬한 모양이 극명하게 묘사되고 있었다.

일본측은 별개로 존재하는 회의록에 바뀌어, 이 쓰루타(鶴田)라는 사무관의 메모 라는 것을 대신해서 내 온 것이지만, 위의 기술로 아는 바 같이, 이것은 회의록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진짜 회의록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졌을까? 소각 처분 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아직, 창고 속에 잠자고 있는가? 그것은 외무성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으로서 「정보를 공개했다」고 외무성측은 말할 수 있겠는가?

즉 먹칠도 아니고, 불공개가 아닌, 모두 당당하게 공개했다고 되어 있는 문서들 안에는, 이렇듯 공식 문서쪽은 은폐되어, 쓸 때 없는 한 사무관의 메모로 바뀌어진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다. 이런 짓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

II、 과연 먹칠된 내용이란 어떤 것들인가?

1、 문화재 반환 문제

그,문서 379 「한국 국보 고서적 목록 일본 각문고 소장」 (2008년 5월 9일 공개, 이하 6 차 공개라고 함)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불공개」이기 때문에 당초에 몇쪽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2009년 3월 4일 외무성측이 낸 준비 서면(1) 안에서, 27 쪽 있고, 「총수 114 쪽이며, …(중략)저자명, 서명, 수량등의 정보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동 문서는, 현재 외무성의 외교 사료관에서 공개중이며, 자료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 01-6711-01-7371-01-12061-01-12082-01-12094」 안에 들어 있다. 「요구하는 모임」의 장 변호사가 보관중.

이것을 계기로 외교사료관이, 숨기지 않도록 바라는 바이다. 여기에 실물이 있지만, 모두 복사하면 전술한 로, 114 쪽이나 되므로, 표지와 책 일부만을 소개하겠다.

韓國之寶古書籍目錄

日本各文庫所藏

但一部調査未了

調査未了は是迄追加送致

三八五、一四、張栗曼

長坂

韓國史關係

○正史

244 三國史記

245 高麗史

○編年

245 東國通鑑

246 東國通鑑提綱

247 麗史提綱

248 國朝寶鑑

249 同

五卷 高麗金富弼等奉勅撰 朝鮮寫

五卷 朝鮮鄭麟趾等奉勅撰 寫

五卷 卷首卷(內卷四主兒)朝鮮徐居正等撰

朝鮮刊

三卷 朝鮮洪汝河撰 朝鮮刊

三卷 朝鮮俞餘樸撰 朝鮮刊

天祖聖翼宗三卷 朝鮮世祖朝始撰 於朝鮮編

朝鮮刊

九卷 卷首卷 朝鮮金尚喆等撰 朝鮮刊

一〇冊

五冊

二八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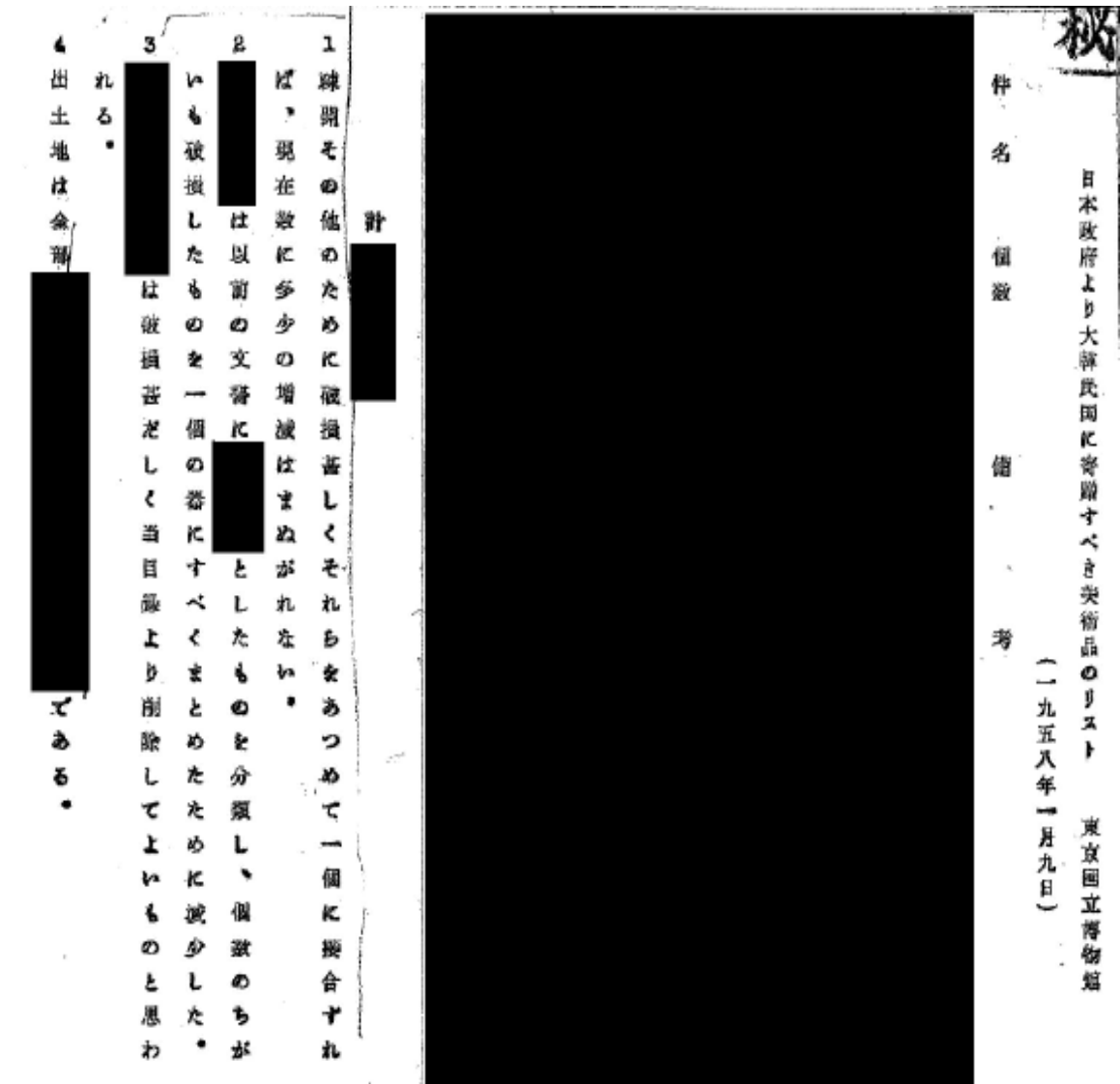
七冊

三冊

二冊

六冊

나, 문서 1118(6 차개시) 「한국 미술품의 기증」 1,12 쪽이 다음과 같이 먹칠이지만,



그 내용이 똑 같은 파일의 다음 2, 11 쪽에서는, 먹칠없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또 한국측 문서 102 「제 4 차 한일회담(1953.4.15-60.4.19) 문화재 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121, 146, 150, 179 쪽에도, 일본측으로부터 수교된 같은 문서가 공개되어 있다. 이래서는 무엇 때문에 먹칠한 것가? 또 부분 공개라고 숨겼는지, 은폐하는 것조차 실패하고 있다. 외무 대신은 이 작업을 명한 아르바이트(part-time job)로부터, 노임의 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숨기는 자체가 위법이다.

件名	個數	備考
金製 耳飾	二ヶ	
鉄製 刀子 残欠	五ヶ	ナイフに当るもの。破損して原形なし。
鉄器 残欠	一括	破損して原形不明のもの。
銀製 環	二ヶ	
碧玉製 管玉	一ヶ	次の小玉と一連とした装身具。出處石
ガラス製 小玉	七ヶ	
陶製 長頸壺	二ヶ	火度の高い焼物の壺で、頸の長い形
陶製 脚付壺	二ヶ	台のついた壺
陶製 蓋	二十四ヶ	
陶製 深鉢	十ヶ	
陶製 高坏	五十ヶ	食物を盛る器。高い台のある壺
計	百六點	

(出土地は、全部慶尙南道昌寧郡昌寧面校洞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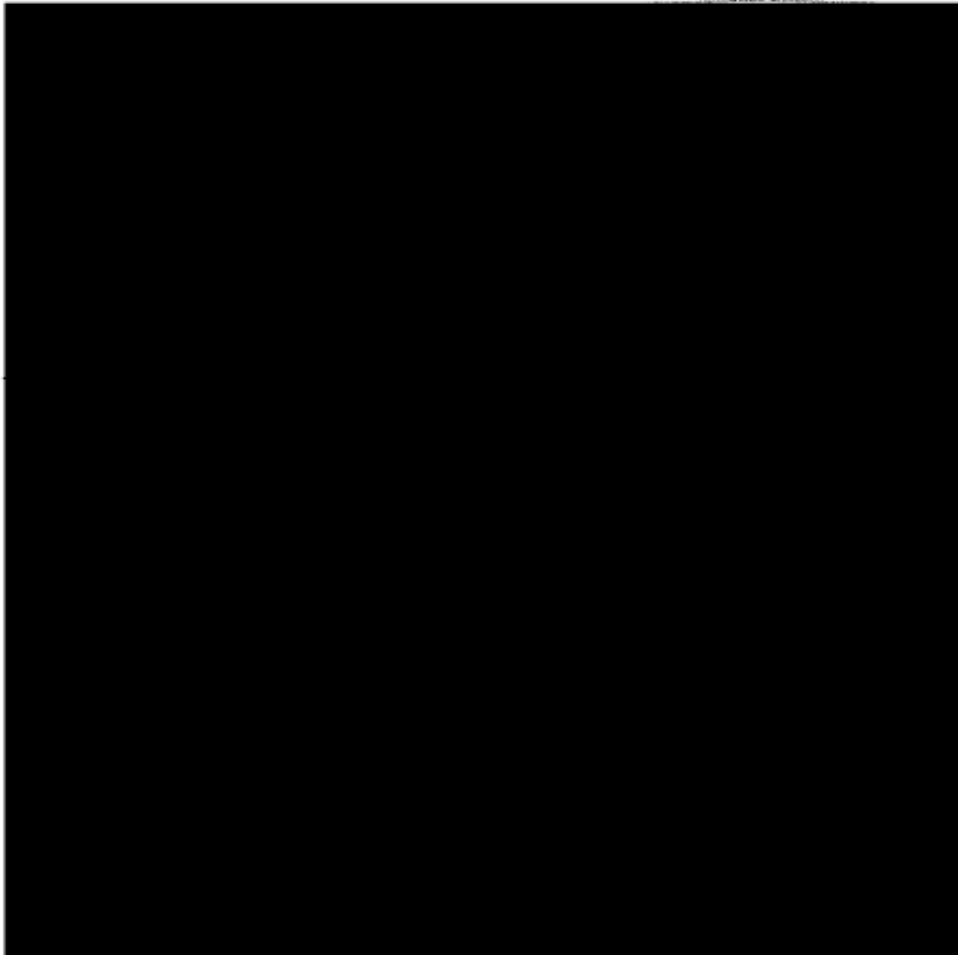
(一九五八年二月七日)

2. 청구권 문제

ㄱ, 문서 374(2008년 5월 2일 개시, 이하 5차 개시라고 함)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관계 자료」 13 쪽 이하 페이지의 절반 이상을 먹칠 했으며, 국가측은 2009년 3월 4일에 낸 준비 서면(1) 27 페이지에서, 「일한 국교 정상화 교섭에 있어서의 재산·청구권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검토 상황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한국측 문서와 완전히 같은 것이다**. 금년 9월 1일 3차 소송의 법정에서, 이와이 노부테루(岩井 伸晃) 재판장이 「일본측 문서를 일본 외무성이, 외교 기밀이라고 해서 숨기는 것은 아직 이해가 되지만, 한국측 문서를 감추는 권한이 외무성에 있는가, 통용하는 것인가」 라고 의심한 듯이, 외무성의 먹칠 행위는 완전히 권한을 일탈한, 위법인 것이다.

April 22, 1946

The undersigneds, hereby, certify that the following amount of the Japanese currencies have been duly destroyed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nd. to April 20th, 1946, at the furnaces of the Bank of Chosen of the Capital Building and of the M.G. Publishing House, Located in Seoul, Korea:



April 22, 1946

The undersigneds, hereby, certify that the following amount of the Japanese currencies have been duly destroyed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2nd to April 20th, 1946, at the furnaces of the Bank of Chosun of the Capital Building and of the M.G. Publishing House, located in Seoul, Korea:

1. The Bank of Japan Notes ¥1,201,710,769.--
2. Japanese Government
Currency Notes 12,500,000.--
3. The Central Reserve Bank
of China Notes yen value 1,374,550.11
4. Japanese Military Currencies
 yen value 192,378.36

For The U.S.A.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or The General Headquarters, A.P.F.C.:

For The Bank of Chosun: (Koo Yong Sun, Director)

For The Bank of Japan: (Hiroshi Yamamoto,
Inspector)

떡칠한 부분의 내용(번역)

1. 일본 은행권 ¥1,201,710,769.--
2. 일본 정부 지폐 12,500,000.--
3. 중국 중앙 제비 은행권
엔화 1,374,550.11
4. 일본 군표 엔화 192,378.36
재한 미국 군정청
진주군 총지령 본부
조선은행 (구용수 총재)
일본은행(야마모토 히로기 인스펙터)

ㄴ, 같은 문서 374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관계 자료」 15 쪽

3. In March 1946, an official of Bank of Japan accompanied by an Army Officer came to Korea and burned Bank of Japan notes amounting to [redacted]

그러나 한국측 문서 749 의 84 쪽에는 먹칠 없는 원문이 그냥 나와 있다.

3. In March 1946, an official of Bank of Japan accompanied by an Army Officer came to Korea and burned Bank of Japan notes amounting to 1,200,000,000 won.

내용은 「3.1946 년 3 월에 군 관계자들에 동반하여 일본 은행원이 조선에 와서, 대략 12 억엔의 일본은행권을 불태웠다」 고 되며, 일본 외무성이 먹칠한 내용은 「12 억엔」 이라고 판명되었다. 이 그,과 ㄴ,항은 한일간에 현안 문제들이 수많은 곳에서,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도 보이지 않은데, 외무성측에서 먼저 준비 서면으로 정당성을 주장해 와, 마지막에는 재판장으로부터 의심이 제기된 것. 외무성측이 쓸 때 없는 짓을 한 탓으로 오히려 스스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표현해야 할까?

ㄷ, 문서 1755 「일·한 청구 금액의 사정」 7~8 쪽 「한국측 청구 금액의 사정액」 한국측의 청구 금액을 왜 일본측이 숨기는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韓国請求権金額の査定額

項 目	金額 (百万円)
I 地金銀	[redacted]
II 通信局関係(郵貯、簡保、年金等)	[redacted]
III 送金返還	[redacted]
IV 閉鎖機関、在外会社の韓国人株主分配金	[redacted]
V (1) 有価証券	[redacted]
(2) 日本系通貨	[redacted]
(3) 労働者等の未収金	[redacted]
(4) 被徴用者等補償金	[redacted]
(内訳)	
A. 労働者見舞金	[redacted]
B. 復員軍人軍属見舞金	[redacted]
C. 死亡軍人軍属弔慰金	[redacted]

D. 死亡軍屬年金	[Redacted]
E. 軍屬障害年金	[Redacted]
V	
(5) i 恩給請求	[Redacted]
(内訳)	
文官恩給	[Redacted]
軍人恩給	[Redacted]
特別	[Redacted]
ii 帰国朝鮮人寄託金	[Redacted]
合計	[Redacted]

이에 해당하는 한국측 문서로서는 1952년 제1차 회담 당시의 문서 87,234쪽에 소개된 이후, 수 없이 많은 곳들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일본측 문서 안에도 문서 번호 376 「일한 관계 상정 문답집(미정호)」 37 쪽 「일한 청구권 금액 일람표 1962.3.17 現在」, 문서 1736 「일한회담의 청구권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시산액」 7, 8, 17 쪽, 문서 1914 「일한회담에 있어서의 한국의 대일 청구 8 항목에 관한 토의 기록」 102 쪽등, 여기저기에 인용되어 있다. 아래 문서 1736, 8 쪽의 「한국측 청구액」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要綱	請求項目	韓国側請求額	大蔵省案		外務省案
			試算額	試算の根拠	試算額
I	現金銀	現物請求			
	地金 249トン	時価 100843			
	地銀 67トン	737			
	小計	101,582			
II	総督府関係				
	1. 逓信局関係				
	(a) 郵便貯金等	1,198百万円			
	(b) 国債、貯蓄債券等	要綱Vの1にて請求			
	(c) 朝鮮簡保年金	135百万円			
	(d) 海外為替貯金	70百万円			
	(e) 凍結受取金	46百万円			
	2. 日本人預金引出額	討議留保			
	3. 裏付資金のない国庫金の支出	討議留保			
	4. 総督府東京事務所	討議留保			
小計	1,449百万円				

이 1961 년부터 62 년에 걸친 대장성과 외무성의 시산들도 공개해야 하는데, 한국측 숫자까지 은폐한다니 말도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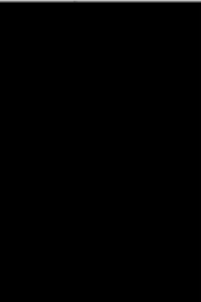
르, 문서1234 「국회에 있어서 재외재산 보상에 관한 정부 답변등」(6차개시)54쪽, 1953년11월 외무성 정보 문화국이 발행한 잡지 『세계의 움직임』 특집호부터, 「일본이 한국부터 받아야 할 금액, 일본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 차인 수취액」의 금액이 먹칠.

그러나 이 책은 이미 일본측 문서640 「일한회담의 경위」(4차공개)라고 해서 6쪽(원본으로는 8쪽째)에서 공개되어 있는 것이 판명. 그렇다면 왜, 6차 공개에서는 먹칠했는가? 전혀 이해 불가능하다. 결국 외무성이 열심히 먹칠한 내용은 각각 약140억엔, 약120억엔, 약20억엔이었다.

문서 1234, 54 쪽에서 먹칠 부분. 문서 640, 6 쪽에서 잡지 『세계의 움직임』 8 쪽

その他にも、帳簿尻の清算などを勘定に入れる
と、日韓相互の請求権は次のようになる。
日本が韓国から受け取るべき額 約一四〇億円
日本が韓国に支払うべき額 約一二〇億円
差引受取額 約二〇億円

關 * 一九五三年十一月の「世界の動き」特集号にのつた左記の
数字の日本側の額はどのような根拠によつたのか。
日本が韓国から受取るべき額
日本が韓国に支払うべき額
差引受取額



口,문서 1914 「일한회담에 있어서 한국의 대일청구 8 항목에 관한 토의 기록」(6 차 개시)102 쪽부터, 일본측 시산액은 모두 먹칠이 아니라 위의 제목 4 군데가 먹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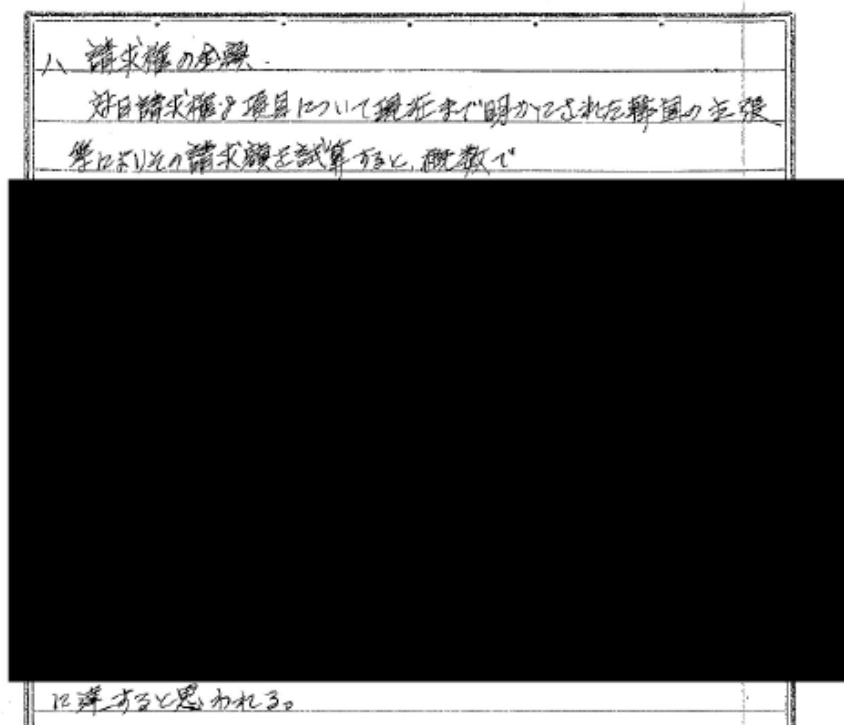
(附表) [Redacted] 一覽表

項目	內 容	金 額	A 家	B 家	備 考
第 1 項	地金銀 (現物銀米)	百 萬 円	百 萬 円	百 萬 円	韓國側金額は現在評額所 (F/A換算 [Redacted] F/B)
	地 金 240 トン余	101,301			
	地 銀 57 トン余	943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제목이기 때문에, 목차의 4 쪽에는 「(부표)한국측 청구액 [Redacted] 일람표」라고 먹칠부분에 해당하는 문자가 뚜렷이 쓰여져 있다. 따라서 먹칠한 내용은, (부표)「한국측 청구액 및 일본측 시산액 일람표」, 아니며는 그에 흡사한 내용이며, 똑같이 다음의 먹칠들도 각각, 「한국측 청구액」, 「일본측 시산액」, 아니면 그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韓國側金額은 現在評額 달러 換算 [Redacted] 달러」는, 다른 문서들의 예로부터, 예컨대 문서 1102 의 1736, 15 쪽에 「달러 평가는 15 엔대 1 달러로 한다」고 있으며, 또 이 페이지 아래측에도 「총계 엔 표시액 계 12,804 백만엔(85,360)만미따라」라고 있는것으로부터, 이것을 단순히 나누기 계산해 보면 딱 1 달러=15 엔으로 된다. 그러면 먹칠은 「한국측 금액은 현재 평가액 달러 환산 15 엔 = 미 1 달러」인 내용일 수 밖에 없다. 초등학교의 초보 산수로 할 수 있는 계산의 어디가 국익과 관련되는가?

ㄷ, 문서번호 1363 「한국에 대일 청구권에 대해서(1961.10.25 대장성 이재국)」 (6 차개시) 10 쪽



그러나 문서 1736 「일한회담의 청구권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1962.1.10」 (6 차개시) 15 쪽에는 확실히 그 내역과 15 억달러(1,500 백만불)라는 한국측 청구 금액이 나와 있다.

合 計	円債務 12805百万円 (853.6 百万ドル)
	ドル債務 364 百万ドル
	現物(地金銀) 28.2 百万ドル
	合計 1.500 百万ドル
	{ 但し、円債務のドル } { 評価は1.5円対1ドル } { とする }

아무래도 「일본측 내부 문서를 외무성이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이해할 수 있으나, 한국측이 공개한 것을 일본측이 숨긴다는 것은 이해 못한다」 고 도쿄 지방 법원의 재판장도 의심을 제기했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3. 독도 문제

홈페이지에서는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이 고유한 영토다」 라고 하는 주장을, 10 개국 언어로 번역해서 공개하고 있는 외무성이지만,<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index.html> 그 주장 내용이 모두 비공개로서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요구하는 모임」이라는 단체는,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과 한국 어느쪽 나라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단체도 아니며, 그 중재를 하는 단체도 아니다. 다만 「일본정부가 그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내놓고, 당당하게 주장해 보아라」 고 하는 뿐이다. 그 근거도 낼 수 없이, 모두 먹칠 해서 은폐한 채로서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이하, 외무성이 먹칠한 부분들을, 한국측이 공개한 문서를 바탕으로 밝혀 본다.

ㄱ, 문서 137 「죽도 문제에 관한 문헌자료」 (3차 공개)는, 제목만이 밝혀진 외무성이 작성한 내부문서이므로, 페이지수도 내용도 작성된 년월도 불분명했다. 또 한국측의 문서와 비교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재판의 과정 속에서 2009년 2월 17일, 국가측이 낸 2차소송의 준비서면(3) 2 쪽에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케시마(竹島) 문제에 관한 문헌자료가 주되어서, 일한 정부간의 교환에 관한 사실관계가 시계열에서 기재된 부분이 일부 존재하지만, 문헌자료는 그 시계열과는 무관계이게 기재되고 있다」 것과, 「문헌자료의 숫자는 합계 약 90 점이며, 약 40 쪽이다」는 것과, 「외무성에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내부 문서는 약 60%를 차지한다」는 것까지 밝혀졌지만, 그 내용은 물론, 작성된 날자도 아직 불명해서, 현재 2차 소송에서 소송 중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채다. 아무런 설명도 없고서 영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하나라도 있을 것인가? 외무성의 답변을 듣고 싶다.

ㄴ, 문서 1166 「일한 예비교섭(제 26~30 회 회합)」 (5 차개시)36~37 쪽, 1963.3.14

「제 6 차 일한회담 제 2 차 정치회담 예비교섭 제 30 회 회의」에는 독도 문제의 「ㄷ」 자도 없지만, 한국측 문서 738 의 222~223 쪽에는

「최 참사관: 이것은 다른 문제이나, 하나 밝혀 두고 싶은 것은, 이케다(池田) 수상은 국회 답변에서 한일문제는 독도 문제까지 포함하여 일괄 해결한다고 하였는데, 독도 문제는 종래 한국측이 주장한 바와 같이, 원래 한일 회담의 의제가 아니므로, 이 문제는 회담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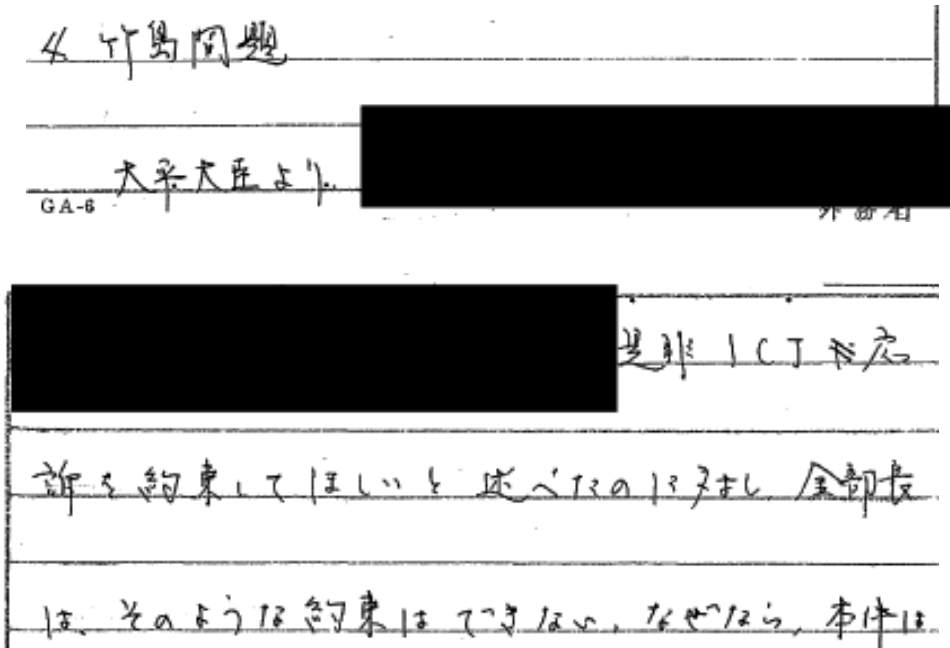
우시로구 : 수상이 일괄 해결한다는 것은 독도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해결의 최종 방법은 명백히 해야 하다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거론된 것조차 숨기고 있다. 이 정도의 기술마저 은폐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전혀 알 수 없다.

ㄷ, 다음 문서에서는 일본측 문서를 괄호「」 속에 표시해서, 안에서 먹칠된 부분을 한국측 문서로부터 인용, 굵은 글자로 나타낸다.

문서 1824 「오오히라 외상과 김 한국 중앙 정보부장과의 회담 (제 1 회)」
(6 차개시)91~92 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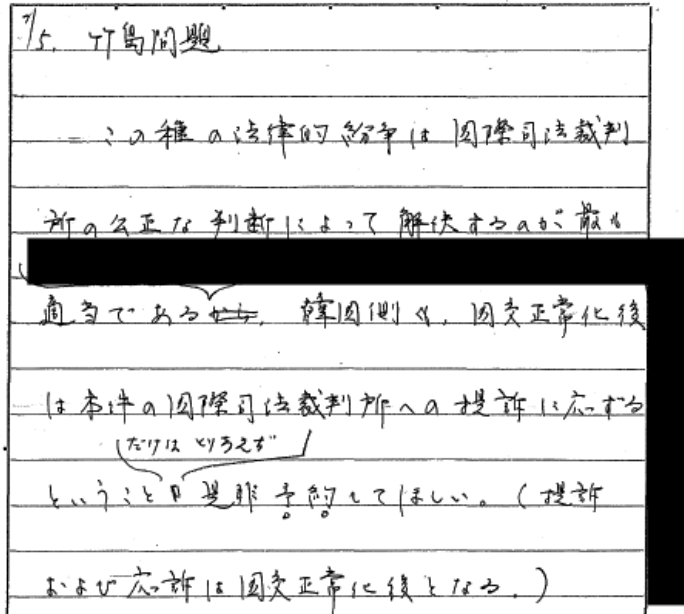


「4, 죽도 문제

오오히라 외상부터 독도 문제는 사회당의 대 정부 공격 자료로서, 항상 취급되는 어려운 문제의 하나임으로, 일본이 제기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응소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나는 그것은 못한다. 왜냐면...」이라고 있다. 이 부분을 의무성은 먹칠했다.

숨겨진 부분은 한국측 문서 796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10-11」 97 쪽으로부터 참조했다.

르, 문서 1826 「오오히라 외상·김부장 회담 (제2회)」 (6차개시)12쪽, 약2줄이 먹칠.



그러나 이 먹칠 부분의 해명은 쉽고, 일본측 같은 파일 22~23 페이지에 똑 같은 문장이 있다. 거기서는 「뿐만 아니라, 국교 정상화 교섭 때, 쌍방이 체면을 유지하면서 곤란한 문제를, 일시 보류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라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무엇을 위한 먹칠인가 모른다.

또 한국측 문서 796 「김종필 특사 일본 방문, 1962.10-11」 171, 179 쪽에는, 일본측이 수교한 일어의 문서가 있어서, 역시 완전히 동일한 문언이 있기 때문에, 먹칠 부분이 확정되었다.

이상의 검증들에 의해, 일본 외무성이 어떻게 한일 회담 관련 문서를 은폐하고 있는가, 또 그 먹칠 행위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 수고는 커녕, 한일간의 친선우호에 배반하는, 정보 공개법에 대한 모독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서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내년은, 일본에 의한 한반도의 불법 점령으로부터 100 년이라는 고비이기도 한다. 참된 한한 우호를 위한 가장 큰 장애가, 1965 년의 식민지 지배의 사죄와 책임에 눈을 감은 채 외면한, 한일간에서 맺어진 제협정인 것은 명백하다.

『한일 합병』이 역사 앞에 합법이었던가 어떤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었는가, 징용자의 미불 임금·공탁 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종군 위안부나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 간 사람들의 처우는 등등, 하나도 매듭짓지 않은 채 뒤로 미루어, 정치 결착을 한 근원이, 이 한일 회담에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54 년이 경과했은, 현재도 철저히 모든 것을 계속

감추고 일본 외무성의 은폐 체질이, 한일간에 놓인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 한일 회담 문서의 먹칠 부분을 한 눈이라도 보기만 하면 명백할 것이다.

일본 외무성은, 고령화하여, 일본에 대한 한만을 품고, 날마다 이 세상을 떠나 가고 있는, 일제 피해자들의 심정을 역자극하는 먹칠로서 사실을 은폐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당장 철회해서, 모든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길로 나서야 한다. 또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태도를 누우치며 고치도록, 여기에 강하게 권고하는 바이다.

1, 日韓双方、それぞれが備忘録から消している箇所を対照する

日本側第5次開示 1104 文書番号 525 「日韓会談重要資料集」 53～55 頁

資料 14 「第2次会談における韓国側の請求項目から」

6次開示 1148 の 1594 「財産請求権問題（昭和32年3-7月）」 15～17 頁も全く同じ物

AIDE-MEMOIRE on talking of the 28th May, 1953

1. 旧李王家財産韓国国有化に関する件通知
2. 朝鮮漁業組合連合会中央会在日資産等返還方法に関する日本側意見照会の件
3. 諸未収金項目別概算金額提示並びに日本側資料と照合依頼の件

A の部

注文品代金前渡金	6,187,067 円
〃	2,207,088 〃
〃	801,016 〃
〃	132,603 〃
〃	282,806 〃
〃	841,745 〃

B の部

在外日本軍部機関の供託金等	1,933,193 〃
麻薬代金未収金（日本厚生省外）	12,985,725 〃
交通部運賃乗車券代その他未収金	31,980,386 〃
林産物供出代金未収金	5,965,627 〃
未収金	53,995,432 〃

(50)

関係未収金	88,910 円
工事前渡金	255,542 〃

C の部

韓国人加入者に対する日本十九生命保険会社の生命保険責任準備金	400,000,000 〃
同未経過保険料概算	50,000,000 〃
13 損害保険会社の未払保険金	7,305,468 ・ 33
同 13 会社に対する朝鮮火災海上保険会社の再保険回収金	10,030,690 ・ 83
日本側在韓支店銀行の預金並びに為替組戻しその他雑費代払金	227,638,722 ・ 25
日本内銀行に対する個人預金	6,236,638 ・ 76
日本内銀行の発行せる送金為替にして受け取らざる分	796,859 ・ 67

D の部

郵便為替貯金韓国側受け取り勘定	1,475,967,080 円
貸借決裁基準の日後における韓国側受け取り勘定	173,846,433 〃
簡易生命保険関係受取金	391,352,964 〃
薬工品代金未収金	3,563,321 〃
放送局注文品代金前渡金	115,604 〃
専売局関係未収金	5,140,174 〃

以上 A. B. C. D 各部の内容詳細については韓国代表部韓奎永書記官経由にて随時御照会被下度

Dの部（保留事項）

正式提示を留保する請求権項目及び概算金額

1. 〃に
関する件
2. 第3国所在の韓国人（法人をも含む）財産回収又は補償方法に関する件
3. a. 日本法人に対する韓国内金融機関の滞り借金
- b. 日本人に対する韓国内金融機関の滞り賃金 211,241,763 円
- c. 日本法人並びに日本人に対する仮払金 1,165,626 〃
- d. 日本法人並びに日本人の未納税金 162,210,215 〃
- e. 貿易補償金 117,617,200 〃
- f. 貿易保留金 102,577,550 〃
- g. 軍事行動に因る被害 232,398,883 〃
- h. 強制撤去並びに疎開に因る被害 11,055,612,536 〃
- i. 1945年8月9日以後日本官吏の越権行為に因る被害 231,585,225 〃
- j. 強制供出に因る被害 1,848,880,437 〃
- k. 公供団体の破壊並びに企業整備に因る被害 38,010,686 〃

これに対応する韓国側文書は、登録番号 718「第 5 次韓日会談予備会談 一般請求権小委員会会議録 1-13 次、1960-61」211~216 頁が相当する。手書きで黒塗りのないまったく同じ文書なので、日本側が黒塗りした部分「3. の A の部」は「朝鮮電業株式会社、京城電気株式会社、南朝電気株式会社、西鮮合同電気株式会社、農地開発営団株式会社、馬事会種馬代金前渡金」、「B の部」は「朝鮮食糧営団、水利組合連合会、農地開発営団」と会社名、「D の部(保留事項)1.」は「韓国人官吏に対する恩給等諸未払金。(日本恩給局によれば約 5 億円)」という金額とその内訳であることが確定した。

AIDE-MEMOIRE on talking of the 28th May, 1953

1901

1. 19 李王家財産 韓国国有化に関する件 通知

2. 朝鮮漢業組合連合会中央会 在日資産等 返還方法に関する日本側意見照会。の件

3. 諸未収金項目別概算金額提示及び日本側資料と照会依頼。の件

A の部

朝鮮電業株式会社 法文品代金前渡金	6,187,067 円
京城電気株式会社 "	2,207,088 円
南朝電気株式会社 "	801,016 円
西鮮合同電気株式会社 "	132,603 円
農地開発営団 "	282,806 円
馬事会種馬代金前渡金 "	841,745 円

B の部

在外日本軍部機関の供給金等	1,933,193 円
麻薬代金未収金(日本厚生省外)	12,985,725 円
交通部運賃乗券その他未収金	31,980,386 円
林産物供出代金未収金	5,965,627 円
朝鮮食糧営団未収金	53,995,432 円
水利組合連合会関係未収金	88,910 円

D の部

郵便為替財金韓国側受け取り勘定	1,475,867,080円
(負債決裁基準の日後における韓国側受け取り勘定)	173,846,433円
簡易生命保険関係受取金	391,352,964円
薬工品代金未収金	3,563,721円
放送局注文品代金前渡金	115,604円
専売品関係未収金	5,140,174円

以上 A, B, C, D, 各部の内容詳細については韓国代表部

韓奎永書記官 経由にて 随時御報告被下度

D の部 (保留事項)

正式提示を 留保を 請求権項目及び概算金額

1. 韓国人官吏に対する 恩給等未払金

(日本恩給高に占れは 約5億円) に関する件

2. 第三国所在の韓国人(法人を含む) 財産回収又は補償方法に関する件

3. a. 日本法人に対する韓国内金融機関の滞り債金

509,461,246円

b. 日本人に対する韓国内金融機関の滞り債金

211,241,763円

c. 日本法人並びに日本人に対する仮払金

1,165,626円

d. 日本法人並びに日本人の未納税金

162,210,215円

e. 貿易補償金

117,617,200円

f. 貿易保留金

102,577,550円

g. 軍事行動に因る被害

232,398,883円

上のように日本側が墨塗りした部分は、既に韓国側が公開している文書によって、その中身が確定できた。ところが、韓国側文書の中にも省いてしまっている部分があることが、日本側文書の中には残っていた。

日本側の資料は上で複写したのと同じものだが、その省かれた部分は以下の通り。

特に、強制撤去や疎開に因る被害を 110 億円余りにも計上している。これが何を意味するのか不明だし、また保留事項、つまり双方で合意したものではないのだが、当時このような文書が作成され、双方が持っていたことは事実である。それを今になって韓国側が隠す必要は、どこにもないと思われる。

h. 強制撤去並びに疎開に因る被害	11,055,612,536 〆
i. 1945 年 8 月 9 日以後日本官吏の越権行為に因る被害	231,585,225 〆
j. 強制供出に因る被害	1,848,880,437 〆
k. 公供団体の破壊並びに企業整備に因る被害	38,010,686 〆

2, 日本側の韓国に対する請求金額

韓日会談が、韓国側の 8 個項目による対日賠償請求を主に議論され、例の金鐘泌一大平メモの金額で政治的に妥結したことは、余りにも良く知られた事実だ。しかしそれに対する日本側の対韓国請求というものが内部で検討され、これは基本的に韓国への賠償金額を値切るために意図されたようである。

「日本はその間韓人に与えた恩恵、即ち治山、治水、電気、鉄道、港湾施設に対してまで、その返還を請求するだろう。日本は毎日(年)、二千万円以上の補助をした」(韓国側文書 97 の 26 頁)、

「日本側としては、韓国においてハゲ山を緑にしたこと、鉄道を敷いたこと、港湾を建設したこと、米田を造成したこと、大蔵省の金を多い年は二千万円、少ない年でも一千万円も持ち出して韓国経済を培養したことを反対提案として提出し、韓国側の要求と相殺したことであろう」(日本側文書 1915-3-159)

日本側としては、韓国においてハゲ山を緑にしたこと、鉄道を敷いたこと、港湾を建設したこと、米田を造成したこと、大蔵省の金を多い年は二千万円、少ない年でも一千万円も持ち出して韓国経済を培養したことを反対提案として提出し、韓国側の要求と相殺したことであろう。

是處に於て賠償請求の件は日本は毎日韓人に何れも此恩恵即ち治山治水電力鉄道港湾施設四對に對しカチニ返還を請求せしむル日本は毎日二千万円以上の補助を以て

という有名な久保田妄言を持ち出すまでもなく、北朝鮮を含む韓半島全体が大日本帝国の所有物だったのだから、双方とも互いに賠償金額を計算するのは容易くはない。

韓国側の同じ文書 97 の 28 頁には、韓国側から「在韓日本人の蓄財が正当だと思ふのか。当時の資本構成だけ見ても 85% が日本人のものとなっていた事実までも、平等な機会によって獲得したものと思ふのか。一例を挙げれば漁業権、鉱業権のような官免許によるものは、韓人はまったく所有できなかったし、あげくには銭湯、理髪業、タバコ販売業まで日本人の手に集中していたことをどう見ているのか」という発言があり、

日本側の同じ文書 1915-3-122 には「今次戦乱における在韓日本財産の被害率は 7 割近くといわれ」という記述があり、それぞれの計算がそれ程遠くない感を与える。

（一）今次韓日戦乱による在韓日本財産の被害率は七割近くといわれ、

韓日戦乱による在韓日本人の蓄財が正当だと思ふのか。当時の資本構成だけ見ても 85% が日本人のものとなっていた事実までも、平等な機会によって獲得したものと思ふのか。一例を挙げれば漁業権、鉱業権のような官免許によるものは、韓人はまったく所有できなかったし、あげくには銭湯、理髪業、タバコ販売業まで日本人の手に集中していたことをどう見ているのか

請求権の割型は華平協約を要する。即ち日本側は戦争前韓日に在った日本の所有財産は平和条約により韓国がこれを取得することと主張するが日本の国民が持つていた私有財産は戦時中の約二〇乃至一〇〇の倍増に對してはタレイムを有する。この主張は、これが韓日戦乱における金財産の八五割に相當すると言ふのは、とんでもない大げさな話である。なお韓大使は今回の朝鮮戦乱において破壊された財産まで返還せよと日本が主張していると屢々新聞記者にいつているが、そういう無根拠な要求を日本側がしたことがないことは勿論である。これに對し韓国側は日本における財産約九〇乃至一二〇倍増にタレイムを持つといふ。この双方の主張の間に立つて政治的に解決する方法として、両方のタレイムを相殺しよといふ提議がある。これは實際上二〇乃至四〇倍増を相殺するためには困難することになる。この案は、昨年の日韓首脳代表間の非公式会談

しかし、上の久保田代表の発言が単なる失

言や妄言では

なく、外務省の内部で話し合われた既定の路線であったことが、11月21日外務省情報文化局長の談話によって判明した。

「戦争前、韓国に在った日本の公有財産は平和条約により韓国がこれを取得することは認めるが、日本の国民が持っていた私有財産は終戦時の価格で約120億乃至140億円に対しては、クレームを有すると主張する。」(日本側の同じ文書1915-3-215)(日本側文書640の16頁も同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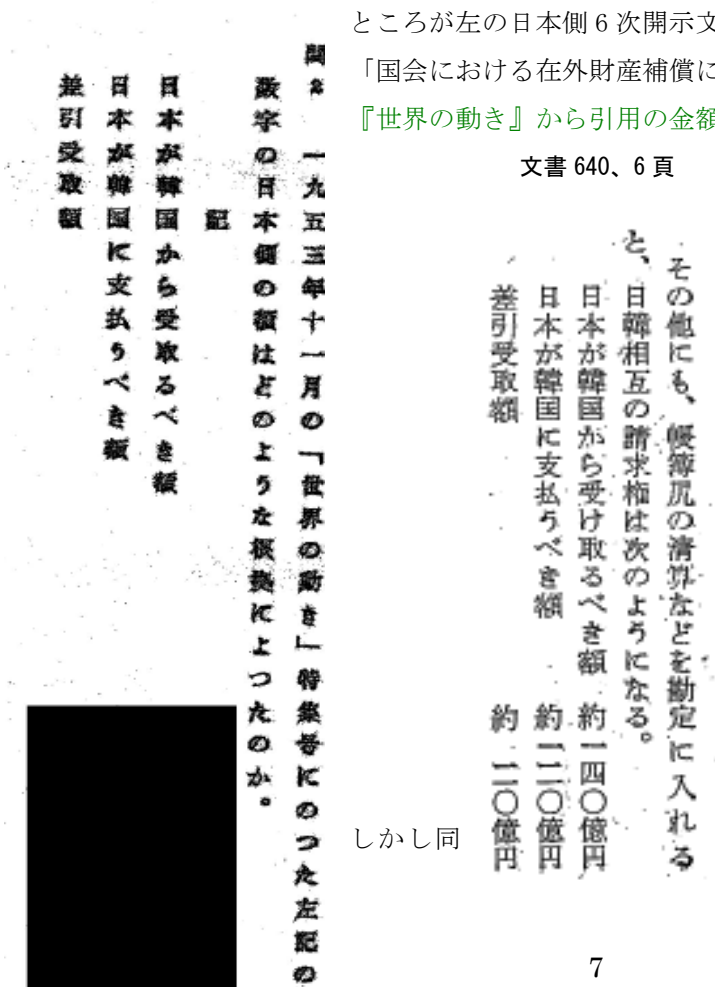
続いて上の私有財産が「これが韓国における全財産価値の85%に相当すると言うのは、とんでもない大げさな話である」と否定してから、「これに対して韓国側は日本における財産約90乃至120億円にクレームを持つという。この双方の主張の間に立って政治的に解決する方法として、両方のクレームを相殺しようという提案がある。これは実際上20乃至40億円を韓国のために抛棄することになる。」と主張する。

この外務省情報文化局長の談話は、「日韓会談のいきさつ」という題名で1953年11月発行の外務省情報文化局発行の雑誌『世界の動き』に、「外務省情報文化局長談昭和28年10月22日」として全文掲載された。しかしこの雑誌『世界の動き』特集号6は既に日本側4次公開として文書640に収録されていた。

ところが左の日本側6次開示文書1234

「国会における在外財産補償に関する政府答弁等」54頁では、雑誌『世界の動き』から引用の金額部分を墨塗りしている。

文書640、6頁



しかし同

じ文書が、日本側文書1915-3-215

及び 640 の 16 頁では墨塗りなしにそのまま露出

しているの、外務省が必死になって隠した金額は、それぞれ約 140 億円、約 120 億円、約 20 億円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

以上、「韓国に置いて来た」、若しくは「存在する」と日本側が主張する在韓日本人財産が幾らになるのか、日本側文書がほとんど墨塗りなので判明しないが、一部にそのまま数字が露出したものがあるので、ここに引用する。(日本側文書 506-8-247~250)

在朝鮮日本財産の推定額 1955 年 7 月アジア局 1 課「日本の在外財産状況」

国有財産	192 億 6,500 万円
法人財産	521 億 825 万 4,000 円 (在外財産調査会資料)
個人財産	192 億 474 万円 (昭和 20 年大蔵省令 95 号「在外財産等の報告に関する大蔵省令に基づく報告の集計)
計	905 億 7,799 万 4,000 円 (1945 年価格)

8-247

(1) 在韓日本財産等についての調査

1955 年 7 月、アジア局 1 課「日本の在外財産状況」では、在朝鮮日本財産の推定額を 1945 年価格で、国有財産 192 億 6,500 万円、法人財産 521 億 825 万 4,000 円 (在外財産調査会資料)、個人財産 192 億 474 万円 (昭和 20 年大蔵省令 95 号「在外財産等の報告に関する大蔵省令」に基づく報告の集計) 計 905 億 7,799 万 4,000 円としている。

ただし、個人財産については、これと別に朝鮮引揚着中の有識者により組織された在

外務省

これとは別に「在朝鮮日本個人財産調査会」の調査結果によれば

個人財産 251 億 1,155 万 3,000 円になると、同じ文書の下の方にある。

8-248

朝鮮日本個人財産調査会での調査結果は 251 億 1,155 万 3,000 円としていた。 1961 年

「1945年8月15日現在、日本在外財産の推計」連合国軍総司令部民間財産管理局在外財産課
第20表 在朝鮮日本財産(1945年8月現在)

	南朝鮮	北朝鮮	総額
国有	4億4,920万2,006円	5億4,902万4,674円	9億9,822万6,680円
法人所有	13億3,339万3,416円	22億1,056万4,940円	35億4,406万8,356円
個人所有	4億9,294万円	2億1,126万円	7億420万円
計	22億7,553万5,422円	29億7,095万9,614円	52億4,649万5,036円

1961年11月米国政府から日本外務省が入手。

「ただし、この資料も正確なものといひ難いところから、政府はその金額を公表することを避け」ている、とあり、「国会でもその金額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避けていた」と続く。

8-249

おなわち、連合国軍総司令部民間財産管理局			
在外財産課の「1945年8月15日現在、日本在外財産の推計」の Korea の集計は次のとおり。			
第20表 在朝鮮日本財産 (1945年8月現在)			
	総額	南朝鮮	北朝鮮
総額	5,246,495,036	2,275,535,422	2,970,959,614
国有	998,226,680	427,202,006	571,024,674
法人所有	2,544,068,356	1,333,393,416	2,210,674,940
個人所有	704,200,000	492,940,000	211,260,000
ただし、この資料も正確なものといひ難い			
ところから、政府はその金額を公表することを			
避け、その後、国会で在韓日本財産の金額			

GA 6 外務省

3, まだ韓日会談において、個人請求権があると解釈されていた当時の記録

韓国政府ではなく、日本政府が直接、徴用被害者たちに未払い賃金等を支払うと公言したのは1961年5月10日に開かれた第5次会談第13次一般請求権小委員会会議においてだった。

この文書は2005年に韓国政府が初めて会談文書を公開するずっと前から、複写本等で露出していた。東大の東洋文化研究所の図書館も所蔵していて、多くの研究者が利用、発表して来た。

私も2004年の7月東大で、この資料を撮影したのだが、当初図書館側は「そんな文書はここにはない」と言い張った。こちらもこの研究の先駆者たち、「例えば、津田塾大の高崎宗司教授がつい最近まで、ここでこの文書を見たと言っている」と強く迫ったところ、「外務省から見せるなと圧力があつた」と内幕を明かして、撮影に至ったという経緯がある。

「韓国側 被害者に対する補償はわが国内で措置する性質のものだ」と考える。

日本側 韓国が新しい基礎の上に考慮するというのは理解できるが、個人ベースではないというのは理解できない。元来正式な手続きを踏んでいたら支払えたと思う。わが側としては現在でも未払金を支払う用意があるということは、前の会談でも言及したことがある。要はわれわれの立場は未払金が、本人の手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見る。

(韓国側 718 の 375 頁)

韓国側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 한다.

日本側

한국이 새로운 기초 위에서 고려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개인 배 - 스 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원래 정식 수속 을 밟았더라면 지불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측 으로서는 현재라도 미불금을 지불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 에서도 언급 하였었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 에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相互の国民感情を徒に刺激することなく互いに融和して行こうというのがわれわれの目的であると思う。そのためにも日本側は韓国政府を無視するという意味ではなく、この問題についても韓国に居られる方、遺族の方々を直接対象として考えたいということであると日本側の考え方についてる説明した。」(日本側文書 95 の 27~28 頁)

しかし同日の会議で日本側は、具体的な調査や資料の提出を、韓国側に執拗に迫る。

「日本側 被徴用韓人未収金に対して調査した資料があるのか。

韓国側 SCAP の公文で大体は見当がついている。

日本側 資料があったら私たちが持っている資料と相互対照しよう。

韓国側 われわれは資料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く 1950 年 SCAP から通報を貰った物がある。

日本側 1946 年に申告させたというのが誤報なのか。

韓国側 申告させたことはない。日本側の資料を得たい。日本側には資料があると SCAP の公文にもある。

日本側 被徴用者の未払金はある程度調査されているのか。被徴用者の中には北鮮に行った人もいたりして、それがどうなったか事実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

韓国側 総額はわかるのか。

日本側 不十分ではあるが未払金関係は大体で調査して、供託させる等の方法を取っている。しかし地域的調査はできていない。

韓国側 軍人軍属関係も調査はできているのか。

日本側 徴用者関係だけを調査した。しかし未払金の内一部は朝連から強硬な要求があつて、会社側で支払ったものもある。(中略)

韓国側 補償金においては日本人死亡者、負傷者に対しても相当に補償しているが、特に他の国民を強制で徴用して精神的、肉体的に苦痛を与えたことに対して相当な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いのか。

日本側 徴用当時は外国人ではなく、終戦後外国人になった。

韓国側 その当時日本人だったと言うが、もう少し事実関係を正確にすれば理解が行くだろう。

日本ではどのように動員されたのか知らないが、韓国では道行く人を捕まえてトラックに乗せて炭鉱に送った。カイロ宣言やポツダム宣言にも表明されているように日本は韓国人を奴隷扱ひしたのだが、その当時日本人だったというのは事実を隠蔽するものだ。

日本側 とても痛々しいことだったし当然援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うが、その家族が外地にいたら援護できない。このような人たちの名簿を明確にしたら早く解決できると思うが、明確にできないか。

韓国側 若干の資料があるが不完全だ。

日本側 われわれもその点整理させていて不完全だが、相互対照したら明確になると思う。日本の援護法を援用して個人ベースで支払えば確実になると思う。日本側としては責任を感じるし、被害を受けた人に対して何ら措置もできず申し訳なく思い、特に負傷者、行方不明者、死亡者や、その家族に対して措置できないのに対して遺憾に思っている。

韓国側 同じ話だが、それをわれわれは国内措置としてわれわれの手で支給する。日本側で支給する必要はないのではないか。

日本側 徴用者の内には負傷者もいて死亡者もいて、また負傷者の内にもその原因とか程度があるが、このような事実を全然しらずに、伏せて置いてお金を支払う分けには行かないで

はないか。(中略)

日本側 人員数、金額、被害程度は具体的にし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韓国側でもそのような意味で請求していると考え、個人の権利として具体的な申告を受けて支払うのが妥当ではないか。

韓国側 その点もう少し討議をすれば理解が行くと思うし、われわれも何の資料もなく請求するのではない。

日本側 1953年5月23日のAIDE MEMOIREによれば韓国側は名簿を提示するとあったが、名簿を提示できるか。

韓国側 名簿は不完全だ。その後調査をしなかったが、必要な場合には調査する。

日本側 最終問題としては家族の居住地等具体的な問題を正確に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請求権の権利に対する義務として個別的具体的にし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る。

韓国側 補償する必要は認めるが具体的な事実を明確にしようという趣旨なのか。

日本側 補償の余否は上部で決定する問題だが、われわれとしてはその方法があれば方法を考えなければならぬし、方法としてはやはり個別的に解決しなければならぬと考える。

韓国側 実際において調査が困難で、特に軍人軍属に関しては日本側がすべての記録を焼却したのではないか。しかし軍人軍属または労務者が多数徴用されたのだけは事実であり、疑う余地がない。このような数は色々な資料によって調査したが、名簿はない。

日本側 不完全ではあるが双方の資料を相互対照すれば、人員数が確定され、金額も自然算出できるのではないか。

韓国側 多くの人々が死亡または行方不明になったのが事実であり、また生存者も精神的、肉体的苦痛を受けたので補償を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いのか。人員数は申告させる方法もあるが、その外の方法でも確認できると思う。

日本側 韓国でそういうものを調査し、補償したことはないのか。

韓国側 まだしていない。(韓国側文書 718 の 373~380 頁)

この会議録の内容は、日本側文書 95 を記載しても、大体同じ内容なので重複は避けるが、最後の部分だけ引用する。

「韓国側李主査代理は、名簿の問題はいずれにせよ、多数が死亡、行方不明になったことは動かし得ない事実で、生存した者も痛手を蒙っている。人数の確定、申告させることも結構だが他の方法でもできると思うと述べた。

吉田主査代理より、こういう人達に対し韓国側で今まで何らかの援護をされているのかとたずねたところ、李主査代理は、韓国側は金がないのでやっていると答えた。」

つまり軍人、軍属、徴用等は植民地時代に大日本帝国が行った施策であり、大韓民国はまだ国家として成立していなかった。それらの名簿があるとしたら、それは日本が持っているのである。しかし終戦直後日本は、証拠隠滅のために、その多くを焼却してしまったと言われる。つまり韓国が持っている筈がない、正確な名簿や資料の提出を韓国政府に執拗に迫り、結局自分たちのペ

ースに持ってこようとしたと思われて来た。

だが 1962 年 2 月 7 日の外務省側の文書、「日韓請求権交渉の今後の進め方について」を読むと、この当時はまだ日本側が、本当に個人に支払うことを考えていたようかがわかる。

(日本側文書 506-8-220～225)

「日韓会談における韓国の対日請求権処理にあたって、日本側が十分に法的根拠のある請求として認めうるものは、きわめて少額に過ぎないことが判明するに至った。(1 月 10 日、総理に提出した大蔵省試算額のうち、被徴用者に対する補償金を含まない数字たる 1 千万ドルですら、その金額を厳密に法的根拠および所要の証拠書類の整ったものとして説明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

(イ)事実関係の確認が困難 – 終戦後、十数年が経過、朝鮮動乱で相当部分が亡失。

恩給等の支払いには確実な証拠書類が必要なのに、軍人軍属、徴用労務者の把握は不可能。

(ロ)関係法規が朝鮮の独立を前提としていない - 日本国籍を喪失すると恩給権が消滅するので、支払い額は僅少にとどまる。法律がこのような事実を予想していないことから、国際先例をも勘案し、韓国人に対しても日本人並みの恩給支払いを行うという考え方にも根拠があると思われる。(中略)

(ホ)韓国側は、請求権として日本側から支払を受けたものを関係個人に渡す代わりに、一括政府資金として経済発展、社会福祉等の目的に使用することも考慮している模様であるが、日本側の立場からいうと、請求権支払である以上、これが確実に個人の手に渡すことを要請せざるをえず、この間の調整の問題も起る。(中略)

他方、十分の裏付け資料がないにしても、相当多数の韓国人軍人軍属、徴用労務者がいたことはまぎれもない事実であり、またこれらに対して少なくとも日本人並みの恩給その他を支給すべきことは、条理からも国際先例からも自然のことと考えられ、ただ問題はこれを十分に法的根拠のある請求とよぶにたるだけの事実上および実定法上の根拠が欠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つきると思われる。

4, 梁裕燦初代韓国側首席代表について

日本側文書 1125-2-119～120 には、日本側松本俊一初代首席代表による、梁裕燦韓国側代表に対する酷評が載っている。

首席代表の梁裕燦氏を評して 松本首席代
表は 次のとおり 語っている (1967 年 10 月 18 日「第
1 次日韓会談当時の回顧」)。

「聞くところによると、梁大使は李承晩

の亡命時代によくそのお世話をしたので、李承晩は梁大使を大審にし、独立後、最初の駐米大使に任命し、また彼を東京に派遣したのであつた。そういう関係で当時梁大使とダレス特使との仲は非常によかつた。

梁大使はアメリカ育ちで、韓国語も日本語もできず、英語しかできなかつたが、私は一諸に歌舞伎に行つたりして仲よくつきあつた。

会談の際の用語は、日韓英3カ国語を使用できることになつたが、梁大使は英語しかわからない、向うの代表は全部日本語がわかる。それで日本側のいうことを韓国語に訳す前に向うの代表は全部話の内容がわかっているのだが、梁大使には日本語も韓国語もわからないという極めて妙な交渉であり、そういう調子で、会議ははじめからぎごちなかつた。

梁大使は悪い人ではないが、何分にも韓国語もできない位だから韓国の実情がわからない。日本と韓国との関係といへば、彼の頭にあるのは、日本が36年間不法に統治していたということだけである。こちらはまだそんなことをいつているのかと思つているから、話をはじめから難しい。」

外務省

韓国語も日本語もわからず、韓国に住んでいないので韓国の実情に疎い人が、韓国側の代表に指名されていたという事実には驚きを禁じ得ない。

ましてや会談の重要議題である、在日韓国人の法的地位について、在日の実態や生活実感等わかる筈もない。こういう人が在日の永住権、強制退去、民族教育、生活保護や医療等福祉政策、北朝鮮との関係等について、何を知っているのでしょうか？

しかし自国の代表の名誉を傷つけるような、このような記述が韓国側の内部文書から出

て来る可能性はまず考えられない。両国の文書を並べて比較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初めて客観的な検証ができるということを示して余りある文書である。

5,独島問題

日本はロシアとの戦争に備え、1905年1月28日の閣議決定で「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経百三十一度五十五分、**隠岐島を距る西北八十五浬に在る無人島は**、他国に於て之を占領したりと認むべき形跡無く、(中略)之を本邦所属とし、**島根県所属隠岐島司の所管と為し**差支無之儀と思考す。」として、独島を強制的に日本の領土に編入させる。

これを受けて松永竹吉島根県知事は1905年2月22日、「北緯三十七度九分三十秒、東経百三十一度五十五分、**隠岐島を距る西北八十五浬に在る島嶼を竹島と称し、自今本県所属隠岐島司の所管と定めらる**」と告示第40号を発令した。

そして1910年8月29日、現在の北朝鮮地域を含む大韓帝国の領土は、すべて日本の植民地と化する。

日本が第2次大戦に敗北し朝鮮半島が独立を回復すると、連合軍総司令部は1946年1月29日、SCAPIN第677号第3条で「日本の範囲から除かれる地域として、(a)鬱陵島、**独島**、済州島。(b)北緯30度以南の琉球(南西)列島(口之島を含む)、伊豆、南方、小笠原、硫黄群島、及び大東群島、沖ノ鳥島、南鳥島、中ノ鳥島を含むその他の外廓太平洋全諸島。(c)千島列島、齒舞群島(水晶、勇留、秋勇留、志発、多楽島を含む)、色丹島」を示した。

1-22

(ロ) 竹島
日本が連合国の占領下におかれたのち、連
司令部の指令によって竹島に対する日本政府の
行政権の行使が停止され、さらにマッカーサー
ライン 停 によって竹島周辺に日本船舶 ^お は
日本国民の近接することが禁止された。そのた
め日本政府としては1946年7月26日付県令
第49号で島根県漁業取締規則中から竹島
とそのアサカ漁業に関する項目削除の措置を
とった。 法

こうして独島は日本の領土から除外され、韓国に返還されたことは、誰もが知っている常識である。

ところが上の **SCAPIN** を受けると、島根県はすぐに1946年7月26日付で、県令第49号「島根県漁業取締規則」の中から、独島での「アサカ漁業に関する項目」を削除してしまう。

これは今回の日本側公開文書 1124-1-82 で明らかになった。

しかし文書 137「竹島問題に関する文献資料」などは、全面不開示なので、一体何頁あるのか、どんな書類が含まれているのか、まったく想像できない。

現在この文書 137 の公開を求めて、東京地裁における第二次訴訟で係争中である。

だが、その過程でやっと、国側は準備書面(3)において、「文献資料の数は合計約 90 点である。タイトルと内容の概要を説明したものを含み、約 40 ページである。約 90 点の文献中、外務省で作成されたと考えられる内部資料は約 6 割を占める。公刊されている文献資料も存在する。」と明かしたので、そこまでは判った。

こんなことですら、われわれが裁判を起こさなければ、まったく不明のままだった。

私たち「日韓会談文書の全面公開を求める会」は、独島問題を専門に研究する集団でも、日韓間の領土の画定を模索する団体ではない。

ただ日本政府、外務省に対して、「国は、竹島問題等、領土問題を主張するのであれば、その基となる根拠を、隠したりせずに、堂々と公開するべきだ。理由も示すことができずに、他人の持ち物をねだるような態度は、外交施策において決して成功しないし、また日韓市民の親善友好の精神にも背き、日本の民主化、情報公開制度の精神にも相反するものである。白黒を決する前に最低限、何が白で何が黒なのかを示すべきだ。何も出すことができないような密室政治は、何の説得力も持たない。逆に余程、自分たちのしていることがやましいのか、不当であることを恥じていて見せられないのかと、疑惑と不信感を増大させる役割しか果たしていない」と言いたいだけである。

민족문제연구소

130-8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번지 금은빌딩 3층
전화 02-969-0226 전송 02-965-8879 www.minjok.or.kr